■ 2015년 전문자료집 ■

교육 · 연수보고서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2015년 전문자료집 - *교육·연수보고서*

▩ 목 차 ▩

1. 기획홍보팀
   - 15-0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교육 5
   - 15-02 발달장애인 독립적 권익옹호인 양성교육 12

2. 상담사례지원팀
   - 15-03 복지정책아카데미(사회복지와 공동체를 위한 통섭적 접근) 47
   - 15-04 교육 연수보고서(사례관리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67

3. 기능향상지원 1팀
   - 15-06 인천광역시 8개 장애인복지관 직원 일본연수 보고서 73

4. 기능향상지원 2팀
   - 15-07 국제 할리윅 교육보고서 80

5. 운영지원팀
   - 15-08 15년도 법인교육 87

6. 지역연계팀
   - 15-09 2015년도 전국장애인복지관지역 복지교육연수 96
   - 15-10 2015년 장애인식개선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105

7. 직업지원팀
   - 15-11 2015 직업재활 국제학술대회 교육보고서 110
   - 15-12 2015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제 1차 전문인력 신규교육 116
   - 15-13 발달장애인지원법 123
   - 15-14 발달장애인을 위한 금전관리 교육보고서 141
   - 15-15 2015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제1차 전문인력 신규교육 144

8. 활동지원팀

◦ 15-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무회계교육 154

◦ 15-16 2015년도 전국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사업 교육연수 160

9. 가족문화지원팀

◦ 15-17 사회복지 팀장 사관학교 172

◦ 15-18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예방 및 개입 215

◦ 15-19 청소년 사회성기술훈련 PEERS 220

10. 늘푸른동산 주간보호센터

◦ 15-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무회계 교육 233

◦ 15-21 2015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실무자 교육(노무관리) 238

11. 열린일터

◦ 15-22 2015년 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수행기관 교육 244

◦ 15-23 남동구 복지정책아카데미(우리 공동체의 집 짓기) 248

◦ 15-24 재활전문교육 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 256

◦ 15-25 남동구 복지정책아카데미(복지정책에 대한 통섭적 접근) 274

◦ 15-26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291

◦ 15-27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교육 300

12. 그루터기

◦ 15-28 소아정신보건 임상 및 부모교육 모델 'Pyramid Model' 306

◦ 15-29 정신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과제와 대안 토론회 315

◦ 15-30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인천지회 보수교육 '클라이언트 회복을 위해 넘어서야 할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세' 320

◦ 15-3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환경과 향후과제 326

교육·연수보고서 15-0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교육

주 최		보건복지부
기 간		2015년 11월 4일 14시 ~ 16시
장 소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
참석자	팀 명	기획홍보, 지역연계, 활동지원
	명 단	김미숙, 이현정, 고형식, 이연정
	인 원	총 4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2시간

Ⅰ. 교육개요

1. **교 육 명**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교육

2. **기　　간** : 2015.11.04.(수) 14:00~16:10

3. **장　　소** : 인천시청 대회의실 본관 2층

4. **주제 및 내용**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문화·예술·체육활동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내용 및 차별사례 소개

5. **참 석 자 :** 총 4명
- 사무국장 김미숙
- 기획홍보팀 : 이현정
- 지역연계팀 : 고형식
- 활동지원팀 : 이연정

6. **교육주최 :** 보건복지부, 인천시

Ⅱ. 교육내용

1. '나 라면' (전남장애인인권센터 허주현 소장)

● 인권의 정의 → 인간의 존엄성이 주 키워드

①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 권리
②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부여되는 권리

※ 권리란?

☞ 법의 중심개념이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이기도 함. 권리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에 의해 부여된 의사의 힘으로 보는 의사설,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이익설 등도 있으나,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권리법력설이 지배적 견해. 권리에는 공법상의 공원과 사법상의 사권이 있으나, 대체로 사권을 중심으로 말함.

권리가 침해되는 때에 그 보호는 국가에 의한 공력구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에 의한 사력구제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뿐임. 공력구제의 방법으로는 재판제도, 조정제도 등이 있고, 사력구제의 방법으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등이 있음.

● 인권 감수성

☞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서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

● 인권옹호 행동 과정

① 인권 감수성 과정
② 인권에 대한 판단 과정
③ 인권에 대한 동기 과정
④ 인권옹호 행동 과정

●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① 자선에 기반한 접근
② 필요에 기반한 접근
③ 인권에 기반한 접근

● 인권의 속성

① 인권의 보편성
② 인권의 상호불가본성
③ 인권의 도덕성

④ 인권의 우선성

※ 인권의 가치 - 자유, 평등, 박애

※차이를 없애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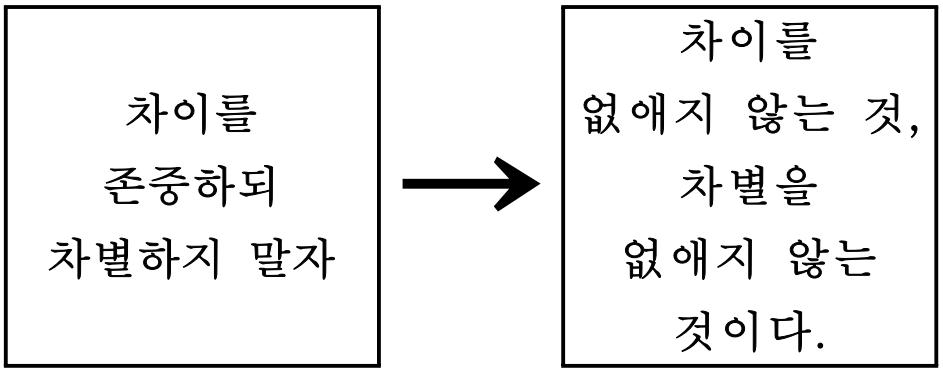

● **차별이란**

① 차별 :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② 둘 이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행위

③ 우월과 열등, 강자와 약자, 다수자와 소수자, 정상인과 비정상인

④ 우대와 천대, 존경과 멸시, 포용과 배제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 4조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함.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 4조 접근권 -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장애인 권리협약**

☞ 제 2조 합리적 편의 -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필수적이고 적절한 변형 및 조정을 의미.

2. ‘장애인 인식개선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사항 및 차별사례’
(오산시 수화통역센터 박병은 사무국장)

● 정당한 편의란

누구나 모두가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

● 차이와 차별을 구별

차이	구별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둘 이상의 대상에 차이를 두어 구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 4조 차별행위 -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차별영역

재화/용역 고용 교통수단 교육시설 상업 등

※ 19가지 차별 사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시출산	가족형태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의견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기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차별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19가지 차별사유를 이우로 특성한 사람 (특정한 집단 포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재정 · 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 3호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4조
우대	제한
배제	배제
구별	분리
불리	거부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적극적 조치 -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ㅏ른 차별로 보지 아니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 차별 예외**

☞ 정당한 사유 - 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②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제 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평등이란

☞ 차별받지 않는 것을 뜻함. 여자와 남자, 젊은이와 노인, 아이와 어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샘김새나 성격, 태어난 장소와 가문이 다르더라도 '사람'으로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말. 평등이 모든 사람을 무조건 똑같이 대해 주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 그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아님.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등의 의미.

● **제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누구와도 다르지 않음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비장애인의 잘못된 인식과 편견의 벽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우리 실생활에서 무심코 지나가는 작은 부분에서도 장애감수성을 가지고, 장애인을 생각한다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두가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정당한 편의'에 대한 교육과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늘 이러한 장애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차이, 차별, 구별'이란 단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단어가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이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본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차별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 했을 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교육·연수보고서 15-02

발달장애인 독립적 권익옹호인 양성교육

주 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 간		2015년 11월 9일~12월 2일
장 소		이룸센터
참석자	팀 명	기획홍보팀, 직업지원팀, 가족문화팀, 상담사례지원팀, 활동지원팀
	명 단	고광원, 이현정, 이주미, 김정혁, 이정진, 박은영, 김효중, 정다예, 김서영, 최지원, 박상아
	인 원	총 1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2 일
	시 간	총 10시간

교육 참석 일정(2일 10시간)

	11/9	11/10	11/23	11/30	12/1	12/2
참석자	이현정, 박은영	이현정, 박은영	고광원, 정다예, 김서영, 이정진, 김정혁	김효중, 이주미, 최지원, 박상아	김효중, 이주미, 박상아, 김정혁	고광원, 정다예, 이정진, 최지원

Ⅰ. 자기옹호와 집단옹호

1. 자기옹호

1) 자기옹호의 배경

- 1960년대부터 정상화(normaliztion)원리와 탈시설, 1980년대의 자립생활운동 등을 배경으로 자기옹호 운동이 확산됨.
- 1970년대 발달장애인의 대표적인 자기옹호집단인 피플 퍼스트(People First)로 성장함.

2) 자기옹호의 개념

- 피플퍼스트(1996) : 자신을 위해 발언하고 일어서기, 자신의 권리를 위해 일어서기, 선택하기, 독립적으로 되기, 스스로 책임지기"로 정의함.
- 자신에 대한 다방면의 지식을 기반으로 동등한 사회구성원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과 맥락속에서 자신의 권리, 신념, 욕구, 필요 등을 개별적 선호 의사표시 방법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재섭 외, 2011)

3) 자기옹호의 원칙

- 자기옹호의 가장 큰 원칙은 발달장애인이 그들 스스로를 위해 말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 '사람이 먼저(People First)'라는 가치(Value)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조언자, 또는 조력자들이 가장 경계)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가장 최우선적 가치
◆ 발달장애인에게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제공

2. 집단옹호

1) 집단옹호의 배경

- 미국 : 1963년 정신지체라는 꼬리표에 대해 인간으로 먼저 대우해달라는 집단옹호로 '피플퍼스트' 대회에서 유래함. 1990년에 조직된 자기옹호자동맹도 있음.(현재 800여 개의 집단이 가입함)
- 스웨덴 : FUB(부모, 전문가의 모임이었으나 차츰 자기옹호집단으로 발전함)
- 영국 : 1984년 피플퍼스트가 만들어짐.
- 국내 : 1900년대 장애인 교육권 확보운동, 2008년도 특수교육법 제정,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 집단옹호의 개념

- 개인적 측면의 자기옹호 경험과 성장을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차츰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직면하여 인식하고 사회운동적 측면으로 발전하는 것
-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같은 차별과 경험을 한 공감과 상호 관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Speak out)와 같은 처치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Speak out)하고자 하는 실천으로 발전하는 것

3) 자기옹호와 집단옹호의 관계

- 전문가부터의 독립, 임파워먼트, 자기 정체성, 다른 사람을 위한 대변, 자율성, 권리의식, 새로운 지식과 기술, 자기주장, 낙인거부 등 다양한 권리요소들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작동된다. 즉 자기옹호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속성이 융합되어 표출되며 그 속성에는 개인적 측면에서의 자기옹호와 더불어 집단적 측면에서의 자기옹호 속성이 서로 유기적인 상호연관성을 가진다.

3. 자기옹호훈련과 자기옹호 실천방법

1) 자기옹호훈련의 필요성

- 자기옹호훈련을 통해 자신의 권리, 의견, 신념 등을 전달할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요청사항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옹호훈련이 중요함

2) 자기옹호훈련 실천방법

① 주장하기 훈련

- 자신을 주장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변호할 때 당당하게 행동하거나 혹은 자신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을 의미함
- 주장하기의 내용은 요구, 정서, 의견 등에 대한 언어화를 의미함

거부-“미안하지만,나는 이번 것에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행동변화에 관련된 요구:“나는 당신이 ----------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른 으견들에 대한 표현:“나는----------에 반대하는데요.”

- 주장하기훈련의 기본요소들은 시범, 행동시연, 강화, 피드백과 개인지도, 긍정적인 자기진술훈련, 이완훈련, 과제로 요약할 수 있음

② 권리와 책임에 대해 지도하기

-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은 옹호하거나 주장하고 싶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도록 함

③ Test의 자기옹호 프로그램

- 자기지식 : 감정인식, 자신의 장애인식, 선호인식 ,장점과 단점 인식, 자신의 꿈 인식
- 권리지식 : 상대방의 언어적, 신체적 괴롭힘에 대한 대처, 도움요청, 거절하기, 주장하기
- 의사소통 : 대부분 다른 구성요소와 연결하여 지도하며 비구어, 구워적 의사소통 능력과 의사소통 예절에 관한 것

- 리더십 : 개인적 리더십, 타인과의 리더십 중심으로 이루어짐

④ 자기옹호 역할극

⑤ 자기옹호집단 정체성 강화를 위한 활동

4. 자기옹호집단

1) 자기옹호집단의 개념

① 공통적인 문제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며 서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

② 참여자는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대처방법 논의, 상호지지제공, 지역사회자원의 존재 확인 및 동원을 해야 함

③ 구성원의 소속감을 증진, 구조 및 통제, 정보제공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함

- 한국의 자기옹호집단이 형성되는 초기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형태보다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부모회 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음.

2) 자기옹호집단의 운영, 권리와 책임

※ 캘리포니아 주 피플 퍼스트의 권리와 책임

우리의 권리	우리의 책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모험을 하며, 결정할 수 있다	우리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우리가 이동하는 곳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을 믿고 통제하며 자신에게 화내지 않아야 한다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도 평등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느낌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이건이 받아들여지고 경청 받을 수 있다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한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사람들에게, 단체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다	두려움에 맞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 의해 무시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경우 불편하다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일할 권리가 있다	직업의 권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즐길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도 다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얻은 정보를 활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기옹호집단 조언자(Advisor)의 역할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언자(또는 조력자)의 지위와 관련된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조언자들은 특히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직원이거나 전문가들이라고 말한다.

Clare는 자기옹호집단 내 집단구성원들 스스로가 자기옹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가, 또는 조언가의 지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만 이는 자기옹호집단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자기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

자기옹호집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증대하면 조언자들의 투입은 감소하고, 감소되어야 한다. 조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 혹은 자기옹호집단 구성원들 중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실행해 본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조언자의 역할은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자기결정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을 지원해야 한다. 자기옹호집단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지원을 하며 자기옹호집단 구성원들을 임파워먼트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 조언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 이해하기, 인내와 기다림, 경청하기, 평등한 관계 맺기, 실수를 허락하기, 자기노출 등이다. 미국에서는 부모조언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새겨야 할 내용>	<피해야 할 내용>
● 성공적인 조력자는 그룹의 미션과 목적을 지원한다. ●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감하고 수용한다. ●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 그룸의 리더들과 일한다. ● 그룹 안의 있는 문제를 인정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회원들과 협의한다. ● 회원들이 그들의 능력을 탐구하고 위협에 노출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성공적인 조력자는 다음의 것을 피해야 한다. ● 모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룹 구성원의 임무 이상으로 안건을 수행하는 것 ● 강의를 하는 것 ● 말하도록 조용한 회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시간을 주어라) ● 노력하고 있는 그룹을 구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피하게 하는 것 ● 편파적이 되거나 한명의 회원들에 호의적인 것 ● 그룹의 자신의 의견을 부과하는 것

자료 : 최복천·성명진·조윤경·백정연(2014)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함.

4) 자기옹호집단 구성원 간의 역동성 활성화 방안

- 공식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 채팅, 메신저, SNS를 통한 정보 공유

5. 소감 및 향후계획

- 교육을 가기 전, 대구에서 발달장애인 피플퍼스트대회가 개최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때는 기사제목만 보고 넘겼는데 교육을 통해 '피플퍼스트'라는 것이 발달장애인자기옹호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육 중 현재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자조집단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로 장애인들끼리 집단을 만들어 옹호활동을 하기보다는 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 전문가(조언자)들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집단으로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주장하기보다는 여가활동을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한 활동들이 과연 자기옹호, 집단옹호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강의를 듣고 발달장애인 담당자로써 이용인들에게 자기옹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집단활동이 진행되는 환경에서 개개인의 자기옹호가 지켜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인들에게 자기옹호훈련을 통하여 자기옹호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발달장애인들이 의사소통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에 부당한 일에 대하여 자기옹호능력이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에서 자기옹호훈련에 대하여 교육 받고 이용인들의 훈련프로그램으로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 '자기옹호 역할극'이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용인들이 직접 상황에 맞는 자기옹호를 연습하며 익히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집중력있는 훈련이 되겠다는 생각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주도의 자기옹호집단이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복지관에서도 인권교육을 통해 자기옹호와 관련된 훈련들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뉴얼이나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또한, 조언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가왔다. 담당자라는 역할로 발달장애인들의 자기옹호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프로그램이나 장애인들을 대하면서 조언자로써 피해야할 것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Ⅱ. 장애인의 자기결정

장애인의 자기결정은 흔히 본인의 생활에 대해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장애인이 어디에서 살 것인가,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선택에서부터 몇 시에 일어나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특히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을 위해서 보다 현실적인 맥락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1. 자기결정의 이해

1) 자기결정 의미의 변화

자기결정의 의미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자기결정이 인간이라는 주체를 보는 관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자기결정은 외부 환경에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결정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집단적인 측면에서 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자기결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자기결정의 이론

① 기능이론

기능이론은 자기결정을 수행하는 기술, 태도, 동기를 포함한 개별적 구성요소로서 자기결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기능이론은 Wehmeyer(1996)가 제안한 것으로 성격심리학 이론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 이 이론은 자율성(autonomy), 자기규제(self-regulation), 심리적 권한강화(psychological empowerment),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의 4가지 핵심적인 특성으로 구성된다. 이 모델은 특수교육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학습과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의 병리 또는 결함 모형이 아닌 능력 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기결정 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며 사회구조적 문제를 간과한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환경보다는 자기결정적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별적 지원, 학습, 태도 등을 훨씬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생태학 이론

생태학이론은 Abery(1993)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입각한 이론으로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중시하며 근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Aberyand Stancliffe(2003)는 자기결정을 개인의 능력과 환경체계에서 구성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기결정에 필요한 개인의 능력은 기술, 지식, 태도이고,

이러한 개인의 능력과 상호작용하는 4가지 환경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로 분류된다. 이 이론에서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체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중시되며, 체계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자기결정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신체 기능 혹은 지적 능력에서 발생하는 고정된 조건이 아닌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 환경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따라, 또는 개인이 속한 문화권에 따라 변화 가능한 상태로 보는 것이며, 장애를 신체구조와 신체기능의 손실뿐 아니라 참여와 기회의 제한에서도 발생되는 광의적 개념이라고 정의하는 ICF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③ 평등기회이론

평등기회이론은 Mithaug(1996)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이론이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 기회이며,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이론은 '사람은 자기결정 권리를 가진다', '사회에는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결정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기회마저 갖지 못 한다', '자기결정의 기회는 불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다', '사회는 자기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5가지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3) 자기결정의 정의

자기결정과 관련한 대표적인 학자들의 자기결정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	핵심어	정의
Ryan & Deci(1995)	동기	'외적인 힘이나 압력 등 강요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며 동기화된 행동'
Ward(1988)	능력	개인이 스스로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러한 목표를 성취
Webmeyer (1992, 2005)	원인주체	'삶의 주요한 원인주체로서 부당한 외적인 영향이나 간섭없이 삶의 질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원동력
	의지	개인이 삶의 원인주체로서 행동하게 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의지적인 행동
Mithaug(1996)	자기조절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문제해결 과정에 관여하는 것
Field & Hoffman(1998)	기술	환경의 조건뿐만 아니라 지식, 기술, 자기존중을 토대로 하여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해 내는 개인의 통제 능력

Stancliffe, Abery, Smith (2000)	통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의 정도

3. 자기결정의 이해

1) 장애영역에서 자기결정

장애인의 자기결정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그만큼 자기결정이 장애인에게 중요하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현재 자기결정은 장애인이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로서 아울러 삶의 질,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자기결정권은 여러 장애인관련 법과 정책 등에 명시되고 있으며, 자기결정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 장애인 자기결정의 잘못된 이해

Webmeyer는 중증의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자기결정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들도 역시 자기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미에 대한 오해	정의
성과물로서의 자기결정 (as a process or outcome)	자기결정은 목표에 대한 과정이나 결과물이 아니라 한사람의 발달, 성숙, 기회, 경험과 모두 관련되어 있다.
기술로서의 자기결정 (as a set of skills)	복잡하고 특정한 기술과 능력이 아니라, 개인의 의도와 의지가 포함된 행동이다.
독립적인 수행으로서의 자기결정 (as independent performance of behavior)	자기 자신이 직접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환경을 통제하는 것도 자기결정을 행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행동으로서의 자기결정 (behavior as always successful)	중도 장애인에게는 성공적인 수행이 아니라 행동하는 원인이 본인에게 있음이 중요하다.
어떤 활동으로서의 자기결정 (as something you do)	자기결정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준비와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단순한 선택으로서의 자기결정 (as just choice)	단순한 선택(choosing)이 아니라 익숙한 경험을 통하여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선호도를 아는 것이다.

첫째, 자기결정을 성과물로서 보는 것이다. 자기결정의 학습목표나 특정 행동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나 결과 그 자체는 자기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원이 필요한 정도, 개인의 성격, 삶의 질, 기질 등을 존중하여 경험과 기회가 함께 상호작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기결정을 기술로서 보는 것이다. 자기결정을 기술로써 바라볼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을 할 수 없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한다. 셋째, 자기결정을 독립적인 수행으로서 보는 것이다. 자기결정을 자신이 어떤 것을 직접행한다는 의미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결정은 행동의 독립적인 수행만을 의미하지 않고 보다 유연한 의미의 조종과 관리라는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 넷째, 자기결정을 성공적인 행동으로서 보는 것이다. 어떻게 긍정적인 성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고려없이 단지 결과만으로 자기결정을 정의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 자기결정은 원인 주체의 행동 과정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기결정을 어떤 활동으로서 보는 것이다. 자기결정이 단지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서비스 선택사항에 장애인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을 잊지 않고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도록 충실히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섯째 자기결정을 단순한 선택으로서 보는 것이다. 자기결정은 선택과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행동과 구별된다. 무언가를 고르는 경험이 먼저 제공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체화해 본 사람이 자신의 선호도를 알게 된다.

4. 자기결정의 실천

1)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자기결정 한계와 과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라고 이용자의 자기결정에 관해 명시되어 있으며 점차 사회적으로도 이용자의 자기결정은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이용자가 자신과 타인에 해로운 결정을 내릴 경우에 더 중요한 우선 가치에 의해 자기결정을 제한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며 자기결정에 대한 제한과 지원의 책임이 동시에 부여됨으로써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기결정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은 채, 자기결정의 제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왔다는 비판이 있다. 첫째, 이용자의 자기결정능력의 한계를 과도하게 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판단능력은 낮을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 이용자의 자기결정능력의 한계를 정하고 이들이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방식을 해왔던 것이다. 둘째, 권위로써 자기결정을 제한하는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가 전문가나 사회복지사 등의 권위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자기결정 실현은 더욱 어려워지고 전문가의 결정에 따르

며 본인의 자기결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이 선택과 자기결정 능력이 없다는 전제에서의 탈피할 것. 발달장애인의 능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진정성 있게 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담당자 본인의 사고를 점검하고 성찰 할 수 있는 시간을 조직체계 내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발달장애인에게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 제공과 충분한 지원을 할 것.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능력을 향상 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프로그램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기결정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관계에서의 위계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킬 것. 담당자에게 의존하는 이용자와의 관계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이용자가 본인의 욕구와 자기결정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용자와의 토론 및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결정 한계를 협상 할 것. 담당자는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위한 여러 사전 정보를 준비하여 이용자의 자기결정의 한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또한 담당자는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자기결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수준을 향상시킬 사회구조적, 문화적 조건 마련에 노력할 것.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은 개인과 사회환경 모두와 관련있으며 장애인의 고립되고 분리된 생활에서 벗어나 다양한 결정의 가능성이 제공되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2) 권익옹호 원칙에서의 자기결정

권익옹호는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을 자신 또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주장해주고 지원해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권익옹호는 자기결정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즉, 권익옹호에서의 자기결정은 중요한 가치인 동시에 자기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권익옹호의 실천 원칙으로는 목적의 명료성, 독립, 사람 우선, 역량강화, 동등한 기회, 접근가능성, 책임성, 옹호인 지원, 비밀보장, 이의제기 등이다. 이러한 원칙 중 자기결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원칙들은 사람우선, 역량강화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원칙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람우선 원칙에서의 자기결정이다. 옹호인은 이용자로부터 요구사항을 지시받아야 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허락없이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전통적인 사정 접근법과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역량강화 원칙에서의 자기결정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생활상태를 가능한 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조력하는 실천과제가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서비스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역량강화에 집중하는 면이었으나 권익옹호는 과정에서의 이용자의 참여, 통제에 중점을 두는 면을 강조하기에 자기결정이 보다 향상될 것이다.

권익옹호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본인들의 참여정도 및 원하는 지원형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경우 옹호 체계의 운영과 관리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3) 권익옹호 과정에서의 자기결정 지원

옹호의 단계

1단계 : 문제의 제시
-옹호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제시되거나 옹호인에 의해 발견된다.

⇓

2단계 : 정보 수집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옹호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듣는다.

⇓

3단계 : 법률검토
-사실들을 법률, 정책, 절차 등의 원천과 비교해본다.

⇓

4단계 : 해석 및 피옹호인에게 환류
-사실 분석 및 법률 검토를 하고 문제의 특성 및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접근방법에 대한 판단을 하며, 필요시 더 많은 사실과 설명을 듣는다. 5단계 또는 6단계로의 진행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

5단계 : 적극적인 협상과 옹호
-상대방과 필요한 협상 및 또는 예비적인 옹호를 수행한다.

⇓

6단계 소송
-5단계가 부적절하거나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공식적인 호소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른 기제를 사용한다.

권익옹호 실천 절차는 위와 같으며 각 과정에서 자기결정 지원 측면에서 고려할 점과 필요한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의 제시 단계에서의 자기결정의 지원이다. 옹호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제시되었거나 발견되는 지점이다. 이때, 옹호가 필요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옹호인은 효과적으로 인터뷰하고 경청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용자의 문제제기일 경우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습득과 그에 따른 의사확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옹호단체와 옹호인들이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의뢰할 경우는 반드시 사실확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한 스스로 본인의 욕구를 알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장애인 당사자를 지지하며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정보수집 단계에서의 자기결정 지원이다.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옹호이용인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도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은 중요하며 타

인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법률검토 단계에서의 자기결정 지원이다. 옹호인이 확인한 사실들을 법률, 정책 등의 원천과 비교하는 과정이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기존에는 법률, 정책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권익옹호는 장애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권리가 법률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서비스를 촉구하는 옹호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해석 및 옹호이용인에게 환류 단계에서의 자기결정 지원이다. 옹호이용인에게 진행된 과정과 향후 진행할 옹호활동 실행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 단계이다. 이는 기존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에서 생략되기 쉬우나 권익옹호 활동에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역량강화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절대 생략되어서는 안 되는 과정이다.
다섯째, 적극적인 협상과 옹호단계에서의 자기결정 지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과 협상을 하는 과정으로 문제의 수준이나 상대방의 특성, 태도에 따라 다양한 전략과 기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단호한 태도나 건설적인 공격의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협상의 무대에 서서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섯째, 소송단계에서의 자기결정 지원이다. 적극적인 협상과 옹호 단계가 부적절하거나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다른 기제를 이용하는 과정으로 법원에서의 소송만이 아닌 옴부즈맨, 이의제기 배심원, 사례 회의 등도 포함된다.

5. 권익옹호에서의 자기결정 예시

지적장애인 A는 어머니(지적장애)와 단 둘이 거주하던 중 마을에 사는 유부남 B로부터 두차례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음. A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이모들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낙태를 시킨 후 어머니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솔로 입소시켰음. A는 시설에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식사를 지원하고 목욕시키는 등의 일을 하고 있었음. A는 시설에서 나가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고 자립을 하고 싶엇으나 이모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막고 있어서 못 나가고 있음.

① 주요 문제 및 의견

·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입소가 아님. 또한 퇴소를 희망해도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시설의 규정임. 즉 입·퇴소가 자유롭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위배됨.
· 위 사례의 A는 B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A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척은 당사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설에 입소시킴.
· A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 낙태시킴. 이는 성적자기결정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시설 발달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려면 입·퇴소가 자유로워야하며 성폭력

피해여성을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함.

② 관련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자기결정권의 보장)

③ 옹호사항

·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인들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상담을 진행하나 보호자가 퇴소를 반대할 경우 이용자가 원한다고 해도 퇴소는 어렵다고 함.

· 시설 측에 A의 자립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함.

6. 소감 및 향후계획

장애인복지현장에 있으면 장애인의 권익옹호에 대해서 무수히 교육을 받고 들었지만 이렇게 심도있게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해서 배운적은 처음이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어떻게 대두되었고 장애영역에서 자기결정은 어떻게 해야하며 또 잘못된 자기결정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등 사례를 통하여 올바른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인 내가 어떻게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인지하고 실천해야되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이 부딪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올바로 행사되기 위해 전문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용인들과 제일 가까이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용인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어찌보면 이용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추후 이용인들의 자기결정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뿐만이 아닌 일상에서도 이용인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용인들의 자기결정권 또는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Ⅲ. 도전적 행동

1. 도전적 행동의 개념

‘도전적 행동’은 오랜 전부터 사용되던 문제행동, 과잉행동, 돌발행동이라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등장한 용어이다.

도전적 행동에 관한 주요한 두 가지 정의가 있다. 첫째, Blunden과 Allen(1987)에 의하면 도전적 행동은 ‘발달장애인 개인이 가진 문제라기보다 서비스에 대한 도전을 나타내는 것’이 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서비스가 이런 행동들을 ‘해결하는 도전’에 응한다면 그들은 문제를 그만둘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Emerson 외(1988)에 의하면 도전적 행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강도, 빈도, 기간의 측면에서의 행동 또는 지역사회시설 을 이용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변화된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발달장애인들이 도전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기질적인 특성 혹은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성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원인에 의해 유도되는 것이고, 환경과 원인의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면 도전적 행동을 줄일 수 있게 된다(김미옥 외, 2014).

2.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방법

(1) 긍정적 행동지원(PBS: Positive Behavior Support)

긍정적 행동지원이란 ‘도전적인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고 그러한 행동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가설에 따라 개인의 독특한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배경에 적합한 종합적인 중재를 고안하는 문제해결 접근방법이다.’ 긍정적 행동지원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관심이 있다. 따라서 긍정적 행동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단기간에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표 Ⅴ-1〉 긍정적 행동지원의 주요요소

선행/배경 사건 중재	대체행동 지도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	장기간 지원
• 수정 제거: 문제선행사건 /배경사건	• 대체행동 지도 : 문제행동과 같은 목적	• 결과 줄이기	• 삶의 스타일 변화
• 도입: 긍정적 선행사건 /배경사건	• 대처기술 지도	• 교수적 피드백 제공/논리적 후속결과 도입	• 유지하도록 하는 전략 실행
	• 일반적 기술 지도	• 위기관리 계획개발	

(2) Gentle Teaching

Gentle Teaching은 약물 치료, 신체적인 접근, 행동적인 접근을 거부하면서 개발된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이 혐오적인 특성들을 비롯해 통제적이고 사람중심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Gentle Teaching의 목적은 도전적 행동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치있고 의미있는 삶의 변화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목적은 이용자와 지원자 사이에 라포 형성이 발전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Gentle Teaching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한다.

○ 절대적이고 긍정적인 존경 : 심지어 개인이 도전적 행동을 나타낼 때도 해당된다.

○ 공평 : 도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과 지원자 사이에 평등한 관계의 발전.

○ 공통의 변화 : 이용자와 지원자가 공통의 전략을 발전시킨다.

(3) 신체적 개입

영국의 발달장애인기관이 BILD(2006)에서는 신체적 개입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움직임 을 제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움직이나 이동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신체적 힘을 가하여 도전적 행동에 반응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신체적 접촉, 기계장치의 사용,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예로는 발달장애 인의 팔을 잡는 것, 침대나 의자에 묶는 것, 팔이나 다리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부목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문을 폐쇄하여 방을 떠날 수 없게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김고은, 2012). 신체적 개입의 사용은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김용득·김고은, 2011).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신체적 개입의 사용은 주의를 요하고 다음의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김용득·김고은, 2011).

○ 신체적 개입은 고통을 주며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개입방법들을 완전하 게 탐색한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모든 서비스는 이용자의 자립과 선택을 증진시키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성장과 정서적 안녕을 위한 기회를 최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 신체적 개입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태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 며, 일반적인 문화적 기준을 존중하면서 사용되어야 한다.

○ 어떠한 신체적 개입이든 성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접촉은 피해야만 한다.

○ 신체적 개입의 적용 결정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신체적 개입을 적용하기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 개입을 했을 때의 위험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때 사용해야 한다.

○ 신체적 개입은 가장 짧은 시간에 합리적인 정도의 강압만을 사용해야만 한다.

3.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과정

(1) 1단계 : 도전적 행동 정의 및 위험요소 확인

가. 도전적 행동을 발생시키는 요인 점검

〈표 Ⅴ-2〉 환경적인 준비 조건을 위한 체크리스트

1. 직원들이 서비스 이용인들의 강점과 요구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까?
2. 서비스 이용인들은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 특히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거나 자신의 주요한 일들을 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3. 서비스 이용인들은 개별적인 욕구를 안전하게 충족할 수 있는 개별적인 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4. 서비스 이용인들의 관심과 능력을 반영하는 활동의 기회들이 제공됩니까?
5. 모든 서비스 이용인들은 규칙적으로 모니터링 되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6. 서비스 이용인들은 어떤 활동이 계획되어져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만약 계획이 예측하지 못하게 변화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인지하고 있습니까?
7. 주변 환경은 깨끗합니까?
8. 주변 환경이 너무 조용하거나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9. 직원들이 그들의 일을 즐기고 긍정적이며 차분하고 유연합니까?

자료: 김용득 · 김고은(2011).

나. 도전적 행동의 위험 평가

〈표 Ⅴ-4〉 위험 측정표

행동/ 결과	기초점수	월 4회 미만	월 4-8회	월 15회 이상	거의 매일
1. 즉각적인 응급의 의학적 처치를 요하는 자기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심각한 상해(부상, 손상, 피해)	4	8	12	16	20
2.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의학적 관심을 요구하는 자신, 타인에 대한 상해	3	6	9	12	15
3. 형사상 범죄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	4	8	12	16	20
4.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미약한 상해	2	4	6	8	10
5. 비록 재물상으로는 주요한 손상이 있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도 상해가 없는 경우	1	2	3	4	5

자료: 김용득 · 김고은(2011).

〈표 Ⅴ-5〉 위험의 정도

점수	위험의 범위	행동 상태
1-3	low	행동 지원계획, 모니터, 매달 검토를 통해 목표 행동 확인하기
4-7	medium	위험 사정, 주별 모니터 그리고 월별 검토를 수행하기
8-15	high	우선적인 행동 관리 계획과 위험 사정 이슈, 밀착 모니터, 주별 검토
16-20	critical	즉각적인 행동 요구, 매일 모니터링 그리고 제시된 위험의 검토

자료: 김용득 · 김고은(2011).

〈표 Ⅴ-6〉 위험평가 예시

철수는 자신의 주변 환경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될 때 사회복지사와 가정교사를 때린다. 이러한 도전적인 행동은 상대방에게 작은 찰과상과 같은 상처를 입히고 일주일에 3-4일정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총 5회 발생하였다.

이 사례에 대해 위험 측정표를 통해 점수를 매겨보면, 철수의 행동은 응급하지는 않지만 상해를 일으키므로 행동 2로 판단되어 기초점수 3을 획득한다. 그리고 지난달 5회 발생했기 때문에 위험측정표의 점수는 9점이 된다. 따라서 위험측정의 총 점수는 9+3은 12점으로 계산된다. 총 점수 12점은 철수의 도전적인 행동이 높은 수준(high)의 위험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즉각적이고 계속적인 도전적인 행동중재를 요구한다.

자료: 김용득 · 김고은(2011).

(2) 2단계 : 개입 전략 수립

가. 일상적 예방 전략

〈표 Ⅴ-7〉 일상적 예방 전략에서 개입을 위한 체크리스트

1. 각각의 서비스 이용인을 위한 환경적이고 개별적인 준비 조건을 분석한다.
2. 서비스 이용인들에게 도전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개별적이고 환경적인 조건이 함께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3.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을 확인한다.
4. 심각한 위협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으로 변화시킨다.
5. 긍정적인 경험을 유도하는 경험으로 발전되도록 돕는다.
6. 이용인의 행동이 배고픔이나 목마름, 고통(치통, 두통)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화장실을 가고 싶은 욕구였는지, 혹은 덥거나 춥거나 소음과 같은 환경적인 조건이었는지에 대해 고려한다.

자료: 김용득 · 김고은(2011).

나. 완화(중재) 전략

〈표 Ⅴ-8〉 완화(중재) 전략에서 개입을 위한 체크리스트

1. 이용인이 궁지에 몰리지 않기 위해 가능한 대안을 만든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난 사람은 대신에 술을 한잔 하러 가는데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음악, 마사지, 혹은 아로마 테라피는 불안하고 흥분된 사람을 진정시킬 수 있다.
2. 신체적 접촉을 이용하라. 예를 들면 접촉을 통해 안심시킬 수 있거나 혼자 남겨둠으로써 더욱 안정되어질 수 있다.
3. 요구수준을 낮춰라.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피곤하거나 몸이 안좋을 때 어려운 업무를 요청받게 된다면 불안하고 흥분되게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요구수준의 작업으로부터 낮은 요구수준의 여가활동으로의 전환이 이차적 개입의 바람직한 형태이다.
4. 이용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예를 들어 도전적인 행동은 서비스 이요인의 가까운 접근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서비스 이용인들은 특정한 사람 - 직원 또는 다른 서비스 이용인이 인접해 있을 때 도전성을 표출하기 쉽다.
5. 그들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용인과 이야기 하라. 예를 들어 이용인은 한 가지 활동에 지쳐있을 수 있으며 휴식을 취하고 싶을 수도 있다. 대체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하도록 설정된 것을 거의 마쳤다는 격려와 안도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 융통성을 가져라. 그리고 이것이 권력 투쟁이 아님을 기억하라.

자료: 김용득 · 김고은(2011).

다. 긴급 개입 전략(행위 제한 전략)

긴급 개입 전략은 '행위 제한'의 단계로, 심각한 자해의 위험 또는 타인에 의한 침해가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앞의 두 전략이 효과가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즉흥적인 상황에 대한 개입이 아닌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행동지원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 개입 전략의 목표는 위험성이 높은 행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상이나 트라우마 없이 고위험 행동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가능한 빨리 고위험 상황을 제거하는 것에 있다

〈표 Ⅴ-9〉 긴급개입 시 피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1.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옷이나 벨트를 사용하는 것
2. 바닥에 누워있거나 바닥에서 이용인을 누르면서 잡는 것
3. 호흡을 방해하거나 통풍로를 차단하는 것
4. 관절을 잡아당기거나 구부리는 것 또는 관절에 힘을 가하는 것
5. 목, 가슴, 복부 또는 생식기 주변을 누르는 것
6. 이용인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방에 가두어 격리시키는 것
7. 주먹이나 발차기 등 폭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
8. 방망이, 쇠파이프 등의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
9. 진정제 등 의사의 처방없이 약물이나 주사를 투여하는 것

자료: 김용득 · 김고은(2011).

(3) 3단계 : 이용자와 보호자 의견 경청 및 동의 확보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입 계획에 대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이다. 발달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지원을 통해 이용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고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 가족의 생각도 함께 수렴해야 한다.

〈표 Ⅴ-10〉 동의확보와 이의제기를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 이용인, 가족과 신체적 개입 상의하기
1. 신체적 개입 이전에 서비스 이용인, 돌봄자, 가족들과 협의 하에 각 전문분야의 협력자들과 사전에 동의되어야 한다.
2. 신체적 개입 사항이 문서로 설명되어야 하며, 이용인들의 도전적인 행동을 다루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문서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작성된 문서는 이용인과 가족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신체적 개입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1. 이용인과 가족의 이의제기 절차의 범위와 권한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2. 이의제기 절차는 이용인과 가족들이 접근하기 쉬어야 한다.
3. 어떤 조사의 결과든 모든 대상자들과 의사소통이 되고 권고 사항들이 적절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4. 이의제기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직원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자료: 김용득 · 김고은(2011).

(4) 4단계 : 담당직원에 대한 안전 조치 마련

도전적 행동에 대한 계획을 세운 후 개입을 실시한 담당직원에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도전적 행동 개입의 과정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심리적인 충격과 신체적 상해 등 어려운 경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담당직원 이 겪게 되는 위험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5) 5단계 :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입 실행/점검/평가

모든 단계의 계획이 수립되면 마지막으로 수립한 도전적 행동 개입 계획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긴급 개입 단계까지 예상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합의하여 계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발달장애인에게 최선의 방법이고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최종 점검사항을 체크한 후 발달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담당자, 기관장, 외부 전문가의 동의하에 도전적 행동 개입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표 Ⅴ-11〉 실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체크리스트

1. 신체적 개입을 하기 전에 계획과 모니터링을 위한 위원회가 마련되어져 있는가.
2. 초기면접이나 개별화 계획 작성 시 신체적 개입 관련 항목이 있는가.
3. 서비스 실행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위험사정과 행동지원계획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용인을 지원하는가.
4. 서비스 실행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언제, 어떻게 신체적 개입이 시작될지 알고 있는가.
5. 서비스 실행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긴급개입 전략뿐만 아니라 도전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긍정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는가.

자료: 김용득 · 김고은(2011).

〈표 Ⅴ-12〉 평가와 재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1. 도전적인 행동이 언제 발생하는지, 신체적 개입 전략이 언제 실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긴급대응 전략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기록하고 실행을 모니터하라.
2. 무대응 또한 중요할 수 있다. 합의된 전략 또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를 점검하라.
3. 정기적으로 절차를 재검토하라.
4. 실행계획의 유효성을 평가하라.
5. 필요한 사후의 평가 또는 계획을 확인하라.
6. 가능한 가장 초기에 위험수준에서의 변화를 포착하라.
7. 모든 평가와 재검토 단계에서 관리되지 않은 위험과 그 이유, 그리고 종합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과정을 점검하라.

자료: 김용득 · 김고은(2011).

4. 소감 및 향후계획

이용인의 문제행동은 이용인 개개인의 특성이며 행동수정이 담당자가 이용인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도전적 행동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접하여 문제행동이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도전적 행동은 의사소통, 통제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이자 자기결정의 표현이므로 무조건 통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의 원인이 되는 환경과 원인의 위협을 제거한다면 도전적 행동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실천 현장에서 도전적 행동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발달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인권침해에 옹호활동을 하려고 한다.

Ⅳ.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1.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의 개념 및 원칙

1) 의사소통의 개념

의사소통은 좁게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메시지를 부호화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은 그러한 부호를 다시 풀어서 그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의 의사소통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의사소통은 사람이 매개되어 있는 가장 복잡한 활동이며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속한다. 그것은 단지 듣고 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반응 및 행동을 내포하며 이야기되어지는 말 뿐만 아니라 문법, 그 말에 부여하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즉, 의사소통은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서 언어적, 비어어적, 수단을 통해서 감정, 태도, 사실이나 정보, 생각, 그리고 행위 등을 전달하는 상호작용 과정인 것이다.

이렇듯 의사소통이 모든 인간의 삶에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발달장애인을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거나 미약하여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우며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내용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단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현장의 주 이용자가 발달장애인임을 고려할 때 의사소통과 정보습득에 어려움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 차별에 대한 주장,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참여와 선택, 그리고 결정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지원과 정보제공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2) 의사소통의 원칙

발달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옹호인을 그가 가진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동원하고, 그들과의 의사소통을 주도하기보다 발달장애인 스스로 그들의 속도에 맞춰 대화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 옹호인은 발달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원칙을 염두 해두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한다.
(2) 대답을 듣고자 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3) 대화할 때 한 번에 재공하는 정보량이 너무 많으면 어려워 할 수 있다.
(4) 요약된 표현이나 축어 사용을 지양한다.
(5) 과일보다 사과, 바나나, 교통수단보다 자동차, 기차 등의 이해가 쉽다.
(6) 말로 표현하는 것 외에 시각적 보조물을 사용한다.
(7) 발달장애인이 응답하려는 것을 확인하고 분명한 대답을 들어야 한다.

2. 의사소통지원의 개념 및 원칙

1) 의사소통지원의 개념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그들의 사회참여와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림, 사진과 같은 대체언어지원을 통해 비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돕는 것을 의사소통지원이라 한다. 해외에서는 ACC, Makaton 등이 의사소통지원 도구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ACC의 경우 언어서비스로부터 배제되어온 발달장애인들에게 표현방법 및 의사소통 중재를 제공한다. Makaton의 경우 사인(수화)과 심벌(그림)을 말과 함께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돕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다.

2) 의사소통지원의 원칙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좋은 소통자가 되기 위한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과의 소통에 있어 단어나 문장의 사용을 이용자의 능력, 이해력, 경험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둘째, 발달장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방법들을 이용해야 한다.

셋째, 구어(말)적 기술에 재한이 있는 발달장애인과 일할 때 새로운 단어를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넷째, 발달장애인들이 대화나 토론에서 요구에 대하 분명하고 능숙한 사람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구어(말)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과 말할 때 '한 단어 응답(Yes/No)이나 제스쳐'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을 많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발달장애인들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할 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일곱째, 발달장애인들이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의사소통 상대방은 추측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말하는 것을 모두 이해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

여덟째, 구어(말)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표시체계, 표시언어, 상징체계 등 '보완·대체 의사소통(ACC)이 의사소통에 있어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3)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의 파악 및 지원

인간의 의사소통은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진다. 언어적 메시지는 언어능력인 문법규칙에 관한 지식과 언어사용에 의한 방법으로 그것에 유형, 무형의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적 메시지와 함께 행해진다. 비언어적 매시지란 언어를 제와한 비언어적 신호를 통한 의도적, 비의도적 정보교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의사소통에서 의미의 1/3만이 언어적 수준에서 전달되고 2/3는 비언어적 수준에서 전달된다. 따라서 중증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서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파악을 위해 파악해야 할 메시지

비언어적 메시지 파악	언어적 메시지 파악
1. 손을 사용하는 몸짓 - 자연스런 제스쳐 - 신호 - 가리키기 2. 신체적 접촉 3. 얼굴표정 4. 눈짓(바라보기) 5. 머리 움직임 6. 자세변화 - 몸 방향 바꾸기 - 가까이 다가가기 7. 발성(의사언어) 8. 기타(과잉행동 등)	1. 질문 - 폐쇠형 질문 - 개방형 질문 2. 설명 3. 부정적 질문 4. 지시 5. 반복적 요구 6. 견해(논평) 7. 부정 8. 강화 9. 미분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와 더불어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관계적 의사소통이다. 관계적 의사소통이란 옹호인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인간관계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적 의사소통은 쌍방간의 의사소통의 원활함 즉, 옹호인이 발달장애인과의 인관관계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3. 옹호에서의 의사소통 지원

1) 사전옹호

사회복지에서 권익옹호 활동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기 때문에 활동유형도 다양하게 묘사될 수 있다. 그중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과 관련해 문제중심모델과 체계적 모델이 있다. 문제중심옹호(issue-based advocacy)는 개인 또는 가족과 같은 소집단을 위한 옹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문제중심 옹호 실천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제공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예방적 실천을 중시하는 사전 접근법과 발생한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는 사후 접근법이 있다.

2) 옹호과정에서의 의사소통지원

옹호의 실천원식을 충실히 따르면서 옹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옹호인은 우선 수행절차 각 단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여러 단계에 걸쳐 공통적인 기술을 적용하거나 각 단계마다 필요한 수준 및 형태의 기술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옹호의 실천단계는 1단계(문제서술)-2단계(정보수집)-3단계(법률적 조사)-4단

계(클라이언트에 대한 해석과 환류)- 5단계(적극적 협상과 권리옹호)-6단계(소송)의 과정을 거친다고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 중, 의사소통지원이 주로 1단계와 4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이때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의사소통지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술에 유의해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옹호인과 발달장애인과의 만남에서 유의할 사항

- 옹호인의 신분 밝히기
- 옹호취지 및 내용 설명
- 옹호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동의서 읽고 서명
- 중립적, 객관적 태도 유지
- 공간파악 및 대화분위기 조성

(2) 옹호인과 발달장애인과의 만남에 관한 일반 원칙

- 발달장애인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노력한다.
- 발달장애인이 위치한 곳에서부터 시작한다.
- 공감이 안되더라도 발달장애인에게 공감을 갖도록 노력한다.
- 발달장애인에게 감정이입을 한다.
-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 단순히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 답을 제시하거나 유도해서는 안된다.

(3) 인터뷰에 필요한 기술

- 경청하기
- 질문하기
-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이해
- 기록하기
- 문화적·성적 민감성 무시하기(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 환류

(4)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시 유의사항

- 나이에 맞는 대우
- 가능한 짧은 문장구성 및 구체적 단어 사용
- 그림 및 시각자료 활용
- 도전적 행동 발생 시, 행동원인을 파악함

3) 정보제공을 위한 쉬운 문서 만들기

(1) '쉬운문서' 란 무엇인가?

쉬운 문서란 문서를 만드는 공공 및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명확한 지침을 갖고 만든 문서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쉬운 단어와 쉬운 그림으로 표현하는 쉬운 문서는 어려운 단어나 전문용어 없이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어진다. 쉬운 단어와 그림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이는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읽고 쓰기 어려운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서이다.

(2) 쉬운 문서를 만드는 원칙

쉬운 문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발달장애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적 소통에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은 자칫 쉬운 문서를 만드는데 배제되기 쉽다. 발달장애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해서 전문가들이다. 작업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이상적인 것은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것이 어떤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부터 발달장애인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3) 쉬운문서를 제작할 때 발달장애인에게 효과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방법

- 옹호인은 언제든 지역옹호그룹이나 발달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 함께 작업할 집단과 면대면으로 일하고, 서면이나 전화보다 워크숍을 통해야 한다.
- 발달장애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
- 발달장애인들이 피드백을 주는데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야 한다.
- 외부인에게 자료를 게시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피드백할 수 있도록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
- 발달장애인에게 작업중인 문서에 관한 배경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 만약 발달장애인들을 쉬운 문서 만들기에 참여시킬 수 없다면, 적어도 그것을 배포하기 전 완성된 문서에 대한 발달장애인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4) 쉬운 문서를 만드는 방법

① 단어 및 문장구조

- 간결하고 쉬운 말을 사용한다.
- 전문용어 및 어려운 용어, 약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추상적인 표현은 피한다.
- 같은 단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

② 디자인과 레이아웃

- 글자와 심볼은 클수록 좋으며, 글씨체는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한다.
- 색상은 정보를 더 흥미롭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나, 여러 가지 색상은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색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발달장애인에게 혼동을 줄 수도 있다.

③ 그림, 사진 및 심볼 등 사용

- 그림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선택하고 본문 옆에 그림을 이용해 단어와 그림을 연결시키도록 한다. 자신이 경험한 사실이 아닌 경우, 가급적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신이 경험한 것을 회상하게 할 때는 사진이 도움이 된다.
- 심볼은 키워드나 주요한 생각을 표현할 때에만 사용하는것이 좋다.
- 동영상은 그러한 주관성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배체가 된다.
- 만화의 경우는 일련의 연속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의미가 있다.

(5) 쉬운 문서를 만드는 순서

- 문서작성 → 그룹정하기 → 간단한 문장 만들기 → 주요단어 선택하기 → 그림 고르기 → 그림과 문장 배치하여 문서 완성하기

4. 실천 예시

-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관한 예시

울산에서 발생한 일이다. 고등학생인 발달장애인 송군은 자전거를 타고 늘 다니던 길을 통해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지나는 길에서 1톤 트럭이 후진하여 건물을 파손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원이 불문명한 목격자에 의해 송군은 범인으로 몰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당시 송군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진술보조인이나 부모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피의자로 확정되어 부모는 사고에 따른 배상금으로 200만원을 지불하고 나서야 송군은 풀려날 수 있었다. 이 사실이 지역의 활동가에게 알려졌고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 송군은 키가 150㎝정도였고 차량소유주는 180㎝, 차는 스틱차량으로 송군이 운전할 수 없는 차량 상태, 신원불분명한 목격자 등 사실관계에 대한 재확인을 통해 경찰 조사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났다. 만약 이때 조사 경찰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현재는 그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관련단체의 도움을 받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한다.

5. 소감 및 향후계획

의사소통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기본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사표현능력이 부재하다고 생각해 의미 있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의사소통과정에서 배제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불이익을 당하거나 문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능력 부족이나 언어표현력의 문제라고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그들을 참여시키고, 그들과 관계하는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며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들과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실천

1. 장애인학대에 대한 현재 실태

1) 장애인 학대 사건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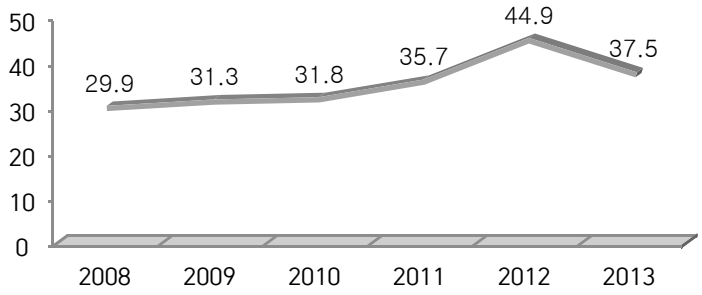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센터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대관련 상담이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상담에 비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학대사례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기방어기제가 약한 지적장애인이 다른 장애유형보다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 학대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2) 사회적 노력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학대를 명목적으로 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 학대를 괴롭힘의 일종으로 규정하여 금지
-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으로 발효되어 시행 중

2. 학대의 개념 및 유형

‘장애인에게 부적절한 사회 구조와 문화, 부적절한 지원 서비스 및 타인에 의해, 개인의 인권・시민적 자유・신체적 완전성・인간의 존엄성・보편적인 행복 및 복지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심각한 침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1) 신체적 학대

학대 유형 중 가장 빈번함. 폭행, 체벌, 부적절한 건강관리, 약물의 오남용, 감금이 대표적이며, 장애인이 행동교정을 이유로 신체적 체벌을 당하고 있으나 어떠한 신체적 체벌도 학대가 됨

2) 성적학대

동의 없이 성적 행동의 상대방이 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접촉학대, 비접촉학대로

구분. 성적학대가 유보된 사람, 동의능력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동의가 불가능한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

3) 심리적 학대
감정적 학대로 협박, 통제, 비난, 괴롭힘, 언어적 학대, 냉대, 고립이 포함

4) 재정적・물질적 학대
절도, 사기, 유언장 변조 또는 위조 행위

5) 방임・유기
불충분한 영양공급, 부적절한 난방 시스템, 의약품의 부족, 의료보장・사회보장・교육 서비스의 결여 행위

6) 차별적 학대
개인의 인종, 성별, 장애, 성적지향, 종교에 의한 차별에 따른 학대

7) 제도적 학대
법률, 정책, 거주시설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의 구조 등과 같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거나 잘못됨에 따라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3. 학대의 원인
학대의 원인은 교환이론, 상호작용론, 상황모델, 생태학적 관점, 정치 경제적 시각과 같은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되나 이 중 생태모델이 학대요소를 살펴보는 데 유용함. 또한 생태모델의 연구에서 '특정한 환경에서 학대와 착취가 만연하는 문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냄

1) 미시체계 : 학대피해자, 학대가해자, 이들 상호간의 관계에 초점
2) 외부체계 : 운영의 질, 직원의 능력과 숙련도, 직원의 태도와 행동, 직원문화, 고립
3) 거시체계 : 거대한 문화적 요소, 사회적 요소가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함. 장애인의 삶이 무가치하다는 학대 이데올로기와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재정지원 구조는 학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

4.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현행 관련 법률
현재 장애인학대 피해자지원을 관련 법률로는 학대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는

‘형법’, 학대를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학대를 차별의 하나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UN장애인권리협약’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

1) UN장애인권리협약

협약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에서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학대에 대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에 대한 의무, 성별, 연령, 장애를 고려한 학대 방지 조치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제공 등의 의무, 장애인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에 대한 의무,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서비스 제공 의무, 학대에 대한 조사 및 기소를 위한 법률 마련의 의무 등 장애인 착취, 폭력, 학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2) 장애인복지법

2012년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의 정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무, 학대 장애인의 보조인 선임, 학대금지 행위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등 장애인학대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7년 4월 10일에 제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에서 차별적인 학대 관련하여 규제하고 있음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4년 1월에 제정된 법률로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각각 제정됨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을 명시

6)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복지욕구 지원과 권리 옹호를 위한 목적으로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7) 기타 법률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형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5. 장애인 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 서비스체계

1) 장애인 학대 관련기관 및 상담전화 운영
(1) 공공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1331 상담전화 운영
(2) 공공위탁기관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역 장애인인권센터
(3) 민간기관 -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 운영

2)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1)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상담소를 설치 및 운영함
(2)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참조)
-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로 구분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는 모든 보호시설 이용 가능
- 특별히 장애인 보호시설과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이용 가능
- 현재 전국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6개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설치

6. 장애인 학대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천방안
1) 외부 개입을 위한 판단 근거 마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장애인의 삶에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판단 필요함. 학대의 지속성, 심각성 등을 판단하여 어느 정도 이상일 경우 외부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판단 근거가 필요함. 이 때 능력(판단능력)과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고려해야 함

2)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
영국의 학대방지 가이드라인 'No Secrets]와 같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담당하는 중앙의 민간기관 및 지방의 민간기관, 지역별 학대방지 및 지원을 위한 공동 위원회, 관련 기관이 필요. 이들 간 밀접한 협력이 필요함
복지관 권익옹호팀은 공동위원회에 참여하여 피해자 구제 이후 사후관리 등을 책임질 필요가 있음
3) 학대피해자 지원을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개발
장애인복지관 권익옹호팀은 기관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을 개발하

고,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학대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에 처한 성인들의 파악 관련 안내
- 다양한 원인과 상황에서 일어나는 위험 인지와 다른 서비스 이용자들, 동료들, 가족들의 학대 행위 인지에 관한 안내
- 기관 내부에서 그리고 기관을 벗어나서 학대 내용을 알리고 의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안내
-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한 안내
-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최선의 실천을 위한 행동에 관한 안내
- 규제 장치와 협력 작업에 관한 안내
- 도전적 행동, 개인적이고 친밀한 돌봄, 통제와 제한, 성생활, 의약품, 서비스 이용자의 돈 관리, 위험 평가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최선의 실천이 유지되도록 합의된 실천지침 내에서 일하도록 안내

4) 학대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합자거인 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상담지원, 단기주거지원(쉼터), 심리검사 및 치료지원, 의료지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지원, 자립생활지원, 다양한 정보제공방법에 따른 정보제공 등이 포함. 복지관이나 역량이 부족할 경우 주변 인권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해야 함

7. 학대 조사 및 피해자 지원 절차

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의 목표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장애인의 욕구를 확인하고, 어떤 조취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함.

<학대피해 조사 및 지원의 단계>

1단계	문제의 접수 - 피해자 본인, 지인, 신고의무자 등으로부터 직접 접수되거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뢰
2단계	정보 수집 등의 조사 -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부터 설명을 들음
3단계	법률 검토 - 사실들을 법률, 정책 등과 비교
4단계	해석 및 피해자에게 환류 - 사실 분석 및 법률 검토를 하고, 문제의 특성 및 사용할 수 이쓴 최선의 접근방법에 대한 판단을 하며, 필요시 더 많은 사실과 설명을 들음. 5단계 또는 6단계로의 진행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함
5단계	피해자지원 및 가해자 처벌 지원 - 합의된 조치 결정 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을 하는 단계

	- 고소、고발, 격리보호, 지원서비스 제공, 가정 복귀, 타기관 의뢰 등
6단계	피해장애인 사후관리 - 후유증이 있거나 유사한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회복, 치료 또는 훈련을 지원하는 단계 - 학대 이데올로기 개선 및 학대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구조 개선

8. 결론

그동안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 하는 일은 온정주의적 책임으로 여겨져 옴. 그러나 이제 학대에 대처하는 자세, 즉 '어떻게' 안전보장을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변화가요구되고 있음. 실천가들은 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개별 학대를 인지하고 대응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함. 장애인의 사회통합차원에서 안정보장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실천이 되어야 함.

9. 소감 및 향후계획

발달장애인 독립적 권익옹호인 양성 교육에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교육을 들으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를 위한 실천 부분에 있어서 더욱 와 닿는 부분이 많았다.

학대사례 중 지적장애인 유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통계를 보고 자연스레 우리 복지관의 이용인들이 생각났다. 복지관 이용인 중에는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사회복지사로써 자기방어기제가 약한 그 분들을 위해 옹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다.

특히 교육 안에서 학대에 대한 사례, 그리고 학대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접하게 됨으로써 장애인의 입장에서 더욱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 가야 하는 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들었다.

우리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삶에 불필요하게 간섭하지는 않았었는지, 반성하며 균형 잡힌 판단 아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더욱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접 장애인을 만나는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학대의 지속성, 심각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해 보았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은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의무감만을 가졌는데, 장애인이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해야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사회에 나가 스스로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그들의 입장에서 지지하고 옹호하는 역할에 힘을 쏟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학대를 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회 안에서의 옹호지원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달장애인 독립적 권익옹호인 양성교육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계획 할 때, 장애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보면서 계획을 세워야겠다.

교육·연수보고서 15-03

복지정책 아카데미

(사회복지와 공동체를 위한 통섭적 접근)

주 최		남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 간		2015년 6월 1일 - 7월 6일 17:00~19:00(매주 월)
장 소		남동복지관 1층 '교육실1'
참석자	팀 명	상담사례지원,직업재활,기능향상지원2
	명 단	이정화,강명진,곽경숙,임현주,차정섭, 고광원,정다예,김효중,박은영
	인 원	총 9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6 일
	시 간	총 12시간

Ⅰ. 교육개요

1. 교 육 명 : 2015년도 제2회 복지정책 아카데미

2. 기　　간 : 2015.6.1.~7.6. / 매주 월요일 17:00~19:00(6회기)

3. 장　　소 : 남동복지관 1층 '교육실 1'(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4. 주제 및 내용 : 사회복지와 공동체를 위한 통섭적 접근

회기	날짜	주제	담당교수
1	6.1	나와 우리가 사는 사회는 행복한가?	유해숙
2	6.8	사회복지의 철학과 정책-상이한 위험의 기원과 책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유범상
3	6.15	정책을 상상력에게로	이현숙
4	6.22	아들러를 통해 본 행복한 삶	유해숙
5	6.29	공동체와 사회복지 정책	정연정
6	7.6	지역에서 우리들의 길 찾기	유범상

5. 참 석 자 : 총 9명

- 상담사례지원팀: 이정화
- 직업지원팀: 강명진, 곽경숙
- 기능향상지원2팀: 임현주
- 기획홍보팀: 고광원, 차정섭
- 가족문화지원팀: 김효중, 정다예, 박은영

6. 교육주관 : 남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Ⅱ. 교육내용

1강 '나와 우리가 사는 사회는 행복한가?'

강사 : 유해숙(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교수)

□ 사회복지 어원의 의미 : wellfare=well+fare

- 사회구성원들이 위험사회에서 보다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 즉 좋은 상태, 안녕의 상태에서 사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안녕의 상태를 추구하는 학문이고 전략이다.'

□ 사회복지사의 위상

<한국>

- 시장의 부수적, 보완적, 대체적 존재이며 세상문제를 홀로 지고 가는 정체성 잃은 지친 노새,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해서 잘 산다는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사람들을 완충작용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정, 치료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다.
- 사회복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주를 이룬다. 사회복지가 중추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대체할 수 있고, 임시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에 내가 있고, 사회가 이런 위상으로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위상도 위와 같다.

<복지국가>

- 사회복지가 중추적, 핵심적인 역할로 위상이 정립되어 있고, 이에 사회복지사에게 권한부여 및 대우도 해준다.

□ 인본주의 VS 자본주의

- 자본이 좌표가 되는 사회 : 인간의 상품화
- 인간이 본질인 사회 : 인본주의

EX. 네 살 짜리 아이가 집에 혼자 있다 불에 타 죽은 사건 : 자본주의에서는 문을 잠그고, 부모가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불에 타 죽었다. 인본주의에서는 사회를 둘러싼 관계 때문에 살 수 있다.

- 자본주의는 인간이 생산능력이 있는가를 본다. 그래야 잘 사는 것이 진

리라고 생각한다. 상품 물신주의에 빠져있다. 상품을 필요에 의해 만들었지만, 상품이 우리를 다시 지배한다.

EX. 핸드폰-하루라도 없으면 불안하다. 핸드폰 교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 위험사회

- 외눈박이거인처럼 생산성 향상만을 본다. 생산성에 맞추느라 껴 맞춘다. 외눈박이거인의 거침없는 질주결과는 위험사회(Risk Society)를 만든다. 위험을 양산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EX. GMO('지식채널e' 영상 참고: 제초제+유전자 변형콩, 제초제에도 죽지않는 유전자 변형콩) - 푸스타이박사 해고(생산성을 얘기하지 않고, 위험을 언급했기 때문에 해고)

- '위험'은 민주적이고 계급적이며, 위험이 전면화되었고, 차등분배되고 있다. 또한, 위험의 제공자는 누구인지 모르고, 피해자는 우리이다.

EX. 우리나라 콩인지, GMO콩인지 구별할 수 있겠는가.(민주적) 서민들은 구분해서 콩을 먹지 않는다.(계급적)

EX. 세월호 사건 : 자본이라는 눈 하나만 보고 간 압축적 사고의 예. 크루즈산업의 육성화 때문에 아이들이 배를 타고 가게 되었다.(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은 학교에서는 법이다.) 이명박정부에서 선박을 30년으로 연장시켰다.(19년 노후된 배를 중축, 짐을 더 싣고 출항), 자본만을 향해 진행되었다.(사람들에게서 절약시켜 이익을 창출-선장을 포함한 22명이 비정규직, 셀프점검, 안전위탁관리는 선주들의 회원인 협회에서 실시 등)

□ 위험에 대한 시선

<위험에 대한 상이한 시선>

위험은 개인(가족)의 책임	위험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
개인이 사회에 맞춤	사회가 개인에 맞춤
경쟁	협동
성공신화 강조	연대를 강조

- EX. 참치캔을 따다가 아이가 손을 베었다. 피가 나고 난리가 아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대부분의 부모들은 '조심하지!'라고 말할 것이다. 어쩌면 늦게 퇴근한 아버지는 '애를 좀 잘 돌보지'하고 핀잔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어떨까?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시민들을 위한 안전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

위험은 개인이 책임이다	위험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얼마나 다쳤지? 애좀 잘 돌보지?	어느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뭐하고 있었어?
가족간 갈등	시민과 사회, 시민과 정부 간의 갈등
잔여적 복지	제도적 복지

- 전자는 위험이 아이와 가족의 책임이다. 후자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다. 전자에서는 가족내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아이/아빠/엄마가 서로 싸운다. 후자에서는 시민들이 사회와 국가를 향해 자신들의 위험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한다.

- 일생동안 우리는 장애, 노령, 빈곤 등 수많은 위험에 처하고, 교육, 주택, 의료 등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위험과 필요에 대한 일차적 의무를 누구에게 지워야 하는가? 개인(가족)인가, 국가(사회)인가!

- 복지국가는 위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개인, 가족이 할 일이 아니라 집합적, 공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진리가 진리효과가 생겼다. 개인이 사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개인의 위험에 맞추는 것이 진리효과이다.

- 우리나라는 시장, 경쟁은 잘 산다는 진리 때문에 개인의 눈으로 보고, 자본의 눈으로 본다.

EX. 세월호 : 정부에서 트라우마센터를 설립(개인의 치료에만 책임을 지려고 함) 부모님들은 함께 대응해야 하고, 위험스런 사회가 가중되지 않고, 집합적이 되도록 시위 중임.

□ 인문학

- 말을 타고 질주하던 지친 인디언이 갑자기 멈춰섰다. 너무 빨리 달려와서 자신의 영혼이 쫓아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한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달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방향을 잘 잡았는지',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 것인지'. 기다리고 있는 '영혼'은 성찰을 의미한다. 성찰은 쉬면서 자신을 돌보고 충전하는 것이다. 음악이 주는 평온과 소설의 상상력, 그리고 역사와 철학의 새로운 지식이 성찰을 매개한다. 인문학은 이런 지친 현대인의 쉼과 성찰의 안식처다.

- 경주마는 눈가리개를 하고 있다. 초식동물은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피는 습성이 있어 눈가리개가 없다면 한 방향으로 질주를 하지 않는다. 특히 결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채찍이 경주마의 오른쪽 엉덩리로 쉴 새없이 오간다.

- 푸코의 충고에 따르면, 말을 멈춰 세우고 내 영혼이 오길 기다려서 위로하기 보다, 누가 나를 이렇게 빨리 달려오게 했는지, 이렇게 달리는 것이 누

구의 이득이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다시 말해 눈가리개를 씌운자, 채찍으로 쉴 새 없이 나를 몰아세운 자가 누군지를 찾아내야 한다. 이때 인문학적인 성찰은 달리다 지친 나를 스스로 위로하는데 동원되기보다, 나를 어디론가 지속적으로 몰고 간 자에 대한 비판의 무기가 된다.

- 이처럼 또 다른 성찰은 권력과 제도 그리고 구조를 조준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정신없이 달리다 지친 내가 아니라 나를 지치도록 달리게 한 권력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인문학의 성찰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미처 따라오지 못한 개인의 영혼을 돌보는 인문학이고, 두 번째는 말의 눈가리개와 채찍에 초점을 맞춘 권력비판의 인문학이다.

- 우리의 인문학은 개인의 영혼만이 아니라 채찍과 눈가리개를 문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적 삶의 주체가 되는데 기여해야 한다.

□ 진리효과

- 북유럽국가의 경우 복지제도가 생겨나고,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안전망이 생겨난 것이 진리효과이다. 장애는 손상이 아니라 손상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장애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EX.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모든 버스가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였고, 버스안에는 휠체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을 업어서 의자에 앉히고, 휠체어를 접어서 올리고, 다시 휠체어를 내리고, 장애인을 업어서 내린다.

□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

- 사회정책을 통해 이상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상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우리의 이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던질 수 있을 것이다.

- 사회구성원들이 위험사회에서 보다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 즉 well+fare, 좋은 상태, 안녕의 상태에서 사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안녕의 상태를 추구하는 학문이고, 전략이다.' 이런 점에서 이상이다.

- 이것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차등적이고, 차별적인 상태를 보다 평등하게 해야한다. 이런 점에서 이상이다. 이를 위해 상상하고 실천하는 학문이 사회복지이다.

-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는 체계적인 계획을 담은 과학(science)이자 예술

적인 실천(art)이라고 한다.

- 이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이며, 우리는 이것을 실천지혜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는 실천지혜를 가지고 보다 평등하고, 보다 위험에 덜 노출될 수 있는 공동체의 이상이 우리의 일상(현실)이 되도록 실천지혜를 갖고 상상하는 것이다.

2강 '사회복지의 철학과 정책 : 상이한 위험의 기원과 책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회권을 중심으로)'

강사 : 유범상(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1. 상이한 인디언의 말

- 인문학은 나와 내가 사는 공동체를 문제삼아 당연하다고 하는 상식, 지식, 질서, 진리, 권력을 벗겨내어 그 이면을 문제삼는 것이다. 고달픈 현실을 힐링(healing)하고 더 많은 생산성을 위해 영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현실을 필링(peeling)하는 등에가 되어 새로운 상상의 산파가 되는 것이다.

2. 사회복지 철학의 물음 : 상이한 위험의 기원과 책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사회권은 지위의 평등이다.

- 마샬에 의하면 시민권은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유과 정치권이 자유주의에서 중심이 되는 권리라면 사회권은 복지권에 해당한다. 그동안 사회권은 수당의 관점에서 생각해 온 경향이 있다. 즉 의료, 교육, 주거, 소득 등의 사회임금에서 접근해온 것이다. 하지만 마샬은 사회권이 소득의 평등보다 지위의 평등이라고 주장한다. 사회권은 사회임금으로 표상되는 수당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임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권력의 분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개입이다. 개입의 방향, 범위, 내용, 비용을 둘러싸고 각 세력은 경합한다. 따라서 존재하는 제도 이면에는 이념과 세력관계가 내장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주어진 제도'가 아니라 '세

력관계가 응집된 제도'에 초점을 두고 그 제도의 속살인 이념과 세력관계를 추적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치학'은 '사회복지를 정치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 또한 매우 정치적인 것이고, 이 관점은 불평등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 계급갈등의 문제를 탈각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다.

3. 생각하는 나인가 생각당하는 나인가?
-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서 소득을 얻는 것과 달리 사회임금은 사회가 탈상품화의 형태로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의 형태와 관련하여 사회임금과 시장임금의 비율이 중요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임금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사회임금이 높다는 것은 탈상품화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탈상품화는 노동시장에서 시장임금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임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이다.

4. 상이한 철학과 다양한 사회정책
- 시민들은 국가라는 집을 지을 때 정치인과 정부라는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행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이다. 이때 시민들은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 집일지에 대해 목표와 방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때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연대에 기반한 집인가 아니면 경쟁에 따라 작동되는 집인가'이다.

모든 연대의 대상은 가족을 넘어서서 국민전체이다. 이것은 위험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이다. 따라서 연대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국가가 맡는다. 국가는 생산과정과 분배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연대성이란 단순히 개인과 이웃들 간에 우호적인 관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소득이전을 통해 사회가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성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아동수당 등과 같은 사회임금을 통해 모든 시민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이들이 처하거나 처하게 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태도이다.

경쟁의 입장은 위험은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과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교육, 의료, 주거 등은 국가의 몫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고 이를 위해 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집과 연민의 집, 전자는 연대성에 기반해서 지은 집이고 후자는 경쟁을 재료로 해서 건축된 집이다. 국민의 집은 모든 국민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짓는 집을 의미한다. 반면 연민의 집은 각자의 가족이 스스로를 책임지되, 토저히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때 연민을 가지고 도와주는 집을 의미한다.

3강 '정책을 상상력에게로'

강사: 이현숙(강남대 초빙교수)

1. 정책, 상상 그리고 세력

정책은 어떠한 세력이 자신의 이상을 일상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형성의 과정을 정치라 부르며, 이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세력이다. 어떠한 정책을 만드느냐는 어떠한 세력을 만드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한 번 만들어진 정책은 그것을 상식으로 믿는 세력을 만들고 이러한 세력은 다시 그 제도를 지지하게 된다.

2. 이상이 일상이 된 정책들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다.

- 의료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질병에 대한 대처는 국가와 시민들의 질병에 대한 의식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즉, 질병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느냐, 국가의 책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질병에 대한 대처는 달라진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위험을 기본적으로 사회와 공공의 책임으로 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견해이다. 선별주의가 개인과 가족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규제의 완화 즉 시장의 자유를 강조한다면 보편주의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조건의 평등을 강조한다. 이렇듯 선별주의의 관점을 갖느냐, 보편주의의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의료에 대한 국가의 대처와 시민들의 의식은 달라진다.

[영국의 사례]

영국의 경우 NHS라는 의료보장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의료는 모든 시민의 권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세금과 보험료를 부

담해 왔던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복지국가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기존 복지제도로부터 복지혜택을 경험한 일반시민들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지지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무상의료는 경제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쿠바의 경우 무상의료정책은 한 ㄱㄱ가차원을 넘어 전 세계에 의료가 무상으로 누구나 받아야 하는 기본권임을 설파한다.

[쿠바의 사례]
1959년 1월 탄생한 신생 쿠바혁명 정부는 '쿠바 공중보건제도'라는 정책을 수립했다. 무상의료제도와 함께 중요한 사업이 병행되었다. 바로 주민교육을 위한 무상교육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나라가 완전무상의료제도를 유지하는데 들이는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찾았다. 그 중 하나가 쿠바과학과 쿠바의학의 발전이었다. 과학을 발전시켜 백신, 약품, 의료기기를 생산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 잇었고, 때로는 수익을 얻기도 했다. 그렇게 얻은 수익은 다시 대국민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투자한다.

가난한 나라 쿠바가 무상의료가 가능했던 것은 의료시설과 장비의 국유화로 인해 수익창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예방의학과 가정의 시스템으로 인해 사전 예방을 통해 재정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건국이념 자체에 무상의료의 정신이 있기에 국방비를 줄여서라도 의료비 예산은 충당하기 때문이다.

- 교육 : 루저가 없는 교육을 꿈꾸다
쿠바의 의료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전국민에게 권리로 인식된 것에는 교육제도가 이를 받치고 있어서 가능했다. 자본주의 국가의 상식에서 보면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일정한 규모가 필요하므로 농촌학교의 폐교나 통합을 진행한다. 그러나 쿠바는 소규모 학교를 더욱 충실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의 개성을 살리고 가족이나 커뮤니티와의 연관을 깊게 하기 위해서는 소수정원 교실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쿠바의 개성을 인정하는 교육방법은 핀란드의 교육제도와 그 모습이 흡사하다. 핀란드의 교육은 ① 계층간 통합교육, ② 낙오자 방지를 위한 중층교육 구조, ③ 무상교육 체제가 중심이 된다. 핀란드 교육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한 가르침을 중시해 천재를 만들어내는 교육보다는 바닥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교육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교육은 학교에서 사회적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교육이며,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교육이다. 어떤 아이에게 특이한 모습이나 학습장애가 발견되면 즉시 부모와 협의하고, 학교 내에서 도울 팀을 구성해 그 학생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 매주 협의한다.

연대의 가치에 기반한 교육, 우열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교육 속에서 그들은 철학적 가치를 학습하게 되며, 이러한 교육 속에서 시민들은 성장한다. 자신의 꿈을 갖고 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철학적 가치의 학습은 이들로 하여금 복지를 지지하게 만드는 세력이 되게 한다.

- 문화 : 음악을 통해 꿈을 꾸게 하라

프랑스는 1945년 헌법에 시민의 권리로 문화권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권은 선진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는 이러한 문화의 권리를 빈곤층에게까지 확대한 놀라운 정책이었다. 엘 시스테마는 하루가 멀다하고 총소리가 들려오는 곳에서 가난한 현실을 아름다운 꿈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상상에서 시작되었다. 엘 시스테마의 계획은 1975년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훌륭한 어른, 훌륭한 시민, 훌륭한 음악인으로 자라는 것을 목격하면서 음악이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구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 참여예산제 : 권력을 시민에게로

정책은 단순히 수당만의 정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주는 정책이 존재한다. 브라질 뽀르트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이곳에서 결정된 사안은 정부나 시의회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활동한다. 객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 청탁자들을 편드는 결정이나 책임자들이 주관적 자의성을 제기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공정한 절차가 확립되고 토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새로운 관심을 자극할 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정치에 냉소적이었던 분위기가 정치활성화의 분위기로 바뀌었다. 한국도 참여예산제를 도처에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주체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만의 도입은 오히려 시민의 시민에 의한 통치에 부정적인 견해만 양산할 수 있다. 브라질은 제도 도임 이전부터 1980년대 민주화과정을 통해 노동당과 활동가들이 다양한 지역조직들을 규합하는 역할을 수행의 결과로 참여예산제가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과정을 경험한 조직화된 세력이 62% 이

상 되었기에 참여예산제가 직접 민주주의로 운영될 수 있었다.

3. 이상이 일상이 되게 상상하라!

앞서 정책들을 통해 우리는 정책은 세력을 만드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세력을 만드는 정책에는 이상이라는 등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상을 두고 끊임없이 상상할 때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정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변화의 역사는 중앙정부의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았다. 엘 시크테마, 포르트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지역에서 시작한 정책이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상상해야 한다. 지역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상상을 말이다.

4강 '아들러를 통해 본 행복한 삶'

강사 : 유해숙(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교수)

1. 행복한 삶, 아들러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

아들러 심리학에 깊은 감명을 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다. 이 두 사람이 만나 개인의 행복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은 물론,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눈 자체를 바꿀 정도로 힘이 있는 아들러 심리학을 재구성했다. 바로 [미움 받을 용기]다. 아들러 심리학은 그동안 프로이트와 융에 가려 대중적으로는 잘 언급되지 않았지만 고민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생활철학이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아들러와 기시미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치전환'과 행복해질 용기를 얻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행복한 삶을 위한 가치전환과 용기

-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세계는 단순하다. 누구나 행복해 질 수 있다.
- 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가? 원인론이 아니라 목적론

아들러는 프로이드나 융처럼 원인론이 아니라 목적론을 주장한다. 인간은 과거의 원인에 떠밀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이다. 즉 아들러는 트라우마 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프로이드의

‘원인론’을 부정하고 사람은 현재의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는 ‘목적론’을 내놓았다.

-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간관계에 발을 들어놓으면 크든 작든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아들러는 ‘고민을 없애려면 우주 공간에서 그저 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열등감은 주관적인 감정이다. 가치전환을 해라.

·건전한 열등감이란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다.

3. 인생의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행복해지기 위한 목표

- 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말라- 인정욕구를 포기하라.

아들러는 또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는 ‘인정욕구’를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아무리 잘 보이려고 애써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그 누구도 거울 속의 내 얼굴을 나 만큼 오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 과제를 분리하라.

아들러는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즉 아들러는 “이것이 누구의 과제인가”를 생각하고 어디까지가 나의 과제이고, 어 디까지가 타인의 과제인지 구분하고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과제의 분리’가 가능해지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모든 인간관계가 여유 있고 단순해지기 때문이다.

- 진정한 자유란 미움 받을 용기를 갖는 것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미움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유를 얻으려면 타인에게 미움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즉 모든 것은 ‘용기’의 문제다. 자유도 행복도 모두 ‘용기’의 문제일 뿐 환경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들러가 말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에 관한 핵심이다.

4. 행복한 삶을 위한 제언
- 행복이란 공동체 감각이다.
- 자기 긍정이 아닌 자기수용을 하라
·자기 긍정이란 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주문을 거는 것이고 자 기수용은 교환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의 '이런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내는 것이다.
- 타자신뢰와 타자공헌이 필요하다.
공동체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타자신뢰가 중요하다. 또한 타자공헌이 필요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관적인 감각, 곧 '공헌감'을 가지면 족하다는 것이다. '행복이란 공헌감이다'공동체 감각만 있으면 인정욕구가 사라진다.
-인생이란 찰나의 연속이다. '지금 여기'에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춤을 추 듯 살라. 아들러는 지나간 과거도 아닌,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빈틈없이 살라고 주문한다. 산 정상과 같이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지 말고 '지금 여기'를 춤추듯 살라고 말한다.

5강 '공동체와 사회복지 정책'

강사 : 정연정(성균관대학교 강사)

1. 사회복지직의 전문성
- 주위 환경에 있는 자원을 목록화하여 적재적소에 연결을 해주는 것을 사회복지의 전문성이라고 흔히들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자원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는 미약한 상태이다.
-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으로는 끝나지 않는 종결과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며 실적만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모든 서비스를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전달체계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즉, 잔여적 복지제도로 인해 사회복지사가 모든 정책을 전달을 하고 있다.
- 사회복지의 정의를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으로 정의한다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를 생각해본다면 사회복지는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

2. 인권

- 인권에는 언론·출판·집회·사상·종교 등 인간의 기본권리를 다루는 공민권(자유권), 인간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다루는 사회권(복지권)이 있다. 이 세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권인가? 물론 인권에는 세가지의 권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나 현재 한국의 인권은 묵비권이 생존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시장이 생존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는 시장의 폭력적인 권한을 분배하지 않고 있다.
- 시장(자본)은 근로자의 인권을 자유권, 정치권으로만 제한하고 싶어 하나 근로자(노동)는 사회권까지 확대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시장에 권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고용이 안정되어야 한다. 근로자(노동) 인권이 사회권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투쟁을 바탕으로 한 노동조합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자본)과 대등한 파트너쉽을 갖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자(노동)가 해고되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임금을 통해 교육·의료·주거 등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민주주의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지위의 평등을 얻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집합적 힘'과 '사회적임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복지국가

- 복지국가란 단순히 수당이나 복지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며 지위의 평등을 얻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자본과 권력은 시민, 노동자와 함께 사회적 문제를 의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현재 사회의 모습은 쇼핑몰의 공동체이다. 서로 경쟁을 하여 임금을 받아 모든 것을 사야 하는 형태이다. (잔여주의, 선별주의) 그러나 복지국가의 모습을 하고자 한다면 연대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사람의 조건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를 인정하고 연대해야 한다.

6강 '지역에서 우리들의 길 찾기'

강사 : 유범상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1. '똑똑한' 조합원이 되자.

-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개입이다. 개입의 방향과 범위 및 내용과 비용을 두고 각 세력 간 경쟁을 하므로 존재하는 제도에는 철학과 힘(권력)의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정책"과 "제도" 자체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그 이면에 숨은 철학(관점)과 그 철학을 관철하는 힘(권력, 세력)을 주시해야한다.

-정치는 '정치의 삼각형'을 통해 잘 이해될 수 있다. 정치는 특정 권력(세력)이 자신의 생각(이념, 이데올로기, 철학)을 정책(제도)을 통해 관철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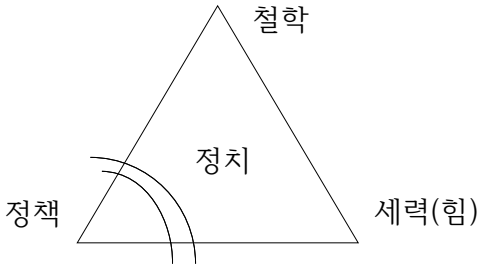

- 정책이 가진 철학(관점, 이념=사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한다. 그러한 철학을 관철할 수 있는 힘(권력, 세력)을 기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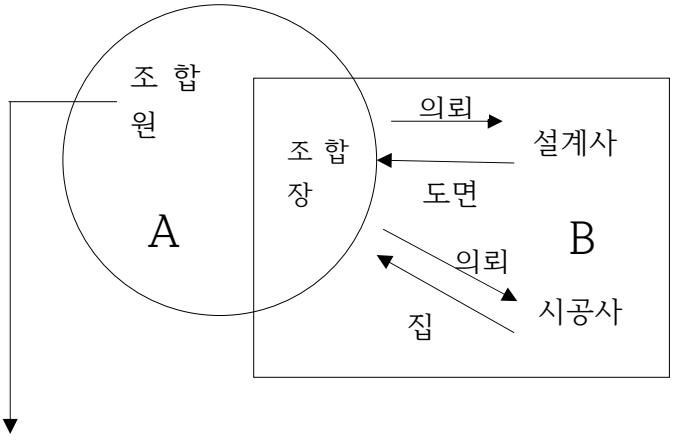

똑똑한 조합원이 되어야 함.

정확하게 볼 줄 하는 눈을 갖도록 할 것.

- 한국의 상황은...?
일반 시민, 노동자(=조합원)는 철학을 알아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연대를 통한 공동체 형성으로 철학을 지지하는 쪽이 힘을 가져야 하며, 그렇게 알아 본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 세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능동적 시민성을 갖도록 함.)

2. 균형적이지 않은 제도(정책) : 전략적 선택성

- 노동과 자본이 균형을 이룰 때 제도도 균형감 있게 존재한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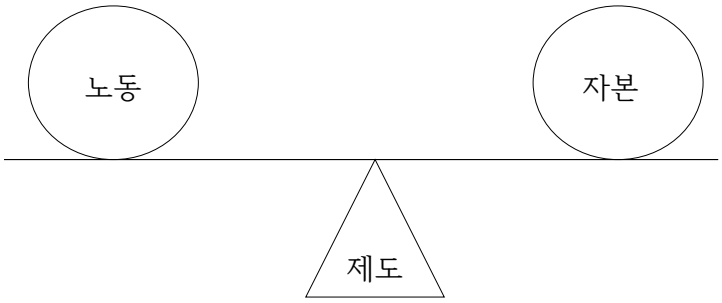

- 그러나 어느 한 쪽의 세력이 강해지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도가 움직이는데, 이 역시 “균형을 맞춘다”라기 보다는 “제도가 세력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 자본의 세력이 강해지면 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형성되고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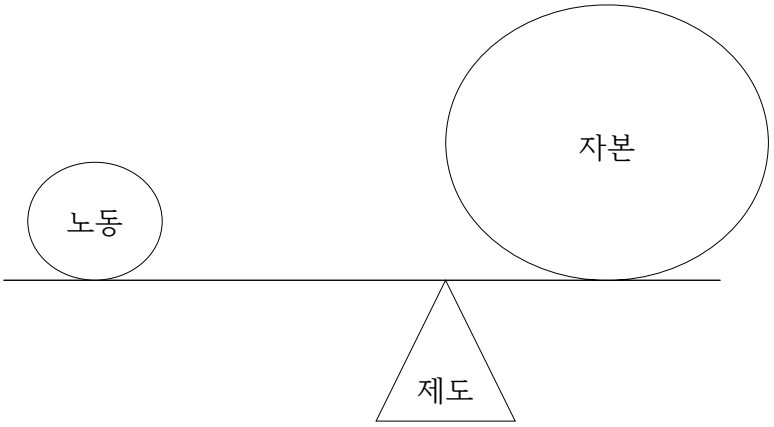

- 노동의 힘이 커지면 그에 맞게 제도가 움직이는데, 그럴 경우 노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형성되고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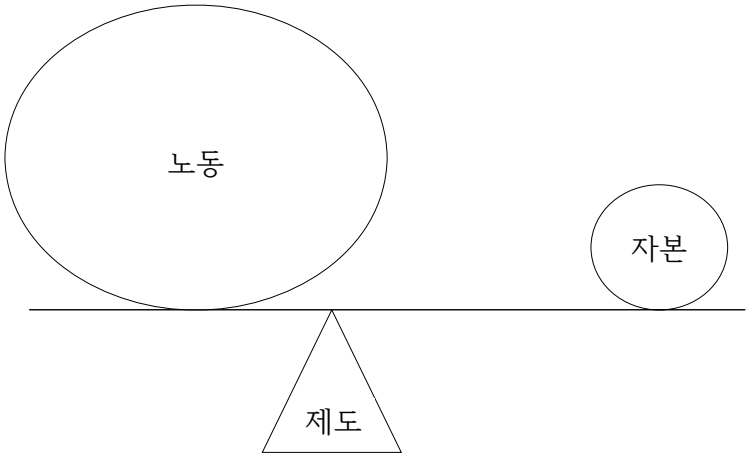

- 누군가에게는 분리하고,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게 제도화되어 있으며, 이를 전략적 선택성을 가지는 제도라고 본다.

3. 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과 안전까지 포함하여 사회복지의 개념을 확장한다.
-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를 거울 삼도록 하자.

4. 국민의 집 : 복지국가의 모델하우스
- 노동과 자본의 사이에서 국가는 국민의 집이 되어야 한다.
- 시민들은 국가라는 집을 지을 때 정치인과 정부라는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택해야 한다.(1번 그림 참조) 이 선택행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이며, 이 때 시민들은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 집일지에 대해 목표와 방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때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연대에 기반한 집인가 아니면 경쟁에 따라 작동되는 집인가’
- 모든 연대의 대상은 가족을 넘어서 국민전체이며, 위험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이다. 따라서 연대성의 핵심적 역할을 국가가 맡고, 국가는 생산과정과 분배과정에 적극 개입한다. 연대성이란 단순히 개인과 이웃 간에 우호적 관계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소득이전을 통해 사회가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의미 한다. 연대성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아동수당 등과 같은 사회임금을 통해 모든 시민들을 하나의 가족

으로 보고 이들이 처하거나 처하게 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 경쟁에서의 위험은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고 본다. 교육, 의료, 주거 등은 국가의 몫이 아닌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고, 이를 위해 시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국민의 집과 연민의 집. 전자는 연대성에 기반을 둔 집이고, 후자는 경쟁을 재료로 한 집이다. 국민의 집은 모든 국민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짓는 집을 의미하는 반면 연민의 집은 각자의 가족이 스스로를 책임지되,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때 연민을 가지고 도와주는 집을 의미한다.

5. 사회복지사의 역할 : 마리다가 되자.
-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교육자, 조직가, 정책가라는 것이 핵심이다.
- 사회가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세력을 키우도록 조직하며, 철학에 기반을 둔 실제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실천가이다.
- 단순한 메신저가 되지 말자.
-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이고, 내 공간에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이다. 누구나 각자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내 마음과 몸이 허락하는 대로 나답게 실천하면 된다. 모든 변화는 나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일상이 이상이 되도록 상상하자.

Ⅲ. 제언 및 향후계획

본 복지정책 아카데미의 목적은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가 사회복지정책 수립에서 부터 실행까지, 철학이 바탕이 된 소신을 가지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통섭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 강좌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용인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개인의 책임에 따른 개인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용인을 만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재화를 분배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가,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들이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적 삶의 주체가 되는데 기여해야 함을 생각하게 하였다.

또한 인문학을 골자로 한 본 강의는 사회복지사가 개인의 영혼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비판의 능력을 키워야 함을 강조하였다. 올바른 철학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비판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정책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총 6회기에 걸친 복지정책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의 수행에 있어 다양한 철학에 조응하는 다양한 대안정책에 대해 생각해보고 올바른 정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며, 인문학을 기본으로 다양한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을 이해하고, 복지정책을 어떻게 제안하고 생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생각을 확장할 수 있었다.

주제별 강의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인의 통섭적인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지역 안에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복지정책 역량이 향상되었으리라 평가된다.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라는 본 강좌의 모토는 정책을 통해 이상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상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말을 마음에 새기고, 사회정책 생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또한 제정된 정책이 올바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끈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연수보고서 15-04

2015년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주 최		남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 간		2015년 9월 16일 (수) 14시 ~ 18시
장 소		남동복지관 3층 '세미나실'
참석자	팀 명	상담사례지원
	명 단	이정화, 최지원
	인 원	총 2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4시간

Ⅰ. 교육개요

1. 교 육 명 : 2015년 사례관리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2. 일　　시 : 2015년 9월 16일(수) 14시 ~ 18시

3. 장　　소 : 남동복지관 3층 '세미나실'(인천 남동구 소래로 645)

4. 주　　제 :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사례관리자의 효과적 상담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경아 교수)

5. 내　　용 : 사례관리자로서 나의 인식, 패러다임, 언어점검
사례관리자로서의 상담 이론 및 실습

6. 참 석 자 : 상담사례지원팀 이정화, 최지원 (총 2명)

7. 교육주관 : 남동구 드림스타트

Ⅱ. 교육내용

1. 사례관리자로서 나의 인식

1) 사례관리자의 역할
- 클라이언트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클라이언트의 탄력성을 통하여 파트너로서 클라이언트의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

2) 클라이언트의 탄력성
- 클라이언트를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등으로 인식되어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는 잘못된 인식
- 역경의 사건을 이겨내고 더 강해지고 자원이 더 풍부해져서 회복하는 능력인 탄력성이 있는 존재로 인식
-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희망, 개인적 통제력, 자기이해, 학습된 낙관주의
- 애착체계와 관계가 있으며, 교사, 지역사회 롤모델, 사회복지사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음

3) 동기 상담 = 동기 강화 상담
- 최근 상담 이슈로 작용

- 사례관리자 요소: 정확한 공감,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진실성
- 해결중심대화, 문제 중심의 상담이 아닌 변화 촉진 대화
- 클라이언트의 느낌, 관점, 인생 목표, 가치관, 경험 등을 활용하여 변화 동기 촉진
- 자기효능감(=자신감) 지지

→ 변화에 대한 동기, 힘, 대안은 클라이언트 내부에 있음

- 협동성: 클라이언트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클라이언트의 열망과 목표를 이해하며, 변화가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
- 유발성(촉진): 클라이언트가 가진 변화 동기를 발견하고 이끌어내기
- 자율성: 안내자의 역할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바를 달성하도록 정보는 제공하되 자율성 보장

2. 사례관리자로서의 상담

1) 상담여건 마련

- 클라이언트와 상담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 → 인지·정신적·정서 상태 파악
- 클라이언트 스스로 욕구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표면적인 욕구와 실제 욕구의 차이를 인식
  → 욕구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인식하지 못함을 인식
  → 상담자의 지원이 가능한 영역인지 확인
  → 클라이언트가 상담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 필요

2)소통

- 소통이 되어야 변화를 유발, 촉진하고 협동이 가능
- 관계의 질 = 소통의 질 → 성과
- 패러다임의 변화 : 긍정적 패러다임, 신념을 통해 동기화
- 패러다임의 전환 → 행동의 전환 → 결과의 전환
- 언어사용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인식의 재구성, 재명명(reframing)이 이루어짐 ex)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계속 단주에 실패해요 →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계속 시도하시구요.
- 의사소통전략

- [비비불] 비난, 비판, 불만을 이야기하지 말자
-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과 감사하라
- 타인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
- 잘못했으면 즉시 분명한 태도로 그것을 인정하라
- 상대방의 견해 존중
- 나의 의견 전달은 I-Message로!
- 미소를 지어라

3) 강점관점

- 강점 : 성공과 실패의 경험, 개인적 자질, 특성, 미덕, 재능 등, 주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문화적, 개인적 스토리: 강점과 지혜의 출처, 생존자의 자부심, 지역사회 내 자원, 영성
- 강점은 문제 해결, 변화목표달성의 원동력
- 어떤 상황에서도 강점은 존재함
- 강점과 예와 발견을 통해 자존감, 자기효능감 증진

4) 관계 중심

- 지지적 관계: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촉진함
-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 / 의미부여를 통해 위기사건에 적응하며 성장함
  ex) 이야기치료
- 사실은 불변함/ 그러나 관점과 과정, 결과는 변화함
- 위기는 기회: 역경을 통해 더 강인해 질 수 있음

5) 수용

- 수용의 3요소 : 정확한 공감, 인정해주기, 자율성지지
- 정확한 공감 : 클라이언트가 세상을 보는 관점, 클라이언트의 경험, 맥락, 의미까지 이해
- 인정해주기: 역량, 가능성, 긍정적 의도에 초점을 두기
- 결정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선택하도록 함
- 공감은 학습 가능한 기술이며, 상담 성공여부에 있어 가장 정확한 예측 요소

공감이 아닌 것	공감
▪ 클라이언트와 같은 경험, 문제를 가진 것 ▪ 클라이언트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 자신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	▪ 클라이언트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 ▪ 클라이언트에게 이해한 것을 반영하는 능력

6) 변화

- 변화의 단계 : 전의식→의식→준비→행동실천→유지
- 인식단계의 클라이언트 : 변화에 대한 양가감정, 변화에 대한 딜레마 경험
- 교정반사행동(바로잡고자 하는 Rea클라이언트ion 실시, 내가 답을 알고 있다는 태도, 설득, 충고, 강요, 조정)은 옳지 않음
- 상대가 걱정될 때, 상대를 직면시키고자 할 때 I-Message 이용

ex) 정말 약속을 안 지키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자립이 가능하시겠어요. → 선생님께서 지난 번 직업훈련에 참여를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결석을 세 번 하셨네요(행동). 혹시 이 훈련이 선생님께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 /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까봐(영향) 걱정이 되어서요(감정).

3. 상담자의 자세

1) 원칙 내에서(법, 지침, 규정 하에서)
2) 따뜻하고 진실하게
3)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기
4) 클라이언트에 대한 진정한 관심
5) 자서전적 반응 / 섣부른 해석 / 분석은 하지 않기
6) 건강한 피드백 교환을 촉진
7)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8) Energizer

Ⅲ. 제언 및 향후계획

사례관리자의 직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은 사례관리자로서 나의 인식, 패러다임, 언어 점검을 통해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돌아보고, 사례관리자로서의 상담 이론을 통한 실습으로 그동안의 상담 패턴을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 교육을 통해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례관리자로서 클라이언트를 만나 상담을 하면서 가졌던 고민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례관리자로서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고자 계속 애를 쓰며, 결국 변화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로 인해 소진되기를 반복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변화에 대한 동기와 힘. 그리고 대안은 클라이언트 내부에 있다는 것 새삼 깨닫게 되었다. 또한, 교육 파트너와의 실습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를 상담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강요하지 않았는지, 또는 변화의 이유를 내가 먼저 제시하고 클라이언트의 변화의 필요성을 거꾸로 설득하지는 않았는지도 깊이 생각해보며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사용했던 나의 언어패턴과 나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었다.

이를 통해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에 보다 진지한 자세로 충실히 참여할 수 있었다.

사례관리자로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상담하는 자세를 수정하고 앞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나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언어패턴과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생각하였고,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클라이언트 본인의 탄력성으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교육을 마무리 하며 강사님께서 “우리(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도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우리의 잣대를 통해 잘못된 방법으로 클라이언트를 바라보고 대하면서 결국 우리 스스로가 소진되어버려 힘들어하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걱정하며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사례관리자로서 사례관리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개발하고 연구함으로써 사례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를 소홀히 하지 않고 더불어 소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처음 마음가짐으로 항상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사례관리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 해 본다.

교육·연수보고서 15-05

2015년 인천광역시 8개 장애인복지관 직원 일본연수 보고서

주 최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관협회
기 간		2015.11.04.(수)~11.07.(토)
장 소		일본 후쿠오카 사회복지시설
참석자	팀 명	기능향상지원팀, 지역연계팀
	명 단	서미례대리, 임종수주임
	인 원	총 2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4일
	시 간	총 96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기 관 견 학

社会福祉法人 拓く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연계팀 임종수, 기능향상지원1팀 서미례

1. 시설개요

□ 기 관 명	夢工房 FOODS CAFE YUME, - 푸드카페
	暮らしの場 グループホーム（ケアホーム）- 그룹홈(노인, 장애인)
□ 운영법인	社会福祉法人 拓く(사회복지법인 개척)
□ 주 소	福岡縣久留米市安武町武島468-2
□ 전 화	TEL 0942-27-2039 FAX 0942-27-2086
□ 홈페이지	http://www.h-polepole.com

2. 운영법인

□ 법인 개요

구 분	내 용
재단 목표	장애가 있어도 지역에서 자라고 살기
설립배경	30년 전 『공생(共生)교육』 운동으로 시작하여 장애인의 취학이 유예되는 일이 잦아지자 양호학교가 1979년 의무화되면서 장애가 있어도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학교에 다니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 교사들이 힘을 합쳐 졸업이후의 삶을 대비하고자 '꿈의공장(1986년)', '더불어사는 장소(1994년)' 등을 설립하였다. 현 후쿠오카 현 구루메시에서는 장애인들이 지역안에서 살 수 있도록 2000년 현 이사장인 노다씨가 지역장애인의 가족들과 함께 설립하였다.

3. 사업내용

□ 사업설명

구 분	내 용	
서비스 목표	どんな障害があっても、住み慣れたまちで暮らし続けるために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지역의 정든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살기	
기관 개요	夢工房 FOODS CAFE YUME, '꿈의 공장'은 1988년에 시작했습니다. 2007년 사회복지법인 개척과 합영을 통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꿈 쿠키는 25년간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설거지나 조리보조, 손님응대 등을 하면서 지역내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暮らしの場 グループホーム (ケアホーム) - 그룹홈(노인, 장애인) 그룹홈은 장애인이 동료와 관리인 등 생활을 지원해주는 분들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을 하며, 지역별 환경과 개성을 살리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 용	꿈의 공장 (제과제빵)	09:00～15:00
	푸드카페 YUME	11:00～18:00
	惣菜処ぽれぽれ 반찬포레포레(도시락)	10:00～19:30
	그룹홈	상시운영
	주택개호사업	8:15～17:15
	상담지원	9:30～17:00
	방과후 활동	요리 수영 정기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 공동체 만들기	장애인식개선
	포레포레축제	매년 지역사회 가을축제

구 분	내 용
인 력	정규직 개념의 직원은 법인 전체적으로 37명 정도 있으며, 사회복지사, 치료사, 보육교사 등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이 더 많아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는 가능하기 어려움
재 원	멤버들의 회비와 지자체 보조금,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고 일부 카페나 도시락가게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장애인 멤버와 스탭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음

□ 주요 서비스 사진

센터 내부 시설 및 서비스 사진	
포레포레간판	포레포레 시설 전경
주차장	장애인 활동 작품

4. 시설 사진

<table>
<tr><th colspan="2">내부, 외부 시설</th></tr>
<tr><td> </td><td> </td></tr>
<tr><td>그룹홈 전경</td><td>그룹홈 내부</td></tr>
<tr><td> </td><td> </td></tr>
<tr><td>그룹홈 내부</td><td>1층 카페 및 2층 작업장</td></tr>
<tr><td> </td><td> </td></tr>
<tr><td>중증 장애인 그룹홈</td><td>중증 장애인 그룹홈 내부</td></tr>
</table>

5. 질의응답내용

질의	응답내용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	•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많고 수시로 바뀌어서 법인 전체적으로 직원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려움
직급	• 이사장, 원장(센터장), 선생님(지도교사, 치료사, 보조교사), 생활지도사(그룹홈)로 구성됨
인건비의 구성	• 정부지원금, 후원금, 사업수익금, 기타 자체 수익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음
특수체육을 비롯한 사업소개	• 별도의 특수체육프로그램은 없고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수영프로그램이 있음
마을공동체 polepole의 날	• 현재는 구루메시의 전체 주민모두가 참여하는 지역축제로 발전하여 국수흘려 먹기, 장기자랑대회 등이 열리고 있음
사회공헌	• 후쿠시마현 원전사고로 복구를 시작할 때 polepole 도시락가게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후쿠시마현에 제공을 한 계기로 두 단체의 교류가 이루어 짐 포레포레 축제 때도 참여하심
주 이용인	• 지적, 지체,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성향에 맞게 그룹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 함
그룹홈 운영	• 그룹홈의 여성과 남성을 나눠 운영하지 않으며 한 그룹홈에 남성, 여성이 함께 사용하며 방은 개인별로 사용 함 • 중증장애인 그룹홈의 경우 저녁에 상주하는 보조인이 있음 • 소방시설 및 중증장애인 그룹홈의 경우 혼자 화장실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을 모두 설치 하여 운영 함

6. 마치며..

연수를 통해 같은 인천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기는 하지만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타 기관의 여러 부서 선생님들과 친밀감 및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보고, 느끼고, 대화하며 그들이 생각하는 복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성인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원가정의 가족에게만 책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분담하고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보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자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그룹 홈을 이용하며 이들이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밤에는 상주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일본 현지 관광을 통해 일상생활 및 관광시설에서의 시설물들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관광지의 오래된 건물들에서는 휠체어가 지나가기 힘든 턱이라든가 정비가 잘 안된 길들을 볼 수 있었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이 원활하게 잘 정비된 시설들도 볼 수 있었다.

연수를 통해 장애인을 구분하고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가지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복지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육·연수보고서 15-06

International Halliwick Therapy Course

주 최		국제수중치료협회
기 간		2015년 8월 8일 ~ 8월 10일 8월 14일 ~ 8월 16일
장 소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참석자	팀 명	기능향상지원2팀
	명 단	김진봉, 임재희
	인 원	총 2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6일
	시 간	총 54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nternational Halliwick Therapy Course

◎ Halliwick

1. Halliwick의 소개

1950년대 영국 런던의 Halliwick 정신지체 여자학교에서 장애아동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James McMillan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따라서 초창기의 할리윅 방법은 오락과 수중에서 개별적인 독립성을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할리윅 치료법의 국제적 승인은 1960년대에 James McMillan이 스위스에서의 강의를 요청받은 후 이루어졌고 이 방법은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McMillan과 Johan Lambeck 등 동료 물리치료사들에 의해 소아 및 성인의 신경학적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할리윅 치료는 적용범위가 중추신경계 병변은 물론 근골격계 병변, 심폐질환 등으로 인한 기능장애에 까지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특수한 치료풀의 설비가 필요 없이 일반 풀에서 치료가 가능하며, 개별치료는 물론 그룹치료도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임상적으로 매우 현실성 있는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2. 왜 수중치료를 해야 하는가?

-치료사의 적은 보조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수중 환경에서는 활동을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수중치료를 통해 심혈관/ 심폐계통의 훈련이 가능하다.
-균형을 잃었을 때 수중 환경에서는 다시 균형을 되찾기 위해 생각하고 반응하는 속도가 지상에서 보다 더 느리게 진행되므로 보다 더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하다.
-수중 환경에서는 작은 힘만으로도 큰 움직임을 만들 수 있어 길리안바레, PMD 등 중력에 노출 된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힘든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도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환자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수중 환경은 재미있다. 따라서 학습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3. 물의 특징

1) 부력(Buoyancy)

물이나 공기 같은 유체에 잠긴 물체는 중력과 반대방향이 윗방향으로 힘을 유체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 힘을 부력이라 한다. 기원전 3세기경 그리스의 철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이 부력의 크기가 유체에 잠긴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가슴정도 깊이의 수영장에 들어가면 발에 느껴지는 체중이 많이 감소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의 깊이가 흉추 11번, 혹은 xiphoid process를 넘으면 중력에 비하여 부력이 우세해진다.

2) 점성(Viscous resistance)

액체에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액체가 흐를 때는 마찰 저항이 일어난다. 이것을 점성 저항 또는 내부 저항이라 한다. 이 저항은 점성이 클수록, 또 유속이 클수록 커진다. 수영장에서 물을 휘저어보면 속도가 빠를수록 많은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수도꼭지에서 가늘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면 실처럼 가는데도 전혀 끊이지 않고 흐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물분자끼리 끌어당기는 점성이란 성질 때문이다.

3) 정수압(Hydrostatic pressure)

정지해 있는 물속에서는 상대적인 마찰 운동이 없기 때문에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으며, 내부의 어떤 면을 생각해도 그 면에 따른 성분을 가진 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또한 표면을 제외하고는 인장력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물의 내부에 작용하는 힘은 압력뿐이다. 이것을 정수압 또는 단순히 수압이라 한다. 정수압은 수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비례한다. 즉 수심이 깊어질수록 물이 물체를 누르는 힘이 커진다.

4. Halliwick 10-Point Program

10-point programme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속에서의 행위들이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point programme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Mental Adjustment (정신적 조정), Disengagement (해약)
2. Sagittal Rotation Control (시상회전조절)
3. Transverse Rotation Control (횡축회전조절)
4. Longitudinal Rotation Control (장축회전조절)
5. Combine Rotation Control (통합회전조절)
6. Upthrust (정신적 전도)
7. Balance in Stillness (균형 유지)
8. Turbulence Gliding (와류 적용)
9. Simple Progression (간결한 움직임)
10. Basic Movement (기본 움직임)

1) Mental Adjustment (정신적 적응)/Disengagement (해약)

정신적 적응의 목적은 수중에서 자동적이며 독립적인 활동 반응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환자는 물속에 서있는 자세에서 자세유지와 동작의 조절을 배우게 된다. 사람은 흉추 11 수준보다 더 깊은 물에 들어가게 되면 발에서 체중을 지지하기 보

다는 주로 머리를 이용하여 균형을 조절하게 된다. 이렇게 머리를 이용해서 균형조절을 하며 파도나 물결 등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작은 standing, sitting, kneeling, walking, jumping 등이다.

호흡을 조절하는 것은 할리윅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숨을 내쉬는 것은 끊임없는 주의력을 필요로 한다. 입에 물이 닿을 때마다 숨을 내쉬는 것이 버릇이 되어야하며 poached eggs 등의 기구를 이용하거나 노래부르기, 말하기 등을 통해 호흡 조절을 연습할 수 있다.

해약의 단계에서는 자발적 활동을 이끌어내고 환자와 치료사의 eye contact을 점차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사는 되도록 환자와의 eye contact을 자연스럽게 줄여나가야 하며 환자에게 이를 의식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2) Sagittal Rotation Control (시상회전조절)

시상회전조절은 anterior-posterior 축을 중심으로 하는 자세와 움직임의 조절을 말한다. 오른쪽에서 왼쪽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운다. 척추의 외측굴곡으로 정위반응 및 평형반응을 촉진시킨다. 외측 체간 및 복근의 강화와 cervical spine, 견갑대의 mobilization이 SRC의 목적이다.

3) Transverse Rotation Control (횡축회전조절)

횡축회전조절은 주로 횡축을 중심으로 하는 자세와 움직임의 조절을 말한다. 앉은 자세에서 누운 자세나 누운 자세에서 앉은 자세로 움직이는 법을 배운다. 목과 척추분절의 mobilization, trunk flexor, extensor의 strengthening이 TRC의 목적이다. 앉은 자세에서 누운 자세로 바꾸는 수직회전 운동 중 치료사는 환자의 보상작용이 나타나는지를 잘 관찰해야한다.

4) Longitudinal Rotation Control (장축회전조절)

장축회전조절은 신체의 중심인 장축을 중심으로 하는 자세와 움직임의 조절을 말한다. 수직을 축으로 선 자세에서 한바퀴를 돌거나 물 위에 누운 자세에서 수평선을 축으로 누운 자세에서 다시 누운자세로 360° 회전하는 법을 배운다. 척추의 분절 움직임을 통한 회전, 어깨 관절의 외전 및 내전, 전인과 후인 방향으로의 mobilization 및 견갑대의 강화가 TRC의 목적이다.

5) Combine Rotation Control (통합회전조절)

통합회전조절은 TRC, SRC, LRC 중 두가지 이상의 회전을 조절하는 것이다. 수중에서 시행되는 모든 회전은 기본적으로 수직 혹은 측면 회전을 포함한 3차원적인 회전이다. 균형을 잃었을 때 물 속으로 머리가 잠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배운다. 이 동작은 수영장에 들어갈 때, 수중에서 걸을 때, 앞으로 넘어질 때, 누운 자세로 되돌아갈 때 등에 사용된다.

6) Upthrust (정신적 전도)

정신적 전도의 의미는 수중동작을 배우는 과정에서 있어서 사람은 누구나 물에 뜬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수영장 바닥에 앉아보도록 함으로써 가라앉지 않고 표면으로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외적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수영이 가능함을 배우고 물속에서 두려움 없이 다양한 자세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물에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지만 아직 완전히 수영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7) Balance in Stillness (균형 유지)

Balance in stillness는 정적인 환경에서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걷기에서 시작하여 수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이다. 물의 흐름, 파도, 그리고 수중중심효과(metacentric effects)를 방해하는 요소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부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학습과 경험이 뒤따라야한다. 이를 학습하기 위해서 standing, sitting, kneeling, lying 등의 자세를 취할 수 있다.

8) Turbulence Gliding (활주)

활주는 누워 있는 자세에서 앞선 물체의 turbulence에 의해 뒤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 이 때 환자는 support 없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고정된 자세에서의 균형과 움직이는 자세에서의 균형은 차이가 있으며 환자는 이를 느껴야한다. 이 때 발은 물 속에 잠겨도 되나 고관절의 신전은 유지되어야 한다.

9) Simple Progression (간결한 움직임)

이 단계에서는 누운 자세에서 손의 움직임만으로 스트로크를 하게 된다.

10) Basic Movement (기본 움직임)

팔을 이용하여 추진력을 만들어 수영하는 기본적인 움직임이다. 팔의 움직임은 대칭적으로 일어나게 되며 이 때 타이밍이 중요하다. 팔을 이용하여 추진력을 만든 후 중심부 균형을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5. 낙상 예방(Fall prevention)

1) 정의

낙상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으로 주로 노인에게 발생하지만 모든 연령에서 발생한다. 특히 노인 낙상의 발생은 점점 늘어나고 심각한 손상을 동반하거나 낙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2) 낙상관련 요소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
수정될 수 없는 것	나이, 성별 낙상 관련 과거력 급성 혹은 만성 질환(예: 파킨슨병,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집 밖의 외부 환경(예: 푹 파인 도로, 빙판길)
수정될 수 있는 것	걸음걸이, 균형능력, 하지 관절의 기능 하지 근육의 근력 심혈관계 건강상태(예: 혈압, 심박출량) 시력(visual acuity) 자아효능감(self efficacy)	다중 약물 요법 신발 집안 환경(예: 계단, 카페트)

3) 수정될 수 있는 낙상관련 요소

낙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가정환경을 살펴본 후 이를 수정한다.

저혈압을 위한 치료,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비타민 D와 칼슘 보충, 시지각 등 낙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의학적 중재를 가한다.

전문가에게 근력 강화와 균형능력 증진을 위한 훈련을 받는다.

낙상예방 교육 및 동적균형능력 향상을 위한 태극권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기반 그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낙상으로 인한 hip fracture를 예방하기 위해 엉덩이 보호대를 착용한다.

4) 균형(balance)

균형이란 특수한 감각 환경에서 기저면(base of support) 위에서 중력중심(centre of gravity)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균형을 유지함에 있어서 체성감각과 시각 정보, 전정기관 정보가 이용되는데 체성감각이 70%, 시각 정보가 10%, 전정기관 정보가 20%를 차지한다.

5) 수중에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① 장애물 넘기- swing phase를 연장한다. 무릎 굴곡을 증가시킨다. 저측 굴곡근을 활성화시킨다.

② 체간의 움직임을 통한 보조 변동성(gait variability)증가- 머리, 체간, 골반의 독립적인 움직임과 공간적 시간적 보행 변이(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를 통해 빠른 보행을 습득한다.

③ 오락을 통한 균형훈련- 인지과제, 단체게임, 시각적 주의분산을 통해 균형능력을 증진시킨다.

④ 예기치 못한 동요에 대한 반응- 물속에서 서있는 자세를 유지하거나 걸을 때 균형을 유지한다.
⑤ 도전적인 활동- 좁은 기저면에서 운동한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중력 중심을 끊임없이 이동시킨다.
⑥ 외측 안전성과 안정성- 교차형 스텝, 옆으로 긴 스텝, 크게 두걸음 걸은 후 멈추고 유지하기 등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6. 결론

본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질환에 관한 데모를 통해 치료 과정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할리윅의 10point를 바탕으로 각 질병에 맞는 접근법과 운동법을 연구하고 실습했다. 그룹별로 질환별 환자에 관해 논의하며, 여러 치료사들의 다양한 관점을 통한 환자 접근법과 운동방법을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Johan Lambeck 교수님의 피드백으로 인해 좀 더 심층적으로 치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물의 특징 중 부력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중력으로 인해 할 수 없었던 운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근육들을 움직여서 스트레칭, 운동 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수중에서의 활동을 통해 지상에서 움직임이 힘든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면 보다 쉽게 움직일 수 있고 이것은 움직임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서적으로도 큰 성취감을 안길 수 있게 됨을 직접 경험하면서 수중치료사로서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수중치료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halliwick method의 기본이 되는 10-point program therapy와 이를 기초로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라 수중운동을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수중-특수치료(Halliwick water specific therapy)로 구성되었다. 수중 물리치료는 수영이나 단순한 수중운동은 아니다. 수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에는 유체역학 및 감각운동발달 단계에 따른 운동조절이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라 적용되어야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근거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교육·연수보고서 15-07

2015년도 법인교육

주 최		사랑의 씨튼수녀회
기 간		2015년1월8일 14:30 ~ 15일 12:00
		2015년 1월19일14:30 ~26일 12:00
장 소		논산 씨튼영성의 집
참석자	팀 명	관리자/운영지원팀
	명 단	서현정,김미숙,김명숙
	인 원	총 3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8일
	시 간	총 56시간

너돌장애인종합복지관

제1강 나의 현 주소 탐색

1. 나의 현 주소 식별
“봉헌생활의 해를 맞이하여 모든 봉헌 생활자에게 보내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서” 가운데, “봉헌 생활의 해에 대한 대망”에서 나온 내용의 질문

가. 나의 봉헌생활 : 매력있는 삶? 행복한 삶?
나. 나의 사도적 효율성 : 설득력 있는 삶?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는 삶?
다. 복음을 사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발산하는 삶?
라. 아니라면 왜?

“복음의 기쁨”에서 현대세계의 문제점 진단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온갖 극심한 소비주의와 더불어 개인주의적 불행입니다. 이는 안이하고 탐욕스런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립된 정신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적생활이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혀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그분 사랑의 고요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선행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 버립니다. 이는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많은 이가 이러한 위험에 빠져 삶을 잃어버리고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2. 성찰의 때
-“마더 씨튼의 마지막 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온갖 은총을 모든 풍요로운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하지만 은총은 온갖 장애와 어려움을 뚫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본성을 위험에서 지킬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의 수없이 많은 은총으로 결심을 하고, 좋은 약속을 드리지만ㄴ, 우리는 비참함과 불완전의 순환을 그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우리를 봉헌 한지 꽤 오랜 후에도 아마 더 적은 열성으로 보속과 고행으로 우리가 출발했던 그 지점에 가까이 이릅니다.
-씨튼 성녀는 수녀들에게 은총의 오용보다 더 슬픈 것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지를 질문하며 우리를 참된 행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거스르거나 불충실에 대한 것에 깊은 통회를 재촉합니다.
-나의 총체적 변화의 시작은 과거의 잘못을 깊이 있게 반성하고 하느님을

거스린 삶에 대한 진솔한 통회를 하며 보속의 정신으로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회와 보속의 삶을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실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선한 생각이나 좋은 원의”를 지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2강 총체적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의 징표

“봉헌생활의 해를 맞이하여 모든 봉헌 생활자에게 보내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서”에서 봉헌생활의 해는 바로 은총의 때(kairos), 성찰과 변모의 때임을 선포.
-교회생활안의 자신의 현존에 대하여 성찰
-우리주변에서 계속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들과 가난한 이들의 외침에 응답하는 방법도 진지하게 검토
-세상의 요구에 관심을 갖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명할 때 비로써 이 봉헌생활의 해는 참된 때(kairos), 하느님의 은총이 넘치는 때, 변모의 때가 될 것입니다.
1. 2015 봉헌생활의 해- 총체적 변화의 때
교황은 수도자들에게 “가톨릭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성장해왔다”면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행동하며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을 깨워야 한다” 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교회는 매력적이어야 한다”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당기는 매력은 주님을 따르며 행동하는 실천적 삶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각 수도회 역사 안에서 활동해 오신 성령의 빛으로 쇄신
- “이 봉헌생활의 해의 첫 번째 목적은 감사로 과거를 회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각 수도회의 설립과정과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보도록 인도합니다.
- 각 수도회원들이 자기 수도회의 창설과 역사를 “재조명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를 보존”하기 위한 본질적인 것으로 각 수도회의 역사의 스토리를 회고하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수많은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를 권고합니다.
- 하느님의 영원한 나라에 시선을 두며 그곳을 향해가는 현재의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어 줍니다.

3. 봉헌생활의 해: 기쁜 삶에로의 초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찬 봉헌생활자의 현존 그 자체는 현대 사회에 복음의 기쁨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으며 이 시대야말로 말보다 증거자가 필요한 때임을 강조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도 수도자의 삶을 살고 있기에 영성생활의 빛과 어두움의 리듬 속에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그리스도와 일치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물질주의와 성공의 예찬 속에 사는 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증언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본래의 아름다움이 빛을 냅니다. 곧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는 얼굴의 아름다움이 행복을 퍼뜨리며 빛을 내는 것입니다.(2코린4.6참조)

4. “정의와 평화와 기쁨뿐인 하느님의 나라가 오소서.”
-예수님의 삶이 성부께 드리는 자신의 순명과 헌신 안에서 ‘하느님-우리와-함께하심’의 살아있는 비유인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세계를 위해서 하느님과 그들의 형제들에게 드리는 봉헌생활자들의 구체적인 헌신은 하느님 나라가 현존한다는 설득력 있는 싸인입니다.
수도자들의 현존은 온갖 헌신을 강화하고 새롭게 하는데 아주 필요합니다. 곧 복음전파, 그리스도교육, 빈곤한 이들을 위한 사랑, 관상기도, 인류양성과 젊은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영적양성에 헌신, 인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헌신을 강화하고 새롭게 하는데 수도자들의 현존은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면 잠깐 병원에, 선교에, 학교에 수녀들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봅시다. 수녀들이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누룩이며 선물입니다. 하느님께 자신들의 삶을 봉헌하는 이들, 예수님의 메시지를 진척시키는 이들은 훌륭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봉헌생활의 해의 목적”
- 과거에 받은 봉헌생활의 은사를 감사로 회고 하는 것
- 현재를 열정적으로 사는 것(각 수도회 설립은사를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사용하는 것)
- 미래를 희망으로 포옹하는 것

제 3강 성소의 원천으로

1. 성소의 주도권은 하느님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사도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 이 말씀은 사제들에게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소는 하느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2. 성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따르는 것. 그리고 이 거룩한 주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항상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호하는 바를 항상 하는 것이다.

- “봉헌생활의 해, 기뻐하십시오”에서 그리드소만이 우리의 참된 기초임을 다짐하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소는 인류와 교회를 쇄신으로 이끄는 생명의 샘으로 바로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3. 성소의 기쁨: 하느님께 사랑받는 징표

“제 몸과 마음 스러질지라도, 하느님은 제 마음의 반석, 영원히 제 몫이옵니다.”(시편73.26) 라고 한 시편 말씀은 우리 삶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시편 작가는 하느님께 의지하는 기쁨에 찬 신뢰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쁨이란 삶의 모든 순간에 특히,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똑같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쁨은 “한줄기 빛으로라도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는 끝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개인적인 확신에서 생겨납니다”(복음의 기쁨 6항)

하느님께 사랑받는다는 굳건한 확신이 여러분 성소의 중심에 있습니다.

4. 봉헌생활의 위기- 기쁨의 소멸

-우리는 어쩌면 인간화의 위기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한 성소와 충실한 여정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로 매일 나서는 이 여정은 불만과 괴로움으로 채워져 우리를 회한에 젖게 하고, 가지 않은 길과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대한 거의 영원할 갈망에 빠지게 하여 고독한 길이

됩니다. 관계를 맺고 사랑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소명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변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자신의 인생의 깊은 중심을 다시 찾도록 초대받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스승님의 제자로서, 스승님과 함께 하는 우리 삶의 동기가 그 의미와 진리를 발견합니다.
-마더 씨튼: 만일 내가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부분이 나에게 남아 있다면 나의 봉헌은 불완전합니다.

5. 성소의 원천으로- 사랑의 회복
-마더 씨튼: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좋은 일을 시작하실 때 그분은 끝까지 그것을 계속하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가지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미완성으로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베네딕도16세: 봉헌생활은 본질적으로 완전하고 결정적이며 조건 없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느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교사이신 하느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모든 희생을 무릎 쓰고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릴 때,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르는 봉헌생활자는 필연적으로 또한 “반대의 표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거의 항상 미디어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세상의 논리와는 종종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4강 봉헌생활의 정체성-그리스도의 복음권고의 삶

1. 봉헌생활-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권고를 따라 사는 삶
-성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이 말하는 봉헌생활 : 봉헌생활은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관계에서 그리고 형제자매들에 대한 관계 안에서 참으로 강생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생활양식과 행동방식에 대한 살아있는 기념입니다. 봉헌생활은 구세주의 삶과 가르침을 전해 주는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봉헌된 사람들은 “순종과 무소유와 정결”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덕을 완성시키시는 모범이심을 선언합니다. 정결, 청빈, 순명으로 요약되는 예수님의 생활방식은 이 땅에서 복음을 가장 철저하게 실천하는 길로 드러납니다. 이 길은 외아들로서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과 이루는 관계를 드러내는 하느님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전통은 언제나 봉헌생활의 객관적 우월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봉헌생활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생하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예수님께서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셨는지 보여줍니다.

2. 봉헌생활- 하느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한 선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 봉헌생활의 주도권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삶을 내어놓고 “다양한 은사들로 크리스챤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봉헌생활은 하느님의 큰 선물이다.
-수도서원이 “세례에서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일치를 복음권고의 선서를 통하여 더욱 완전하고 명백하며 진정한 결합의 선물로 성장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화된 봉헌은 세례를 통한 봉헌과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세례에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3. 봉헌생활-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속 하는 삶
-봉헌생활은 “그리스도처럼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봉헌된 삶”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 드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안하시고 당신의 사명을 맡겨 주시는 삶입니다.
-교회문헌 그리스도에게서 새 출발 에서는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살라는 부르심을 받은 봉헌생활자들이 그리스도와 일치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세상과 역사 안에 더욱 더 현존하실 수 있다고 공헌합니다.

4. 정결, 청빈, 순명의 세 가지 서원의 신학적 고찰
-예수를 따르는 봉헌의 삶은 “철저한 포기 없이는 철저한 따름이 불가능”한데, 이는 “고도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으로 “과거의 전통(아버지로 대표), 제도적-감정적 안정(직업과 가족), 물질적 안정(소유물), 개인적인 관심과 계획(자신을 버리고), 고착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 ”철저한 포기들이 전통적으로 세 가지 서원으로 요약된“것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 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마태 13,44)
복음의 이 비유는 ‘서원이 내포하는 포기는 예수를 만나고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하느님 나라를 발견한 데서 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제5강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내면의 순례

1.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
성 아우구스티노-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개가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진실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 내면의 순례: 하느님과 맺은 처음 사랑의 불꽃을 찾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시는 기쁨에서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이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가지기를 촉구합니다.
약함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권유합니다. 능률과 성공의 사회에서 “겸손”과 비천한 자의 약함, 발언권이 없는 이들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이들로 특색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은 모순에 대한 복음적 징표가 됩니다.
3.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봉헌 생활로 주님을 따르라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의 개인적 계획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하느님의 뜻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부터 ‘탈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바오로 사도와 더불어 이렇게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제6강 그리스도의 정결한 삶을 따라 사는 삶: 현대신학이 보는 정결서원

그리스도의 정결한 사랑의 삶을 따름-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마음을 열고 그분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수도자는 교회 안에서 ‘지극히 사랑하는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되는 사람들로,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새롭고 특수한 자격”을 받는다고 선언합니다.(특권의식은 버려야 하지만 특수한 의식은 잊지 말아야 한다.)

제7강 수도 공동체 생활: 친교의 영성을 키워내는 섭리적인 토양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공동체 생활은 마음의 양성을 위한 섭리적인 토양입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몰이해가 생기면 그것을 직시해야합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자비와 인내와 완전한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도 공동체의 형제애의 표지를 온유함, 곧 "성체의 온유함"으로 표현하면서 봉헌 생활자들 안에 감도는 형제애는 "사람들을 함께 모이도록 하는 엄청난 힘"이 있어 " 다양하게 나타나는 형제애는 갈등을 넘어서는 사랑의 경험"이라고 호소합니다.

제8강 봉헌생활: 복음의 기쁨을 증언하는 현대 세계의 예언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것도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희망을 잃은 남녀들,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 버려진 어린이들, 미래가 없는 젊은이들, 노인들, 병들고 버려진 노인들, 세상의 재산으로는 부유하지만 내면은 빈곤한 이들, 삶에 목적을 찾고 있는 남녀들, 하느님을 목말라 하는 이들이 모두 우리를 기다립니다.

교육·연수보고서 15-08

2015년도 전국 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 교육연수

주 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 간		2015년03월05일(목)-06일(금)(총1박2일)
장 소		대전 유성호텔 그랜드볼룸(B1F)
참석자	팀 명	**지역연계**
	명 단	**윤혜림**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2015년 03월 05일 (목) - 06일(금)
	시 간	03월 05일(목) 14:00-19:00 03월 06일(금) 09:00-12:00 (총8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전문강의Ⅰ “사례로 풀어보는 장애인가족 중심의 사례관리 실천과제”

-부모장애인의 자녀 양육과 갈등, 가정 내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1) 장애인과 가족에게 사례관리가 필요한 이유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 삶의 질 향상 강조

01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
02 장애가족의 경우 장애인과 어려움 공유
03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지속적 관리와 보호필요
04 네크워크와 사회적 지지를 활용한 포괄적 서비스

(2) 가족중심 실천
☆ 가족에 대한 진단
1) 전문가중심
-전문가 관점에서 가족이 가진 욕구 결정
-전문가는 그 가족을 전문가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결함이나 병리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
-가족 문제해결 위해 전문가 개입의 필요성 강조
-가족기능에 대한 전문적 평가 필요
2) 가족협력: 가족을 전문가의 협력자로 간주, 가족변화에는 전문가의 교육과 보호가 전제
3) 가족초점: 가족 기능향상 위해 가족과 전문가는 협력하여 결정, 전문가의 조언과 지도 의 필요성 중시, 전문가는 전문적 관계망을 이용하도록 격려
4) 가족중심: 가족의 강점과 잠재력 사정/ 가족의 의사결정 중시, 가족은 지원 대상이며, 동시에 지원 활용 자원, 개입 실제의 우선 목적은 가족 역량의 강화, 가족의 관심과 요 구가 평가 과정을 주도

(3) 실천관점
1) 생태체계관점
-개인과 환경을 분리할 수 없는 존재로 본다.
-c‘t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 사정, 상호작용 분석한다.
-c‘t생활 상황과 생활주기에서의 단계를 사정한다.
-개인과 환경과의 적합성 증진을 위한 개입방법을 모색한다.
2) 강점중심 역량강화관점
-변화와 문제해결을 위해 c‘t의 강점과 동기 및 잠재능력이 강조

-사례관리 목적은 c't의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문제해결과 환경체계를 활용할 수 있 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사례관리는 개인과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의 여러 기화와 물리적 환경 속에 내재된 자원 을 찾아내고, 이를 c't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3) 네크워크관점

-c't의 복합적 욕구는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기관과 자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충족 될 수 있으므로 사례관리에서 네크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c't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중복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유를 통해 자원의 활용도 를 최대화하여 효과성 증진

-누락된 c't 발굴 및 단절된 서비스 연계, 서비스 효율성 증대 부족한 자원동원이 이루어 진다.

(4) 장애인 가족 중심 실천 원칙

: 장애인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01 전체성의 원칙
02 개별화 원칙
03 보편성 원칙
04 지속성 원칙
05 포괄성 원칙
06 통합성 원칙
07 주류화 원칙
08 강점중심 역량강화 원칙

(5) 성공적인 가족실천을 하려면

-가족지원에 생태체계 관점과 강점 활용
-가족의 강점과 능력파악, 가족과 협력작업 수행
-가족의 독특한 문화 존중
-가족의 역량강화 존중

(6) 과정

Intake: 욕구확인 내용

-장애가족이 어떤 문제로 힘든지 이와 관련된 희망사항
-사례관리자나 기관에 대한 기대
-즉각 개입해야 할 긴급 문제 여부
-가족의 문제가 기관의 역할 범주에 부합하는지 확인

정보제공시 유의사항

-장애인과 가족의 현재 심리상태, 지적수준, 언어구사력 등을 주의깊게 고려할 것
-정보나 지시를 논리적,체계적,단계적으로 제공할 것
-빠른속도와 어려운 단어, 잘못된 문법, 어색한 문장 지양

사례관리에 대한 합의와 참여유도
-Intake후 사례관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가족의 참여와 선택을 최대한 존중

(7) 사정

장애인 가족 사정의 5가지 내용
-장애인 가족을 가치있는 존재로 신뢰할 것
-장애가족의 경험에 대한 공감
-장애인과 그가족에 관련하여 속단금지
-사례관리자의 인내심과 이해력 향상

강점사정영역
-가족과 친구
-교육적 배경과 직업 경력배경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기술
-물질,재정자원: 주거, 수유재산, 저축 등
-인생 태도와 관점: 변화에 대한 동기, 긍정적 태도, 신앙심과 같은 강한 신념

(8) 계획

개입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계획 전 단계의 삿어 결과에 충실해야 한다.
-계회수립 과정에 장애인 가족의 참여가 전체
-수립된 계획은 변화될 수 있다.
-c't와 사례관리자가 합의를 통해 우선순위 및 개입시기를 정함

(9) 실행 및 모니터링

직접서비스 제공 시 가족적응력 향상 위한 초점
-가족 경계 유지: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도록 구성원 사이의 적절한 가족경계 유지지원
-의사소통능력 개발: 가족원 서로 감정적 짐을 공유하고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의미부여
-가족유연성: 가족 내 역할과 과업을 다른 가족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유연성

개발

-가족에의 책임: 가족원을 지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 모임을 활성화 하도록 지원

(10) 평가 및 종결

-목표 달성 확인

-사례개입 후 장애인 및 가족의 변화정도 확인

-평가를 위해 실천가는 사례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부활동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실천 개입과 결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함

-평가는 장애인과 가족의 참여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전문강의Ⅱ 지속가능한 장애인복지관 자원개발을 위한 “복지네크워크 활성화 핵심과제”

● 지역사회 네트워크 성공요인

1) 성공적 네크워크를 위한 환경요인: 지역사회에서의 공동협력의 역사, 우호적인 정치적· 사회적풍토, 지역사회내의 하나의 지도력으로서 네크워크 내에서의 인식 등

2) 구성원 요인은 상호존중, 구성원간의 이해와 신뢰, 구성원의 적절한 상호교환, 공동협력 을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보는 구성원 그리고 타협능력 등

3) 과정,구조 요인은 과정과 성과에 공통적인 몫의 공유, 복합적 의사결정의 소유성, 융통 성, 명백한 역할과 정책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적용능력 등 의사결정 과정의 ‘소유성’과 각 구성원이 하나의 중요한 기여적 성원이라는 점에 대한 생각은 네크워크의 중요한 요 인

4) 소통요인은 개방적이고 빈번한 소통과 비형식적, 형식적 소통 연결 등

5) 목적요인은 고정되고 달성가능한 목적과 목표, 공유된 비전 등을 포함한다. 비전과 목적 은 시작 시점에 제시될 수 있거나 파트너들이 같이 일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음

6) 자원요인은 충분한 기금과 함께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존경을 유지하면서도 의사결정과 정을 통해 집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 자원개발의 4요소

1)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2) 지역 내 기존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하라.
3) 지역 내 자원은 지역적 욕구와 연결될 때 개발이 용이하다.
4) 평소 지역 내 자원의 종류, 양, 필요시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 자원개발(후원)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1)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부터 다른 구성원에게로 상호 이해될 수 있는 언어, 기호, 동작 등을 통하여 사실이나 생각 또는 감정 등을 전달함으로써 생각과 행동 또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쌍방의 과정이다. 기 개발된 후원의 지속과 잠재적 후원자 개발을 위해서는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2)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타인의 행동을 지도하거나 통제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음

3)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원리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달자의 유의사랑은 다음과 같다.
- 분명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한다.
- 수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 사후 검토와 피드백을 이용한다.
- 반복 전달하고, 다양한 경로를 이용한다.
-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 물리적환경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4)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위하여
질문들>
-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 당신들의 목표가 명확한가?
- 누가, 어떻게 목표를 정했는가?
- 서로 수퍼비전을 주고 있는가?
- 동료롸 조직에 묻거나, 제안한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은 언제 인가?
- 동료와 클라이언트, 후원자가 웃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인가?

- 사무실을 벗어나 실제 사용자들과 직접 만난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인가?
- 당신의 조직의 동료들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가?
- 지역사회 관련단체의 실무자들의 크고 작은 요청을 해결해 준적이 있는가?

사례공유 “장애인복지관 당사자 참여 중심 운영 사례 공유”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자조모임 운영사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1.성년후견제도지원사업 진행
2.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과정
3.자기결정증진 프로그램
4.자립지원프로그램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여성장애인 자조모임 “라온제나”
장애인 당사자주의(Consumerism) 제고
: 최근 장애인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도 소비자주의와 당사자주의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주의는 ‘주는대로 받는’ 수동적 서비스 수혜자라는 관점엣 대항하여 상품의 구매자처럼 ‘상품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구매자 또는 서비스의 선택자의 관점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주의는 장애문제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될 문제가 아니라 장앵니 당사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본인 스스로가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자기결정’의 원칙을 제기하는 이념이라고 할수 있다.(이경준,“장애인의 자기결정과 보장원리”,재활복지.제9권,제2호,pp.251-261,2010.)

소비자주의가 시장에서의 교환의 원리에 기초하여 소비자로서의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당사자주의는 시장기제에 의한 구매방식이 아니라 서비스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당사자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적 체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승기, “바우처 제도에서 현금 직접지불방식으로의 이행과 조건”,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87-99, 201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실을 돌아보면, 장애인이 서비스의 소비자로 역할하는 소비자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서비스 전달과 결정의 주체임을 강조하는 당사자주의와도 여전히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서비

스의 공급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달체계 역시 수요자보다는 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한을 이용자 즉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남용현, “장애인 복지정책에선의 이용자 참여 강화: 독일의 개인예산 제도를 중심으로”, 2013년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733,2014)

교양강의 “마음을 이해하는 진짜 대화법-감성화법”

(1) 감성화법이란?
To Express Feelings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기 위하여
To Inform 정보를 전달, 공유하기 위하여
To Influence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To Solv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body): 시선,자세,태도
M(Mood): 표정,음성,호흡
W(Word): 키워드,목소리 크기/속도/장단

감성커뮤니케이션 모델
:감정공유, 격려, 생각확인, 질문, 통보, 지시, 주장

감성화법 장애요인
:sender 지식, 전달기술, 기호화 능력, 편견등의 부족
receiver 경청을 하지 않음, 내용을 오해함, 주제에 무관심함, 편견을 가짐

(2) 감정공유
-메세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단계로 모델의 가장 최상위에 자리잡고 있음
-신뢰와 라포 형성에 효과적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얻게 됨
-상대방의 말에 대한 인식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함으로 오해와 문제 발생의 소지를 없앰

* 언제 사용해야 하나?

-기본적 신뢰나 라포를 형성하고 싶을 때
-어떤 감정이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고 있을 때
-지나치게 성과지향적인 업무를 하고 있을 경우
-정확히 서로간의 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싶을 때

(3) 생각확인
환언하기
-상대방이 말한 것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말함
-말한 상대방에게 자신이 바로 이해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잘못된 이해를 고침

(4) 생각확인의 방법
- 왜?: 신뢰나 라포를 형성,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때, 불명확한 것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위해, 긴 대화의 요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어떻게?: 상대방이 말한 것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함.

* 교육 후 소감

장애인 가족 중심의 사례관리를 통해 사례관리의 지속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연계 하여 진행 하고자 함.

지역복지 네크워크는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과 같은 나눔을 통합하여 실천할 수 있는 복지 네크워크를 통해 나누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기관이 쉽게 연관될 수 있는 매개체 가 필요하며, 구역별, 기관별 네크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프로그램 진행시에는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이 서비스의 소비자로 역할하는 소비자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서비스 전달과 결정의 주체임을 강조하는 당사자주의에 근거하여 진행이 필요함. 사업 진행시 구체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간담회나 관련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장애인복지관협회 지역복지 연수에 참여 하여 타 기관 담당자들과 교류를 통해 사업진행에 관련된 사례와 개선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교육·연수보고서 15-09

2015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 기초과정

주 최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기 간		2015.07.15
장 소		경기복지재단 신관 215호
참석자	팀 명	**지역연계팀**
	명 단	**전기훈**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일
	시 간	총 7시간

2015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 기초과정

Ⅰ. 교육개요

1. 교 육 명 : 2015년 장애인식개선 전문 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기초과정
2. 교육내용 :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 강사 양성 교육과정
3. 일　　시 : 2015년 7월 15일(수) 09:30 ~ 17:30
4. 인　　원 : 참가자 40명
5. 장　　소 : 경기복지재단 신관 215호(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6. 참석대상 : 전국 장애인식개선 관련 실무자 및 교육희망자
7. 주최·주관 :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센터

Ⅱ. 교육내용

1. 장애인권교육(박주은 강사 / 국가인권위원회)

1) 차이와 차별
-차이 : 서로 다름(예 : 문화차이, 세대차이 등)
-차별 : 단순한 차이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예 : 인종차별 등)

2) 다르다와 틀리다
-다르다 :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예) 중간고사에서 내가 쓴 답과 친구가 쓴 답이 다르다.
-틀리다 :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예) 중간고사에서 내가 쓴 답이 정답과 틀리다.

3) 왜 차이를 차별하는가?
- 차이와 차별을 구별할 수 있는가?
-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가?

3)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1) 직접차별의 예
-청각장애인에게 영어듣기평가
-청각장애인에게 구두로만 설명
-장애아를 바라보며 비하발언
-기업이 장애인 고용 거부
(2) 간접차별의 예
-뇌병변장애인에게 OMR카드를 사용하는 시험

4)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가?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

5) 다양성 :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는 사회

6) 국기인권위원회법

- 제2조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7) 대한민국 헌법

-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8) 19가지 차별 사유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및 출산, 가족형태,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9) 세계인권선언

-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 제30조 :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2. 장애학적관점(전지혜 연구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증진연구부)

1) 개별적 모델(의료적 모델)

(1) 개별적 모델이란?

- 개인적 비극모형 또는 의료적 모형
- 대부분의 종교가 지지함
- 장애가 근로능력 규범으로부터 일탈되어 있는 상태
- 분리, 재활 또는 보호가 적절한 대응

(2) 특징

- 장애의 문제를 개인에게 둠
- 문제의 원인은 기능적 제약 또는 심리적 상실
- 장애는 불운한 개인에게 임의로 일어나는 무서운 우연한 사건
- 의료적 모형은 전문가, 특히 의료전문가의 판단을 중요시함

(3) 문제

- 장애는 장기적 사회적 상태로 의료적으로 치료 및 완치 불가능
- 의사는 장애인의 삶에 대한 결정에 개입
- 지역사회의 사회적, 물리적 구조를 바꾸기보다는 신체손상이 있는 개인이 기존의 사회규범과 물리적 환경에 적응하도록 요구함

-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에 의해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함
-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장애인이 됨

2) 사회적 모델

(1) 사회적 모델이란?

- 문제의 원인은 사회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장애인의 욕구가 사회 조직 내에서 완전히 충족되도록 적절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것
- 장애는 사회적 억압의 결과임

(2) 사회적 모델에 대한 비판

- 사회조건을 바꾼다고 모든 장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장애인 개인의 경험의 중요성을 도외시함

3) 장애 정책의 변화

(1) 의료적 모델 -> 사회적 모델

- 시설보호 -> 재가보호/지역사회보호(활동보조인서비스)
- 보호고용, 의무교용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입
- 특수교육 -> 통합교육

4) 장애학

(1) 장애학이란?

- 장애인의 적응과 재활에 초점을 두는 기존학문의 패러다임과 달리 사회 환경이 어떻게 장애인을 정의, 차별, 배제해 왔는지에 대해 비판하며, 사회 환경 변화를 통한 모든 인간의 삶의 질 증진에 학문적 목표를 둠
- 장애인을 대상화 하지 않음
- 치료의 대상이 아닌 똑같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살아감

5) 국제동향과 장애정책

(1) 장애인권리협약 최종 견해에 제시된 주요 권고사항

- 장애등급판정제도를 검토해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 욕구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것
- 활동지원서비스의 확대 적용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 장애여성관련 정책 수립 시 성인지 관점 도입
-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선정 강화
-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이동권 확보와 정책 점검
-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와 관련 지원 마련
-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기준 적용
- 성연후견제가 대체의사결정이 아닌 조력의사결정으로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선호도를 존중 할 것
-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 박탈을 허용한 법률 조항 폐지
- 가족이 아닌 장애당사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금액산정

- 수화와 점자를 공식어와 문자로 지정할 것
-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과 협약 25조 e항 유보 철회.

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이해(박자경 교수 / 백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1)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 학령기 전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이 가장 큼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장점 : 인식이 한 번 바뀌면 오래 감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단점 : 인식이 한 번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움

2)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방안
- 일방향보다는 양방향
- 강의식 보다는 참여식
- 지식, 정보 전달이 아닌 체험
- 강의자의 설득이 아닌 스스로의 통찰

3) 활동의 구성
- 역할극, 장애체험 및 장애카드, 경청을 통한 내용전달 게임
- 다양한 교수법의 적용(강의, 그룹토의, 역할 연기, 심포지엄, 전시 등)

4) 장애체험 및 유명인 또는 위인들의 사례의 위험성
- 긍정적 효과 : 이해와 배려심이 높아짐
- 부정적 효과 : 장애인의 희화화, 현실과 다른 모습으로 인식 악화

5) 장애인식개선교육 담당자의 역할
- 스스로 몰입하라
- 일방적인 답을 제공하기보다 촉진하라
- 자신과 참여자 모두에 대한 신뢰를 가져라
- 참여자의 특성을 잘 고려하라
- 참여자에게 책임감과 의미를 부여하라
- 교육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생각하게 하라

Ⅲ. 소감 및 향후 계획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된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특히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이해' 강의가 가장 인상 깊었다. 현장에서 복지사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할 때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 장애체험과 유명한 장애인 또는 성공사례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과 함께 진행하는데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부정적인 효과와 관련된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였고, 향후 장애인식개선교육 진행 시 유의점에 대해 잘 숙지하고 효과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교육·연수보고서 15-10

2015 직업재활 국제학술대회
교육보고서

주 최		한국직업재활학회
기 간		2015.03.06.(금) 10:30 ~ 17:00
장 소		이룸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참석자	팀 명	**직업지원팀**
	명 단	**이주미**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6 시간

더불어사는 따뜻한세상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5년 직업재활 국제학술대회
“재활상담사의 역할과 직무배치에 있어서 직무분석 기법”

Ⅰ.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의 당면과제와 방향성

1. 직업재활 정책 및 사업현황

가. 직업재활정책

1)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 정의, 장애인 권리, 중증장애인 보호, 차별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제 21조(직업)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고용, 보호고용, 취업알선 등)를 제시함.
- 사업주에 대한 지원, 표준사업장, 의무고용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선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을 돕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구매촉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우선구매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따른 특성,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 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 및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직업재활사업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 후 적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능력향상 및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에 목적을 둠.

- 현재 전국에 190개의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은 309명 정도임.

2)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실시함.
-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24개 직무),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운영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보급
- 장애인일자리 사업참여 종료 후, 일자리 전이/유지(계속일자리지원사업) 실시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지원함.

2. 미국 직업재활 현황

- 노동력투자자법, 미국장애인법, 재활법, 오바마정부 행정명령 13548등에 근거하여 장애인고용을 추진하고 있음.
- 직업재활국을 중심으로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원고용을 최종목표로 두고 있음.
- 지역사회 내 재활프로그램은 주로 발달장애나 지적장애를 대상으로 지원고용 및 보호고용 서비스를 제공함.
- “장애인을 납세자로 만들자”라는 모토로 직업재활을 실시하고 있음.

가. 우선구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우선구매위원회가 정한 우선구매 품목에 따라 구매함.
- 연방정부위원회, 우선구매 전달체계(계약과정 지원, 심사, 사후관리), 시각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구 설립.
- 생산품보다 서비스직종(3차산업 : 콜센터, 재활용, 청소직종)의 비율이 높아짐.

3. 직업재활 당면과제와 방향성

1)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직업재활센터 확충

2) 대상자 욕구 증대에 따른 서비스 개발 및 사업추진

- 민간, 공공기관, 직업재활서비스기관연계로 까페 개설

3)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확대

4) 민간일자리로의 전이 및 유지 지원

- 행정도우미 일자리사업 참여 후 사무직종으로 취업연계

5) 우선구매제도 구매촉진 유인방안 마련

- 적용제외 기준 최소화

6) 구매 수요에 맞는 신규 아이템 발굴

- 현재는 저부가가치물품 위주이기 때문에 품질향상 필요함.
7)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Ⅱ. 재활상담사의 역할과 기능 :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방향

1. 재활상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배경
- 1970년대 초반 재활상담사 자격과 승인절차에 개입하기 위해 시작됨.
- 미국재활상담협회에서는 5년마다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를 요구함.

가 . 역할과 기능 연구의 중요성
1) 재활상담과 관련된 주요 지식범위의 확인 작업
2) 재활상담 교육과정의 안내
3) 재활상담사의 실천현장 영역의 안내
4) 다른 유사한 상담영역과 구별
5) 변화하는 시대와 현장에 맞추어 대응

2. 최근 10년간 재활상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결과
가. 2003년
- 직업상담, 상담중재, 지역사회에 기반한 재활활동, 사례관리, 조사연구, 진단, 전문적인 옹호활동
나. 2009년
1) 상담 : 개별, 집단/가족, 정신보건, 심리-사회
2) 직업 : 진로상담과 진단, 직업개발, 직업상담
3) 재활 : 사례관리, 의학적-기능적 재활, 배경, 재활서비스, 건강관리&장애
다. 2011년
1) 직업배치 : 직업배치, 직업평가와 진로상담, 직업정보분석
2) 상담 : 상담, 심리사회적 중재, 사례관리, 가족상담, 정신건강관리
3) 수요자 측면의 고용 : 근로자 보상-법률 서비스, 옹호, 지역사회 자원활용
라. 2015년
1) 재활/의학적기초
2) 직업배치
3) 상담
4) 사례관리
5) 진단
6) 법률서비스
7) 심리사회적지원

3. 함의점

- 시대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재활상담사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역할/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역할들이 다양하게 증가했지만 고유의 역할과 기능은 변화하지 않았음으로 재활상담사의 직업정체성이 입증되고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유의 역할과 기능

1) 직업 :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자기결정)
2) 상담 : 유대감형성, 목표설정, 직무배치과정에서 행동변화에 초점을 둔 상담
3) 재활관련 지식 : 의료적/심리적 재활 지원
4) 사례관리 : 다양한 서비스 활용, 조직화, 조직적 접근
5) 미래방향제시 : 건강관리, 다양한 자원 연계, 진로개발

Ⅲ. 발달장애인 직업개발·배치 분야에서의 직무분석 및 직무조정

1. 성공적인 직업배치란?

1)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것
2) 사업주/고용주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는 것
3)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는 것
4) 통합적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하는 것
5) 최소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가 가능해야 하는 것

➡ 비즈니스 지향적 모델

-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신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이며 사업주는 장애인 채용이 자선행위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전제로 고용하는 모델
- 사업주가 요구하는 덕목 : 노력하는 자세, 회사에 대한 충성도, 결단력

2. 직업개발·배치 과정에서의 TIP

1) 사업체 방문 전

- 적합한 방문시점을 미리 파악하여 방문약속을 정할 것
- 사업체 규모가 클 경우 2명의 담당자가 동행하여 면담자, 기록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직업개발전문가 스스로 구직자의 입장에서 사업주와 면담해야 하므로 질문을 준비할 것.
- 방문 전 인터넷 및 매체를 통해 사업체의 제품, 서비스, 위치, 경영철학, 경영진, 평판, 기사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

2) 사업체 방문 시

- 해당부서의 직무내용과 역할, 책임에 대한 직무설명서 살펴보기
- 반드시 직접 방문할 것

- 수행해야 할 직무파악(자제의 위치, 업무진행속도, 공구나 도구의 종류와 용도)
- 직장 내 안전(산재, 사고 여부 파악)
- 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출퇴근방법, 읽기, 쓰기, 계산하기, 이동능력 등)
-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많은 정보를 얻기
- 사업주의 직무수행기대치 파악하기
- 사회적 상호작용(팀워크, 동료 근로자들의 상호작용) 파악하기
- 휴식공간, 식당이나 급수대, 안전시설, 사물함, 비상구, 계단, 화장실 등 점검
- 근무스케쥴 확인하기(근무일수, 연장근무, 조퇴, 병가, 휴가제도 등)
- 장애인 근로자들이 담당하게 될 업무를 직접체험하고 정보습득하기

3) 직무분석

- 담당하는 클라이언트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가 무엇인가?
-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해 수행가능한 직무는 무엇인가?
-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무는 무엇인가?
- 클라이언트가 수행해야 할 직무뿐만 아니라 다른 직무 수행과정을 관찰하여 발달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내기

◎ 직무 추려내기

- 다양한 직무들을 파악하여 클라이언트가 수행가능한 직무를 분류하고 재통합하는 것으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는 것
-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직무추려내기 작업을 통해 다른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 일부와 결합하여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함.

⇒ 새로운 전일제 일자리 창출, 비장애인 동료 근로자의 업무생산성 향상

◎ 직무변경

- 작업공정을 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상황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혹은 재조직하는 행위

★ 직업개발 및 배치과정을 거친 후 고용주의 채용조건을 수용할지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장애인에게 있으며 우리는 장애인이 내릴 여러 가지 선택이 가져다 줄 결과를 충분히 숙지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여러 가지 취업 저해 및 고용 상실요인을 사전에 검토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항상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연수보고서 15-11

2015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제1차 전문인력 신규교육

주 최		한국장애인개발원
기 간		2015.3.25.~2015.3.27
장 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참석자	팀 명	**직업지원팀**
	명 단	**안병주**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3 일
	시 간	총 15 시간

더불어사는 따뜻한세상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5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제1차 전문인력 신규교육

Ⅰ.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 소개

1. 한국장애인개발원 소개
○설립근거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등을 수행.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현황
사업개요
-목적 :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및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사업예산 : 18,322백만원
총괄사업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2008.1월 지정)

3.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현황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발굴,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사업예산 : 65,474백만원
-총괄사업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2010.1월 지정)

4. 우선구매지원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만드는 생산품(용역 및 서비스 포함)에 대한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여 해당 시설 근로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
-관련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주요내용 :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Ⅱ.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의 이해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의 배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3조에 의해 전년도 고용부담금 중 2/9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사용
○지역사회 중심의 직업재활서비스 구축,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직업적응훈련 사업, 장애인복지단체를 통한 직업재활사업을 강화하는데 역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에서부터 기관선정과 관리에 이르는 사업의 전반을,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예산집행 및 회계감독 업무를 담당하여 사업을 진행 전달체계의 이원화라는 문제점을 야기
○관련부처 회의를 통해 기존의 기금사업계획 및 내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복지부 사업예산 163억을 일반회계(민간경상보조)로 전환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담기관 선정,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 명칭변경

2. 사업수행기관 유형
○일반사업수행기관 유형
-직업재활센터(장애인복지관)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장애인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유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 유형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

3. 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이란
-구직장애인의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개인사회적응, 직업준비수행, 직무능력 향상, 직업유지에 대한 적응훈련
○대상자
-직업적응훈련의 대상자는 만15세 이상의 장애인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 전이를 위해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사람

4. 직업적응훈련 기준
○훈련기간 : 1개월 ~ 3년
○훈련시간 : 1일 기준 4시간이상, 월기준 80시간 이상
○훈련인원 : 전문인력 1인당 최소 5인 이상 15명

5. 지원고용
○지원고용 대상자
-구직등록한 만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대상제외자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동 규정 제16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6, 사전 및 현장훈련
○사전훈련 : 6일 이내
-현장훈련 이전에 반드시 실시
-사전훈련 종료일의 다음 날은 반드시 현장훈련 개시
○현장훈련 : 최대 3주/ 연장훈련 : 최대 4주
-필요시 야간 및 공휴일에도 현장훈련 실시 가능. 단, 사유를 명시하여 결재를 득할 것

7. 개발원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 매년 12월 10일까지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익년 1월 31일까지
○사업결과보고서 : 익년 1월 31일 까지

Ⅲ. 사업평가 교육

1. 수행기관 평가의 목적 및 기대효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기관의 운영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
○경쟁여건 조성을 통한 역동성의 도입과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의 능동적, 적극적 수행을 위한 동력장치로써 활용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안내하는 나침반으로써의 역할 기대

2. 수행기관 평가 근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규정 제 54조(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3. 수행기관 평가체계
○정기평가 : 3년 주기 유형별 정기평가
○재 평 가 : 정기평가 결과 하위 20% 기관을 대상으로 재평가
○성과평가 : 정기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적위주 성과평가 실시

4. 수행기관 평가방법
○기관에서 작성한 자체평가서를 토대로 현장평가 실시
○기관에서 입력한 사업실적입력시스템(엑셀파일) 자료를 근거로 실적 확인
○평가위원들이 영역별 '수행기관 평가결과서' 작성 : 기관별 전달(평가결과에 대한 feedback 제공)

Ⅳ. 사업실적입력

1. 수행기관 유형별 입력내용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 기관
-사업체개발, 직업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서비스의뢰,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확정)

2. 전산시스템 기능
○사업의 총량적인 관리 가능
○실적달성률 조회 가능
-사용자 모드 : 개별 기관의 사업실적 현황 및 실적달성률 조회 가능
-관리자 모드 : 각 유형별, 사업별 사업실적 및 실적 달성률 조회 가능

3. 실적입력기간
○익월 5일까지 월 1회 입력
예 : 2015년 3월 실적 → 4월 5일까지 입력
-전월 실적을 입력해야 하나 금월 실적으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잘못 입력된 자료는 삭제하고 재입력을 해야함.

4.실적조회 및 수정
○실적조회
-본 원에서 승인한 이후 실적 조회 가능
○실적수정
-승인 이후 실적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실적변경표(운영규정 별지 45호)' 작성 후 공문 발송

Ⅴ. 그룹별 예산사용집행 교육

1. 예산신청

○신청시기 및 방법

-매 분기 개시 전월의 15일~20일 사이에 신청

-홍보비 등은 개발원의 교부 안내에 따라 신청

-1/4분기 예산은 개발원에서 별도 안내된 일정에 따라 신청(예산신청 시 부족함이 없도록 확인 후 신청 바람)

○신청서류 : 공문, 예산지원신청서(별지 제41호)
예산신청내역서(엑셀서식)

2. 예산 집행 실적 보고

○분기별 예산집행 실적보고는 매 분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예산집행실적 보고”(별지 제 25호, 별지 제25-1호) 및 ”세목별 잽행내역서“ (별지 제26호)에 따라 개발원장에게 보고

-세목은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적응지원으로 하며, “세목별 집행내역서”(별지 제26호)에는 사업비 집행에 관한 상세내역을 기재

-예산자율 배분을 실시한 기관에서는 기관장승인을 받은 관련 내부기안 필히 첨부

Ⅵ. 제언

1. 개발원 실적보고 숙지 및 보고

○개발원 실적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규정 제54조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시 근거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입력항목은 사업체개발,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취업확정, 서비스의뢰가 있음. 실적입력기간은 익월 5일까지 월 1회 입력할 것. 전월 실적을 입력해야 하나 금월 실적으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는 잘못 입력된 자료를 삭제하고 재입력을 해야함.

개발원실적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항상 정확이 입력하고 지도점금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2. 예산 집행 불인정 항목 숙지

○기관 사업비 및 운영비 성격의 항목

(기관 다이어리 제작비, 기관자체 홍보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기관 난방유, 인터넷공유기, 카메라, 복사기, 휴대폰 등)

의 항목은 집행 불인정 항목으로써 예산을 집행하기 전 불인정 항목에 대해 확인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임.

3. 직업평가 숙지

○직업평가는 장애인의 직업적 흥미, 적성, 강점, 제한점 및 잠재능력을 파악, 분석하기 위해 신체능력평가, 상황평가, 과제수행평가, 작업행동평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는 직업재활서비스로써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재활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

교육·연수보고서 15-12

발달장애인지원법

주 최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기 간		2015. 09. 16
장 소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강당
참석자	팀 명	**직업지원팀**
	명 단	**강명진**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2 시간

발달장애인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21.] [법률 제12618호, 2014.5.20., 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권리의 보장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의사소통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치상, 살인·치사, 수수·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례가 없는지 소속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에게 관할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5조(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원의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등 종사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건강가정사 등 그 종사자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 등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나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현장조사)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등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은 그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보호조치 등)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격리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②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법 및 내용, 승인통보·신청·변경·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계좌의 관리 등) ① 발달장애인이 지급받을 복지지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예금의 인출 및 다른 계좌로의 이체 등 관리도 발달장애인 스스로 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에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계좌 관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보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할 사람(이하 "계좌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이 발달장애인의 계좌를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보호자와 계좌관리인의 경우에는 그 계좌 관리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때에는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등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금으로 지급된 복지지원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계좌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좌 관리, 점검의 절차·대상·내용, 조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휴식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3.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10.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 상황, 제공기관 현황과 서비스 수요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등(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지정권자는 인근 지역에 대체할 서비스제공기관이 없는 등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보고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누설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9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40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1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직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계좌 관리 상황과 관련한 자료열람 또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

인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2618호, 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지원법의 함의

발달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명문화 하였으며, 당사자의 요구와 행동의 필요성이 강조됨.

Q&A

Q1. 부모 사후에 형제에게 발달장애인 형제를 책임지라고 인식시켜야 하는가?

- 경제적 측면은 부모가 대안을 마련하고 부모 사후에 정서적 지원과 관리는 형제가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보여짐. 형제가 장애형제에게 맡겨진 재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임.

Q2. 법안에 제시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인천에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현재 예산은 마련되어 있으나 관련 직종, 사무실 등이 구비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임. 지역사정과 예산 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것임.

Q3. 복지관에서 행동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대변해 주면 안되는가?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기주장능력이 부족하므로 보호자가 대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Q4.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복지관의 차이는 무엇인가?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권리옹호, 권리보장,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이나 활동을

위주로 운영되며, 복지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이 다름.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맞춤형 복지서비스 컨설팅과 정보제공을 실시할 것임.

Q5. 법률에서 사용된 표현 중 '~할 수 있다'는 표현은 강제력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법의 효력이 있을 것인가?
- 법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까우나 '노력해야 한다'는 안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의 시행과 집행을 위해 예산이나 인력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권고사항이라기 보다는 강력한 법의 효력을 의미하고 있음.

제언

교육이 법률 조항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보호자 및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질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내용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음. 부모회의나 부모교육을 통해 보호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 및 가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임.

교육·연수보고서 15-13

발달장애인을 위한 금전관리 교육보고서

주 최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기 간		2015.10.14.(수) 10:00 ~ 12:00
장 소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교육실
참석자	팀 명	**직업지원팀**
	명 단	**이정진**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2 시간

더불어사는 따뜻한세상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을 위한 금전관리(보호자의 입장에서)

1. 금전관리 교육의 지원 원칙

1) 내 아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장애유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장애특성에 따라 방법을 모색해야 함. 무엇이 안되는가를 먼저 파악하고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함. 해결방안 제시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새로운 방법과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함.

2) 지나친 실수나 실패에 대한 걱정은 금물

- 돈을 받은 날 소진, 필요 없는 물품을 구매, 과소비에 대한 걱정, 돈을 엉뚱한 곳에 사용 등에 대한 걱정을 하기 보다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기억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경험을 생각함.

3) '할 수 있다'는 자녀에 대한 믿음

-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하여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여 난이도를 조절하여 자녀를 지도함.

4) 일관성 있고 반복적인 교육

- 교육 방식을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통일하여 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함.

5) 다양한 기회와 환경 제공

- 부모, 자녀, 금전관리 교육자(복지관담당자)가 함께 지원해야하며 가정에 개인용품, 간식, 청결용품 등을 구비해두지 않고 자녀가 마트, 커피숍, 분식집 등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 또한, 항상 본인의 돈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음.

6)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지원

- 한순간에 학습되기를 바라기보다는 기다려주는 마음을 갖고 천천히 지원이 필요함.

2. 금전관리를 위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능력

1) 숫자 세기 능력
2) 돈의 의미 파악
3) 돈의 크기 파악
4) 돈의 사용능력 파악
5) 연산 능력
6) 자기 것과 타인의 것을 구분하는 능력

3. 효율적인 금전관리교육 지원을 위한 대상자 분석내용

1) 좋아하는 것
2) 싫어하는 것
3) 용어이해 정도
4) 성격(집착, 무관심, 산만 등)
5) 인과관계

4. 소감 및 제언

금전관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었다. 이번교육은 발달장애인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교육으로 종사자는 소수에 불가하였다. 교육 중에 금전관리 교육 대상자를 분석하는 연습이 진행되었다. 자녀의 장점에는 분홍색 포스트잇을 단점 및 문제행동에는 노락색 포스트잇을 좋아하는 것에는 파란색 포스트잇을 싫어하는 것에는 연두색 포스트잇을 붙이는 과제였다. 부모님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노란색포스트잇이 가장 많았으며 종사자의 경우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의 포스트잇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과제를 보며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 직업적응훈련반에 진행하고 있는 금전관리프로그램이 이용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접근은 제한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준별로 차이를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육·연수보고서 15-14

2015년 직업재활사대회
교육보고서

주 최		한국직업재활사협회
기 간		2015.11.12.(목) 14:00 ~ 18:00
장 소		이룸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참석자	팀 명	**직업지원팀**
	명 단	**이주미, 이정진**
	인 원	총 2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4 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5년 직업재활사대회
“직업재활사의 역할의 과제”

Ⅰ. 장애인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직무영역

1. 외국의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가

1) 미국

- 초기단계의 자격증 : 재활서비스전문가, 공인직업평가사
- 전문가 : 공인재활상담사, 공인 알콜중독 상담전문가, 공인 약물중독전문가
- 이들은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하며, 협회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활학 관련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회에 참가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다는 증명이 제시되어야 함.
- 재활상담사의 필수지식과 기능(재활교육위원회, 2014)
  ① 사례관리
  ② 진단
  ③ 직업배치
  ④ 상담
  ⑤ 재활의학적 기초
  ⑥ 법률서비스
  ⑦ 심리-사회적기능
- 재활상담사의 업무(재활상담사 자격인증위원회)
  ① 평가
  ②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③ 진로(직업)상담
  ④ 장애의 의료적, 심리사회적 영향에 적응하는데 중점을 둔 개인상담, 집단상담
  ⑤ 사례관리, 의뢰, 서비스 조정
  ⑥ 프로그램 평가 및 연구
  ⑦ 환경, 고용, 태도상의 장벽을 재고하기 위한 개입
  ⑧ 다양한 분야와 법률체계에서의 자문
  ⑨ 직무분석, 직무개발, 배치서비스, 직무조정
  ⑩ 재활 보조공학기술에 대한 자문

2) 일본

(1) 장애인직업카운슬러

- 장애인직업카운슬러는 우리나라 직업재활 전문가인 직업재활사와 유사함.
- 일본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인 고용지원기구(이하 ‘JEED’) 산하의 지역장애인취

업센터에 근무하며, 직업재활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련하여 그 지식과 기술 및 전문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사실상 국가자격의 형태를 띄고 있음.

- 장애인직업카운슬러의 주요직무
  ① 장애인에 대한 직업평가
  ② 직업지도(직업재활 카운슬링)
  ③ 직업준비지원 오리엔테이션 강습
  ④ 장애인 및 사업주에 대한 직장적응원조자에 의한 지원 및 직장복귀 지원
  ⑤ 장애인에 대한 직장적응지도
  ⑥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언·지원
  ⑦ 직장적응원조자의 양성·연수
  ⑧ 지적장애인 및 중도 지적장애인의 판정(직업카운슬러로서 2년 이상의 경험자)
  ⑨ 관계기관과 연락·조정,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사례회의 운영 등

(2) 직장적응원조자(잡코치)

- 장애인, 사업주 및 해당 장애인의 가족에 대해서 장애인의 직장적응에 관해 사소한 지원에서부터 장애인의 직장적응을 꾀하고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의 안정에 기여함.
- 배치형 잡코치, 제1호 잡코치, 제 2호 잡코치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배치형 잡코치(지역장애인직업센터에 배치)
  ① 사업소의 직장환경 내 파악 및 적응상황파악·지원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직장적응을 위한 지도·조언
  ③ 지원대상 사업주에 대한 지원대상자 고용관리지도·조언
  ④ 지원대상자 가족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한 지도·조언
  ⑤ 통근지도 실시 및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 제1호 잡코치(장애인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고용)
  ① 지원실시사업소의 직장환경 파악·분석 및 지원대상자 적응 상황 파악 및 지원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직장적응을 위한 지도·조언
  ③ 지원대상사업주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고용관리 전반에 걸친 지도·조언
  ④ 지원대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한 조언·지도
  ⑤ 통근지도 실시 및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지원기록의 작성
- 제2호 잡코치(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배치)
  ① 사업소 내 직장환경 파악·분석 및 지원대상자의 적응상황 파악 및 지원
  ② 지원계획의 작성
  ③ 지원대상자에 대한 직장적응을 위한 지도·지원
  ④ 사업소 내 직장적응체제 확립 조정
  ⑤ 지원대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한 조언·지도
  ⑥ 통근지도 실시 및 사업대상자에 관계되는 기관과의 조정, 지원기록 작성 등

3) 독일

(1) 통합전문가

- 통합사무소(Interationsamt) 재활수행기관(Rehanilitationstrager)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임.
- 주요임무 : 구직자의 능력 평가·사정, 취업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자문, 중증장애인졸업생 취업을 위한 제반사항지원, 취업장애인 사후지도, 고용주자문 및 지원, 장애인작업장 취업장애인 지원 등

(2) 재활컨설턴트

- 노동사무소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자문, 원직장복귀, 훈련 및 취업알선, 고용주자문 및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함.

(3) 컨설턴트 엔지니어

- 고용주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문,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해고보호,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작업장 개조, 장애인자동차 지원, 각종 세미나 및 교육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함.

(4) 장애인작업장 전문인력

- 산업 및 수공업 분야에서 적어도 2년 이상의 직업경험을 가진 전문기술자, 도제, 마이스터이어야 하며, 교육학적 지식과 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함.

♣ 외국의 직업재활 관련 전문가의 자격현황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직업재활 관련 자격이 업무 및 배치기관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으며, 자격에 대한 연수 및 교육과정이 확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직업재활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상담 및 평가, 직무개발 및 배치 등의 업무를 위주로 한다면 외국은 법률적 자문,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자문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 국내의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가

1) 직업재활사의 배치기관별 업무

기관 구분	직업재활관련 업무	직업재활사의 업무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사업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현장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사업)	- 상담 및 평가의 계획과 실시 - 직업적응훈련 계획 수립과 실시 - 지원고용 및 취업알선을 위한 사업체 개발 등 - 직무분석 및 직무개발을 통한 직무배치 등 - 기관 및 사업홍보 - 기록 및 행정 업무 등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 재활프로그램 및 개별서비스 계획수립 - 보호고용 - 상담 및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무 기능 향상훈련 실시 - 직무분석, 직무변경 및 보조공학 활용 - 재활프로그램 실시 등	- 상담 및 평가 계획과 실시 -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 계획 수립과 실시 -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 직무분석 및 직무변경을 통한 직무배치 등 - 시설 및 사업홍보 - 생산품에 대한 마케팅 - 기록 및 행정업무 등
한국장애인 개발원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공공기관 연계형 일자리 개발 등)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 장애인일자리 개발(장애유형별 특화형 일자리 개발 등) - 직업재활 관련 조사·연구	- 지원사업 수행기관 관리 -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 사업홍보 및 컨설팅 - 직업재활사업 관련 조사·연구 - 기록 및 행정업무 등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사업주지원 - 장애인지원 - 교육훈련 -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등	- 맞춤훈련 및 능력개발 훈련 계획 및 실시 - 상담 및 평가 계획수립 및 실시 - 지원고용 및 취업알선 - 보조공학기기 지원 - 훈련기관 등 관리 및 지원업무 - 기록 및 행정업무 등
근로 복지공단	- 원직장복귀지원 - 직업재활급여 - 창업지원 및 취업 알선 사업 - 직업훈련기관 위탁 등	- 상담 계획수립 및 실시 - 취업알선 - 창업지원 - 직업훈련 지원 - 기록 및 행정업무 등

2) 직업재활 전문가 기준에 따른 업무

(1) 한국직업재활사협회

- 케이스발굴, 초기면접, 진단, 서비스 적격성 판정, 재활계획의 수립과 완성, 재활 서비스 제공, 직업배치 및 사후지도, 취업 후 서비스 등으로 제시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 7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직업적응 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3) NCS(국가직무능력표준)

- 장애, 산재, 질병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진단하고, 구직효능감을 증진시켜 직업생활을 돕는 능력으로 정의함.
- 장애인에 적합한 상담실시, 취업을 위한 검사, 취업알선 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업무를 처리한다고 정의함.

3. 결론 및 제언

1) 최근연구 : 8가지의 대영역과 세부업무(중요성에 따라 나열)

① 상담(21개 세부업무)
② 직업개발 및 배치(20개 세부업무)
③ 사례관리(14개 세부업무)
④ 평가(12개 세부업무)
⑤ 옹호(5개 세부업무)
⑥ 행정(7개 세부업무)
⑦ 훈련(9개 세부업무)
⑧ 연구 및 지식활용(13개 세부업무)

2) 직업재활기술척도를 활용한 연구(신현욱, 2013)

- 취업지원, 자원활용, 직업평가, 직업상담 및 심리지원, 사례관리, 정보활용, 장애인식개선의 7개 직무역할요인과 96개의 세무직무영역 제시

3) 직업재활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①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에서와 같이 직업재활 전문가의 자격을 세분화.

- 일본의 경우 어떤 기관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잡코치의 명칭을 달리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서도 어떠한 기관에서 배치되느냐에 따라 명칭과 자격기준을 달리함. 장애인 직업재활의 영역이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복잡한 만큼 배치되는 기관과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자격명과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여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직업재활 전문가의 자격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자격기준 마련이 요구됨.

② 직업재활사의 자격기준에 유연함

- 장애인의 직업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직업재활 전문가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유연하게 마련하여 장애인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본 학력 요건을 갖춘 자가 6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직업재활 준전문가로 자격을 부여하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배치되어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③ 직업재활 전문가의 업무영역과 직무분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직무를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향후 효과적으로 전문적인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기여가 필요함.

Ⅱ.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적용 방안

1. 들어가며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부재, 지원고용 제도의 미비 그리고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의 노동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직업재활사 등 장애전문가가 근무하는 직업재활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들의 선호도로 인해 직업재활시설 입소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직업생활시설은 그 중요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부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안에서 직업재활시설은 임금지급에 대한 부담을 까지 안고 운영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보호작업장의 저임금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2년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할 필요성을 제기 하였으며 적용제외인가 제도를 폐지하고 감액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는 장애인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차원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되었다.

(1) 직업재활시설 현황과 변화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은 시설 간 매출 편차는 심하다. 70만원 이상의 높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발달장애인도 있으나 아직까지 종일 앉아서 조립이나 생산 활동을 하는데도 한 달 임금이 10만원을 넘지 못하는 직업재활시설도 37.7%로 조사되었다.

현재 적용제외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의 92.4%가 직업재활시설이며 시설에서 최저임금제외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상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이들의 대한 장려금이 지급되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 장애정도와 직무능력을 따라 최저임금 삭감분을 결정하는 최저임금감액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기본적인 안은 장애인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등급을 몇 단계로 나눈 뒤 이에 맞춰 일정비율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감액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크게 세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보호고용으로 근무하기에는 경증인 대상자, 최저임금 적격대상,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에는 현저히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최저임금감액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현황과 논의에 대한 개선방안

- 2013년 기준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장애인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755원으로 최저임금의 57.1%에 불과함.
- 법정 최저임금이 매해 상승하는 반면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정부에서는 최저임금감액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① 다양한 생산품을 만드는 직업재활시설의 직무에 대한 표준화가 어려움.
  ② 직업재활시설들 간의 인력지원 규모로 인한 형평성 문제
  ③ 감액제도의 하한선이 낮다면 현제 적용제외 상황과 크게 변화가 없음.
  ④ 감액제도의 상한선이 높다면 직업재활시설의 임금 부담

* 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의 변화가 있어야 함.

① 생산성이 높은 보호작업장의 경우 근로사업장으로 전이시켜야 함.
-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탈 수급 및 장애정도에 따른 시간제 근무 허용

② 감액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보호작업장
- 감액기준은 4등급으로 설정하여 3년주기로 평가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지원.

③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핸 별도의 기관 마련
-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 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를 위한 장애인근로능력평가기준(변경희 외,2015)

직업생활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 결근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면서 건강상태(신체적/정신적)를 유지할 수 있다
	스스로 출퇴근을 위한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직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정해진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
대인관계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
	직장의 상하관계, 지휘명령체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작업능력	체력적으로 하루 8시간동안 일을 할 수 있다
	작업지시에 따라 스스로 작업을 할 수 있다
	작업 중 불량품의 구분, 부품이나 전표 등을 판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맡은 업무나 작업을 실수 없이 정확히 수행할 수 있다
	위험물, 위험장소 등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다
작업태도	주위가 산만해도 직무수행속도에 변화가 없고 집중하여 일한다
	어떤 작업에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있다
	일에 대한 의욕이 있다

2. 정리하면

최저임금제도를 고려할 때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직업재활시설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장애인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재활과 고용이 공존하는 영역이 있는 자들이다.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 근로자들을 작업시간 외에도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고, 작업 외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간들도 많기 때문이다. 근로사업장 역시 근로시간에 관한 논란을 갖고 있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2006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보호작업장 내 장애인은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보호작업장 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한 강한 종속성, 근로의 계속성, 최저임금, 4대보험 가입 등을 통해 광의적 해석기준에 의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렸다. 시간이 지나 2011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보호고용된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직업재활시설이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이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에 대해 별도의 우선구매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다양한 의무구매제도가 생기게 되어 직업재활시설만의 보호된 시장이 만들어져야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 많은 소득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직업재활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감면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작업장의 장애인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는 노동법 적용에 앞서 사회보장법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의 확대는 독자적인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보편적 사회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패러다임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교육·연수보고서 15-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무회계교육

주 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기 간		2015.4.27. 09:00~13:00
장 소		인재개발원 대강당
참석자	팀 명	**활동지원팀**
	명 단	**김은정**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일
	시 간	총 4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무회계교육

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및 감사 사례교육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사회복지봉사과 신병철

(1)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일반

1) 사업수행 형태에 따른 적용 법령

구분	자부담 사업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기본법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보건복지부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보건복지부령)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에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인천) 보조금 교부조건 (인천)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 계산증명규칙(감사원)

2) 재무회계 총칙

목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기본원칙	재무·회계의 건전성 확보
회계연도	정부 회계연도 기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납기한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회계구분	법인회계 : 당해 법인 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회계 :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회계,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 회계

(2) 예산결산 및 수입 지출

예산	결산	수입, 지출
예산의 개념 및 원칙 예산의 편성 과정 예산 첨부서류 예산의 종류 탄력적 예산운용제도	결산서 작성 결산서 첨부서류	수입금 수납 및 반납 지출원칙 및 방법 지출체계 지출결의서 작성

1) 예산의 개념

1년 단위로 작성하며, 연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세입추계를 세출로 배분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음

2) 예산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원칙 (제4조)	당해연도 예산은 → 당해연도 세입으로 지출 예외) 이월, 과년도 지출 등
예산총계 주의원칙 (제8조)	모든 세입.세출은 →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예외) 일시차입금 등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 (제15조)	모든 예산은 →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 예외) 전용 등

●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인건비,시설비,상황금

3) 예산의 종류

①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가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

②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편성이 필요한 경우 : 수입,지출이 현격히 증가되거나 현저히 감소되는 경우)

4) 예산의 편성 과정

항목	주체	시기
예산편성요령 작성 (지침)	법인대표이사 시장, 군수, 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필요시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편성 (법인,시설구분)	법인 이사회 의결	회계 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예산서 제출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회계 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설별 예산개요 공고	시장, 군수, 구청장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시,군, 구 게시판과 인터넷에 20일 이상 공고
법인 예산 공고	법인의 대표, 시설의 장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 인터넷에 20일 이상 -정기간행물로 갈음 가능

5) 지출의 원칙 및 방법

원칙	방법
-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	- 상용·소액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함 - 지출원은 상용·소액 경비 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규칙 제 29조)

6) 지출결의서 작성

항목	적용과목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제수당,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신용카드 집행 등	품의서, 지급·거래내역서, 청구서, 영수증
봉급 지출 결의서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의 인건비	봉급대장
구입과 지출 결의서	물품구입, 인쇄물제작, 자산취득비 등	구매계획, 품의서, 견적서, 계약서, 거래내역서, 검수조서, 청구서, 영수증
공사(수선) 집행 결의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공사 장비 수선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	공사계획, 품의서, 견적서, 계약서, 거래내역서, 준공검사조서, 청구서, 영수증 등

7) 일반적 거래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중 ④⑤의 번호가 01~79 개인사업자(과세업자), 90~99번 면세업자 -④⑤의 번호가 8*로 시작하는 법인사업자 ☞ 세금계산서 구비시 영수와 청구 확인 (청구시 거래명세서 첨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1만원 이상 지출 신용카드 집행 ☞카드가맹점 무통장 입금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제 12조, 동법 10조 (사이버몰 운영) 규정 2천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시 가능

(3) 주요 감사지적 사례

- 사회복지시설 시간외 수당 부당 지급
- 장애인복지시설 입소보증금 부당 사용
- 사회복지법인 특별위로금 부당집행
- 정신요양시설 퇴직적립금 부당 집행 및 미반납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수익금 승인 없이 사용
- 노인복지시설 기관운영비 등 유류비 등 사적 사용
-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입소자 수당 횡.유용
- 노인시설의 운영비를 원장의 사적 용도로 부당집행 등

Ⅱ. 활용방안

- 회계업무의 총체적 개론을 알 수 있었고, 실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타기관 감사 지적사례에 대한 구체적 예시로, 조심사항 숙지후 사업운영에 반영할것임

교육·연수보고서 15-16

2015년도 전국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사업 교육연수

주 최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 간		2015.11.12 14:00 ~ 11.13 13:00
장 소		대전 유성호텔 3F 킹홀
참석자	팀 명	**활동지원팀**
	명 단	**김영미, 박상아, 이연정**
	인 원	총 3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2일
	시 간	총 7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Ⅰ 정책강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및 향후 운영방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신재귀 행정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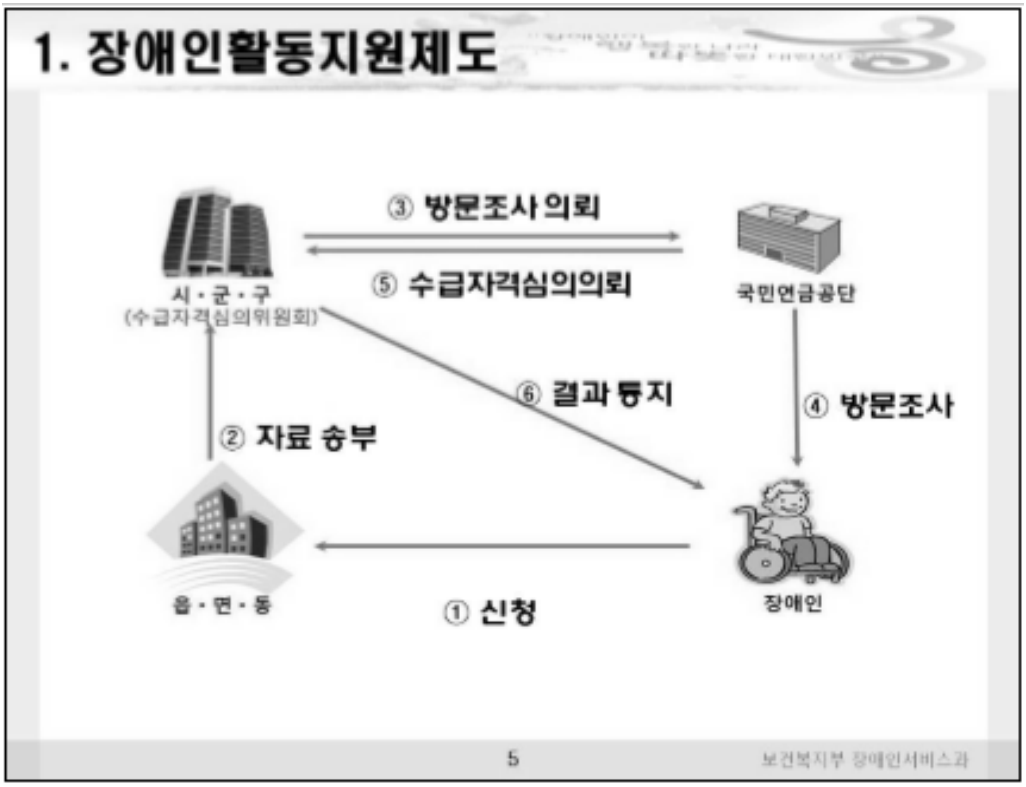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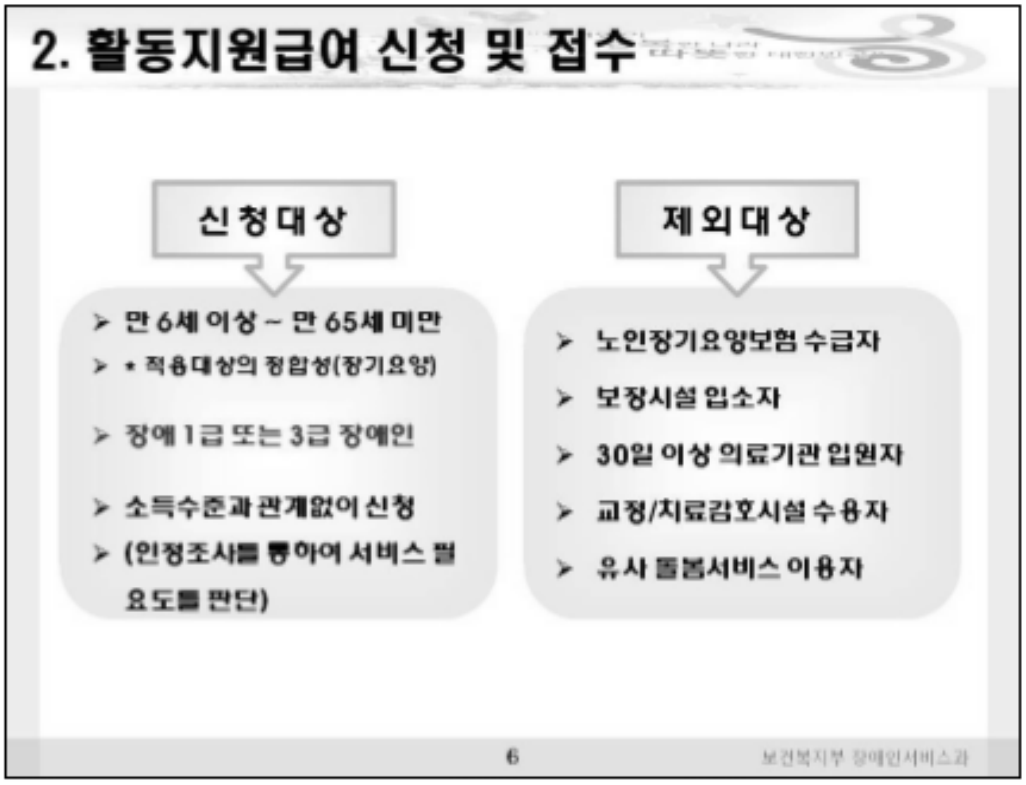

6. 활동지원제도 개편방안

장애인욕구 반영 인정조사 및 급여체계 마련

- 신청자격 : 1, 2, 3급 장애인 ▶ **장애등급 제한 폐지 및 장애아동 복지사업 통합운영**
- 인정조사 : 신체기능 중심 ▶ 장애인 욕구 반영을 위한 **자기평가절차 도입**
- 급여 확대 : 41~335만원(이용액 1,027천원,120시간/인) ▶ **사회활동 중심 확대**
- 활동지원급여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다양화**
- 응급안전서비스 : 20개 시군구, 21백명 ▶ **지역/대상 확대(78개 시군구, 82백명)**
- 서비스공백 : 전담관리인력을 대체인력 임시 활용 ▶ **상근직 확보**

6. 활동지원제도 개편방안

전담관리인력 및 활동보조인 역량 강화

- 전담관리인력 : 1명 이상 배치 ▶ **활동지원인력 50명당 1명 배치**
- 활동보조인 전문성 : 신규/보수교육 부실 ▶ **교육과정 개선 등 전문성 제고**
- 활동지원인력 이력관리 : 관리체계 미비 ▶ **자격 및 이력관리 체계 마련**
- 활동보조 수가 : 6,550원/시간 ▶ **다른 돌봄서비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서비스 난이도 반영 : 단일 수가 체계 ▶ **서비스 난이도에 따른 가산금 지급**
- 활동보조인 연계 : 이용자-보조인 1:1 장시간 서비스▶ **복수 활동보조인 연계**

6. 활동지원제도 개편방안

인프라 확충 및 사후관리 강화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인정조사 결과 형식적 심의 ▶ **수급자격 심의 내실화**
- 인정조사 인력 (연금공단): 전문성 미흡 ▶ **인정조사 교육 체계화로 전문성 제고**
- 활동지원기관 운영 : 지정제 ▶ **기관 (인력) 적정 수 지정 유도**
- 활동지원기관 평가 : 시범 평가 ▶ **정기평가 및 결과공개, 인센티브/컨설팅 제공**
- 수급자 교육 : 제공기관 중심 일회성 교육 ▶ **단계별 집합/개별교육(지자체/공단)**
- 바우처 결제 지원 : 현장 지원기능 부재 ▶ 문자서비스 제공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 : 수급자 제재조치 미흡 ▶ **급여제한 등 제재 강화**

7. 2015년도 정책 핵심이슈

- (신청자격 확대) 현행 1~2급 장애인에서 3급 이하 장애인까지 급여신청 자격 확대 (2015년 6월~, 17년까지 단계적 폐지)
  - * 최근 화재 등에 따른 중증장애인 인명사고 발생으로 장애계에서 활동지원 신청자격의 장애등급 제한 폐지와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강하게 요청
  - **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지속 요구 제기
- (급여 확대) 2013.8월부터 최중증 독거 수급자에게 월 3,351천원 (391시간)의 급여 제공(지자체 추가지원 제외)
  - * 요양 위주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에서 탈피하여 자립생활 또는 사회참여 확대 유도
-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저임금-고강도 육체노동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
  - * 2015년 서비스단가 3% 인상(8,810원/시간)
- 수급자의 급여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부정수급 대응강화

Ⅱ 사례발표 [활동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서산시장애인복지관 김경수 사회복지사

1. 프로그램 개발 동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업무를 2012년 1월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활동보조 이용자와 보조인을 관리하며, 사무적으로 처리해야 될 잔업무가 많고 금전과 관계되어 정확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장애인으로 문서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정작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왔습니다.

2. 프로그램 사용환경

C/S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며, 윈도우XP, 윈도우7, 윈도우8에서 작동합니다.

3.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이력관리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이력사항을 따로 만들지 않고 기초 데이터를 등록하고 연계만으로 관리카드로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용자와 보조인 연계 시 정보로 활용합니다. 또한 전담인력이 예고 없이 바뀌어도 활동지원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유형별 실인원/연인원

기간 : 2015-09-01 ~ 2015-09-30

	장 애 유 형	실 인 원	연인원	비고
1	뇌병변장애	19	518	
2	시각장애	12	301	
3	신장장애	1	10	
4	지체장애	22	612	
5	지적장애	46	1,043	
6	지체장애	26	580	
합 계		126	3,064	

5. 10분만에 끝내는 급여계산

- 급여계산은 전자바우처에서 바우처이용내역(엑셀화일)을 다운받아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계산을 합니다.
- 급여계산은 시급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최저임금(법정수당)으로 계산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지원합니다.

- 최저임금 방식 급여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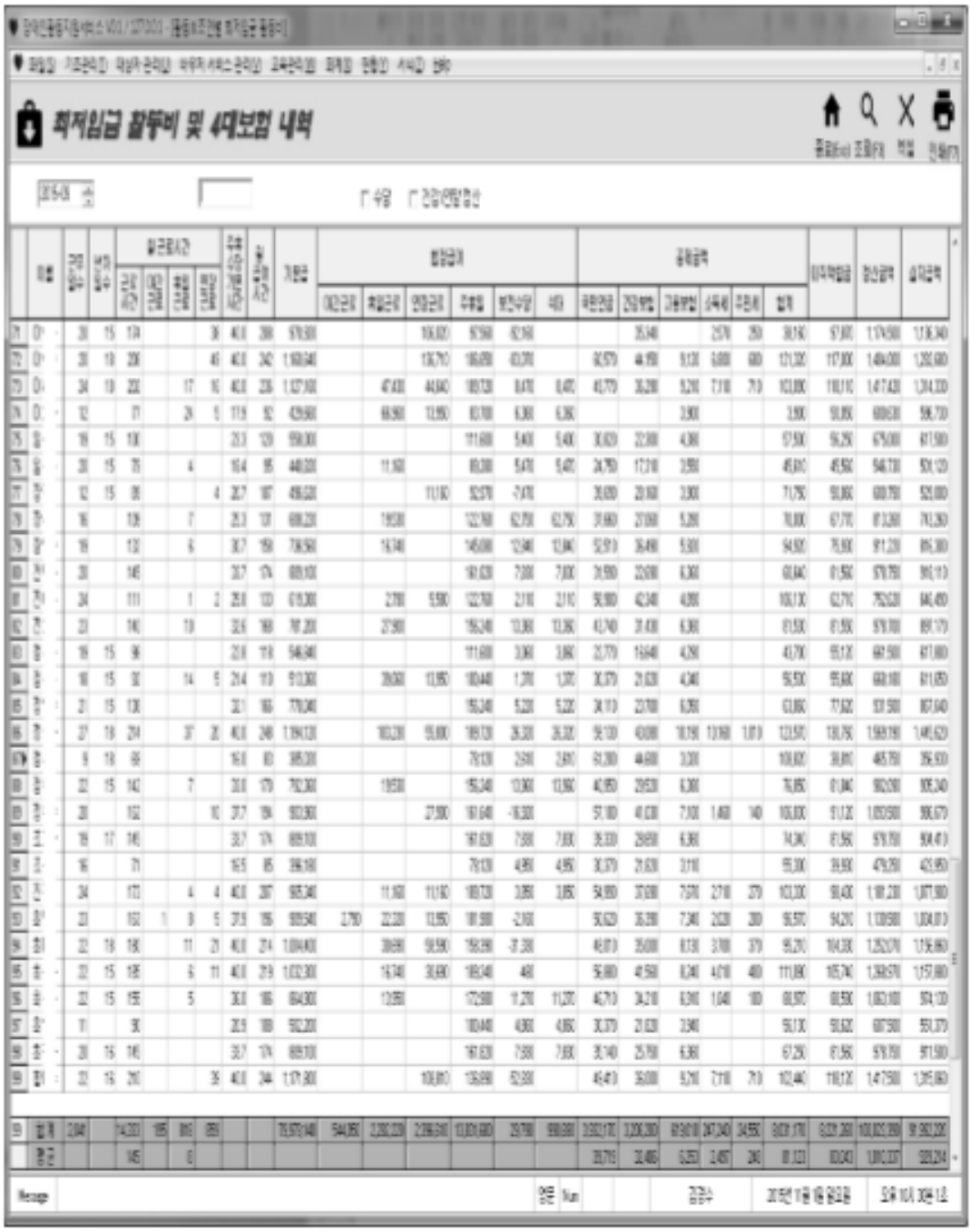

Ⅲ 전문강의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이해 “사례중심의 활동지원사업 법률적 접근”]

-노무법인 다음 김현민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1.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인당 1벌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2년 이내의 단기계약이 있음.

○ 2년 이내의 단기계약을 반복하여 2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 됨.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시간의 개념 ○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근로시간은 작업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

○ 따라서 교육이 강제되어 있는 경우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초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2) 법정근로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월 기준근로시간은 172시간(연장근로 포함 224시간)

○ 즉, 1월간 근로시간이 2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7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 함.

3) 휴게시간

○ 휴게시간이란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함. 따라 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상태가 아닌 시간, 즉 다음의 근로 를 대기하고 있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님.

○ 휴게시간의 길이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함.

○ 휴게시간은 무급임

3. 연장·야간·휴일근로

1) 의의

○ 연장근로란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서 시간외 근로
라고 하며,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

2)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 사용자가 경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해 할증임금 50%를 지급.

○ 법내 초과근로 –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준근로시간내의 소정근로시간 초과의 연장근로는 법내 초과근로로서 노사당사자간에 할증임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할증임금 대상이 아님. 다만 2014. 9. 19.부터 법내 초과근로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할증임금 50%를 적용하여야 함.

3) 활동보조인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 임금

○ 임금의 지급

-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의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해야 함.

☞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 연장근로(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형식이라도 연장근로 등에 따른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기본급 ×)

예시) 활동보조인 임금 산정기준

구 분	일반수가	심야 · 공휴수가	비 고
활동보조 수가	8,550원	12,830원	
임금	6,420원	9,630원 (일반수가의 150%)	

* 임금지급 의무(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근로시간 및 임금 적용 검토, 2013. 8. 20.)

4. 휴일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휴일은 일요일에 주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요일이든 상관없음.

○ 국경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약정한 경우에만 약정유급휴일이 될 수 있음.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임,

○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4주간의 총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

○ 1월 근로시간이 64시간 이하(15시간*4.3주=64.5시간)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은 적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적용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5. 연차유급휴가

1) 의의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가를 받는 것.

2) 요건

○ 1년간 80% 이상의 출근이 있어야 함.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

초 1년근로의 경우 1년 계속근로에 대한 휴가에 포함됨.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 산후의 여자가 근로기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3) 연차휴가의 일수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위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그 휴가 총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4)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기타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변경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처리 할 수 있음.
○ 1월 근로시간이 64시간 이하(15시간*4.3주=64.5시간)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6. 모성 보호
1) 생리휴가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무급)
2) 산전후 휴가 및 임신 기간 단축 근무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보호휴가 90일을 주어야 하며,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다태아 출산의 경우 120일, 60일) ⇒ 유산·사산의 경우

1.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산전후 휴기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 출산의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하며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임신 후 12주 이내 도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허락하여야 함. 단축 후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이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은 금지

3) 배우자 출산휴가

○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최초 3일 유급)

4)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예외)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8. 퇴직금

1) 지급요건 ○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퇴직. 퇴직은 임의퇴직 · 합의해약, 계약기간의 만료 에 의한 퇴직, 정년퇴직,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 모든 사유의 퇴직을 포함.

○ 1월 근로시간이 64시간 이하(15시간*4.3주=64.5시간)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2) 퇴직금 산정

○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

○ 1년 이상 근속기간 중 단수가 있는 경우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

3) 퇴직금의 지급시기

○ 근로자 퇴직하는 때, 퇴직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4) 퇴직금 중간정산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 한정)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

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5)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

○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됨. 차등제도를 두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무효.

6) 퇴직연금보험

○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의 퇴직연금보험의 요건을 갖춘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안됨.

○ 퇴직연금보험의 요건 ·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것일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피보험자 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금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 보험사업자 등이 퇴직보험 등의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 보험사업자 등의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예상액을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Ⅲ 교육 소감

－활동지원팀 박상아

활동지원사업의 현안은 최저임금의 상승과 연차수당 지급 등 활동지원인에게 지급할 임금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에 비해,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수가는 매우 적은 금액이 상승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교육 때 긍정적인 내용을 듣고자 참여하였는데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제공기관 담당자라면 누구나 아는 활동지원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수가와 임금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수가를 상향조정하기 어려우므로 제공기관에서 이해해달라는 말 뿐이었다. 이 때문에 제공기관 담당자들의 불만이 매우 많았다. 근로기준법과 노무 관련 강의를 하신 노무사님은 제공기관이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고충을 피력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가 상향 조정을 촉구하도록 권했다. 차후 제공기관이 모여서 활동지원인 임금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연수보고서 15-17

사회복지 팀장 사관학교

주 최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기 간		2015년 7월 6일 - 7월 21일 / 10:00~17:00	
장 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	
참석자	팀 명	상담사례지원, 직업지원, 가족문화지원	
	명 단	이정화, 강명진, 박성묵	
	인 원	총 3명	
교육 시간	일 자	7/6, 10, 15, 17, 21	
	시 간	이정화	21시간
		강명진	28시간
		박성묵	

Ⅰ. 교육개요

1. 교 육 명 : 2015년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사회복지 팀장 사관학교'

2. 기간 및 참석자

- 2015.7.6.~7.21. / 10:00~17:00(3회기) : 이정화
- 2015.7.6.~7.21. / 10:00~17:00(4회기) : 강명진
- 2015.7.6.~7.21. / 10:00~17:00(4회기) : 박성묵

3. 장　　소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인천 남동구 용천로 208)

4. 주제 및 내용

회기	날짜	주제	담당강사	참석자명
1	7.6.	■사회사업 생태체계의 이해와 적용 - 사회사업가의 핵심 정체성과 포지셔닝	양원석	이정화 강명진 박성묵
3	7.10.	■사례관리 표준 전과와 완전정복 및 자원개발과 사업기획의 핵심 원리와 실제	이경국	이정화 박성묵
5	7.15.	■팀장들의 관리기법A~Z, 확실히 쓸어담자! - 이해관계자, 회의, 시간, 일정관리 등등	김세민	강명진
6	7.17.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초적 조직 진단 기법을 활용한 팀 이해/빌딩의 첫걸음	표경흠	박성묵
7	7.21.	■조직소통의 핵심, 그 곳에 팀장이 있다.' -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팀장 리더십과 팔로워십	김미경	이정화 강명진 박성묵

5. 교육주관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사업 생태체계의 이해와 적용

– 사회사업가의 핵심 정체성과 포지셔닝 –

양원석(푸른복지사무소 소장)

한국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사업하는가?

사회복지하는가?

한국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 Social Welfare

사회사업 : Social Work

사회복지사 : Social Worke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
국제사회복지사연맹 총회의 사회복지 정의?

2014년 7월 호주 멜버른 IFSW(국제사회복지사연맹)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국제 사회복지 정의(Global Definition of Social Work)가 채택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실천에 기반을 둔 전문직이며 사회변화와 발전, 사회통합, 그리고 인간의 역량강화와 해방을 촉진하는 학문이다. 사회정의, 인권, 집단적 책임과 다양성 존중의 원칙은 사회복지의 중심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및 사회과학 이론, 인문학과 토착 지식에 근거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인간과 구조를 연계한다."

- "Social work is a practice-based profession and an academic discipline that promotes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social cohesion, and the empowerment and liberation of people.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human rights,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respect for diversities are central to social work. Underpinned by theories of social work, social sciences, humanities and indigenous knowledge, social work engages people and structures to address life challenges and enhance wellbeing."

초광역 학문으로서 사회복지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가
전담하는가?

건강은 의사가 전담하는가?	
	 초광역 학문으로서 사회복지
한국에서 사회사업가는 행정, 정책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음.	한국에서 사회사업가는 안 하는 것이 없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음.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위기.
!	3
사회사업을 개념에 따라 일관성 있게	사회사업이란?
?	!
사회복지의 개념	인간관

환경 속의 인간

PIE

!

주요 과목

!

사회사업 대상

생태체계

= 당사자체계 + 환경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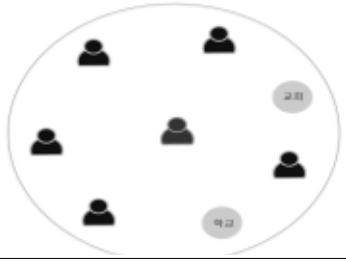

!

개입지점

당사자체계만?

환경체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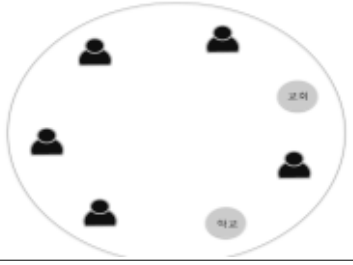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사회사업은 박쥐?

도대체
사회사업은
어디에 관여하는가?

생태체계 = 관계와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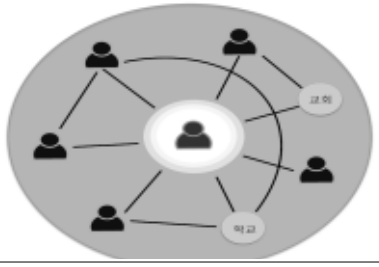

관계와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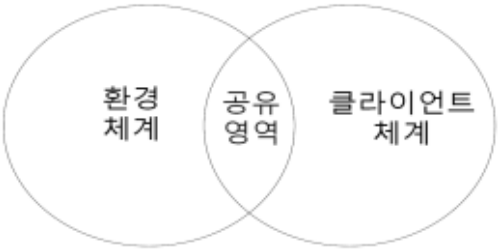

같은 구성요소라도
관계와 상호작용에 따라
행태가 달라짐.

관계 = 연결

상호작용 = 공생(상호적응)

관계 = 연결

상호작용 = 공생(상호적응)

?

사회사업은
약자, 사안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두 체계가 맞지 않는다.

관계와 상호작용이 무너졌다.

원인 :
관계 또는 공생의 상호작용이 무너짐.

증상 :
부적응, 불편, 자원부족 등

원인 : 관계가 끊어짐.

증상 : 자원부족 등

원인 : 관계가 끊어짐.

증상 : 고독사 등

원인 : 공생의 상호작용이 없음.
증상 : 우울 등

원인 : 상호적응의 상호작용이 없음.
증상 : 휠체어와 버스체계

3

생태체계(환경체계 포함)

공생하도록 도우려면

공생하려면?
관계가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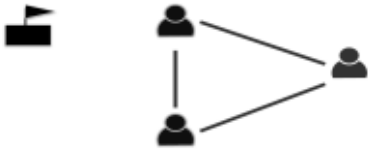

공생하려면?
관계가 평등 또는 보통이어야

공생하려면?
관계가 자연적이어야

1) 관계를 끊고 끼어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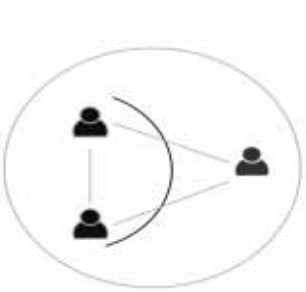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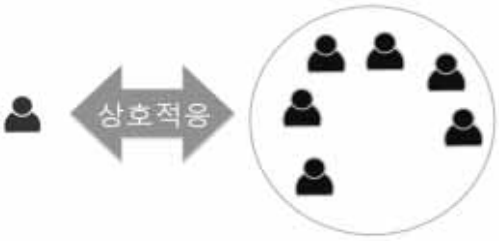	역설로 공생은 더 멀어짐.
! 사회사업 할수록 직접 관계하고 공생하도록	3-1) 생태체계 정의
체계 정의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는 요소의 집합	생태계 정의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생물, 무생물)의 집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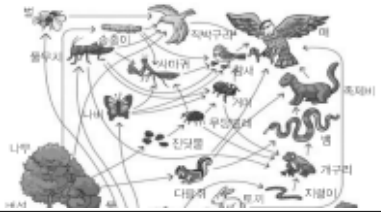
? 사회사업 생태체계	환경 속의 인간 Person-in-Environment

사회사업 생태체계 정의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인간, 환경)의 집합

1

생태체계이론의 태동

환원주의

전체 = 부분 + 부분 + 부분.....

부분 + 부분 + 부분.....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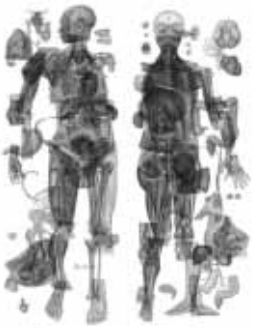

자동차가 고장나면?

고장난 부분만 수리!

장이 안 좋으면?

단선적 관점이
주류

세분화

전문성 강화
단절성 심화

?

사회사업가의
단선적 관점

문제가 생기면?
고장난 부분만 찾아서 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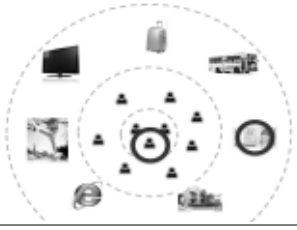

개념은
환경 속의 인간 이나

환경 또는 인간
어느 한 쪽에
계속 치우침.

단절성 심화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듯 하나
생태계 상으로는
문제가 심화됨.

1-2)

패러다임 전환
전일주의

일반체계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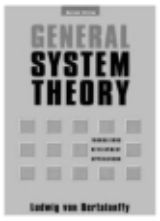

생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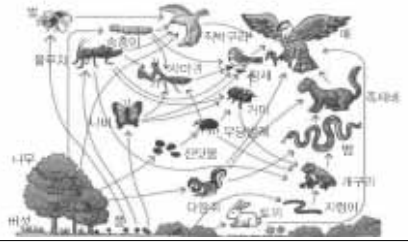

?

사회사업가의
단선적 관점

통합 시도

인간 또는 환경 중 어느 한 쪽에
치우는 경향을 벗어나고자

전일주의 이론 체계 구축을 시도

일반체계이론 + 생태학

1953년

1960년대

= 70년대 생태체계이론

2

한국 사회사업 변천과
생태체계 이론

자체 일관성(정합성)

1950년대 초반

자선사업, 응급구호

사회사업의 미정착

1950년대 초반 생태체계이론

1950년대 중반 ~ 60년대

외국민간원조기관 한국연합회
KAVA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사회사업의 정착기

1950년대 중반 ~ 60년대 생태체계이론

1970년대

사회(복지)정책Public (welfare) Policy 요구

외원기관의 철수로 인한
사회사업 위기

국내 생태체계이론 소개 안됨.

1970년대 생태체계이론

1980년대

'사회사업'이 '사회복지'로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도입
공공복지행정의 추가

생태체계이론을 번역 소개

초광역 학문으로서 사회복지

?

생태체계이론의 적용

1980년대

문제 현상을
사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준거틀로만 적용

생태체계이론은
단지 사정을 위한 도구일 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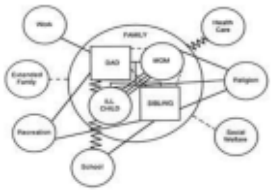

1980년대

사정까지만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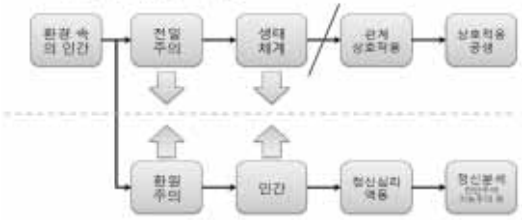

관여 : 전통적 사회사업

생태체계이론의 개선

!

사회사업이
생태도를 중시하는 이유

생태체계의 관계와 상호작용

277

4

사회사업가의 관점이란?

!

순이가 뚱뚱한 이유는?

의사의 눈으로 볼 때?

심리치료사의 눈으로 볼때는?

영양사의 눈으로 볼때는?

정책가의 눈으로 볼때는?

!

생태체계에서
문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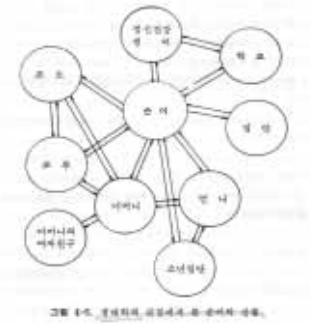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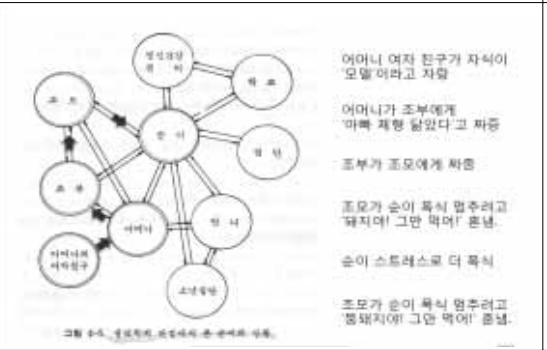

어머니 여자 친구가 자식이 '오멸'이라고 자랑

어머니가 조부에게 '마빡 제형 닮았다'고 자랑

조부가 조모에게 자랑

조모가 순이 목식 멈추려고 '돼지머' 그만 먹어' 혼냄.

순이 스트레스로 더 폭식

조모가 순이 목식 멈추려고 '돼지머' 그만 먹어' 혼냄.

관계와 상호작용이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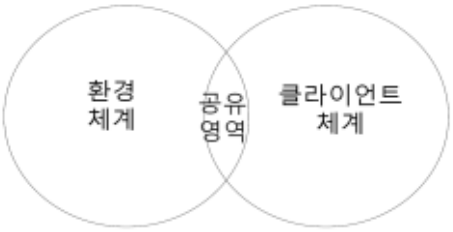

사회사업가로 잘 도우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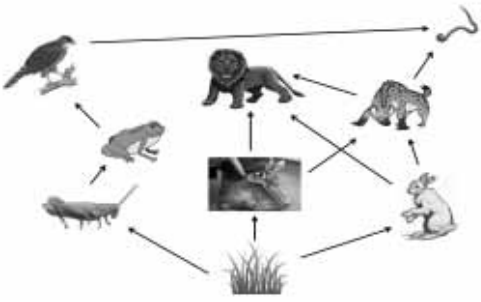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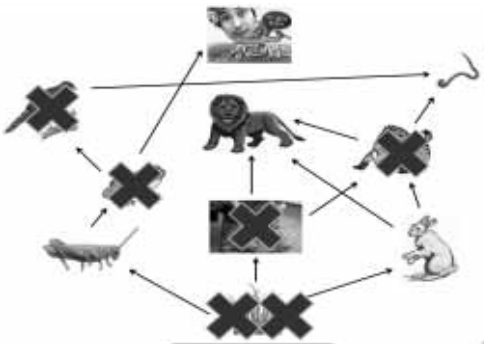

사회사업가라면?

당사자에게 자원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당사자와 자원을 주고받을
관계와 상호작용이 부족한 것인가?

사회사업가라면?

당사자의 자존감이 낮은 것인가?

아니면

당사자와 지지 격려를 주고받을
관계와 상호작용이 부족한 것인가?

사회사업가라면?

직원의 열정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열정을 지켜줄
관계와 상호작용이 부족한 것인가?

?

사회사업이란?

생태체계(환경체계, 당사자체계)를
대상으로 하되

공유영역(관계와 상호작용)을 살려

= 자주 또는 자생케 하고

동시에

= 공생하는 활동

사람이 동일해도
서로 외면하는 생태체계

사람이 동일해도
서로 감싸주는 생태체계

통합적 접근 주장 :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인간 혹은 환경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을 가짐.
–
'환경 속의 인간'의 개념을 실천하지 못함.

5

관계를 살피는 사회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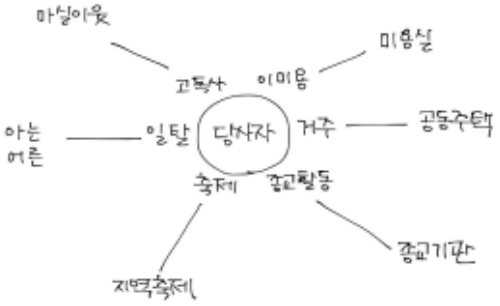

아이들의 일탈행동을 사회사업가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이들의 인성 탓인가?

아니면

일탈행동을 이겨낼 지지와 격려를 줄 관계와 상호작용이 부족한 것인가?

원정 비행

왜 연예인은 외국에서 휴가를 보낼까?

관계는 사회 규범을 지키게 하는 사회 압력으로 작용

고독사를 사회사업가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홀몸 어르신을 복지기관이 살피지 못한 탓인가?

아니면

평상시 돌아보고 인정을 살필 관계와 상호작용이 부족한 것인가?

개입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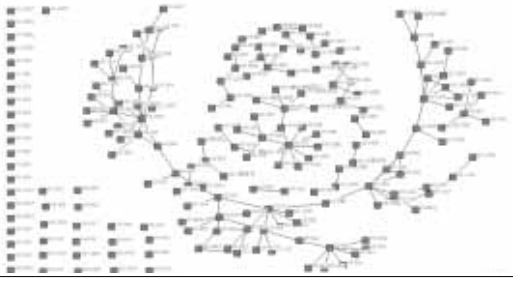

개입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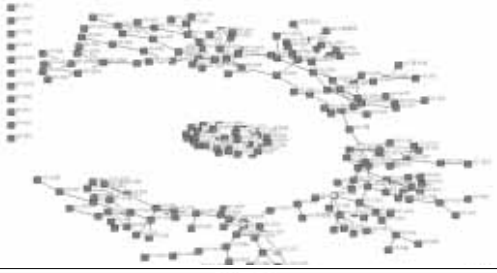

사례관리를 사회사업가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저기서 자원 가져다 주는 것인가

아니면

평상시 돌아보고 돕고 자원을 나누는 관계와 상호작용을 살리는 것인가?

장애인 이미용 욕구를 사회사업가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봉사자 모셔와 시설에서 서비스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장애인도 미용실에서 이미용 할 수 있는 관계와 상호작용을 살리는 것인가?

재가 노인 밑반찬 욕구를 사회사업가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회사업가가 밑반찬 만들어 제공하는 것인가

아니면

함께 밑반찬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관계와 상호작용을 살리는 것인가?

사회교육을
사회사업가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회사업가가 당사자에게 교육 전달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교육을 통해
관계와 상호작용을 살리는 것인가?

아이들이 어르신에게 SMS 교육.
이 사업을 통해 관계망을 넓히고 있음.

생태체계 사회사업이란? :

대등한 관계 또는 보통의 관계로 돕는다.
당사자와 환경이 직접 관계하도록 돕는다.
사람과 비공식 관계까지 돕는다.

공생을 훼손한 비윤리적 사회사업

직접 상호적응을 깨고 관계를 끊고 끼어들면

대등 또는 보통 관계를 잃고 특별 기생케 하면

사회적 체계에 크게 의존케 하면

!

근본에 부합하는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

• 근본이 떠난 사회사업은?

우리의 바른 가치관을 세워 살려야 한다. 그래야 그렇게 대우 받는다.	? 사회사업가로서 어떻게 사회사업 할까?
! 사회사업 할수록 직접 관계하고 공생하도록	• 당사자와 사회가 살려주는 사회사업
비윤리적 사회사업이란? 생물체계를 훼손하면 여쭙지 않아 심리체계를 훼손하면 내가 대신하여 자생성을 훼손하면	당사자체계 사회사업이란? : 생물체계를 돕는다. 여쭈어서 심리체계를 돕는다. 하실 수 있는 만큼 자생 또는 자주하도록 돕는다.
! 자생성을 살려야 합니다 최소한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도우려면? 물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 학교에서 사회사업은 작은 의미, 사회복지는 큰 의미로 배웠다.
- social welfare(사회복지), social work(사회사업),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태동

* 한국전쟁 후 자선과 응급구호 사업이 먼저 시작되었다.(자선과 응급구호는 사회사업이 아니다.)

* 개인에 초점을 두고, 시설을 만들어 집단생활을 시켰다.

*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 속에 시설을 만들었다.

* 자선과 응급구호 후 사회사업학과가 개설되었지만, 사회사업은 개인을 잘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학교에서 배울 때는 '환경 속의 개인'이라고 배우면서도)

* 현재는 사회복지라고 부른다. 1970년 초 까지 사회사업가라고 불리워졌다.

* 처우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다.(해외원조기관에서 사회사업가를 채용했기 때문에 임금이 높았다.)

* 해외원조기관이 철수하고, 1970년 말경 사회사업가가 취업할 곳이 없어질 뻔 했고, 개인이 문제라고 생각한 정부에서 정책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 시기에 외국에서 사회정책을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사업이 맞지 않았고, 이에 사회사업과 사회정책을 포함한 사회복지학과가 생겨났다.

* 학교에서 사회사업과 사회정책을 배우지만, 현장에서는 사회사업만 한다. 그리고 요즘 사회복지사는 레크도 하고, 도배도 한다.(농활가면 의학과는 의술행위만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다르다)

*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를 '초광역학문'이라고 한다.(정체성 훼손!) 다 잘 하지를 못하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고, 쓸모있게 잘 하는 것이 없다.

* 학교에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학문을 배우면서도 개인이 문제라는 '개인의 관점'으로만 생각한다.

*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생태체계=당사자체계+환경체계)

□ 생태체계이론의 태동

<환원주의>전체를 잘게 쪼개어 각 부분의 메커니즘을 밝혀내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부분 부분의 합이 전체이며, 전체는 부분으로 환원되고 부분은 전체로부터 분리 가능하다는 관점이 환원주의의 골격이다.

* 전체=부분+부분+…
* 인간을 이해하려면 쪼갠다.(심장, 신장, … →의학 발전)
* 고장난 부분을 고쳐준다.(눈이 좋지 않으면 눈을 고친다.)
* 단선적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부분, 부분이 좋으면 전체가 좋아진다는 생각)
* 전문성 강화, 단절성 심화

<전일주의>전체론, 복잡한 체계 전체는 단지 각 부분의 기능의 총화가 아니고 각 부분을 결정하는 통일체로 본다. 환원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모든 구성요소의 합계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환원주의와 전일주의 관점에 의한 사회사업>

환원주의	전일주의
* 단절성이 심화되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듯 하지만, 생태계상으로는 문제가 심화된다. * 개인의 문제로 보고 개입한다. 고장난 부분만 찾아서 개입한다. * 개인탓!(임파워먼트)	*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가 문제이면, 생태계 전체를 본다. * 사회탓!(사회제도, 정책)

→ 예전 사회사업가의 역할은,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탓으로 봤다.

→ 사회복지실천(사회사업)은 전일주의 관점을 둬야 한다.

□ 사회사업은 어디에 관여하는가?

* 학교에서 생태도를 배운다. 관계까지 파악하는 것을 배운다.(가계도, 생태도)

* 그런데 생태도를 그릴 때, 무엇을 받을까,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만 그린다.→자선과 응급구호 사업이지 사회사업이 아니다.

* 자원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다.(개인의 문제는 자원이 부족하다고만 생각!)

* 우리의 대상자를 염치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다.

(계속, 더 달라고...)

ex. 자원을 드릴 때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무엇을 나눠주는지만 본다.(사회복지사는 물건을 갖고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자원은 얼마나 드리면 만족할까? 만족하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한다.
* **사회사업은 '관계'에 관여**해야 한다.

□ 생태도 안에서 관계를 찾아라!

*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전문가이다.

ex. '순이가 뚱뚱한 이유?'

; 일반적으로 당연히 많이 먹으니까 뚱뚱하다고 생각한다.
; 의사는 왜 뚱뚱하게 되었는지 몸의 여기저기를 살핀다.
; 심리치료사는 정서적으로 걱정이나 불안이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 영양사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한다.

* 사회복지사는 당사자와 관계된 생태도를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계를 봐야 한다.(관계와 상호작용→생태학적 관점)
* 생태도 안에서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이다. 관계를 보라!
* 관계를 보지않고, 물건을 가져다 주고 있다.(자선과 응급구호이다.)
* 당사자만 보지말고, 생태도 속에서 문제를 찾는다.

□ 사회사업의 필요성 대두

- 사회사업가는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다.(사회복지사는 관계를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생태계가 중요하다. 맺어주지 않으면 맺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
- 개인을 돕되, 사회로서 돕는다.

* 본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주변사회외의 관계가 끊기면 사회 속에서 소용이 없다.
* 사회사업가는 돕고 나누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 당사자를 둘러싼 생태계를 바꾸고, 개인을 둘러싼 사회도 함께 바뀐다.
* 관계망이 촘촘해 질수록 개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변한다.
* 같은 구성요소라고 관계와 상호작용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 서비스가 증가하는 것 보다 본인들의 역량이 높아지자, 자립의지가 높아졌다.

□ **관계는 사회규범을 지키게 하는 사회압력으로 작용**

- 사회복지사는 관계를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보면 달라진다!>

→ 사람은 만나면 달라진다. 직접 상호작용하면 바뀐다.

→ 그러므로 관계 맺도록 해야 한다.

ex. 쥐를 잡고 싶을 때 쥐를 보지않고도 쥐약을 놓치만, 차를 몰다보면 쥐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차를 돌리게 됨.

ex. 사회교육을 해 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지만, 알고 있는 것을 전달만 해 달라고 부탁하라!
→ 사진관을 운영하거나 빵집을 운영하는 사장님께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을 부탁하면, 자신이 전문가이면서도 전문가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거절함. 일년에 한 번만 해 달라고 부탁해서 아이들을 만나게 해 줌. 아이들이 진지한 눈으로 쳐다보자, 한번으로 끝내려고 했던 교육을 자신의 사진관이나 빵집으로 데리고 가서 직접 보여주며 교육을 시키게 됨.

ex. 결연가정을 해 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지만,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라!
→ 가정해체가 예상되고 세아이들만 살고 있는 가정의 예를 들면, 아이들만 지내다보니 집이 많이 더럽고, 안전이 걱정이 되어 홈헬퍼를 파견해 준다고 하자, 아이들이 거절함. 집이 더러워도 자신들만의 공간이었고,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싫어함. 이에, 아파트 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묻고, 그 이웃을 찾아가서 아이들이 밥을 먹었는지 확인만 해 달라고 부탁함.(결연가정을 맺어달라고 말하지 않음) 그 이웃이 그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청소며 안전 등이 해결됨.

ex. 보성축제에 장애인이 처음 갔을 때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나 다음해에 또 찾아가자, 마을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편의시설을 만들어 줌.

<연결만 해 줄 뿐인데 사회연결망의 파급효과는 크다.>

→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적응을 하고, 적응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맞게 수정・보완한다.

ex. 고독사 해결을 위해 집집마다 찾아가서 하루에 한 번만 이웃을 들여다볼 수 있는지 부탁함. 직접 가서 보고는 마음이 달라져서 마실도, 장도, 이웃주민들과 함께 다니게 됨.(친구가 되어 손과 발이 되어주게 됨)

ex. 휠체어장애인이 미용실을 찾아감. 처음에는 미용실에서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다가 또 찾아오자, 경사로를 만들고 실내도 휠체어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침. 장애인이 지역주민의 자격으로, 손님의 자격(당연하게)으로 이용하게 됨.

<아는 사람한테는 차마 거절하지 못한다.>

ex. 보험설계사가 처음에 전화를 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끊는다. 그런데 자주 전화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알리고, 이후 방문하겠다고 하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함.

□ 책임이 분산되지 않도록 몰아줘야 한다.

→ 요즘 우리사회가 책임이 분산된 사회이다. 책임감을 몰아줘야 한다.

→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본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ex. 친구와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히면 아프다고 말하지만, 혼자 길을 가다가 부딪히면 아픔도 잊은 채 얼른 그 자리를 피한다.
→ 친구에게는 본성을 드러내도 수용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 농촌과 도시

<농촌> 정, 관계 중심, 공동체성이 있다.
싫은점-부부싸움을 하면 소문이 난다. 사생활이 없다.
좋은점-아플 때 이웃이 도와준다.

<도시> 사생활은 있지만, 관계가 없다. 공동체성이 없다.
(관계를 맺는데 계약서를 쓰고, 정으로 맺어졌다고 생각한다.)

→ 문제해결력

<과거> 개인역량+공동체역량

<현재> 개인역량만 강조(공동체역량이 빠짐)

ex. 페이스북에 아프다고 글을 올리면, 많은 글이 올라온다. 그러나 정작 와서 만져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 약한 관계는 많아지고 있으나 순도 높은 관계가 줄어들고 있다.

→ 사회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고 있으며, 못되어 지고 있다. '누군가 했겠지!(하겠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못 되어먹은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 아이들을 앉히고 싶을 때, "얘들아!"하고 부르는 순간 책임 분산이 생겨서 자리에 앉지 않음. 그러므로 한 명, 한 명에게 '앉아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해야 함.

ex. 구조상황 발생시,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함. 여러명이 있을 때는 구조를 도와주지 않지만, 한 명이 있을 때는 책임감이 높아지므로 구조가 더 잘 됨.

ex. 소식지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경우, 효과가 없음. '누가 하겠지!' 라고 생각하게 됨.

ex. 김장할 때, 한 포기만 더 해서 달라는 전단지를 뿌림. 한 명, 한 명씩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효과가 큼.

ex. 한 명이 있었을 때, 책을 떨어트리면 잘 도와주지만, 두명 이상이 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음.

□ 3의 법칙

→ 3명이 되면 상황을 바꾸는 힘이 생긴다. 상황을 바꾸게 되면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

→ 최소한 3명이 모이면,

실험1)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자, 사람들은 그냥 지나감. 3명이 하늘을 쳐다보자, 다른 사람들도 하늘을 처다보게 됨.

실험2) 노래방에서 한사람, 한사람씩 일으켜 세우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일어서게 됨.

□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라고 인식한다.

→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는다.(전문가가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ex. 지하철에서 행인이 지하철과 통로 사이에 빠졌을 때, 공익이 뛰어들어 구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음 어느 한 사람이 '밀어!'라고 외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지하철을 밀어서 행인을 구해냄.→전문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

→ 전문가가 있는데 자신(지역주민)이 참여하면 초라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에 참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지역주민은 생각한다.

→ 그러므로 전문성을 드러내면 안된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 낮은 수준의 일은 지역주민이 개입하고, 큰 수준의 문제는 전문성 있는 복지기관이 개입한다.

→ 지역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더 많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복지관이 많이 생길수록 복지참여가 낮아진다.

ex. 목욕탕이 많아야 할까요?(지역주민이 하는 일)이동목욕탕이 더 많아야 할까요?(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 목욕탕에 편의시설을 구축해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례관리 표준전과와 완전정복/
자원개발과 사업기획의 핵심원리와 실제

이경국(부산 감만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 드라마 “골든타임”으로 보는 사례관리

1) 사례관리란?

최근 사회복지 현장의 최대 이슈는 바로 “사례관리”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작금의 최대이슈가 아닌 오랜전부터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의 협력으로 현장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사례관리’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데 우리가 우리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사례관리라고 할 수 있다.

2) 드라마에서 나타난 사례관리

① 객관적 개입

사회복지사와 각 전문영역은 그 사례에 대해 어떤 한 전문 분야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초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② 준비된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

다가오는 사례에 대한 기본지식과 다양한 상황의 경험을 통하여 어떤 사례가 들어오더라도 그 사례를 기꺼이 받아 안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③ 사례에 대한 기본 브리핑 훈련

대상자의 기본적인 신상, 문제, 욕구에 대해 객관적인 기록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브리핑으로 진행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④ 단기목표의 설정

전제척인 문제해결을 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⑤ 케이스 컨퍼런스

케이스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시각을 공유>하고 <사례에 대한 정확한 개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사례회의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오고가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봉합하고 <문제해결의 선순위>를 결정해야한다.

⑥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번 최선의 방법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차선”을 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⑦ 사례관리의 생명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원인파악 및 개입, 그리고 결과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례의 흐름을 파악하여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⑧ 사례관리자는 기본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의 “기본매뉴얼”을 숙지하고, 인테이크 시 매뉴얼에 응당한 기본조사를 해야한다.
⑨ 전문적 개입에 따른 협업 필요
사례관리자는 자신의 전문분야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개입하는 다른 분야를 존중해야 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⑩ 대상의 문제해결에 대한지지(empowerment)
대상자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지지”를 함으로써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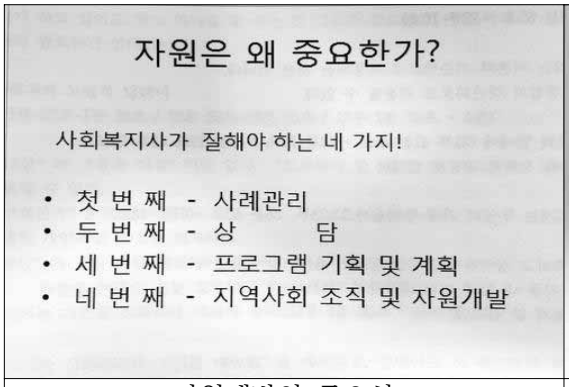

자원개발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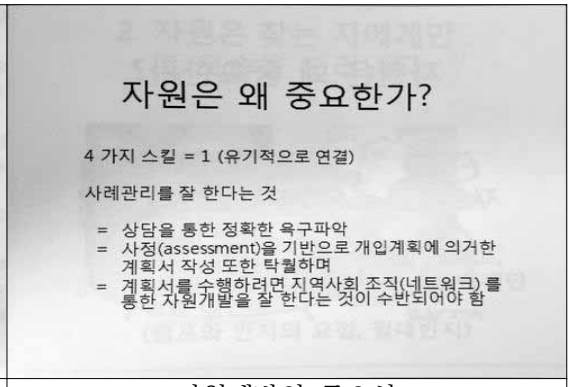

자원개발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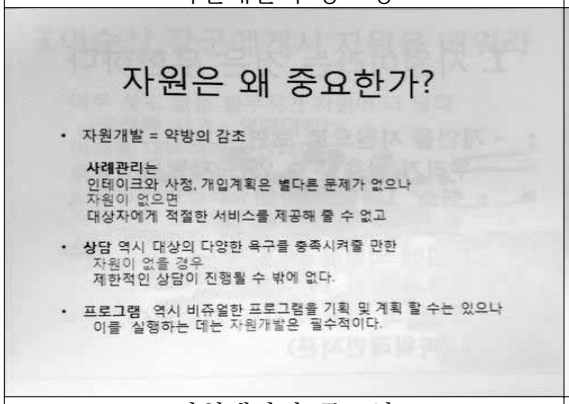

자원개발의 중요성

자원개발의 중요성

1. 자원이라는 것은 무한하다

- 개인을 자원으로 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최소 1만명 이상!!!
- 자원에 역할을 부여하면
  위에서 말한 1만명은
  5만명의 역할 까지도 가능하다.
  (파워레인저론)

자원의 역할

2. 자원은 찾는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자원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자원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 필요를 절실히 원하는 사람에게만
손을 내민다.
(램프와 반지의 요정, 절대반지)

자원의 역할

3.이순신 장군에게서 자원을 배워라

- 아무 것도 없는 황무지가 자원이 더 많다
  (긍정적 사고 - 명량대첩)
- 미래를 대비하라(선견지명)
- 융통성을 가져라.
- 노블레스 오블레쥬 를 실천하라.
- 지역사회 조직이 자원개발의 첩경이다.
- 지역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 12척의 배로 333척을 무찌르다.

자원의 역할

4. 영화 '나홀로 집에'의 주인공 멕컬리 컬킨은 자원활용의 귀재였다.

- 눈여겨 보라
- 욕심을 가지라

-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특성을 파악하라
-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
- 편견은 자원개발의 독이다.

자원활용의 예

5. 자원개발의 첩경 - LSV 기법

- L isten (들어라)
- S peak (말하라)
- V isual Vision (보여라)

사회복지사 = 사기꾼 = 마술사

자원개발기법

6. 자원을 개발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

- 자원에게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쏟으라
- 사회복지사는 게으르면 안된다.
- 깔대기가 되라

자원의 유지

7. 당신이 사회복지사가 되면서부터 내려받은 기술 '자원개발'

- 원래 당신은 자원을 매우 잘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사회복지사가 되면서부터 뭔가 특별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인해 자원개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8. NOW & HERE

- 그렇다면 지금 당신 앞자리, 옆자리, 뒷자리 에 있는 사람과 명함을 나누고, 통성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원이 필요한 지 나누라...

-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원만으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팀장들의 관리기법 A~Z, 확실히 쓸어담자!

김세민(비영리 컨설팅 웰펌 수석연구원)

이전에는 카리스마 리더십이었지만 지금은 정보의 공유로 인해 내가 가진 지식이 나만의 지식이 아니며, 최고의 지식도 아닌 시대이다.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최악의 직장동료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답답한 동료'가 1위로 뽑혀 상호 소통의 중요성이 검증되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며, 팀원들은 나를 어느 부류로 생각할까?

팀이란 성과 창출의 기본단위이며, 팀의 존재 이유는 일종의 팀의 미션이 된다. 팀장이란 '현장지휘자'로 '시키는 사람'이다. 즉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시켜서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하고 효과적이라고 할지라도 팀원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의무'가 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가 아닌 지휘자임을 명심하라.

1. 팀장은 왜 유능해야 하는가?

1) 설문조사 결과

①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누구인가?

- 1위 : 존경하는 상사(51.0%)
- 2위 : 첫 상사(35.0%)

② 상사의 무엇 때문에 사직을 생각했나?

- 1위 : 업무지시의 일관성이 없어서(37.6%)
- 2위 : 상사의 업무능력이 미흡해서(28.8%)
- 3위 : 인격적으로 불쾌하게 해서(23.8%)
- 4위 : 업무와 관계없는 일 지시해서(6.1%)

③ 기관 내에서 내가 경쟁하는 팀장들과 비교하여 상위 50%인가, 하위 50%인가?

- 상위 50%(87.6%), 하위 50%(12.4%)

첫 상사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못하든 많은 사람들이 입사 후 경험한 상사에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상사로부터 다양한 원인을 얻어 퇴사를 결심하게 된다. 반면 기관 내에서 내가 경쟁하는 팀장들과 비교하여 스스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팀장들이 많아 현실에 대한 직시가 부족함을 반증하고 있다.

2)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란?

정보, 의견, 감정들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co) 나아가 공동의(common) 것으로 만

든다는 뜻이다. '소통'은 나 자신을 알아주고 공감해 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예) 대부업체 광고 -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냄.
예) 후원자 개발 – 동정은 1회성이지만 공감을 이끌어내면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

3) 제노비스신드롬 : 책임의 분산
개인의 책임이 분산되었을 때 우리 팀내에서도 팀킬이 가능할 수 있는 비극적 현상이다. 책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업무의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기한, 방법, 역할을 정해주어야 한다.
예) 모금을 할 때 2,000포기 해야 하는데 1,000포기를 '한양'에서 도와주세요.
예) 20장의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면 팀원의 성장을 위해 25장, 30장을 요구하라.

2. 변화주도

1) 변화란 무엇인가?
기존의 것을 바꾸는 것, 팀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꾸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 변화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법 >
① 위기감을 조성하라
② 강력한 공조체제를 구성하라
③ 비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라
④ 비전을 공유하라
⑤ 비전 실현의 장애요인을 내버려두지 마라
⑥ 초기 성공사례를 창출하라
⑦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지 마라
⑧ 새로운 제도를 조직문화로 승화시켜라

<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5단계 >
① 1단계 : 변화의 필요성 인식하고 진단하며 공유하기
② 2단계 : 비전 설정하기
③ 3단계 : 변화에 대한 저항 극복하기
④ 4단계 : 변화에 대한 몰입 창출하기(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방법 : 동기부여)
⑤ 5단계 : 변화 지속하기

< 동기부여하는 방법 >
※ 성과=능력×동기부여 : 하나라도 0이 되면 전체가 0이 된다.
① 외적 동기부여 : 물질적, 경제적인 보상으로 생겨나는 동기
② 내적 동기부여 : 자아실현 욕구나 과업의 의미성 부여
→ 자기결정감이 들게 하라. 비전 설정, 의사결정 등 업무의 전 과정에 조직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 정보를 공유하여 아이디어를 요청
→ 유능하다고 느끼게 하라 : 본인의 업무가 조직의 큰 목표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인식
→ 조직의 일원으로 동료와 유대감을 갖게 하라

3. 목표관리

1) 우리 팀은 어떤 팀인가?
한 줄로 정의할 수 있는 우리팀의 강점은 무엇인가?
예) 원빈=잘 생김, 돈 잘 쓰는 팀, 서비스 잘 하는 팀

< 문제가 있는 팀의 특징 >
① 목표나 방침이 전달되지 않으며 잘못 전달되고 있다.
② 팀 구성원들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잠재돼 있다.
③ 팀 관점에서 일하지 않고 담당하는 일만을 중심적으로 수행해 틀에 박혀 있다.
④ 실패 혹은 문제점을 감추거나 공개를 꺼리는 습관을 갖고 있다.
⑤ 팀의 과제 달성이나 문제해결보다도 직급의 권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⑥ 팀 리더는 하찮은 일까지 지시하고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
⑦ 업무에 대한 권한위임이 돼 있지 않다.
⑧ 팀 구성원의 업적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 목표관리에 실패하는 7가지 이유>
① 비전, 전략, 목표의 연결성이 취약하다.
② 단기목표로 일관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다.
(장기목표가 단기에 달성됐을 때 예상 외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③ 중간점검이나 확인 없이 연말의 결과만을 관리하고 있다.
④ 목표설정이나 결과와 관련한 면담제도의 기능이 죽어있다.
⑤ 일상의 관리활동이나 목표관리 사이에 괴리가 있다.
⑥ 팀의 고유한 특성이 목표에 반영돼 있지 않다.
⑦ 직급수준에 맞지 않는 목표가 개인에게 할당되어 있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

2) 효과적인 팀이 되기 위한 결정적 키워드
① 소수인원
② 상호 보완적인 능력
③ 공동의 목적과 업무 수행 목표

④ 공동의 책임
⑤ 상호작용

<목표공유를 위한 핵심행동 순서>
① 목표를 제시할 준비를 먼저 하라 : 팀장은 목표가 무엇을 의미하며, 팀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목표를 제시하고 반응을 살펴라 : 목표를 제시할 때에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 목표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라 : 팀장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라.
④ 목표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하라 : 구성원들의 창조성, 경험, 개인적 이익에 호소 (팀장의 아이디어는 나중에)
⑤ 실행할 아이디어에 합의하라 : 구성원들이 합의한 아이디어 목록을 작성하고 실행할 순서를 정하라.
⑥ 목표달성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하라 : 팀장은 팀원들을 한 방향으로 정렬시켜야 한다.

4. 임파워먼트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재능,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신뢰성이 있는 직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며, 신뢰성이 낮은 직원에게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1) 임파워먼트가 안되는 이유
① 나보다 더 잘할 수 없다.
② 사소한 것까지 챙겨야 직성이 풀린다.
③ 직원이 안보이면 뭐 하는지 확인한다.
④ 기안서가 올라오면 기초자료부터 확인한다.
⑤ 팀장이 되기보다는 국어선생님이 된다.
팀장으로서의 일을 못한다는 결론이다. 임파워먼트는 파워가 부하에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창조되고 증대, 확산되는 과정이다. '권한위임'이 아니다.

2) 임파워먼트의 속성

속성	내용
권한부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자격, 능력)을 주는 것
자신감 증진	자신에 대한 가치의식을 증가시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함
자율성 부여	조직으로부터의 제약을 풀어주고, 구성원이 지니고 있는 지식이나 의욕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함
나아가게 하는 것	능력과 잠재력을 키워줌으로써 지속적 향상을 성취해 나가게 함

3) 집단 커뮤니케이션시 참고사항

① 자기인식의 3요소 활용

과업의 의미성	조직원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고 시간을 투자할 만한 일이다, 이것을 하면 우리 조직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강화
과업 수행능력	과업과 관련된 직원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교육하거나 지식을 알려주고, 직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속해서 코칭해 줌으로써 심리적 임파워먼트 강화
자기결정 선택권	과업 수행과 관련해서 일정한 수준의 결정권 부여 필요

② GROW 기법 활용

Goal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 확인
Reality	현재상황 비교, 이상적인 것만 강조하거나 현실적인 어려움만 강조하지 않도록 주의
Option	실행하기 위한 대안 탐색
Will	실행계획

③ 문서 커뮤니케이션

기획보고서 작성 방법	기획보고서 작성요소
타이틀(제목) 왜 하려 하는가? (필요성)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목적) 어떻게 하려는가? (목표)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계획)	간결한 개조식 표현 분명한 목적/배경을 제시 6W 3H에 의거하여 작성 객관적 자료와 대책을 명시 무엇보다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 Who 누가,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at 무엇을, How 어떻게, Why 왜, Whom 누구에게 하는 일인가, How much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How long 언제까지인가

5. 협력과 네트워킹

1) 조직 내 의사소통의 개선방안

① 피드백 이용 : 발신자는 의사소통의 왜곡이나 누락을 줄이기 위해 피드백을 이용해서 수신자가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함.

② 감정이입적 의사소통 : 의사소통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준거체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③ 중복성 :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잡음이 개입되지 않도록 간단한 병행통로를 이용하거나 반복해서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

④ 정보흐름의 조절 : 의사소통을 조절해서 관리자가 합리적인 정보의 유량을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의사소통 부하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음.

2) 질문하기 원칙 지키기

① 개방형 질문을 할 것 :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일까?

② '왜'라고 묻기보다 '어떻게'라고 묻기 : 왜 그렇게 하셨나요? →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③ 과거보다는 미래를 물을 것 : 그때와 무엇을 달리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④ 상대방이 의미하는 것을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단정하지 말 것 : 상대방 이야기의 끝부분을 당신이 마감해 주지 말 것, '당신이 어떻게 느낄지 알고 있어요'라는 말은 하지 말 것

6. 리더

L.E.A.D.E.R란	
Listen(경청)	상대방 입장에서 경청
Explain/Emphathy(설득/공감)	이해할 수 있게 설명
Assist(지원)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Discuss(토의)	납득할 때까지 충분히
Evaluation(평가)	정확한 평가
Response(행동)	바로 실천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적 조직진단기법을 활용한 팀이해/빌딩의 첫걸음

표경흠(비영리 컨설팅 웰펌 상임대표)

✎ 사회사업 잘한다? 제대로 일한다? 사회복지기관답다?
- ➟ '기준' 즉 '미션'이 필요하다.
- ➟ 基本亂而末治者否矣(기본란이말치자부의) : 근본이 어지러우면 말단이 잘 될 수 없다.

✎ 우리 조직의 목적을 향한 작은 밑그림을 아는가?
- ➟ 조직적 관점(조직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우리가 조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는 돈(급여) 이외에 '명예'와 '성장'까지를 포함한다.

✎ 우리가 바라는 삶이란?
- ➟ 작은 것에 소홀하지 않고, 보지 않는 데서 속이거나 숨기지 않고, 말로(末路)에도 게을리 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니라.
- ➟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것이며,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 개인이 가진 소중함을 인정해야 한다.

✎ 바람직한 삶이란?
- ➟ 인생은 행복과 함께 '의미'가 결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바람직한 인생은 행복한 삶일 뿐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어야 한다(생 텍쥐베리).
- ➟ 장미의 존재 의미와 가치는 '장미답게' 사는 것에 있듯이, 의미와 가치는 '본질'에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질에 충실한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실존하는 삶이다(키에르케고르).

✎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가?
- ➟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왜 사는가'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는다.
- ➟ 상처란 사회학적으로 정체성의 위기를 말한다.
- ➟ 정체성의 위기란 의미의 부재와 자아의 부정을 뜻한다.
- ➟ '왜 사는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개인 및 조직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확

인할 수 있다!

➟ 동료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고백하게 하라.

✎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가 무엇인가?

➟ 사람은 '육체적' 존재이자, '정신적' 존재이고, '사회적' 존재이다.

➟ '운동'을 통해 육체를 단련하고, '감사하기'를 통해 정신을 단련하며, '봉사(좋아하고 잘 하는 일로 타인을 도움)'를 통해 사회성을 강화할 수 있다.

✎ 삶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 사람은 고통을 느끼는 만큼 보이며 이러한 것을 바로 인문적 독서경험이라고 한다.

➟ 인문학적 접근은 개인의 고유성에 대한 자각과 자기 고백이다.

➟ 그 사람다움의 유지와 그 사람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다.

➟ 인문학적 삶이란 결국 '자기 삶'을 사는 것이다.

✎ 왜 당신은 당신의 조직에서 일하는가? 여러분께서 일하고 있는 기관의 미션이 무엇인가? 또한 기관(개인)의 비전은 무엇인가?

✎ 업(業)에 대한 세 가지 질문

➟ What's your perspective(ideolgy)?

➟ What's your theory?

➟ What's your tools?

✎ 조직혁신이란 무엇인가?

➟ 지구 상에 살아남은 것은 강한 것이 아닌 '변화 순응'한 것들이다.

➟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든다.

(예 : 시소의 기울기, 기관차와 압력밥솥, 인간과 침팬지)

✎ 여러분의 조직이 이렇게 바뀌면 좋겠지요?

➟ Attitude is everything. : 태도를 잡아야 설득이 된다. '나'의 태도를 점검하라.

➟ Be as proud of welfare, As welfare is proud of you. : 사회복지(기관)를 자랑스러워하며, 스스로 자랑스러운 사회복지사(직원)가 되어라.

➟ 눈 오는 벌판을 가로질러 갈 때 발걸음 함부로 하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남긴 자국은 드디어 뒷사람의 길이 되느니. : 후배들을 위해 작은 변화를 도모하며, 겸손한 자세로 일하라.

조직소통의 핵심, 그 곳에 팀장이 있다

-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팀장 리더십과 팔로워십 -

김미경(비영리 컨설팅 웰펌 공동 대표)

1. 소통 = 경청+공감+수행하려는 노력, Action, 반응

1) 소통을 방해하는 굴절요인
① 자아투사 : 내 마음 속의 기준(기대)으로 바라봄.
② 허구적 독특성 : 자기에게 관대하며, 팀원에게 엄격함.
③ 정형화된 선입견
④ 최초효과 : 첫인상, 선입견 등 최초의 정보에만 지배당함.
⑤ 후광효과 : 핵심정보를 확대시키는 오류로 올바른 정보를 작동시키지 못함.
예) 김태희 vs 서울대 나온 김태희 → 김태희 < 서울대 나온 김태희
⑥ 최신효과 : 가장 최근에 나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진 사건에 의한 인식
⑦ 귀인적 실수 :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판단해야 함에도 어느 1인 때문이라고 여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부족한 것이 원인)
⑧ 관찰자 편향 : 조직 내의 위치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르고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하게 됨.
⑨ 자아달성적 예언(피그말리온 효과) : 에너지를 쓸 거라면 미워하고 탓하는 에너지보다 기대하는 에너지로 활용하라. 기대하면 부응한다!

2) 사람은 가진 정보만큼 해독·해석이 가능하다. ⇔ 굴절된 요인이 반영된 정보를 축적해 둘 경우 올바른 해독이 불가능 해진다.

3) 내 말과 몸의 에너지(비언어적 의사소통)가 반드시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2. 관계에 따른 대처방법

1) 상사의 유형에 따른 대처방법 : 좋은 상사, 나쁜 상사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상사와 소통의 접점을 찾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① 감정적 유형 – 기분변화로 인해 팀원의 빠른 소진을 유발한다. '본인'과 '본인의 의견'을 동일시함에 따라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을 싫어한다. 이런 경우 상사의 의견과 나의 감정을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한다.
② 자존감이 높은 유형 – 직원을 통제할 때 조직에서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 직원이 작아지고 수동적으로 된다. 직원이 본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마음을 여는 유형으로 권위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③ 성실한 상사 – 촘촘한 계획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성과보다 과정에 의미를 더 두는 유형으로 직원들은 이런 상사가 볼 때만 일하는 문제를 유발한다. 세밀한 계획과 근거를 바탕으로 응대해야 한다.

④ 헌신적 유형 –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자존감이 높은 유형과 동일하다. 반면 직원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여 문제가 발생된다. 조직의 속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를 등장시키게 되며, 두 태양이 견제함에 따라 조직이 소진된다.

2) 서로 다른 업무지시가 빈번한 경우

서로 다른 업무지시가 빈번한 경우	신임팀장, 구관이 명관이라는 팀원들
- 공식적인 논의체계 가동 - 확대 간부회의 실시 : 일정 무게가 나가지 않는 사소한 것은 여러 결재권자가 모여서 함께 결정	- 리더십 검증과정 필수 - 팀원과 적극적 의사소통 필요 - 전임팀장에게 정보를 습득하고 팀원들의 조언을 받음

3) 친분 또는 인간관계가 매개가 되는 사회복지의 특성

사회복지가 타영역에 비해 친분,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카더라' 통신문화 발달 → 끼리끼리 문화 발달 → 속하지 못하는 사람 발생 → 조직에 회의감을 느끼게 됨. → '공식적 소통<비공식적 소통'의 결과 발생 → 조직을 위협하는 X맨 발생 ⇒ X맨을 빼내어 인사권을 활용하여 가장 좋은 자리에 이식해야 함 (안좋은 자리일 경우 X맨과 주변의 세력 반발이 거세짐).

3. 조직=리더십+팔로우십+팀워크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이며, 완벽한 리더나 완벽한 팔로워는 없다. 타인에 대해 참지 말고 이해하라(참으면 해소되지 않고 쌓임). 위계 있는 조직문화와 가족 같은 조직문화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성숙한'** 조직만 가능하다. ⇒ 현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라! 팀원이 원하는 관계의 거리만큼부터 팀워크를 시작하라. 그리고 일하기 좋은 만큼만 친해져라. 요즘 팀원들이 원하는 관계는 마트 주인과 손님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이다.

1) 위기관리

① 조직의 관리자는 팀원들의 상태를 꾸준히 살펴야 한다. 업무를 수행(행정처리 포함)할 때 '무엇이 가장 어려웠는지' 먼저 얼굴을 바라보며 질문하라. 우리 조직의 위험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보라.

② 개인은 나의 삶을 행복하게 관리해야 한다. 내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라.

2) 1:99의 이야기(팔로워의 힘=수적우위성)

리더는 1명이지만 팔로워는 그 수가 더 많으므로 1명의 리더십보다 99명의 팔로워가 제대로 된 팔로워십을 갖추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효과도 크다. 결정은 리더가 하지만 결정을 유도하는 것은 팔로워다.

①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 아리스토텔레스

② 팔로워십 위에 세워지지 않은 조직은 사상누각과 같다.

(Yes, I can. → 리더십 강조 / Yes, We can. → 팔로워십 강조)

3) 팔로워가 움직이는 경우

① 리더를 존경할 때(리더의 전문성 or 리더의 훌륭한 인격)

② 공동체의 이익이 될 때

③ 나의 기준과 가치에 맞지 않아 No라고 했지만 그 후로 잃는 것이 많아질 때 Yes라고 대답하고 따름.

4) 팔로워 구분

① 방관자(무임승차) : 에너지 없는 조직이 됨.

② 참여자 : 내가 반대하는 리더를 설득함.

③ 운동가(집단) : 리더를 지지할 때는 드러나지 않고 반대할 때 나타남. 여론과 지지세력을 만듦으로써 리더와 대립적 관계가 됨.

④ 완고주의(정몽주형) : 내가 반대하는 리더에게 목숨 고 반대함.

5) 비영리조직의 팔로워가 갖춰야 할 덕목

① 헌신성 : 언제든지 떠날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② 방향성 통일 :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와 노를 젓는 팔로워, 방향이 맞고 있는가?

③ 몰입성 : 일 중독자(→매몰→소진)가 될 것인가, 일 애호가(→몰입→에너지발생)가 될 것인가?

④ 용기 :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용기를 가져라.

⑤ 표현 :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⑥ 대안 제시 : 결정권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태도를 갖추라. 그렇지 않으면 공격이라고 받아들인다.

⑦ 완벽한 조력자가 되어라

4. 리더의 역할

팀장인 나는 리더이자 팔로워이다. 팀원들은 나의 팔로워십을 보고 배운다.

Director(방향제시자) Producer(목적, 방법 제시자)	⇒	조직의 생산성과 목적 창출
Coordinator(업무 조정자) Monitor(업무 확인자)	⇒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성
Mentor(상담자) Group facilitatior(업무 촉진자)	⇒	조직의 내부결속과 구성원의 사기 증진
Innovator(혁신자, 도입자) Broker(중개자)	⇒	환경변화에의 적응

Ⅲ. 제언 및 향후계획

사회복지 팀장 사관학교의 교육목표는 사회복지 조직의 팀장 성장을 통한 실질적 허리를 강화함으로서 조직의 내부 역량 강화의 기회 제공에 있다. 이 강좌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역사회 내 주요 자원의 조직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조직 내 의사소통 구조에 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사회복지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으로서의 성장의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교육내용을 팀원들과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주제별 강좌 중 핵심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팀이란 성과 창출의 기본단위이며, 팀의 존재 이유는 일종의 팀의 미션이 되고, 팀장이란 '현장지휘자'로 '시키는 사람'이다. 즉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시켜서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하고, 효과적이라고 할지라도 팀원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의무'가 있다. 팀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팀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재능,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팀장은 리더이자 팔로워이고 팀원들은 팀장의 팔로워십을 보고 배운다. 리더는 1명이지만 팔로워는 그 수가 더 많으므로 1명의 리더십보다 99명의 팔로워가 제대로 된 팔로워십을 갖추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효과도 크다. 결정은 리더가 하지만 결정을 유도하는 것은 팔로워다. 팔로워십 위에 세워지지 않은 조직은 사상누각과 같다.

셋째, 팀의 목적이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합의 도출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최소한 관점의 합의를 도출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넷째, 사례관리는 분야가 없으며 담당이 따로 없이 모두가 담당하는 것이

다. ‘자선’과 ‘복지’를 구분해야 한다. ‘밥차’의 예를 들면 사람만 늘어나는 것은 자선이지만, 사람이 늘어나지 않고 밥을 먹게 하는 것이 복지이며 사례관리이다. 사회복지사는 직접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자이자 중개자이기 때문에 회의를 매번 해야 하며, 대상자를 위해서 마케팅, 로비를 해야 한다. 사례관리는 협력이며 각 복지관과의 네트워크도 필요하므로 타 기관의 사업을 파악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다섯째,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미디어의 발전은 사람들 간의 소통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약한 관계를 증가시키고, 순도 높은 관계가 줄어들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환경 속의 인간임을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생태도를 그릴 때, 단지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속에서 그물망처럼 얽힌 사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계와 상호작용을 살펴야 한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가 문제이면, 생태계 전체를 살펴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환경 속의 인간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당사자를 둘러싼 생태계를 바꾸어야 한다. 관계망이 촘촘해 질수록 개인 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지역사회도 함께 변화됨을 주목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관계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여러 강좌를 통해 팀장으로서의 역할과 자세, 관계의 중요성이 팀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있는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된다.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팀원이나 대상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재능,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다수의 약한 관계로 인한 공동체의 역량이 약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관계를 살리는 일에 중점을 두고 생태체계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됨을 사회복지사로서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교육·연수보고서 15-18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예방 및 개입

주 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 간		2015.10. 23 (금)
장 소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참석자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명 단	**정다예, 박은영**
	인 원	총 2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4 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예방 및 개입

행동주의 이론에 기반한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예방 및 개입

1. 국내 장애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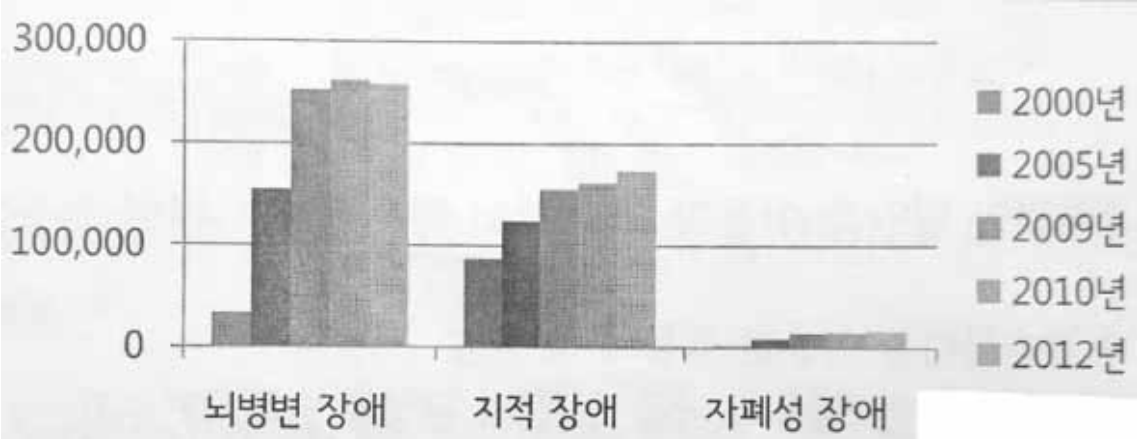

구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2년
뇌병변 장애	33,126	154,614	251,818	261,746	257,797
지적 장애	86,793	123,868	154,953	161,249	173,257
자폐성 장애	1,514	8,754	13,933	14,888	16,906

표와 그래프에 나타나듯 국내 장애인의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인지적 장애와 상동행동, 소극적인 상호작용 등의 특성으로 문제행동이 나타나며 장애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문제행동도 많아지고 있다.

2. 문제행동의 발생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문제행동은 크게 타고 태어난 기질과 환경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뇌기능 또는 신체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약불목용을 통해 전체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적인 것으로 나타난 문제행동은 잘못된 대처, 비일관적·비체계적 대처 등으로 문제행동이 유지되고 심화되었기 때문에 양육자의 행동변화로 문제행동이 변화될 수 있다. 본 교육에서는 학습원리를 이용하여 행동 수정하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있다. 학습원리를 이용하여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은 적절한 행동이 나올 수 있게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며 아동에게 적절한 대처방법을 가르치고 양육자가 아동에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있다. 즉, 아동과 양육자 모두의 행동변화를 요한다.

3. 행동주의 이론

행동주의는 학습이론에 기반을 둔 이론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된다. 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다. 즉 아동의 문제행동도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행동을 학습하면 된다는 것이다. 학습이론의 기반 아래 고전적 조건형성, 조작적 조건형성, 대리학습 혹은 모델링 이라는 학습 유형이 있다.

4. 학습 유형

1) 고전적 조건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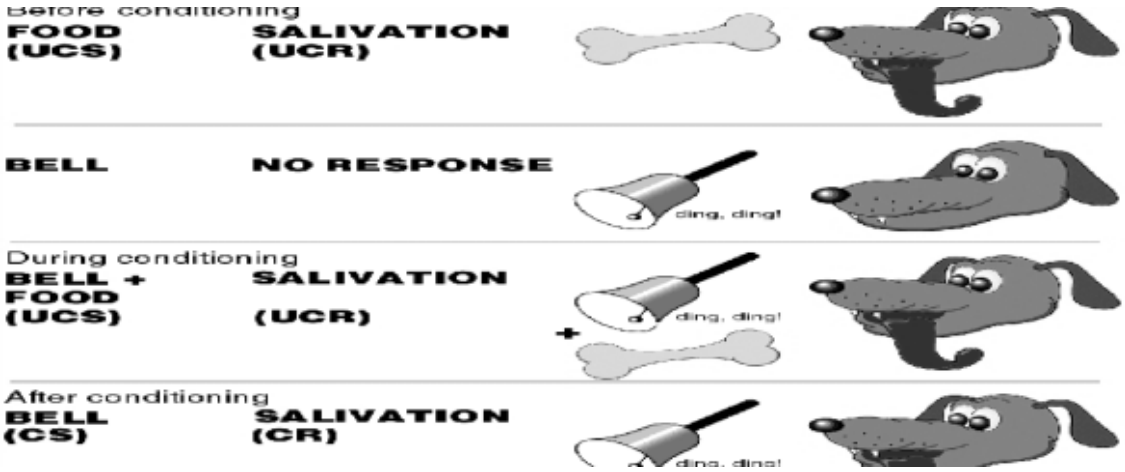

가장 대표적인 실험으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있다. 음식을 주었을 때 개는 침을 흘리게 되는데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울리면 개는 종이 울릴 때마다 침을 흘리게 된다는 실험이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이는 것으로는 드라마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기하는 연예인이 어떠한 상품을 광고를 통해 홍보할 때 그 상품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켜 판매를 올리는 것이 있다. 이러한 고전적 조건형성은 학습된 공포를 체계적 둔감화를 통해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2) 조작적 조건형성

조작적 조건형성은 스키너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ABC이론으로 사전상황(A)로 행동(B)이 나타나고 이로인해 결과(C)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세한 예시는 다음 표에 나타난다.

A		B		C
슈퍼에서 아이가 과자를 사달라고 함.	⇒	과자는 안 된다고 이야기 했으나 아이가 짜증을 내자 과자를 사주었음.	⇒	물건을 살 때 짜증을 냄.

아이의 안 좋은 행동이 왜 지속되고 강화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아이가 짜증을 내자 사주는 보호자의 행동으로 아이의 짜증이 강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개념에 상황을 대입해본다면 문제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문제행동의 원인을 알고 행동의 결과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더하기	제거하기
행동 증가	정적 강화 (칭찬, 물건, 토큰) -좋은 것을 주기	부적강화 (진통제 복용, 우산쓰기) -싫은 것을 뺏기
행동 감소	벌 (혼내기, 때리기) -싫은 것을 주기	반응대가 (타임아웃, 용돈깎기) -좋은 것을 뺏기

어떠한 행동이 늘었다면 강화이며, 행동이 줄었다면 처벌이라고 한다. 강화물은 받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여야 효과가 크다. 4가지 방법 중 벌은 가장 빠르게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장 적게 써야 하며 가장 마지막에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다. 벌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도 있다. ①공격성/감정적 부작용을 일으킨다. ②벌을 받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조건화 시킨다. 이는 벌을 받게 되면 사람이나 그 환경을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다. ③벌은 새로운 행동을 형성하지 못한다. 벌은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새로이 좋은 행동을 형성하지 못한다. ④벌을 주는 행위가 모방된다. ⑤벌의 신속성 때문에 벌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처음 약한 벌에서 점차 강한 벌로 벌의 세기가 점점 커질 수 있다. 또한 벌을 받을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등 도피행동이 강화될 수 있다.

문제행동을 줄이는 방법으로 '소거'가 있다. 소거는 아이가 문제행동을 일으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동일 행동 가능성이 감소되어 문제행동이 소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소거 전 문제행동이 극대화 된다는 것이 있다. 문제행동의 극대화로 아이 또는 보호자가 위험하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행동을 소거하는 것이 좋다.

5. 문제행동 파악하기

문제행동을 파악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루 동안 아이가 했던 행동을 메모하는 방법이 있다. 일일 행동 측정표(DBC-M)라고 불리며 작성방법은 아래과 같다.

DBC-M의 예

0=없음, 1=평소보다 적음, 2=평소와 비슷함

3=평소보다 심함, 4=아동이 일상생활을 못할 만큼 심함

	날 짜				
행 동	4/1	4/2	4/3	4/4	합계
1 지시따르기	1	2	1	3	7
2 같은 말 반복하기	0	3	1	2	6
3 친구 때리기	3	3	3	3	12
4 물건 두드리기	3	3	3	3	12
…					

6. 결론 및 제언

발달장애인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행동은 발달장애인의 기질도 있으나 환경적인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환경적인 것에는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환경의 문제도 있으나 보호자의 양육방법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며 이에, 담당자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장애인 복지현장에 있으면서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원인에 대해 찾기보다는 벌과 반응대가 등의 부정적인 요소만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이 나타났을 시, 원인을 파악하고자 보호자 및 클라이언트 상담을 더욱 강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일시적 효과만을 가져오는 벌의 사용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이번 교육 내용을 상담을 통해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복지관과 가정에서 동일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교육·연수보고서 15-19

청소년 사회성기술훈련 PEERS

주 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기 간		2015년 10월 29일
장 소		아이코리아 본관
참석자	팀 명	가족문화팀, 상담사례지원팀
	명 단	김효중, 김서영
	인 원	총 2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3시간

청소년 사회성기술훈련 PEERS

1. PEERS 정의

1) 특징

- 구조화된 수업으로 이루어진 매뉴얼화된 개입 프로그램
- 부모 그룹을 동시에 : 청소년 회기 / 부모 회기
- ASD의 핵심 결함을 다룸
- 우정을 유지하는 기술에 초점

2) 구조

- Outpatient setting
- 매주 90분씩 / 14주
- 중/고등학교 청소년 대상 (12-18years)
- HFA, AS, PDD NOS : Other diagnostic group with social deficits
- 청소년집단 치료자, 부모집단 치료자, 보조 치료자 1~2명(최소 3명)

3) 부모역할의 장점

- Social coaching을 제공
- 사회기술의 일반화를 도움
- Homework treatment의 순응도를 높임
-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조력자 역할
- Peer contact의 기회를 제공

2. PEERS 사전준비

1) 시설과 환경

① 청소년 집단

- 교실과 비슷한 분위기
- 화이트 보드와 마커
- 책상과 의자는 보드를 향해

② 부모집단

- 모든 부모가 둘러앉을 수 있는 원형의 자리배치

③ 실외게임을 할 수 있는 운동장

2) 선별

- 충분한 언어 능력과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
- 참석하고자 하는 동기
- 문제 행동여부(예 : 폭력적행동)
- 부모가 최소 11주 이상 함께 참여 가능

3) 집단구성

- 7~10명 규모의 ASD를 가진 동질적인 청소년 집단

- 가족이 기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집단 내 여학생이 1명만 포함되는 것 피하기

회기	주제	내용
1	소개/대화기술1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정보 교환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알아 내기
2	대화기술2	서로 양방향으로 주고 받는 대화의 기본 기술 : 심화 질문하기, 대화를 독점하지 않는 법, 비언어적 의사표현
3	대화기술3	전자 매체를 통한 대화(이메일, 쪽지, 메신저, 블로그 등)에서 필요한 기술들, 안전한 온라인 생활, 온라인을 통한 집단 괴롭힘에 대응하기
4	적절한 친구 선택하기	서로 다른 친구 그룹 파악하기, 자기에 맞는 그룹 찾기, 방과 후 활동 찾기
5	유머의 적절한 사용	유머에 대한 반응 구별하기, 좋은 유머와 수용자가 되기
6	또래 관계에 들어가기1	진행되고 있는 또래들의 대화에 끼어들기
7	또래 관계에 들어가기2	대화에서 빠져 나오기 대화에 끼어주지 않을 경우에 적절히 대처하기
8	함께 어울리기 (get-together)	좋은 초대자/손님되기
9	좋은 스포츠맨 되기	게임이나 스포츠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 칭찬하기, 순서를 존중하기, 심판 역할 하지 않기
10	거절1	놀림과 당황스러운 피드백에 대응하기, 평판 바꾸기
11	거절2	괴롭힘과 나쁜 평판에 대처하기
12	의견 충돌 다루기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수용/ 조정하기 적절한 자기주장 하기
13	소문과 뒷이야기	소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 소문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이를 다루는 법
14	졸업식	전체적인 평가와 졸업 파티, 시상식

3. PEERS 구성

Session1 - 대화기술1 : 정보교환

1) 소개

- 시작 인사와 치료진, 집단 구성원 소개
- 집단의 규칙 정하기
- PEERS 소개
- 회기 구조 소개
- 점수제도 안내

• 집단 점수는 더 큰 졸업파티를 하기 위해, 개인 점수는 상을 받기 위해 모으는 것

2) 교육: 정보교환(trading information)을 위한 규칙

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자신에 대해 묻기

② 스스로의 질문에 대답하기

③ 공통의 관심사 찾기(find common interest)

④ 대화를 서로 주고 받기
⑤ 처음에는 너무 개인적이 되지 않기
⑥ 상대방의 반응 확인하기: 대화참여도, 눈맞춤, 자세

3) 역할극
- 적절한 정보교환의 예

4) 행동연습
- 배정된 짝과 주고받는 대화를 연습

5) 과제
- 부모님과 주고받는 대화 연습, 공통의 관심사 찾기
-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그룹 내 전화통화하기

6) 청소년 활동: “퀴즈쇼”(jeopardy game)

7) 부모와 다시 만나기

Session2 - 대화기술2 : 주고받는 대화

1) 과제점검

<부모집단>
- 성공적으로 완료한 부모부터 발표
  · 과제를 반드시 완료해 와야 한다는 기대수준 설정
- 순서대로 발표하지 않기
- 과제를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변명을 듣지 않기
- 과제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한 해결법 탐색
  · 자녀의 과제 수행에 대해서 간찰
  · 대본 작가 되지 않기

<청소년집단>
-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료한 청소년부터 발표
- 해오지 못했을 경우 이유를 묻고 다음에는 할 수 있을지 문제 해결 시도
- 정보교환과 공통의 관심사와 같은 우리끼리 단어를 사용 (Buzzword)
- 과제의 부분 요소마다 점수 부여

2) 교육: 주고받는 대화를 위한 규칙

① 정보 교환하기
② 스스로의 질문에 대답하기
③ 대화를 서로 나누기
④ 처음에는 너무 개인적이 되지 않기
⑤ 열린 질문을 하기
⑥ 이어가는 질문 하기
⑦ 대화를 독차지하지 않기(Conversational hog)
⑧ 진행자가 되지 않기

⑨ 반복하지 않기
⑩ 친구의 말을 경청하기
⑪ 놀리거나 비평하지 않기
⑫ 진지하게 하기
⑬ 목소리 크기를 잘 조절하기
⑭ 적절한 신체 경계 가지기(An arm's length away)
⑮ 눈을 맞추기

3) 역할극
- 적절한 주고받는 대화의 예 시연

4) 행동연습
- 배정된 짝과 주고받는 대화를 연습

5) 과제
- 부모님과 주고받는 대화 연습, 공통의 관심사 찾기
-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그룹 내 전화통화하기

6) 청소년 활동: "퀴즈쇼" (jeopardy game)

7) 부모와 다시 만나기

Session3 - 대화기술3 : 전자통신

1) 교육: Electronic communication
- 전화, Email, 음성메세지, 문자보내기, 메신저, 쪽지 등

• 전화 걸기와 끊기의 규칙
① 통화 대상을 바꿔주길 부탁
②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
③ 통화 가능한 상황인지 묻기
④ 전화한 이유에 대해서 머리말(cover story) 사용
⑤ 대화가 멈출 때를 기다리기(예: 주제가 바뀌는 시점)
⑥ 왜 전화를 끊는지에 대해서 꼬리말(cover story) 사용
⑦ 끝인사(예: 통화해서 좋았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잘있어)

• 전화, Email, 문자, 메신저/쪽지 보내기 규칙
① 머리말, 꼬리말 사용하기(cover story)
② 엉뚱한 전화하지 않기(cold calling)
③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실제 알고 있는 사람만 친구 추가
④ " 딱 두 번 규칙" (2 message rules)
⑤ 너무 개인적이 되지 않기

• 인터넷 사용 규칙(online safety)
①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인터넷은 원래 알던 친구와 친해지는 수단

③ Cyber bullying 피하기

Session4 - 적절한 친구선택하기

1) 교육: 적절한 친구 선택하기

-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
- 다양한 집단 찾아보기 (예: 마니아 집단)
- 동아리 혹은 또래 집단의 중요성
  - 개별적인 놀림/괴롭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 놀림/괴롭힘을 경험할 때 정서적 지지, 유대감, 결속력 경험
- 자신과 어울리는 집단 찾기
  - Brainstorming
  - 집단에 받아들여졌다는 증거 알기
  - 연락처를 알려준다./친구 추가한다./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보낸다.
  - 어떤 활동에 초대한다./나의 초대를 받아들인다./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 나에게 연락한 다.

Session5 - 유머의 적절한 활용

1) 교육: 유머 사용에 대한 규칙들

① 누군가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진지하게 대한다.

② 같은 유머를 반복하지 않는다.

비웃는 것	함께 웃는 것
웃으면서 눈을 굴린다.	가장 재미있는 대목에서 웃는다.
다른 사람을 쳐다본 다음 웃는다.	유머, 혹은 유머감각을 칭찬한다.
유머가 끝나기 전에 웃는다.	“그거 재미있네” 하며 웃는다.
웃기 전에 정적이 있다.	“그 얘기 기억해야겠다.”
“너 재미있네”라고 비꼬듯 말한다.	“너 재미있다.”하며 미소 짓는다.

③ 유머에 대한 반응(humor feedback)에 주의를 기울인다.

- 비웃기와 함께 웃기(laughing at you vs. laughing with you)를 구별하기
- 개그맨과 방청객(joke teller vs. joke receiver)vs. joke refuser in ASD

2) 행동연습

Session6 - 또래관계에 들어가기1

1) 교육: 대화에 끼어들기

- 대화에 끼어들기 단계

1. 지켜보기/귀 기울여 듣기
   ① 대화 내용 귀 기울여 듣기
   ② 아는 친구가 있는지 살피기
   ③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지켜보기

④ 호의적인 태도인지 잘 들어보기
⑤ 너무 어려운 주제가 아닌지 잘 들어보기
⑥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
⑦ 집단에게 관심을 표현하기
⑧ 때때로 눈을 맞추기

2. 기다리기
① 대화가 짧게 멈추거나 끊어지는 순간
② 대화의 주제가 바뀐는 시점
③ 나를 받아들이는 표시가 있을 때

3. 참여하기
① 대화에 참여하는 이유를 생각하기
②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③ 대화와 관련 있는 소재를 제시하며 이야기 혹은 질문
④ 지나치게 개인적인 대화는 피하기
⑤ 대화를 독차지하지 않기
⑥ 시선의 전환(periodic eye contact): 거절당했을 때 보호해 주는 역할
⑦ 대화에 받아들여졌다는 증거 확인: 눈맞춤, 말 건네기, 원 열어주기
⑧ 끼워 주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간다.

2) 역할극

3) 행동연습
- 개인물건 정보교환

Session7 - 또래관계에 들어가기2

1) 교육: 대화에서 빠져 나오기
- "거절은 정상적인 경험, 10번의 시도 중 5번, 50%가 거절을 경험"

거절당하는 이유	다음 번에 무엇을 해야 하나?
자기들끼리 사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한다.	이후에 다시 시도해본다.
어려운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른 집단에 시도한다.
새 친구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른 집단에 시도한다.
강하게 거부하거나 무시한다.	다른 집단에 시도한다.
그들만의 집단을 이루고 있다.	다른 집단에 시도한다.
그 사람들에게 나의 평판이 좋지 않다.	너무 눈에 띄지 않게 행동(튀지 않게 행동)하고, 시간이 한 참 흐른 후 다시 시도한다.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친구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다.	규칙에 따라 다시 시도해 본다.
대화에 끼어들기 규칙 중 하나를 잘 지키지 못했다.	규칙에 따라 다시 시도해 본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다.	규칙에 따라서 다른 집단에 시도한다.

2) 대화에서 빠져 나오기 단계
① 침착함을 유지한다. - 화를 내지 않기

② 다른 곳을 본다. -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
③ 돌아선다. -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다..'
④ 다른 곳으로 간다. -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주의를 끌지 않기

3) 이미 참여하고 있는 대화에서 빠져 나오기
- 이미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때, 짧은 꼬리말 준비
- 꼬리말은 매우 짧고 특별하지 않은 것
  · "이제 나는 수업 들어가야겠다.", "난 가봐야 할 것 같아", "이만 갈게"
  · 휴대폰을 활용

4) 역할극과 행동연습

Session8 - 함께 어울리기(get-together)

1) 교육: 성공적인 함께 어울리기를 위한 규칙
- 준비단계: 함께 어울리기를 하기 전에

<부모의 역할>
-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환경을 제공: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monitoring
- 처음에는 약 2시간 정도로 시간 제한: 싫증을 느끼기 전 마무리
- 마무리 할 때 꼬리말 해 주기: "저녁 먹어야 겠다.", "이제 잘가라고 인사하자"

<청소년의 역할>
- 장소, 시간, 대상, 활동 결정
- 함께 할 활동 준비
- 개인적인 물건 치워 두기
- 방 정리하기

- 함께 어울리기를 시작할 때

① 환영 인사
② 집 안으로 맞이하기(문 옆에 비켜 서서 길 만들어 주기)
③ 가족들에게 손님을 소개
④ 집 안내(화장실)
⑤ 먹을 것, 마실 것 제공
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 함께 어울리기를 하는 동안

① 활동은 손님이 선택
  · 손님으로 갈 때는 초대자가 선택
② 친구를 칭찬, 인정해 주기
③ 좋은 스포츠맨 되기
④ 친구에게 충실(양다리 금지)
⑤ 지루하면 변화를 제안하기
⑥ 시간의 최소 50%는 정보교환

• 함께 어울리기를 마무리할 때
① 꼬리말
② 문까지 배웅
③ “고맙다, 즐겁게 잘 놀았다, 잘 가, 나중에 보자....”

Session9 : 좋은 스포츠맨 되기
1) 교육: 좋은 스포츠맨 되기 규칙
① 친구를 칭찬하기
② 심판처럼 행동하지 않기
③ 코치가 되지 않기
④ 사이 좋게 나누어 차례대로 하기
⑤ 속임수를 쓰지 않기
⑥ 게임 중에 지나친 경쟁심을 보이며 친구를 자극하지 않기
⑦ 친구가 다친다면 도와주고 걱정해주기
⑧ 지루해지면 변화를 제안하기
⑨ 이겼을 때 뽐내거나 진 사람을 고소해 하지 않기
⑩ 졌을 때 삐치거나 화내지 않기
⑪ 게임이 끝날 때 “좋은 게임이었어”, “잘 놀았어”

Session10 - 거부1 : 놀림과 당황스러운 피드백
1) 교육: 놀림 무력화시키기(tease the tease)
- 놀림: 언어적 공격(예: 욕설, 험담, 폄하)
- 다른 사람들을 놀리는 이유: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
  · 화내고, 울고, 흥분하고, 당황스러워하는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 구경거리를 만들기 위해
- 놀리는 말을 재미 없게 만들기: tease the tease
  · 놀리는 아이를 놀리는 것과는 차이
• 놀림 무력화 시키기 규칙
① 놀리는 말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
② 놀리는 말을 재미없게 만드는 말을 짧게 사용
③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 어깨 으쓱, 머리 흔들기, 눈 굴리기
④ 그 자리에서 더 놀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리를 떠나기
※ 신체적 괴롭힘/어른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 역할극과 행동연습
• 놀림 무력화시키기 기법의 예시
“좋을실대로! 아무렴 어때!”

“그건 그렇고...”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그래서 뭐!”
“무슨 상관이야?”
“좋아, 그래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어디가 재미있는 거야?”
“누가 신경 쓴대?”
“웃기려고 하는 말이지?”
“내가 왜 상관해야 되는데?”
“요점이 뭐야?”
“그게 언제적 이야기 인데?”
“싱겁긴...”
“유치하게...애들도 아니고 뭐 그런 걸로”
“누가 물어봤어? 안 물어 봤는데”
“뭔 상관~?”
“그렇다 치자”
“그게 중요한가?”
“좋냐?”
“그게 웃기니?”

2)교육: 당황스런 피드백 대처하기

- 당황스러운 피드백: 놀리는 말과 동반되거나 놀리는 말처럼 들리지만 자신의 문제를 지 적하는 말

· 많은 사람이 같은 내용의 피드백을 주거나 적ㅇ느 사람이 반복해서 같은 피드백을 줄 경우

· 자신을 살펴 보고 변화를 주기

<당황스런 피드백 대처하기>

당황스러운 피드백 유형	필요한 행동 변화
“네 옷은 우스꽝스러워!”	옷에 변화를 준다, 학교 규범에 맞는 옷차림을 한다.
“너 냄새나!”	좀 더 청결하게 한다, 탈취제를 사용한다, 자주 씻는다, 향수를 좀 덜 뿌린다.
“네 머리는 떡이 졌어.”	좀 더 자주 머리를 감는다, 헤어젤이나 무스를 조금 덜 사용한다.
“네 어깨에 눈 내렸다.”	비듬샴푸를 사용한다.
“네 입에서 나쁜 냄새 나!”	식사 후 구취 제거제를 사용한다, 좀 더 자주 칫솔질을 한다, 구강청결제를 사용한다, 껌을 씹는다.
“네가 구멍이야”	좀 더 낮은 레벨의 아이들과 게임한다.
“말하면서 침 튀지 좀 마”	말할 때 침 튀기지 않도록 조심한다. (말하는 것보다 더 자주 삼킨다.)
“이빨에 음식 꼈어”	먹은 후에는 칫솔질을 한다, 껌을 씹는다, 치실을 더 자주 사용한다.
“소리 지르지 마”, “넌 너무 크게 말해”	좀 더 부드럽게 말한다.
“네 말은 들리지가 않아”	좀 더 크게 말한다.
“하나도 안 웃겨”	유머에 대한 반응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 방청객이 되는 쪽은 생각해 본다.

Session11 - 거부2 : 괴롭힘과 나쁜 평판

1) 괴롭힘 대처하기

- 튀지 않는다.
- 괴롭히는 아이를 피한다.
- 괴롭히는 아이를 자극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
- 위험에 처했다면 어른들의 도움을 요청한다.
  - Empowering parents
  - 학교 제도를 이용
  - 법적 대응 고려

2) 나쁜 평판 바꾸기

- 튀지 않는다.
- 다수를 따른다.
- 외모를 바꾼다.
- 이전의 평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 새로운 집단이나 무리를 찾는다.

⇒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가능하다.
시간에 걸쳐 순서대로 따른다.
방학을 이용한 전략

Session12 - 의견충돌 다루기

1) 교육: 의견 충돌 다루기

① 침착함을 유지한다.

②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는다.

③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을 반복한다.

④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다.

⑤ “네가....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한다.

⑥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앞으로 내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를 물어본다.
- 상대방에게 내가 원한느 것을 제안한다.

Session13 - 소문과 뒷이야기

1) 교육: 소문과 뒷이야기(Handling rumors & gossip)

- 뒷이야기: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
- 소문: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들

- 소문의 출처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가를 주장
- 소문을 희화화하여 희석시키기

2) 소문과 뒷이야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

- 험담꾼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 험담꾼을 자극하거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3) 뒷이야기의 대상이 되었을 때

- 화가 났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 뒷이야기를 만들어 낸 사람을 직면하지 않는다.
- 뒷이야기를 만들어 낸 사람을 피한다.
- 소문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인다. - 간접적 부인

- “그 소문을 믿는 사람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다니, 완전 웃긴다.”
- “그럼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되니? 할 일 되게 없나 보다.”

- 자신에 대한 또 다른 소문을 스스로 퍼뜨린다.

- “나에 대해 돌고 있는 소문을 들어본 적 있니? 진짜 바보 같은 이야기 아니야?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황당하다.”

Session14 - 졸업과 종료

1) 과제점검
2) 졸업파티: 영화보기, 게임하기, 대화하기
 - 간식과 음료 나누기
3) 졸업식
 - 개회사
 - 축하말씀
 - 상장과 상품 수여
  · 함께 어울리기를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나 실외 활동 용품
 - 졸업장 수여
  · 호명→부모님과 함께 앞으로 나오기→졸업장 받고 악수→관객을 향해 인사→치료진과 하이파이브→자리로 돌아가기
 - 치료진 소감/청소년 소감
 - 폐회사

4.결론 및 소감

사회성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나 이론 설명이 아니 프로그램 매뉴얼 즉, 회기 구성과 각 회기에서 치료사가 할 말, 나눠줄 유인물, 부모상담 시 할 말 등등 자세히 사회성기술훈련 PEERS에대한 교육이었다. 사회성 영역에서 나오는 많은 치료들은 효과가 수치가 나와서 연구적으로 입증된 것이 부족한데, 이 프로그램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치료법이라고 하니 더 신뢰가 되었다. PEERS는 고기능의 자폐스펙트럼 장애 청소년을 위한 사회성 기술 전략이라고 간다히 요약할 수 있다.

사회성 프로그램을 하는 아이들끼리 밖에서 일주일간 만나면서 그룹을 형서하고 문제를 만들어오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오면 사회성 프로그램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목표로 했던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거나 사회성프로그램의 다른 아이들까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 감정의 골을 풀어주고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것도 사회성프로그램의 일환이나 그렇게 되면 사회성프로그램이 끝도 없이 길어지므로 애를 먹게 되지만 PEERS 프로그램에서는 멤버들끼리 사적으로 만남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인상적이였고 참고 될 부분이기도 하였다.

고기능의 자폐성장애 청소년이 한정적이긴 하여도 사회성프로그램 운영의 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교육이였다.

교육·연수보고서 15-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무회계 교육

주 최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
기 간		2015.4.28. 15:00~17:00
장 소		남동구청 .대강당
참석자	팀 명	늘푸른동산 주간보호센터
	명 단	정지은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일
	시 간	총 2시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무회계 교육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

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의 법적 근거와 책임

1.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에 대한 책임
 1) 벌칙 : 징역 또는 벌금
 2) 과태료
 3) 행정처분 :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3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함
 (6개월까지 이를 행하지 않으면 법인설립 취소당함)
 4) 가산세 부과 : 기부금 영수증의 부정발급, 작성 및 보관하지 않을 때

Ⅱ.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의 기본적 이해

1. 재무회계의 기본원칙과 기준
 1)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규칙 제2조)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함

 2) 출납기한(규칙 제5조)
 - 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완결되어야 함

 3) 회계의 구분(규칙 제6조)
 - 법인회계 :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 시설회계 : 법인의 설치 및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Ⅲ. 예산 및 결산

1. 예산
 1) 예산총계주의 원칙(규칙 제8조)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함
 2) 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① 시군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요령을 법인 및 시설에 통보 할 수 있음	시·군·구청장	회계연도 2개월 전까지
↓		
② 법인 및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 통보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1개월전까지
↓		
③ 회계별 예산 편성(시설회계 예산안 참고)	법인 대표이사	즉시
↓		
④ 예산안에 대한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및 이사회 의결	시설운영위원회, 법인이사회	예산안 편성완료시
↓		
⑤ 의결된 예산안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본예산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제출 -추경예산 : 확정일로 7일 이내 제출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 5일전
↓		
⑥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관에 20일 이상 공고	시·군·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예산안 제출 20일 이내

3) 예산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1) 예산총칙 : 예산 전반에 관한 총괄적 규정

(2) 세입·세출명세서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을 표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4) 추가경정 예산편성(규칙 제13조)

(1) 추가경정예산의 의미
- 추가경정예산 = 추가예산 + 경정예산

• 추가예산 : 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항목의 금액을 추가 및 증액하는 경우
• 경정예산 :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간의 예산조정으로 예산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경우
- 수입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지출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특정과목의 예산이 현자히 증액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경우
- 새로운 예산과목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2. 결산

1) 결산절차(규칙 제19조)

① 시설회계의 세입 및 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법인 대표이사	출납완료시
↓		
②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시설장	
↓		
③ 법인 이사회 의결	법인 이사회	결산보고서 작성시
↓		
④ 의결된 결산보고서 시군구청장 제출	법인 대표이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⑤ 시설의 세입 및 세출결산서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시·군·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결산보고서 제출된 후 20일 이내

2) 결산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1) 세입·세출결산서
(2)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3) 법인 감사
- 법인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함
-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이사회에 보고함
-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점 발견된 때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함

Ⅳ. 증빙서류

1. 지출 증빙관련 참고사항

1)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고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해야 함(재무회계규칙 제130조)
2) 수입 및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 서류는 원본에 한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증명책임자의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음
3) 특정사업 보조기관(공동모금회에 정산서와 함께 지출증빙서 원본을 제출 하도록 계약 되어있는 경우 증빙서 사본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결의서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2. 적절한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참고사항
일반적 지출	-지출원인행위(내부결재, 품의서, 청구서) -견적서(10만원 이상 시) -지출결의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진(물품이 많은 경우)	-온라인 쇼핑몰 물품구입시 견적서(견적서 받기 힘들 경우 제조사, 모델, 금액 등이 표시된 화면 캡쳐 후 첨부)
계약 등에 의한 지출	-계약서 -산출기초(시장가격) 조사서 -수의 계약 시 수의계약사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물품검수조서	-오래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기보다 국세청의 휴업 및 폐업 조회를 통해 사업자 유형과 휴폐업 내용을 조회하는 것이 바람직 함

Ⅴ. 소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무회계교육을 통해서 재무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지침사항을 습득할 수 있었음. 특히 지출 시 증빙서류에 대한 규칙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증빙서류를 첨부 할 때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처리할 예정임.

교육·연수보고서 15-21

2015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실무자 교육(노무관리)

주 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 간		2015년 10월 7일 - 10월 8일(1박 2일)
장 소		대전 유성호텔
참석자	팀 명	늘푸른동산
	명 단	정지은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2 일
	시 간	총 8시간

Ⅰ. ‘장애인 문화예술 현장’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공인노무사 김성중

1. 근로기준법에 관한 기초지식

1) 근로기준법의 목적 및 특징

(1) 법정 최저근로기준

-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이므로 국가가 법정 최저근로조건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함

(2) 강행적, 대체적 효력

-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에 미달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으로 대체됨

(3) 민사법과 형사법적 성격의 공존

- 근로기준법은 채권, 채무에 관한 민사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나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행하는 형사법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

2) 근로기준법의 주요 원칙

(1)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 등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들 사이에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2) 일방적인 근로조건 하향조정 불가

- 근로자측의 동의없이 현재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할 수 없음.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며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됨

(3) 균등처우의 원칙

- 사용자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근로시간, 해고,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음

2.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한 단위기간과 그 기간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한 후 단위 기간내 중 근

로시간의 평균이 1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주의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

2) 선택적 근로시간제
: 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동안 총 근무해야 할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매일 매일의 근무시간을 근로자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제도

3) 재량 근로시간제
: 전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출퇴근시간도 정해놓지 않으며 실제로 몇 시간을 근무했든지 상관없이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4) 간주 근로시간제
: 외근이 많아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이나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3. 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의 개념정리
1) 휴일 - 일요일, 유급
2) 휴무일 - 토요일, 비번일, 유급

※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 1개월의 유급 시간수
= 소정근로시간 + 유급처리시간
= (40+8) x 365÷7÷12 = 209시간

3) 주휴일 -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반드시 평균 1일 이상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
(1)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됨
(2) 주중에 결근하면 무급으로 부여해도 됨
(3) 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주휴일을 부여함
(4) 주휴일은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특정요일을 지정하지 않아도 됨

4) 근로자의 날 -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임
(2)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3)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함

4. 출산전후휴가

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도록 해야 함

2)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에 대해 회사가 유급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출산전후휴가 90일과 휴가종료 후 30일까지는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할 수 없음

5. 육아휴직

1) 사업주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거부가능사유 :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자,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자

2)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 분할사용 가능

3) 육아휴직 기간동안 무급이며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함.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

6. 임금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2)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 중에서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 모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

-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 : 해고예고수당, 산전후휴가급여,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휴가보상비)

3)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 : 퇴직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감급제한의 기준

4) 최저임금제

: 해마다 노동부장관이 회계연도 단위로 고시(2015년- 5,580원/2016년- 6,040원)

-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1) 최저임금 포함 :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 또는 수당

(2) 최저임금 제외 :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과 같이 매월 단위를 초과하는 단위기

간마다 지급되는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등과 같이 소정근로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가족수당, 급식비, 통근수당 등 복리후생적 수당

7. 퇴직금

1) 퇴직금 지급의무

: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러한 퇴직금은 법적으로 '후불적 임금'으로 간주되고 있음

2) 계속근로연수

: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란 기본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됨

3) 평균임금의 산정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3개원간의 총일수 =
(1개월)+(1개월)+(1개월)+(상여금x3/12)+(연차x3/12)/30일+31일+31일

4)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 수습사용 중인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기간
-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기간

- 적법 쟁의행위기간
-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제언

2015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은 사업을 지원받는 타 기관의 사업진행에 대해 관심가지기 보다 본 센터의 사업진행에 급급하곤 했습니다. 실무자 교육 일정 중 노무관리 교육을 받으면서 보조강사 관리에도 연장근로가 해당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에는 정해진 규칙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무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무관리 교육을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고 보조강사 관리와 일반직원의 노무관리가 같으면서도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이외에 회계업무를 맡고 있어 이번 노무관리 교육이 본 센터 직원의 노무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노무관리 중 육아휴직이나 퇴직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이번 기회에 많이 채워질 수 있었고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노무관리 교육 책자를 참고하여 정확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연수보고서 15-22

2015년 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수행기관 교육

주 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 간		2015년 1월 9일(금) 14:00~16:00
장 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 5층 교육장
참석자	**팀 명**	열린일터
	명 단	류수진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2시간

1. 신청사업 연간 진행일정

2. 온라인배분신청 시스템 이용안내

- 온라인배분신청싸이트에서 원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안될 때
  ① http://proposal.chest.or.kr 싸이트화면에서
  ② 인터넷 주소창 아래 도구 클릭
  ③ 호환성 보기 설정 클릭

3. 예산변경 관련 유의사항

4. 2015년 중요사항

1) 사업비 지출시 **모금회 전용 체크카드 사용 필수**
   · 체크카드 발급여부 확인 이후 자금교부 예정
   · 필요시 복수 발급 가능

2) 지원금 교부시기
   · 1차 : 1월 13일
   · 2차 : 7월 초

▶ 예산변경 승인 요청시 ◀
- 세목간 전용 30만원 초과 시
- 목간전용

▶ 예산변경 원칙 ◀
- 공문을 통한 모금회 승인 후 집행이 가능 (온라인배분시스템 탑재 후 연락)
- 인건비의 경우 예산조정이 불가
-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및 관리운영비 총액대비 25%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예산변경 가능기간 ◀
- 지원일로부터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 기관내부승인의 경우에도 2개월 전까지 변경 가능

▶ 변경승인 면제 ◀
- 30만원 이하의 세목 간 변경의 경우 기관의 내부결제를 득한 후 집행 가능

"세목" 간 전용

"목" 간 전용

관		사업비		
항		공동모금회 "OOO사업" 사업비		
목	세목	계	산출근거	예산금액
인건비	인건비	14,500,000	급여 1,000,000원*12월*12,000,000원	12,000,000
			4대 보험료 1,500,000원	1,500,000
			퇴직적립금 1,000,000원	1,000,000
소 계		14,500,000		14,500,000
사업비	회의 및 홍보비	900,000	인쇄지 계약 500원* 500부	250,000
			홍보물 발송비 500원*300건	150,000
			현수막 50,000*2개	100,000
			계	500,000
	교육비	2,470,000	강사료 100,000*2시간*4회	800,000
			현수막 50,000원*1개	50,000
			교재비 5,000원*40권	200,000
			간식비 1,000원*30명*4회	120,000
			계	1,170,000
소 계		3,370,000		3,370,000
관리운영비	사무용품구입	360,000	문구류 및 사업관련 소모품 30,000원*12월	360,000
			계	360,000
소 계		360,000		360,000
총 계		18,230,000		18,230,000

3) 개인정보보호법 의거 관련서류 추가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작성** (수행교육자료 p199)

· 강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 모두 작성

4) 중간평가 전 자문 및 수퍼비젼 필수

5) 사업 · 회계평가 및 기타사항

구분	사업평가	회계평가
목적	사업수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배분금의 적정한 집행여부 평가
평가 기준	배분의 적절성, 사업목표 달성도, 문제해결 기여도, 배분의 성과 등	모금회 지침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 / 발표한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기준에 따라 합의된 절차 수행 여부
방법	서류, 현장평가(필요 시) **※ 2016년도 서류 제출없이 현장평가로 대체할 계획있음.**	서류 평가
평가자	배분분과실행위원, 평가지원단원, 외부전문가 등	모금회가 지정한 회계법인
제출처	모금회 제출 또는 기관보관 ※ 사업성격에 따라 제출방법 상이	회계법인(새시대회계법인) ※ 사업성격에 따라 제출방법 상이

※ 평가서류 편철 시 협조사항

- 1월 1일이 맨 위로 올라오게 편철하고, 결의서마다 텍 붙이기

교육·연수보고서 15-23

남동구 복지정책아카데미
(우리 공동체의 집 짓기)

주 최		남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 간		2015년 1월 19일 - 2월 9일(매주 월) 17:00~19:00
장 소		사)마중물
참석자	팀 명	열린일터
	명 단	김지혜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4 일
	시 간	총 8시간

1차. 우리 집 속의 사람들
(나와 공동체)

강사 : 유해숙 교수(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1. 관점 : 사랑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
- 조지 베일런트는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만 온다. 더 이상은 없다'고 하였다. 즉 '잘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포리스터 카터는『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에서 인디언 할아버지를 통해 '사랑하는 것은 이애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할 수 없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 이해의 폭 만큼 사랑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가 관건이다.

2. 인간에 대한 이해 : 우열의 무엇됨인가, 차이의 누구됨인가
- 인간은 누구인가?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개성을 누구됨(Who-ness)과 무엇됨(What-ness)으로 이해했다.

	무엇됨(What-ness)	**누구됨(Who-ness)**
개념	어느 정도 측정되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특징 (외모, 재능, 성적, 재력 등)	인간의 고유성, 세상에 대한 시각과 태도 (내면, 인격 등)
관점	인간을 기능과 능력중심으로 이해	인간의 개성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이해
관점의 특징	우열	차이
강조	경쟁, 자조, 자립, 근면	협동, 연대, 공존, 상부상조
문제의 원인	개인, 가족	환경, 구조
삶의 기본 조건에 대한 책임	개인	사회
인간에 대한 이해	상품가치	인간
목표	성공	행복
사회의 형태	쇼핑몰 사회	공동체

- 행복한 삶이 되는 조건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 관계맺기에 있다. 이때 무엇됨이 아니라 누구됨이 사회적 삶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는 정치다.
- 정치는 '정치의 삼각형'을 통해 잘 이해될 수 있다. 정치는 특정 권력(세력)이 자신의 생각(이념, 이데올로기, 철학)을 정책(제도)을 통해 관철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이스튼에 의하면 "어떤 사회적 행동이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은 그 행동이 한 사회를 위하여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활동과 관련을 갖는데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합리적·합법적으로 나누는 행위'이다.
- 사회복지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경제적(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것은 흔히 마샬의 사회권(social right)으로 표현되는 것에서 보듯이 경제적 정의, 사회적 연대를 통한 시장의 교정 또는 사회복지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 사회복지는 민주주의의 환성, 즉 사회권과 실질적 민주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고 이것은 자연사적으로 얻어지거나 자선으로 얻어지거나 또는 한 개인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경제적, 정치적 주체들 간의 타협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2차. 사회복지정치학의 눈으로 보는 복지국가의 기초
(사회권을 중심으로)

강사 : 유범상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사회복지정치학에 대한 구상
- 사회권은 지위의 평등이다.
- 마샬에 의하면 시민권은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유권과 정치권이 자유주의에서 중심이 되는 권리라면 사회권은 복지권에 해당한다. 그동안 사회권은 수당의 관점에서 생각해 온 경향이 있다. 즉 의료, 교육, 주거, 소득 등의 사회임금에서 접근해온 것이다. 하지만 마샬은 사회권이 소득의 평등보다 지위의 평등이라고 주장한다. 사회권은 사회임금으로 표상되는

수당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임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권력의 분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개입이다. 개입의 방향, 범위, 내용, 비용을 둘러싸고 각 세력은 경합한다. 따라서 존재하는 제도 이면에는 이념과 세력관계가 내장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주어진 제도'가 아니라 '세력관계가 응집된 제도'에 초점을 두고 그 제도의 속살인 이념과 세력관계를 추적해야 한다.
- '사회복지정치학'은 '사회복지를 정치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 또한 매우 정치적인 것이고, 이 관점은 불평등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 계급갈등의 문제를 탈각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다.

2. 사회복지학과 필링의 인문학

- 인문학은 나와 내가 사는 공동체를 문제삼아 당연하다고 하는 상식, 지식, 질서, 진리, 권력을 벗겨내어 그 이면을 문제삼는 것이다. 고달픈 현실을 힐링(healing)하고 더 많은 생산성을 위해 영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현실을 필링(peeling)하는 등에가 되어 새로운 상상의 산파가 되는 것이다.

3. 사회임금과 소득이전의 정치

-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서 소득을 얻는 것과 달리 사회임금은 사회가 탈상품화의 형태로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의 형태와 관련하여 사회임금과 시장임금의 비율이 중요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임금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사회임금이 높다는 것은 탈상품화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탈상품화는 노동시장에서 시장임금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임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이다.

4. 복지국가의 모델하우스 : 연민의 집과 국민의 집

- 시민들은 국가라는 집을 지을 때 정치인과 정부라는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행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이다. 이때 시민들은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 집일지에 대해 목표와 방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때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연대에 기반한 집인가 아니면 경쟁에 따라 작동되는 집인가'이다.
- 모든 연대의 대상은 가족을 넘어서서 국민전체이다. 이것은 위험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이다. 따라서 연대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국가가 맡는다. 국가는 생산과정과 분배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연대성이란 단순히 개인과 이웃들 간에 우호적인 관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소득이전을 통해 사회가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성은 무상의료, 무상교

육, 아동수당 등과 같은 사회임금을 통해 모든 시민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이들이 처하거나 처하게 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태도이다.

- 경쟁의 입장은 위험은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과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교육, 의료, 주거 등은 국가의 몫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고 이를 위해 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국민의 집과 연민의 집, 전자는 연대성에 기반해서 지은 집이고 후자는 경쟁을 재료로 해서 건축된 집이다. 국민의 집은 모든 국민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짓는 집을 의미한다. 반면 연민의 집은 각자의 가족이 스스로를 책임지되, 토저히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때 연민을 가지고 도와주는 집을 의미한다.

3차. 우리 공동체가 사는 세상

(성공한 국가 뒤의 어두운 뒤안길의 공동체)

강사 : 정연정(마중물 사회정책연구소)

1. 사회의 모습

구분	사회의 모습	
	쇼핑몰의 공동체	**연대의 공동체**
주체	소비자	시민/계급
	호모 에쿠노미쿠스	호모 폴리티쿤
	우열(What-ness)	차이, 개성(Who-ness)
철학	경쟁, 근면, 자립, 자조	연대, 협동, 상호부조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에로의 자유
	시장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제도	잔여주의/선별주의	제도주의/보편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사회복지의 실천유형	COS(자선조직협회) **Massinger**	Settlement House Movement **Mediator**

2. 국가란?

- Thing인가?, Relations인가?
- 국가는 세력관계의 제도적 응축, 형태가 결정된 사회적 관계
- 국가를 본 적이 있는가? 권위주의적인 국가, 온정적인 국가 등으로 네이밍할 수 있다.
- 국가를 형상화시켜 집으로 표현한다면 국민의 집, 가장의 집, 연민의 집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집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두 기둥은 경제기둥과 사회정책 기둥이다. 즉, '시장임금에 치중할것인가', '사회적 임금과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이다.
- 시장임금과 사회적 임금

국가	시장임금	사회적 임금
스웨덴	51.5	48.5
프랑스	55.8	44.2
독일	61.2	38.8
OECD 평균	68.1	31.9
한국	**92.1**	**7.9**

출처 : 오건호, 2009, "한국의 국가재정과 복지국가 재정전략"

- 에스핑-엔더슨 복지국가 유형의 특징

	경쟁과 연민의 집	연대와 국민의 집
탈상품화 효과	낮음	높음
계층화 수준	높음	낮음
별명	앵글로색슨 모델 자유주의복지국가 유형	노르딕 모델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 유형
국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4차. 어떻게 우리의 집을 지을 것인가?
(동료들과 함께하는 상상과 실천)

강사 : 유해숙 교수(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1. 사회복지정치학의 주체 : 시민들이 그 일을 한다.
-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노동교육을 받는다. 이 들은 노동자들이 권리의 주체라고 배울 뿐만아니라 노사갈등과 파업의 상황을 가정하고 노사로 나뉘어 협상과 타협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노사를 이해하고 특히 노동자들의 단결과 파업을 시민들의 권리로써 배운다. 노르웨 이의 중학생들은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시작한다. 16세부터 정당가입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어려서부터 정치교육을 받고 그것을 체 험한다.
-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힘 때문이다. 스웨덴 국민들의 평생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인 학습동아리는 3인 이상이 모여 정기적으로 토론을 하는 모임이다. 2008년 기준으로 1년간 한 개 이상의 학습동아리에 참여한 사람이 19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중적인 이곳에서 책 읽고 토론하는 조직된 시민들을 배출하고 있다. 학습동아리는 구성원들에게 지역사회나 조직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동아리 구성원으로부터 새로운 지역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이로 인해 학습동아리에서의 배움은 정치생활에 반영되었고, 민중 운동은 정치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게 되었다. 이런 학습동아리의 거점은 시민학교와 시민도서관이다.
- 자각한 시민은 세가지 활동과 깊이 연관된 존재이다. 첫째, 기존의 상식을 비판하여 전복하려는 시민이다. 둘째,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이다. 셋째, 권력을 비판하는 시민이다.

2. 마리다의 실천 :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 앎은 대화를 통해 함께 세상을 이름짓는 과정이다. 앎은 “나는 생각한다”(I think)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한다”(We think)에서 생겨난다. 즉 누구나 다 생각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방향과 디자인을 함께 해 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체가 ‘I’가 아니라 ‘We’라는 것이다. ‘We’는 누구인가, 그것은 집합적인 세력 즉 조직된 조직하는 시민이다.
- 사회복지정치학은 필링의 인문학처럼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성찰하고 권력관계와 구조를 바꾸려는 상상이다.
-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이고, 내 공간에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에서 부터이다. 누구나 각자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내 마음과 몸이 허락하는데로 나

답게 실천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자녀와 좋은 토론을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선거와 정책을 꼼꼼히 따지는 것, 어떤 이는 시민단체나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후원하는 것, 또 어떤 이는 학교, 도서관, 자신의 동아리에서 하는 모든 노력이 내 공간에서 나답게 하는 실천이다. 모든 변화는 나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 평가

이번 복지정책 아카데미는 우리공동체의 집짓기,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는 주제로 4주간 3명의 강사에 의해 진행되었다. 3명이 강사가 각각의 주제로 강의하였으나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여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다양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여 지루함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4주간의 교육에서 다루어지기에는 그 내용이 방대하여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차기에는 교육시간이나 횟수를 늘려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복지정책 아카데미를 통해 공동체를 보는 눈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을 통해 알지 못했던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는 교육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내용이 잊혀지기 마련인데, 이번 복지정책 아카데미는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며 교육 내내 들었던 내공간에서 나답게,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는 말처럼 나를 움직여 행동하게 할 것 같다.

이번 교육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사랑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점이다. 교육을 통해 알게된 많은 것과 생각, 느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에서 소개된 책과 영화를 보면서 나와 공동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내공간에 나답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작은것부터 시작해볼 계획이다.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면서...

교육·연수보고서 15-24

재활전문교육 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

주 최		국립재활원
기 간		2015년 5월 11일 ~ 5월 13일
장 소		국립재활원 나래관
참석자	팀 명	**열 린 일 터**
	명 단	**윤 성 호**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3 일
	시 간	총 14시간

1. 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과 노동권증진 방안

(1) 근로조건 현황 : 급여체계

1) 근로사업장 : ① 근로장애인 2/3이상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80%이상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보호작업장 : ① 모른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지급
②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30%이상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공통 : ① 근로장애인의 금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애인근로자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하여야하며, 당해 장애인의 동의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음.
② 근로장애인(근로계약을 체결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적용제외 신청을 하여야함. (최저임금법 제7조)

(2) 노동권관련 쟁점

1)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 고용노둥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법 제7조)

2) 현저한 지장 : 동일 또는 유사직종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다른 근로자 중에서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 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함.

3)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절차

적용제외 인가 신청	→	적용제외대상여부확인 (근로자성, 장애등)	→	작업능력 평가의뢰	→	작업능력 평가	→	평가결과 통보	→	적용제외 인가 승인 결정
사업주 ↓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 공단지사		공단지사 (7일이내)		공단지사 ↓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4) 최저임금 신청 급증 원인

①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 '0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통해 직업재활시설 소속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를 받도록 안내 강화

② 고용노동부 '10년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 최저임금 이상 또는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토록 고시개정 및 지금단가와 월임금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5) 근로자성 3가지 판단 기준(대법원)

1) 지휘명령성 요소 (지휘명령의 존재 여부를 판단)	①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가 ②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가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가 ④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가 ⑤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가 등
2) 임금성 요소 (보수의 성격과 구성)	①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가 ②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가 등
3) 기타 종합적 요소	①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②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③ 세법(근로소득세의 공제여부)이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④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3) 노동권증진 방안

1) 중증장애인 근로의 권리 보장

① 헌법에 중증장애인 노동기본권과 적극적 우대조치의 규정 마련

- 헌법 제32조 : 근로의 권리와 의무, 적정 · 최저임금의 보장,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조건 규정, 여성과 연소자, 국가유공자 · 안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등을 규정
- 중증장애인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은 명백히 국가에 있음
- 근로의 기회와 적정임금과 최소한의 근로기준 마련, 차별금지를 위한 조치, 적극적 우대조치 등을 실현

2) 직업재활시설의 정체성 재확립

① 근로자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설성격

- 복지 + 영리사업 가능한 시설로 법 개정
- 장애인복지법 58조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 법 58-1항 (직업재활시설)신설

② 정체정(직업생활, 직업훈련) 확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 인력지원 미흡 → 지자체 후속조치
- 대상자구분 혼란, 작업활동프로그램 신설 저조 → 지도점검. 홍보, 중증장애인 적극유치

③ 명확한 대상자구분
- 근로장애인 : 근로계약, 근로자성(O)
- 준근로장애인 : 근로계약전 단기간훈련
- 훈련장애인 : 작업활동프로그램, 근로자성(X)

④ 신고제에서 인증제로의 전환
- 신고에 따른 요건과 시설목적에 맞는 적격성 확인

2. 직무분석과 배치

(1) 직무분석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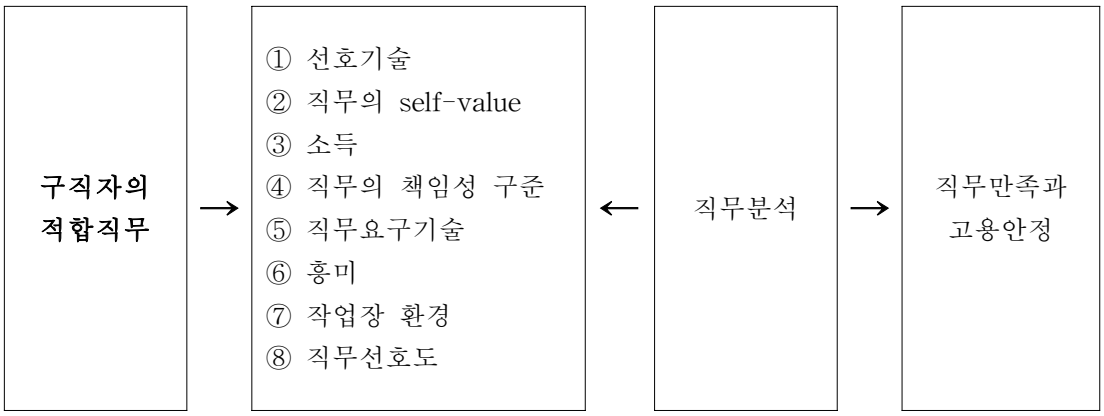

※ 직무분석은 직무개발과 배치과정의 연속적 단위

(2) 직무개발과 직무배치의 연속적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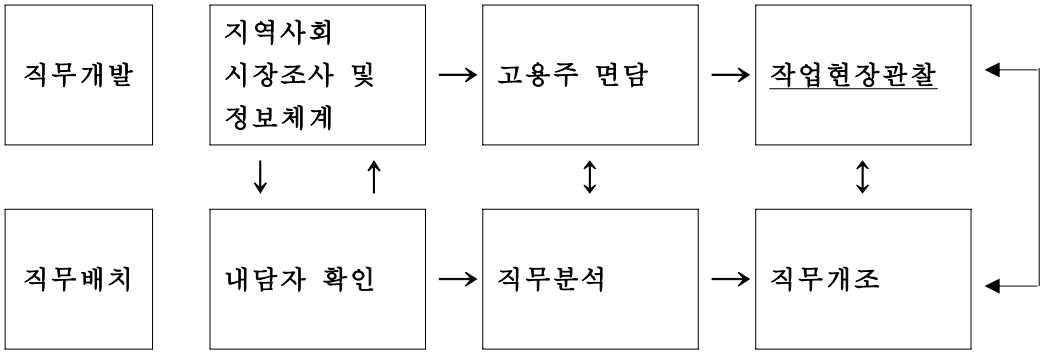

(3) 작업현장 관찰
- 고용주로부터 고용할 수 있는 직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얻은 후 사업장과 그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관찰.
- 주로 관찰해야 하는 부분은 직무에 대한 분석과 작업장의 환경.
- 동료 근로자나 직장의 분위기, 직장 내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

(4) 직무분석의 개념
- 산업사회의 필요 인력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작업
- 특정 직무의 성질 + 직무 요건(지식, 숙련, 역량, 책임 등) 결정 과정

(5) 직무분석의 목적

① 직원선발, 배치, 평가

② 직무 설계 및 재설계

③ 합리적인 임금체계 설계

④ 장애인 직무조정

(6) 직무분석과정

① 직무분석계획 수립

- 직무분석 목적 명료화 → ■ 작업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작업자가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 작업자가 왜 그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가?
  ■ 그 작업을 하는데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 직무분석 범위결정 : 7단계 중에 어디까지
- 직무분석 방법결정 : 자료, 방문 등
- 방문시 방문계획 수립

② 직무수행 관찰

- 회사 내의 오리엔테이션 참여 → 회사의 특별한 직무설명 및 직접관찰
- 직무를 직무, 임무, 과업, 과업요소 중심으로 관찰 → 동료 및 상급근로자의 태도와 작업장의 문화적 상황 관찰

③ 과제분석표 작성

- 직무의 범위 및 과정, 책임과 권한, 작업조건, 요구지식, 숙련 · 적성 등 분석
- 한국직업사전의 직무분석틀 활용

■ 직업코드 (1-0)

■ 본 직업명칭 : 관리자, 검사원 등

■ 직무개요 : 직무수행 일반적 · 전문적 지식과 내용(직무와 임무)

■ 수행직무 : 과업과 과업요소

■ 부가직업정보 : 산업분류,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직업강도, 육체활동, 작업환경, 유사명칭, 관련직업, 자격/면허, 조사연도, 직업전망, 직무정보

④ 배치과업선택 및 승인

- 직무분석과 직무배치 조화 → 임무와 과업의 선택
  → 필요시 직무조정 고려
- 고용주와 관리자 협의 확정 → 직무조정에 대한 합의 필요

⑤ 훈련전략 및 직무조정 선택

- 배치 후 생산성을 위한 훈련전략 모색
- 배치 후 동기부여를 위한 전략 모색
- 직무조정에 대한 고려 → 직무조정은 직무재구성, 보조공학 등 포괄적 고려

⑥ 포괄적 훈련계획 수립
- 직무효율성을 위한 계획
- 직무조정에 대한 훈련
- 동료근로자나 작업장 환경적응에 대한 훈련

⑦ 직무분석표 완성

(7) 직무조정
① 직무분석에 기초한 직무의 재구성, 작업장이나 직무기술의 개조 등
② 직무조정 문제
- 의사소통 관련
- 작업자의 자세나 위치 변경 관련
- 이동관련
- 생산성 향상 관련
- 컴퓨터 입 · 출력 장치 관련

(8) 직무조정 과정

사 정	내담자 욕구 사정 → 임무 혹은 과업 파악 작업장 평가 → 생산성 및 포괄적
선택 및 제작	기존 기술 적용여부와 신기술 적용 여부 결정 장애인의 고용안정이 최우선 기준
훈 련	직무조정 적용 과정 적용과정 지속적인 피드백 필요
유 지	자기유지 · 보수 지원

3. 장애인과 인권

(1) 인권
- 국적, 거주지, 성별, 인종, 피부색, 장애, 종교, 언어 등등 다른 조건과 관계 없이, 모든 인간이 타고난 권리
- 사람이 '사람이기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에게,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법적 질서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	⟷	'타인'의 인권이 무너질 때 나의 인권도 무너진다.

(2)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권리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
세대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등장	18세기 (시민적) 19세기 (정치적)	20세기 전반	20세기 후반
내용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등
핵심 가치	자유, 형식적 평등	사회정의, 실질적 평등	박애, 연대
권리 주체	주로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 (국가, 민족, 공동체 등)
국가의 역할	소극적 (negative) 부작위 (不作爲)	적극적(positive) 작위 (作爲)	적극적 국제적인 협력

(3) 장애인 권리에 대해 말하는 이유

- 공적 교육체계, 고용 영역,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삶, 자유로운 이동, 투표, 체육/문화예술활동 참여, 사법접근권, 의학적 진료의 선택, 재화를 자유롭게 사고 파는 계약행위 등

(4) 장애인 관련 법의 제정

- 장애인복지법(8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9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9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05),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0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0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07), UN장애인권리협약(08) 등.

(5) 차별 금지의 대상

장애인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사람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광고에 의해 차별하는 행위

(6) 차별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형식 상 불리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이를 허용, 조장하는 경우

(7)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고용
- 교육
- 재화와 용역의 제공과 이용
-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 모성, 부성, 성
-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할 것!**

(8) 인권침해 조치 개요

1단계 : 사건인지 (사건개요 및 정황 등을 일지에 기록)

↓

2단계 : 피해자 보호 우선조치 시행(분리조치 및 의료조치 시행 등)

↓

3단계 : 사안조사 및 확인 (가해자 및 참고인 면담)

↓

4단계 : 보호자 면담 및 신고 (향후 처리 절차 등 통보)

↓

5단계 : 내부적 처리 방향 결정 (인사위원회 등 개최는 추후에 가능)

↓

6단계 :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교육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심리치료 유지

4. 장애인식개선

(1) 장애이해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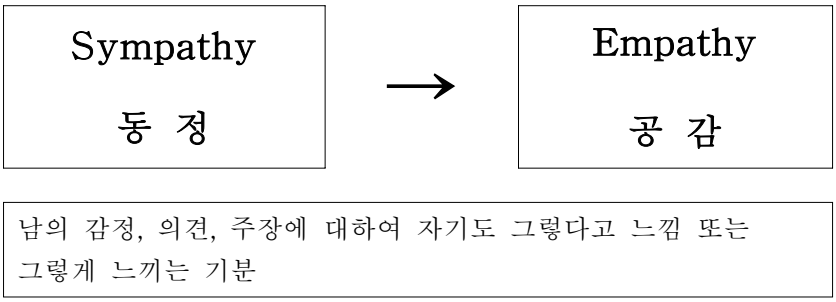

※ 사람은 날씨와 같다! →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날씨처럼 변하는 내면을 봐라

(2) 고정관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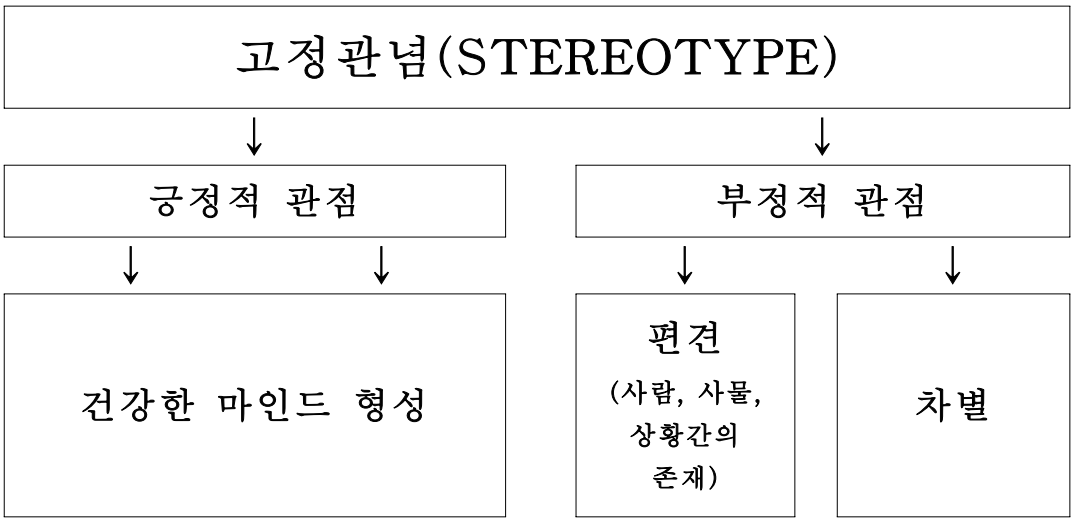

(3) 장애의 종류

① 신체외부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② 신체내무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 · 요루장애, 간질장애

③ 정신적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5. 직업재활시설의 평가와 준비

(1)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법적 근거

① 사회복지사업법

- 제 43조 (시설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 27조 (시설의 평가)

[1]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입소정원의 적정성
■ 종사자의 전문성
■ 시설의 환경
■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평가의 목적

-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
-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합리성 유도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선진화 지원
-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표 추가개발 및 세부 유형별 평가지표의 보완을 통하여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향상

③ 평가의 기본방향

사회복지시설
이용인, 생활인의 복지향상

사회복지시설 운영선진화

서비스품질관리, 운영매뉴얼, 시설운영 정보공개, 인센티브

↑

사회복지시설평가

서비스최소기준, 객관적 평가 틀

(2) 직업재활시설 평가영역

- 평가영역 별 지표 수 및 배점

평가영역	2013년	2016년			
	배점 (%)	배점 (%)	시설 유형별 지표수(개)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공통지표
A. 시설 및 환경	10	15	6	6	4
B. 재정 및 조직운영	10	15	6	6	4
C. 인적자원관리	25	20	9	10	9
D.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40	45	14	13	-
E. 이용자의 관리	5	3	4	4	2
F. 지역사회관계	10	2	2	2	2
총계	100	100	39	39	20

(3) 평가주요지침 (용어의 정의)

법인전입금

- 재무회계규칙상의 법인전입금 (08전입금)

사업비

- 재무회계규칙상의 사업비 (03사업비 중 **재활프로그램에 소용된 경비**)

단, 인건비 및 재료비 제외

후원금 수입

-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받은 각종 후원금 (05후원금)

단, 물품제외

민간자원금

- 공동모금회, 기업의 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프로그램 지원서를 제출하여 확보한 재원

정부자원금

- 중앙정부, 공공기관(공기업/공단 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확보한 정부재원
-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원되는 재원 등

직원의 범위	- 월평균 확보 직원 수 → 정규직 + 계약직 * 월평균 확보 직원 : 경상보조금의 일부라도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 - 정규직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 주 40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 계약기간 1년 이상 직원 - 자부담 : 시설 예산으로 100% 인건비를 지급하여 채용한 직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육아휴직자와 동일 - 퇴직자와 신규직원 동시에 근무한 월은 1명
월평균 직원	- 월별 직원 수 총합 / 36월 - 월별 직원 수 : 급여지급일 기준
법정직원 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직업재활시설 동사자 배치기준 * 시도별 직원배치 기준 아님

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관리시스템

(1) 장애와 장애인복지

① '80년 WHO는 심신의 손상 (impairment),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능력 제한 (disability), 사회적 결과인 불리 (handicap)로 정의

② 장애개념의 변화

과 거		현 재
분리된 삶	→	정상화된 삶
개별적 모델		사회적 모델
전문가 주도		당사자 주도

③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④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 (헌법)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

⑤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기존정책 패러다임	새 정책 패러다임
명칭	복지 패러다임	권리 패러다임
정책모델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정책목표	물리적 안정	완전한 사회참여 → 기회평등 확보 전제

(2)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 재활 (rehabilitation)에서 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로 장애문제의 정의, 사회적 역할, 해결방식 등의 변화

	재활 패러다임 (Rehabilitation)		자립생활 패러다임 (Independent Living)
문제의 정의	신체적 손상, 직업기술 결여		건축물의 장애, 경제적 장애
문제의 위치	'개인' 에게	→	'환경' 안에
사회적 역할	환 자		수요자
통제의 주체	전문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당사자
문제 해결방법	치료 또는 행동의 변화		환경과 태도의 변화

(3) 장애인구 및 장애원인

① 장애인 인구는 2,683.4천명 (전체인구의 5.6%)으로 추정

② 장애원인은 선천적 원인보다 질환, 사고와 같은 후천적 원인이 높은 비율

→ 후천적 원인이 9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구 분	선천적 원인	출산 시 원인	후천적 질환	사고 원인	원인 불명	합 계
비 율	4.6%	0.9%	**55.1%**	**35.4%**	4.0%	100%

(4) 장애인 일자리의 필요성

- 장애인 실업률 (7.8%)은 전국 실업률 (3.2%)의 2.4배 수준
-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증장애인의 39% 수준
- 장애인 복지욕구는 " 일자리 등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소득보장 > 의료보장 > 고용보장)

(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용역,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제도.

(6) 국내 주요 우선구매제도

① 중소기업제품

- 관련법령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 영제기업의 수주기회가 축소되거나 독과점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영세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을 강화
- 공공기관 낙찰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적기에 제품을 납품하고, 안정적으로 자재수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공공기관 구매총액의 50%이상 구매 (기술개발제품 10%)
- 장애인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등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제품에 포함

② 사회적기업제품

- 관련법령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
- 우선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 시 제출대상 기관을 소속기관, 산하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

③ 녹색(친환경)제품

- 관련법령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의무구매 예외 시 미구매 사유서를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
- 의무구매 예외사항

■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 등

④ 여성기업제품

- 관련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촉진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5% (공사는 3%)

⑤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

-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상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 구매

⑥ 장애인기업제품

- 관련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공공기완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기업, 표준사업장 비교

구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련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전체근로자의 70%	전체근로자의 30% (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은 제외)	전체근로자의 30%
생산품 범위	물품, 용역	물품, 용역, 공사	물품, 용역
법정구매 비율	기관 총 구매액의 1%	기관 총 구매액의 0.45%	기관 총 구매액의 0.3%

(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요사업

구분	사업	내용
정책 지원	우선구매 촉진계획수립 지원	- 구매실적 및 계획, 제도개선 등 수립 - 공공기관별 구매실적 평가
	생산시설 지정심사(생산품인증) 및 사후관리 지원	생산품 직접생산여부 등 생산시설 지정 (인증) 기준 충족여부 심사 및 사후관리
	조사연구	우선구매 정책개선등을 위한 조사연구
	정책자문단	우선구매 관련 법령 검토 등 정책 지문
역량 강화	생산(판매)시설 종사자교육	생산(판매)시설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	KS, Q, ISO 등 품질인증획득 지원
	포장디자인 지원사업	제품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구매 촉진 지원	장애인생산품 홍보	대중매체 홍보 등 지원
	구매촉진지원	**생산품 수의계약대행 (공공기관 ↔ 개발원)**
	우선구매담당자 교육	**우선구매(계약) 실무업무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교육**
	민관합동워크샵 및 포상지원	**우선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포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한 총괄업무는 개발원이 수행		

(8)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발달과정

- 99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국가 등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 00 복사용지 등 6개 품목, 2% ~ 20%로 우선구매 시작
- 04 17개 품목, 5% ~ 20%로 우선구매 품목 및 비율 확대
- 06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법적 의무 권장사항) 실시
- 07 18개 품목으로 확대 (화훼 및 농산물 추가)
- 0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및 시행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포함
- 11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① 제정목적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② 주요 내용

- 우선구매 대상기관 : 국가 등 공공기관
- 우선구매 대상품목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용역, 서비스 (공사제외)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기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등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 우선구매 비율 : 대상기관 총 구매액의 1%이상
- 우선구매촉진방법 :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계획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무

※ 국가계약법 및 우선구매 관련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제 1항 제 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 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 제 16조 제 1항 제 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제 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 주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은 미해당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① 근로장애인 인원 수 : 장애인근로자 10명 이상
② 직접생산 : 직접생산설비 및 직접생산 여부 확인
③ 장애인 근로시간 :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100분의 50이상
④ 중증장애인고용비율 :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이 100분의 60이상
⑤ 장애인고용비율 : 장애인고용비율 100분의 70이상

(10)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공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해당연도 우선구매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우선구매실적 및 우선구매계획 미제출 기관명단공표예정
최소단위(시군구단위) 우선구매실적 및 우선구매계획 공표예정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방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직접 발주 및 구매

※ 공공기관은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지 않는 품목의 납품 요청을 하지않도록 협조

②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직접 구매 - 전국 17개 시도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③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 - 조달청, 학교장터(S2B) 등

④ 공공기관과 계약한 일반업체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 청소 용역 : 청소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비누 등
■ 학술 용역 : 학술용역업체에서 인쇄하는 인쇄물 등
■ 건물 유지, 보수 : 건설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형광등 등
■ 사무기기 유지, 보수 : 사무기기 유지, 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재생 토너카트리지 등
■ 단체급식 위탁 : 단체급식 위탁업체에서 구입하는 농산물 등

-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해야하는 품목을 명시
- 생산시설 지정서, 세금계산서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구입 증빙자료를 공공기관으로 제출하도록 함

⑤ 업무수행기관으로 수의계약 대행 의뢰

- 우선구매특별법 상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공공기관 간의 수의계약 대행을 의뢰할 수 있음.

*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7조 제 3항 및 제 12조 제 3호

※ 업무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

■ 평가

이번 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 기본과정 3일간의 교육을 통해 직업재활시설에서 필요한 재활관련 전문 지식 및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이번교육 6명의 강사분들이 6개의 각각 다른 주제로 강의를 해 주셨고 내용 또한 교육이 기본과정인 만큼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교육을 듣는 동안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다. 교육을 들으면서 직업재활시설에 일하는 동안 지금까지 내가 잘 모르고 있었던 일들이나 잘못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다시 알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은 '장애인과 인권'에 관한 수업이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있었던 실제 인권침해 사건을 토대로 교육을 해주셔서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업도중 다른 지역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조를 이루어 토론수업을 통해 각자의 생각과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유익하였다. 이번 교육으로 내가 모르는 부분 및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서 좋았고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일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겠다.

교육·연수보고서 15-25

남동구 복지정책아카데미
(복지정책에 대한 통섭적 접근)

주 최		남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 간		2015년 6월 1일 - 7월 6일(매주 월) 17:00~19:00
장 소		남동복지관 1층 교육실1
참석자	팀 명	열린일터
	명 단	금민희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6 일
	시 간	총 12시간

1차 '나와 우리가 사는 사회는 행복한가?'

강사: 유해숙(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교수)

1. 사회복지 어원의 의미 : wellfare=well+fare
- 사회구성원들이 위험사회에서 보다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 즉 좋은 상태, 안녕의 상태에서 사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안녕의 상태를 추구하는 학문이고 전략이다.'

2. 사회복지사의 위상

<한국>
- 시장의 부수적, 보완적, 대체적 존재이며 세상문제를 홀로 지고 가는 정체성 잃은 지친 노새,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해서 잘 산다는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사람들을 완충작용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정, 치료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다.

- 사회복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주를 이룬다. 사회복지가 중추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대체할 수 있고, 임시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에 내가 있고, 사회가 이런 위상으로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위상도 위와 같다.

<복지국가>
- 사회복지가 중추적, 핵심적인 역할로 위상이 정립되어 있고, 이에 사회복지사에게 권한부여 및 대우도 해준다.

3. 인본주의 VS 자본주의
- 자본이 좌표가 되는 사회 : 인간의 상품화
- 인간이 본질인 사회 : 인본주의

EX. 네 살짜리 아이가 집에 혼자 있다 불에 타 죽은 사건 : 자본주의에서는 문을 잠그고, 부모가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불에 타 죽었다. 인본주의에서는 사회를 둘러싼 관계 때문에 살 수 있다.
- 자본주의는 인간이 생산능력이 있는가를 본다. 그래야 잘 사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상품 물신주의에 빠져있다. 상품을 필요에 의해 만들었지만, 상품이 우리를 다시 지배한다.

EX. 핸드폰-하루라도 없으면 불안하다. 핸드폰 교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4. 위험사회
- 외눈박이거인처럼 생산성 향상만을 본다. 생산성에 맞추느라 껴 맞춘다. 외눈박이거인의 거침없는 질주결과는 위험사회(Risk Society)를 만든다. 위험을 양산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EX. GMO(‘지식채널e’ 영상 참고: 제초제+유전자 변형 콩, 제초제에도 죽지 않는 유전자 변형 콩) - 푸스타이 박사 해고(생산성을 얘기하지 않고, 위험을 언급했기 때문에 해고)

- ‘위험’은 민주적이고 계급적이며, 위험이 전면화 되었고, 차등 분배되고 있다. 또한, 위험의 제공자는 누구인지 모르고, 피해자는 우리이다.

EX. 우리나라 콩인지, GMO콩인지 구별할 수 있겠는가.(민주적) 서민들은 구분해서 콩을 먹지 않는다.(계급적)

EX. 세월호 사건 : 자본이라는 눈 하나만 보고 간 압축적 사고의 예. 크루즈산업의 육성화 때문에 아이들이 배를 타고 가게 되었다.(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은 학교에서는 법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선박을 30년으로 연장시켰다.(19년 노후 된 배를 중축, 짐을 더 싣고 출항), 자본만을 향해 진행되었다.(사람들에게서 절약시켜 이익을 창출-선장을 포함한 22명이 비정규직, 셀프점검, 안전위탁관리는 선주들의 회원인 협회에서 실시 등)

5. 위험에 대한 시선

<위험에 대한 상이한 시선>

위험은 개인(가족)의 책임	위험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
개인이 사회에 맞춤	사회가 개인에 맞춤
경쟁	협동
성공신화 강조	연대를 강조

- EX. 참치 캔을 따다가 아이가 손을 베었다. 피가 나고 난리가 아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대부분의 부모들은 ‘조심하지!’라고 말할 것이다. 어쩌면 늦게 퇴근한 아버지는 ‘애를 좀 잘 돌보지’하고 핀잔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어떨까?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시민들을 위한 안전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

위험은 개인이 책임이다	위험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얼마나 다쳤지? 애 좀 잘 돌보지?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뭐하고 있었어?
가족 간 갈등	시민과 사회, 시민과 정부 간의 갈등
잔여적 복지	제도적 복지

- 전자는 위험이 아이와 가족의 책임이다. 후자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다. 전자에서는 가족내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아이/아빠/엄마가 서로 싸운다. 후자에서는 시민들이 사회와 국가를 향해 자신들의 위험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한다.
- 일생동안 우리는 장애, 노령, 빈곤 등 수많은 위험에 처하고, 교육, 주택, 의료 등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위험과 필요에 대한 일차적 의무를 누구에게 지워야 하는가? 개인(가족)인가, 국가(사회)인가!
- 복지국가는 위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개인, 가족이 할 일이 아니라 집합적, 공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진리가 진리효과가 생겼다. 개인이 사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개인의 위험에 맞추는 것이 진리효과이다.
- 우리나라는 시장, 경쟁은 잘 산다는 진리 때문에 개인의 눈으로 보고, 자본의 눈으로 본다.
EX. 세월호 : 정부에서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개인의 치료에만 책임을 지려고 함) 부모님들은 함께 대응해야 하고, 위험스런 사회가 가중되지 않고, 집합적이 되도록 시위 중임.

6. 인문학
- 말을 타고 질주하던 지친 인디언이 갑자기 멈춰섰다. 너무 빨리 달려와서 자신의 영혼이 쫓아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한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달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방향을 잘 잡았는지',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 것인지'. 기다리고 있는 '영혼'은 성찰을 의미한다. 성찰은 쉬면서 자신을 돌보고 충전하는 것이다. 음악이 주는 평온과 소설의 상상력, 그리고 역사와 철학의 새로운 지식이 성찰을 매개한다. 인문학은 이런 지친 현대인의 쉼과 성찰의 안식처다.
- 경주마는 눈가리개를 하고 있다. 초식동물은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피는 습성이 있어 눈가리개가 없다면 한 방향으로 질주를 하지 않는다. 특히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채찍이 경주마의 오른쪽 엉덩이로 쉴 새 없이 오간다.
- 푸코의 충고에 따르면, 말을 멈춰 세우고 내 영혼이 오길 기다려서 위로하기보다, 누가 나를 이렇게 빨리 달려오게 했는지, 이렇게 달리는 것이 누구의 이득이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다시 말해 눈가리개를 씌운 자 , 채찍으로 쉴 새 없이 나를 몰아세운 자가 누군지를 찾아내야 한다. 이때 인문학적인 성찰은 달리다 지친 나를 스스로 위로하는데 동원되기보다, 나를 어디론가 지속적으로 몰고 간 자에 대한 비판의 무기가 된다.
- 이처럼 또 다른 성찰은 권력과 제도 그리고 구조를 조준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정신없이 달리다 지친 내가 아니라 나를 지치도록 달리게 한 권력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인문학의 성찰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미처 따라오지 못한 개인의 영혼을 돌보는 인문학이고, 두 번째는 말의 눈가리개와 채찍에 초점을 맞춘 권력비판의 인문학이다.
- 우리의 인문학은 개인의 영혼만이 아니라 채찍과 눈가리개를 문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적 삶의 주체가 되는데 기여해야 한다.

7. 진리효과
- 북유럽국가의 경우 복지제도가 생겨나고,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안전망이 생겨난 것이 진리효과이다. 장애는 손상이 아니라 손상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장애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EX.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모든 버스가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였고,

버스 안에는 휠체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을 업어서 의자에 앉히고, 휠체어를 접어서 올리고, 다시 휠체어를 내리고, 장애인을 업어서 내린다.

8.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

- 사회정책을 통해 이상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상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우리의 이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던질 수 있을 것이다.
- 사회구성원들이 위험사회에서 보다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 즉 well+fare, 좋은 상태, 안녕의 상태에서 사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안녕의 상태를 추구하는 학문이고, 전략이다.' 이런 점에서 이상이다.
- 이것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차등적이고, 차별적인 상태를 보다 평등하게 해야한다. 이런 점에서 이상이다. 이를 위해 상상하고 실천하는 학문이 사회복지이다.
-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는 체계적인 계획을 담은 과학(science)이자 예술적인 실천(art)이라고 한다.
- 이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이며, 우리는 이것을 실천지혜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는 실천지혜를 가지고 보다 평등하고, 보다 위험에 덜 노출될 수 있는 공동체의 이상이 우리의 일상(현실)이 되도록 실천지혜를 갖고 상상하는 것이다.

2차. 사회복지의 철학과 정책 :
상이한 위험의 기원과 책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회권을 중심으로)

강사 : 유범상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상이한 인디언의 말

인문학은 나와 내가 사는 공동체를 문제 삼아 당연하다고 하는 상식, 지식, 질서, 진리, 권력을 벗겨내어 그 이면을 문제 삼는 것이다. 고달픈 현실을 힐링(healing)하고 더 많은 생산성을 위해 영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현실을 필링(peeling)하는 등에가 되어 새로운 상상의 산파가 되는 것이다.

2. 사회복지 철학의 물음 : 상이한 위험의 기원과 책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사회권은 지위의 평등이다.
- 마샬에 의하면 시민권은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유과 정치권이 자유주의에서 중심이 되는 권리라면 사회권은 복지권에 해당한다. 그동안

사회권은 수당의 관점에서 생각해 온 경향이 있다. 즉 의료, 교육, 주거, 소득 등의 사회임금에서 접근해온 것이다. 하지만 마샬은 사회권이 소득의 평등보다 지위의 평등이라고 주장한다. 사회권은 사회임금으로 표상되는 수당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임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권력의 분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개입이다. 개입의 방향, 범위, 내용, 비용을 둘러싸고 각 세력은 경합한다. 따라서 존재하는 제도 이면에는 이념과 세력관계가 내장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주어진 제도'가 아니라 '세력관계가 응집된 제도'에 초점을 두고 그 제도의 속살인 이념과 세력관계를 추적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치학'은 '사회복지를 정치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 또한 매우 정치적인 것이고, 이 관점은 불평등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 계급갈등의 문제를 탈각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다.

3. 생각하는 나인가 생각당하는 나인가?
-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서 소득을 얻는 것과 달리 사회임금은 사회가 탈 상품화의 형태로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의 형태와 관련하여 사회임금과 시장임금의 비율이 중요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임금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사회임금이 높다는 것은 탈 상품화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탈 상품화는 노동시장에서 시장임금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임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이다.

4. 상이한 철학과 다양한 사회정책
- 시민들은 국가라는 집을 지을 때 정치인과 정부라는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행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이다. 이때 시민들은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 집일지에 대해 목표와 방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때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연대에 기반을 둔 집인가 아니면 경쟁에 따라 작동되는 집인가'이다.
모든 연대의 대상은 가족을 넘어서서 국민전체이다. 이것은 위험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이다. 따라서 연대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국가가 맡는다. 국가는 생산과정과 분배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연대성이란 단순히 개인과 이웃들 간에 우호적인 관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소득이전을 통해 사회가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성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아동수당 등과 같은 사회임금을 통해 모든 시민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이들이 처하거나 처하게 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태도이다.
경쟁의 입장은 위험은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과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교육, 의료, 주거 등은 국가의 몫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고 이를 위해 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집과 연민의 집, 전자는 연대성에 기반을 두고 지은 집이고 후자는 경쟁을

재료로 해서 건축된 집이다. 국민의 집은 모든 국민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짓는 집을 의미한다. 반면 연민의 집은 각자의 가족이 스스로를 책임지되, 도저히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때 연민을 가지고 도와주는 집을 의미한다.

3차. 정책을 상상력에게로

강사: 이현숙(강남대 초빙교수)

1. 정책, 상상 그리고 세력

정책은 어떠한 세력이 자신의 이상을 일상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형성의 과정을 정치라 부르며, 이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세력이다. 어떠한 정책을 만드느냐는 어떠한 세력을 만드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한 번 만들어진 정책은 그것을 상식으로 믿는 세력을 만들고 이러한 세력은 다시 그 제도를 지지하게 된다.

2. 이상이 일상이 된 정책들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다.

- 의료: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질병에 대한 대처는 국가와 시민들의 질병에 대한 의식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즉, 질병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느냐, 국가의 책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질병에 대한 대처는 달라진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위험을 기본적으로 사회와 공공의 책임으로 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견해이다. 선별주의가 개인과 가족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규제의 완화 즉 시장의 자유를 강조한다면 보편주의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조건의 평등을 강조한다. 이렇듯 선별주의의 관점을 갖느냐, 보편주의의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의료에 대한 국가의 대처와 시민들의 의식은 달라진다.

[영국의 사례]

영국의 경우 NHS라는 의료보장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의료는 모든 시민의 권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해 왔던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복지국가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기존 복지제도로부터 복지혜택을 경험한 일반시민들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지지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무상의료는 경제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쿠바의 경우 무상의료정책은 한 국가의 차원을 넘어 전 세계 의료가 무상으로 누구

나 받아야 하는 기본권임을 설파한다.

[쿠바의 사례]
1959년 1월 탄생한 신생 쿠바혁명 정부는 '쿠바 공중보건제도'라는 정책을 수립했다. 무상의료제도와 함께 중요한 사업이 병행되었다. 바로 주민교육을 위한 무상교육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나라가 완전무상의료제도를 유지하는데 들이는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찾았다. 그 중 하나가 쿠바과학과 쿠바 의학의 발전이었다. 과학을 발전시켜 백신, 약품, 의료기기를 생산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때로는 수익을 얻기도 했다. 그렇게 얻은 수익은 다시 대국민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투자한다.

가난한 나라 쿠바가 무상의료가 가능했던 것은 의료시설과 장비의 국유화로 인해 수익창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예방의학과 가정의 시스템으로 인해 사전 예방을 통해 재정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건국이념 자체에 무상의료의 정신이 있기에 국방비를 줄여서라도 의료비 예산은 충당하기 때문이다.

- 교육 : '루저'가 없는 교육을 꿈꾸다
쿠바의 의료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전 국민에게 권리로 인식된 것에는 교육제도가 이를 받치고 있어서 가능했다. 자본주의 국가의 상식에서 보면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일정한 규모가 필요하므로 농촌학교의 폐교나 통합을 진행한다. 그러나 쿠바는 소규모 학교를 더욱 충실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의 개성을 살리고 가족이나 커뮤니티와의 깊은 연관을 위해서는 소수정원 교실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쿠바의 개성을 인정하는 교육방법은 핀란드의 교육제도와 그 모습이 흡사하다. 핀란드의 교육은 ① 계층 간 통합교육, ② 낙오자 방지를 위한 중층교육 구조, ③ 무상교육 체제가 중심이 된다. 핀란드 교육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한 가르침을 중시해 천재를 만들어내는 교육보다는 바닥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교육은 학교에서 사회적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교육이며,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교육이다. 어떤 아이에게 특이한 모습이나 학습장애가 발견되면 즉시 부모와 협의하고, 학교 내에서 도울 팀을 구성해 그 학생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 매주 협의한다.
연대의 가치에 기반을 둔 교육, 우열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교육 속에서 그들은 철학적 가치를 학습하게 되며, 이러한 교육 속에서 시민들은 성장한다. 자신의 꿈을 갖고 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철학적 가치의 학습은 이들로 하여금 복지를 지지하게 만드는 세력이 되게 한다.

- 문화 : 음악을 통해 꿈을 꾸게 하라.
프랑스는 1945년 헌법에 시민의 권리로 문화권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권은 선진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는 이러한 문화의 권리를 빈곤층에게까지 확대한 놀라운 정책이었다. 엘 시스테마는 하루가 멀다하고 총소리가 들려오는 곳에서 가난한 현실을 아름다운 꿈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상상에서 시작되었다. 엘 시스테마의 계획은 1975년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훌륭한 어른, 훌륭한 시민, 훌륭한 음악인으로 자라는 것을 목격하면서 음악이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 참여예산제 : 권력을 시민에게로

정책은 단순히 수당만의 정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주는 정책이 존재한다. 브라질 뽀르트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이곳에서 결정된 사안은 정부나 시의회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활동한다. 객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 청탁자들을 편드는 결정이나 책임자들이 주관적 자의성을 제기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공정한 절차가 확립되고 토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새로운 관심을 자극할 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정치에 냉소적이었던 분위기가 정치 활성화의 분위기로 바뀌었다. 한국도 참여예산제를 도처에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주체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만의 도입은 오히려 시민의 시민에 의한 통치에 부정적인 견해만 양산할 수 있다. 브라질은 제도 도입 이전부터 1980년대 민주화과정을 통해 노동당과 활동가들이 다양한 지역조직들을 규합하는 역할 수행의 결과로 참여예산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과정을 경험한 조직화된 세력이 62% 이상 되었기에 참여예산제가 직접 민주주의로 운영될 수 있었다.

3. 이상이 일상이 되게 상상하라!

앞서 정책들을 통해 우리는 ‘정책은 세력을 만드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세력을 만드는 정책에는 ‘이상’이라는 등대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한 이상을 두고 끊임없이 상상할 때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정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변화의 역사는 중앙정부의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았다. 엘 시크테마, 뽀르트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에서 시작한 정책이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상상해야 한다. 지역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상상을 말이다.

4차. 아들러를 통해 본 행복한 삶

강사: 유해숙(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교수)

1. 행복한 삶, 아들러 그리고 미움 받을 용기

아들러 심리학에 깊은 감명을 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다. 이 두 사람이 만나 개인의 행복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은 물론,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눈 자체를 바꿀 정도로 힘이 있는 아들러 심리학을 재구성했다. 바로 [미움 받을 용기]다. 아들러 심리학은 그동안 프로이트와 융에 가려 대중적으로는 잘 언급되지 않았지만 고민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생활철학이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아들러와 기시미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치전환'과 행복해질 용기를 얻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행복한 삶을 위한 가치전환과 용기

-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세계는 단순하다. 누구나 행복해 질 수 있다.

- 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가? 원인론이 아니라 목적론

아들러는 프로이드나 융처럼 원인론이 아니라 목적론을 주장한다. 인간은 과거의 원인에 떠밀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이다. 즉 아들러는 트라우마 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프로이드의 '원인론'을 부정하고 사람은 현재의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는 '목적론'을 내놓았다.

-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간관계에 발을 들어놓으면 크든 작든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아들러는 '고민을 없애려면 우주 공간에서 그저 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열등감은 주관적인 감정이다. 가치전환을 해라.

·건전한 열등감이란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다.

3. 인생의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행복해지기 위한 목표

- 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말라- 인정욕구를 포기하라.

아들러는 또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는 '인정욕구'를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아무리 잘 보이려고 애써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그 누구도 거울 속의 내 얼굴을 나만큼 오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 과제를 분리하라.

아들러는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즉 아들러는 “이것이 누구의 과제인가”를 생각하고 어디까지가 나의 과제이고, 어디까지가 타인의 과제인지 구분하고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과제의 분리’가 가능해지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모든 인간관계가 여유 있고 단순해지기 때문이다.

- 진정한 자유란 미움 받을 용기를 갖는 것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미움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를 얻으려면 타인에게 미움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즉 모든 것은 ‘용기’의 문제다. 자유도 행복도 모두 ‘용기’의 문제일 뿐 환경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미움 받을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들러가 말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에 관한 핵심이다.

4. 행복한 삶을 위한 제언

- 행복이란 공동체 감각이다.

- 자기 긍정이 아닌 자기수용을 하라

·자기 긍정이란 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주문을 거는 것이고 자기수용은 교환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의 ‘이런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내는 것이다.

- 타자신뢰와 타자공헌이 필요하다.

공동체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타자신뢰가 중요하다. 또한 타자공헌이 필요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관적인 감각, 곧 ‘공헌감’을 가지면 족하다는 것이다. ‘행복이란 공헌감이다’공동체 감각만 있으면 인정욕구가 사라진다.

-인생이란 찰나의 연속이다. ‘지금 여기’에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춤을 추듯 살라. 아들러는 지나간 과거도 아닌,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빈틈없이 살라고 주문한다. 산 정상과 같이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지 말고 ‘지금 여기’를 춤추듯 살라고 말한다.

5차. 공동체와 사회복지 정책

강사 : 정연정 강사(성균관대학교)

1. 사회복지직의 전문성

- 주위 환경에 있는 자원을 목록화 하여 적재적소에 연결을 해주는 것을 사회복지의 전문성이라고 흔히들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자원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는 미

약한 상태이다.
-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으로는 끝나지 않는 종결과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며 실적만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모든 서비스를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전달체계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즉, 잔여적 복지제도로 인해 사회복지사가 모든 정책을 전달을 하고 있다.
- 사회복지의 정의를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으로 정의한다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를 생각해본다면 사회복지는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

2. 인권
- 인권에는 언론·출판·집회·사상·종교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다루는 공민권(자유권), 인간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다루는 사회권(복지권)이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권인가? 물론 인권에는 세 가지의 권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나 현재 한국의 인권은 묵비권이 생존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시장이 생존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는 시장의 폭력적인 권한을 분배하지 않고 있다.
- 시장(자본)은 근로자의 인권을 자유권, 정치권으로만 제한하고 싶어 하나 근로자(노동)는 사회권까지 확대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시장에 권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고용이 안정되어야 한다. 근로자(노동) 인권이 사회권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투쟁을 바탕으로 한 노동조합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자본)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갖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자(노동)가 해고되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임금을 통해 교육·의료·주거 등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민주주의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인간지위의 평등을 얻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집합적 힘’과 ‘사회적 임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복지국가
- 복지국가란 단순히 수당이나 복지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며 지위의 평등을 얻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자본과 권력은 시민, 노동자와 함께 사회적 문제를 의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현재 사회의 모습은 쇼핑몰의 공동체이다. 서로 경쟁을 하여 임금을 받아 모든 것을 사야 하는 형태이다. (잔여주의, 선별주의) 그러나 복지국가의 모습을 하고자 한다면 연대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사람의 조건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를 인정하고 연대해야 한다.

6차. 지역에서 우리들의 길 찾기

강사 : 유범상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1. '똑똑한' 조합원이 되자.

-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개입이다. 개입의 방향과 범위 및 내용과 비용을 두고 각 세력 간 경쟁을 하므로 존재하는 제도에는 철학과 힘(권력)의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정책"과 "제도" 자체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그 이면에 숨은 철학(관점)과 그 철학을 관철하는 힘(권력, 세력)을 주시해야한다.

-정치는 '정치의 삼각형'을 통해 잘 이해될 수 있다. 정치는 특정 권력(세력)이 자신의 생각(이념, 이데올로기, 철학)을 정책(제도)을 통해 관철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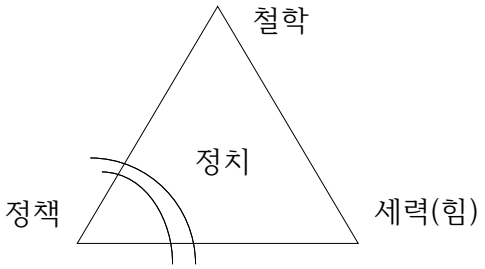

- 정책이 가진 철학(관점, 이념=사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한다. 그러한 철학을 관철할 수 있는 힘(권력, 세력)을 기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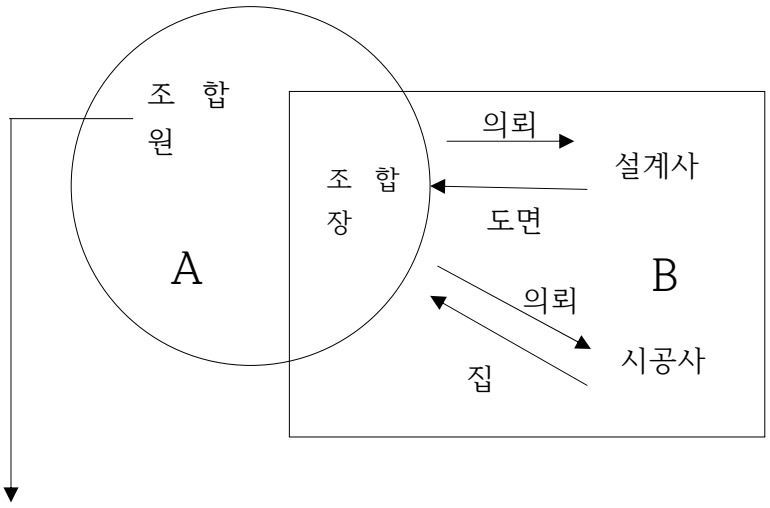

똑똑한 조합원이 되어야 함.

정확하게 볼 줄 하는 눈을 갖도록 할 것.

- 한국의 상황은...?
일반 시민, 노동자(=조합원)는 철학을 알아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연대를 통한 공동체 형성으로 철학을 지지하는 쪽이 힘을 가져야 하며, 그렇게 알아 본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 세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능동적 시민성을 갖도록 함.)

2. 균형적이지 않은 제도(정책) : 전략적 선택성
- 노동과 자본이 균형을 이룰 때 제도도 균형감 있게 존재한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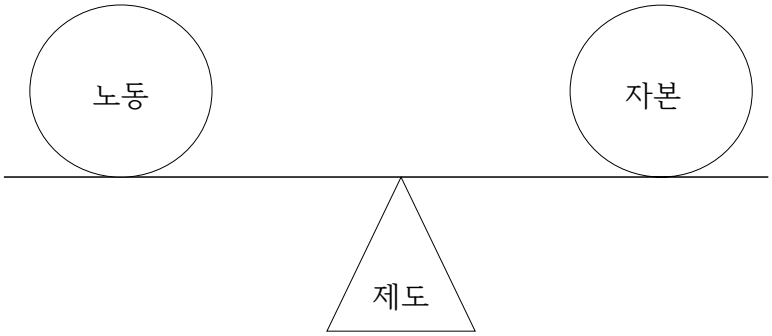

- 그러나 어느 한 쪽의 세력이 강해지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도가 움직이는데, 이 역시 “균형을 맞춘다”라기 보다는 “제도가 세력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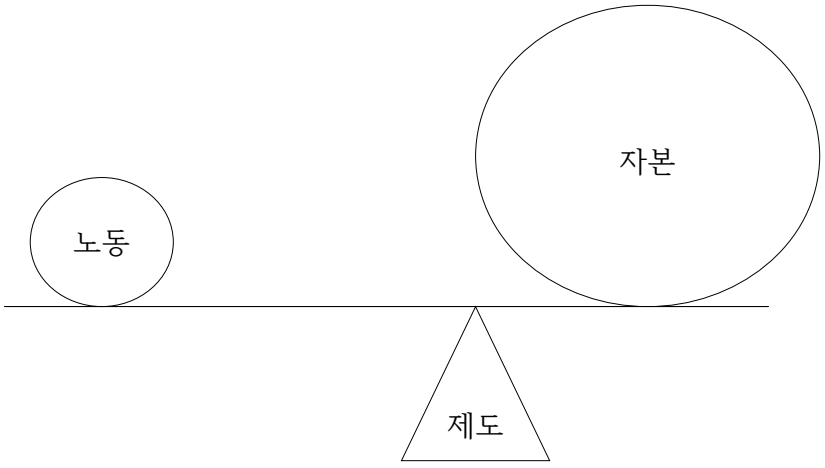

- 자본의 세력이 강해지면 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형성되고 시행된다.

- 노동의 힘이 커지면 그에 맞게 제도가 움직이는데, 그럴 경우 노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형성되고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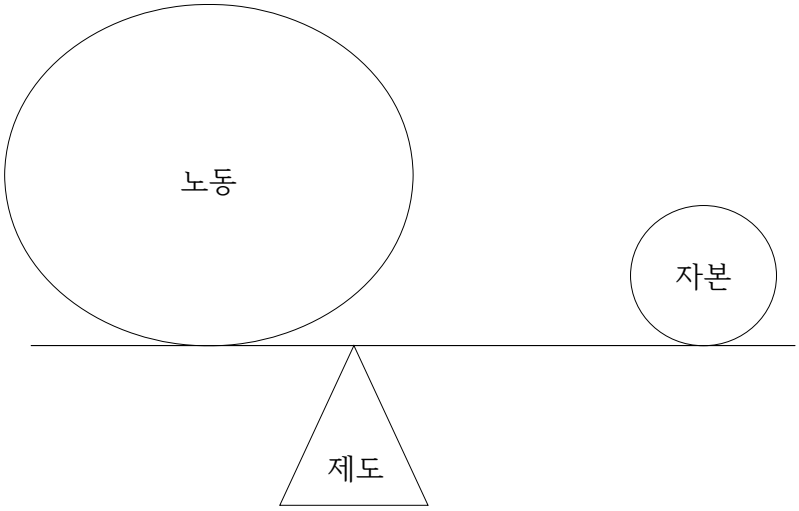

- 누군가에게는 분리하고,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게 제도화되어 있으며, 이를 전략적 선택성을 가지는 제도라고 본다.

3. 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과 안전까지 포함하여 사회복지의 개념을 확장한다.
-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를 거울 삼도록 하자.

4. 국민의 집 : 복지국가의 모델하우스
- 노동과 자본의 사이에서 국가는 국민의 집이 되어야 한다.
- 시민들은 국가라는 집을 지을 때 정치인과 정부라는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택해야 한다.(1번 그림 참조) 이 선택행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이며, 이 때 시민들은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 집일지에 대해 목표와 방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때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연대에 기반한 집인가 아니면 경쟁에 따라 작동되는 집인가’

- 모든 연대의 대상은 가족을 넘어서 국민전체이며, 위험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이다. 따라서 연대성의 핵심적 역할을 국가가 맡고, 국가는 생산과정과 분배과정에 적극 개입한다. 연대성이란 단순히 개인과 이웃 간에 우호적 관계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소득이전을 통해 사회가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의미 한다. 연대성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아동수당 등과 같은 사회임금을 통해 모든 시민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이들이 처하거나 처하게 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경쟁에서의 위험은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고 본다. 교육, 의료, 주거 등은 국가의 몫이 아닌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고, 이를 위해 시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국민의 집과 연민의 집. 전자는 연대성에 기반을 둔 집이고, 후자는 경쟁을 재료로 한 집이다. 국민의 집은 모든 국민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짓는 집을 의미하는 반면 연민의 집은 각자의 가족이 스스로를 책임지되,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때 연민을 가지고 도와주는 집을 의미한다.

5. 사회복지사의 역할 : 마리다가 되자.
-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교육자, 조직가, 정책가라는 것이 핵심이다.
- 사회가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세력을 키우도록 조직하며, 철학에 기반을 둔 실제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실천가이다.
- 단순한 메신저가 되지 말자.
-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이고, 내 공간에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이다. 누구나 각자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내 마음과 몸이 허락하는 대로 나답게 실천하면 된다. 모든 변화는 나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일상이 이상이 되도록 상상하자.

◈ 제언

이번 교육에서 가장 크게 와 닿은 것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훨씬 전부터 자원봉사나 복지관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인지에 대해 궁금했고, 학부에서 공부를 하면서는 사회복지사의 정체가 무엇인지 늘 고민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도 지금하고 있는 역할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에게 되묻고 답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명확하게 떨어지는 답은 없었던 것에 좌절감도 느끼고 허무함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교육에서 그 답을 찾은 것 같아 후련하면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또 다른 과제를 얻게 된 것 같아 약간의 부담감도 생겼다.
사회복지사로서 교육자, 조직가, 정책가라는 역할의 핵심은 '단순한 메신저'가 되 않는다는 것에 있었다. 단순히 연계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철학을 가지고 보는 눈을 키우며,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나부터 변화해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가슴 속에 새기며 힘을 내야 하겠다.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상황'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 지를 상상하며 지금 여기서 나부터 변화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하겠다.

교육·연수보고서 15-26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주 최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기 간		2015년 7월 2일(화) 14:00~18:00
장 소		인천사회복지회관 1층 소강당
참석자	팀 명	열린일터
	명 단	금민희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4시간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강사 : 김호경 주임(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

1. 개인정보의 범위 및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1) 용어 정의

용어	정의
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해당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정보주체	수집 및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사람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고유 식별 정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 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2) 개인정보의 유형

일반 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등
재산 정보	신용정보, 개인금융정보, 부동산 정보 등
신체적 정보	의료, 건강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등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근로 및 고용정보, 자격 정보
통신, 위치 정보	통화, 메일, 문자내역, GPS 등 위치정보, 로그파일 등
정신적 정보	종교단체 가입, 기호, 성향, 신념, 사상 등

3)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수집제한의 원칙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의 수집,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 익명처리의 원칙
정보 정확성의 원칙	처리 목적내에서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목적 명확화의 원칙	처리 목적의 명확화
이용 제한의 원칙	목적 범위내에서의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안정성확보의 원칙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관리
처리 방침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공개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	열람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준수 및 신뢰확보 노력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의 주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한

①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⑤ 정보주체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 (사전 동의 받기 곤란한 경우)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①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허용

②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

③ 고유식별정도의 범위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 번호

3)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 사항>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 행사 방법에 대한 사항,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

→ VMS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4) 우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만드는 방법

- www.privact.go.kr

5)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 내부 결재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
- 다른 업무와 겸임 가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요건>
- 기관별 직급 명시 (개인정보처리 담당부서의 장) - 사업주, 대표자, 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중 어느 하나를 지정)

3. 개인정보의 저장 관리

1) 안정성 확보 조치

관리적 보호 조치	내부관리 계획 수립, 인증관리요원 보안 서약서 제출, 인증관리 DB시스템 내 개인정보 관련 각종 경고 삽입
기술적 보호 조치	공인인증서 로그인, 자동로그아웃, 비밀번호 규칙 강화 등
물리적 보호 조치	서버실 입구 CCTV 설치, 서버실 2중 잠금장치 등

갈등의 이해와 사회복지의 중재적 역할과 기법

강사 : 김미라 소장 (한국갈등관리연구소, 한국자원봉사경영연구소)

1. 갈등의 이해

1) 갈등해결 수단 비용/편익

	대화중심	법제도중심	힘중심
거래비용	낮음	높음	**매우 높음**
내용 만족도	높음	중간	**낮음**
절차적 정의	높은편	높음	**낮음**
관계 개선	높음	낮음	**매우 낮음**
지속성	높은편	중간	**매우 낮음**

2) 갈등해결방법의 발달 : 대화의 중심으로!

3) 갈등의 이해

- 칡 갈 / 등나무 등
- 일이 복잡하게 뒤 얽혀 풀기 어려운 상태,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일어나는 불화

4) 갈등의 개념

- 인간 각자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
- 개인, 집단, 조직 등의 사회적 실체들 내 또는 간의 비양립성, 불일치성, 부조화 속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적 과정
- 상충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
- 공통의 관심이 있을 때 이익이 갈등을 유발함.

5) 갈등 분쟁의 개념

- 갈등상태 (갈등) : 서로 양립이 불가능한 목표, 이해관계, 또는 가치가 충돌하는 상태

- 갈등상황 (분쟁) : 갈등당사자들 간에 상충되는 이해관계, 목표, 가치를 높고 다투는 상황 (행위)

7) 갈등 해결의 여러 방법

협상	제 3자의 개입 없이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 실득을 따져가며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 내는 자발적 합의 과정(절충협상: 반반 손해보고 이익봄/ **윈윈협상: 서로 이익봄**)
조정	**대립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가 중립적 관점에서 쌍방의 합의 하에 갈등 당사자들 스스로 상승적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과정** **(대안을 주고 선택은 본인들이 하도록 함. 강사가 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재	갈등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을 하도록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만, 제3자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어느 정도 강제적인 직권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진행	내재된 갈등이 밖으로 드러났거나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적절한 진행과 대화의 조절을 통하여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것
중립적 사실조사	분쟁 당사자 간의 사실 관계 갈등이 있을 때 제3자가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진위를 밝히는 제도

8) 갈등의 종류

- 사실관계 갈등: 사건, 자료, 언행에 대한 사실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상호 신회의 객관적 조사, 사실확인

- 이해관계 갈등: 한정된 자원이나 권력을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갈등/ 공생적, 통합적해결책, 공정한 기준과 절차, 타협

- 관계상의 갈등: 불신, 오해 등 상호관계의 이상으로 생긴 갈등/ 부정적 감정, 오해와 편견해소,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 만들기

- 구조적 갈등: 사회 구조와 왜곡된 제도, 관행 등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 합의에 의한 구조개혁, 사회 전반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

- 가치관 갈등: 가치관, 신념, 종교,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다름에 대한 인정, 공통의 목표 찾기, 관용의 조화

9)우리사회의 갈등의 주요원인
- 여전히 유전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통치와 관행
- 왜곡된 시민의식
- 갈등해결능력 부재
10) 일반적 의사소통 관점
- 의사소통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나 설득이 아니라 의미의 공유나 공론의 장 마련에 있다
- 의사소통을 통해 우리는 상호간에 의미의 공유와 태도의 변화를 만들어 낸다
- 내가 말했다고 상대가 들은 것은 아니다
- 상대가 들었다고 상대가 이해한 것은 아니다
- 상대가 이해했다고 해서 상대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 상대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11) 의사소통 기법 - 적극적 듣기
-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더욱 진솔하고 깊은 이야기를 하게 만듦
-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됨
- 말하는 사람의 본뜻이 듣는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해줌
- 당사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돌이켜 보는 기회가 됨

2. 갈등 관리
1) 갈등의 기능

순기능	통합성	인간관계에 있어 중요한 상호작용, 상호간 자기주장을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 기회 제공
	안정성	외부집단에 대한 경계선 인식하게끔 만듦
	생산성	침체된 조직을 더욱 생동하게 하는 계기 제공
	균형성	조직/개인의 문제점 재조명, 관계자들의 관심을 갖게하는 계기가 되어 변화 초래
	창의성	많은 정보가 소통
역기능	불일치성	균형과 통합을 파괴할 가능성
	불안정성	문제의 원인을 타자에게 귀인→문제의 본질 왜곡, 오류 야기 가능성
	비생산성	전체적인 생산성 떨어트림
	불균형성	정상적인 의사소통 방해
	비창조성	조직/개인의 창의성-진취성 질식시킬 가능성

2) 갈등관리
- 모든 조직은 갈등이 있다
- 갈등관리에서 갈등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해소시킨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나친 갈등을 해소 또는 완화
-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나친 갈등을 해소 또는 완화
- 조직에 유익한 적정수준의 갈등은 용인하고 유지해 나가는 조취를 취하는 것
- 조직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갈등을 조장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갈등관리라고 함
- 갈등관리의 기본적 개념: 적정 갈등수준을 중심으로 갈등을 감소시키거나 자극하여 그 수준을 조정

3. 조직갈등 및 갈등 유형
1) 조직 갈등
- 조직의 개념 :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정립된 체계화된 구조에 ek라 구성원이 상호작용하며 경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의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사회집단
- 조직의 갈등 : 어느 한사람의 관심사를 다른 한쪽에서 좌절시키려 한다고 자각할 때 시작되는 정신 과정
2) 사회복지조직의 갈등
- 인간가치 지향성
- 실천기술 불안정
- 외부자원 의존성
- 조직목표 불안정
- 조직구조 불안정
3) 조직의 갈등 유형: 과업갈등
- 과업 불일치(업무에 관한 갈등) : 적합하지 않은 일을 일방적으로 부여받을 때 수행능력에 비해기대에 못 미칠때 갈등의 원인
- 기대불일치(조직에 관한 갈등) : 특정 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으나 적절한 수행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조직과 개인 간의 갈등이 발생
4) 갈등관리의 5단계 전략
- 갈등의 원인을 찾아라
- 대화의 장에 초대하라
-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라
- 마음을 열고 경청하라
-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하라
5) 가장 행복한 섬: ‘그래도’

◈ 시설 내에서 본 교육의 활용 방안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교육 내용에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활용이 필요(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게시판 게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 참고 등)
- www.privacy.go.kr 홈페이지 참고하여 운영
- 자원봉사자의 갈등 발생 및 관리 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노력 필요
- 교육 내용에서 제시된 방법을 활용한 갈등해결 방안 모색
- 사업 수행 시 관리센터의 관리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운영하고, 관리규정을 비치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교육·연수보고서 15-27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교육

주 최		보건복지부
기 간		2015년 11월 4일 14시 ~ 16시
장 소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
참석자	팀 명	**열 린 일 터**
	명 단	**윤 성 호, 이지애**
	인 원	총 2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2시간

● 인권의 정의 → **인간의 존엄성이 주 키워드**
①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 권리
②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부여되는 권리

※ 권리란?
☞ 법의 중심개념이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이기도 함. 권리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에 의해 부여된 의사의 힘으로 보는 의사설,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이익설 등도 있으나,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권리법력설이 지배적 견해. 권리에는 공법상의 공원과 사법상의 사권이 있으나, 대체로 사권을 중심으로 말함.
권리가 침해되는 때에 그 보호는 국가에 의한 공력구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에 의한 사력구제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뿐임. 공력구제의 방법으로는 재판제도, 조정제도 등이 있고, 사력구제의 방법으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등이 있음.

● 인권 감수성
☞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서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

● 인권옹호 행동 과정
① 인권 감수성 과정
② 인권에 대한 판단 과정
③ 인권에 대한 동기 과정
④ 인권옹호 행동 과정

●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① 자선에 기반한 접근
② 필요에 기반한 접근
③ 인권에 기반한 접근

● 인권의 속성
① 인권의 보편성
② 인권의 상호불가본성
③ 인권의 도덕성
④ 인권의 우선성

※ 인권의 가치 - 자유, 평등, 박애

※차이를 없애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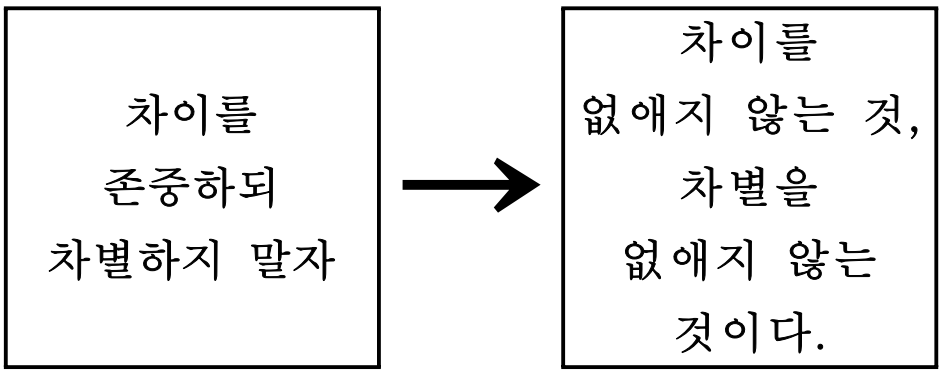

● 차별이란

① 차별 :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② 둘 이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행위

③ 우월과 열등, 강자와 약자, 다수자와 소수자, 정상인과 비정상인

④ 우대와 천대, 존경과 멸시, 포용과 배제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 4조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함.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 4조 접근권 -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장애인 권리협약

☞ 제 2조 합리적 편의 -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필수적이고 적절한 변형 및 조정을 의미.

● 정당한 편의란

누구나 모두가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

● 차이와 차별을 구별

차이	구별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둘 이상의 대상에 차이를 두어 구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 4조 차별행위 -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차별영역

재화/용역 고용 교통수단

교육시설 상업 등

※ 19가지 차별 사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시출산	가족형태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의견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 (病歷)	기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차별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19가지 차별사유를 이우로 특성한 사람 (특정한 집단 포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재정 · 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 3호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4조
우대	제한
배제	배제
구별	분리
불리	거부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적극적 조치 -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ㅏ른 차별로 보지 아니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 차별 예외

☞ 정당한 사유 - 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②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제 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평등이란

☞ 차별받지 않는 것을 뜻함. 여자와 남자, 젊은이와 노인, 아이와 어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샘김새나 성격, 태어난 장소와 가문이 다르더라도 '사람'으로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말. 평등이 모든 사람을 무조건 똑같이 대해 주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 그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아님.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등의 의미.

● 제언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교육을 듣게 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문제와 실제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이 이루어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인터넷이나 뉴스에서만 보던 사례들이 실제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교육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내용 및 용어들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인권과 차별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교육·연수보고서 15-28

소아정신보건 임상 및 부모교육 모델 'Pyramid Model'

주 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인천지회
기 간		2015년 4월 8일(수)
장 소		카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마리아홀
참석자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명 단	**김진애, 정진옥**
	인 원	총 2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4시간

2015 인천지회 보수교육

‘피라밋 모델: 소아정신보건 임상 및 부모교육 모델’

Ⅰ. 강의시간표

일자	시간		과목명
4월 8일 (수)	접수	13:30-14:00	접수 & 인사말
	1부	14:00-16:00	피라밋모델: 소아정신보건 임상 및 부모교육 모델 Ⅰ (강사: 장인규 [미국, 루이지애나주] 지역사회 정신보건 센터 Clinical Director)
	break-time	16:00-16:10	break-time
	2부	16:10-17:40	피라밋 모델: 소아정신보건 임상 및 부모교육 모델 Ⅱ (강사: 장인규 [미국, 루이지애나주] 지역사회 정신보건 센터 Clinical Director)
		17:40-18:10	질의응답
	공지 및 폐회	18:10-18:20	공지 및 폐회

Ⅱ. 보수교육 내용

1. 피라밋 모델: 소아정신보건 임상 및 부모교육 모델

1) 소아정신 진단/개입에의 유의점

- 소아정신 연령?
: 4-12 또는 4-9
- 증세에 대한 바른 이해
: 내면화 증세
: 외면화 증세
: 진단 착오

· 아동기질에 대한 이해
: 쉬운 기질
: 어려운 기질
: 느리게 발동 걸리는 기질

· 기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 보편적 행동 vs 특정 관계 행동에 대한 차이 이해

2) 특정관계 행동

· 아동은 그들 개인의 경험과 신뢰를 근거로 다른 양육자들과 각각 다른 종류의 관계를 형성한다.
· 임상사례연구들은 제 1 양육자와 심각한 갈등관계를 경험한 아동들이 이 관계를 다른 대상들에게 일반화 시키지 않을 뿐아니라 다른 대상자들에게 일반화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양육자들과 다른 형태의 병리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 양육환경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동시적 개입
· 아동 두뇌 발달에 대한 이해

3) 두뇌 발달과 양육 환경

· 신생아의 두뇌는 미완성 상태(성인의 25% 무게)로 출생한다.
· 미완성의 신생아 두뇌는 지지적 양육환경과의 상호작용, 적절한 자극, 경험 및 영양분을 통해 그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발달한다.
· 두뇌의 급속한 발달은 생후 3년간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신경세포, 즉 세포간의 연결 'wiring'이 형성된다.
· 이러한 wiring process가 미래의 언어, 지능, 환경에의 반응 능력의 기본 초석을 이룬다.
· 생후 3년생의 두뇌는 성인 사이즈의 80%, 생후 5년 아동의 두뇌 사이즈는 성인의 90%가 된다.
· 두뇌구조의 변화는 시기적으로 세포간의 연결구조(신경세포 Synapses)가 급증하는 시기, 최고의 밀도를 나타내는 시기, 감퇴되는 시기가 있다.
· 아동의 두뇌는 성장함에 따라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뇌세포간의 연결고리(신경세포)를 소멸해간다.
· 어린시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뇌세포의 연결고리는 남은 생애동안의 두뇌구조와 기능의 기반으로 자리잡는다.
· 청소년 후반기에 이르면 뇌세포 연결고리의 절반가량이 소멸되어 약 500조만이 남은 생애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4) 충격외상 Trauma

・충격외상 (Trauma)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

・정상적 뇌세포 발달에의 장애 유발:

-아동 두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꼭 필요한 긍정적이고 적절한 경험의 극부족 (방임 neglect)

・두뇌의 경각시스템에의 부담현상(학대 abuse)

-충격외상과 경각 시스템

・생존의 메카니즘인 경각 시스템: 예측불가 혼돈 및 충격적 경험들은 아동이 고조된 경각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

・극도의 또는 빈번한 위협은 경각 시스템에 장애를 가져온다.

・충격과 함께 경각 시스템이 과도로 민감 반응하며 지나치게 느리게 소각된다.

: 아동은 지속적 경고상태 유지

: 위험 신호에 대한 과도 반응

: 정상적 상황에서도 과도 반응

・과도로 민감한 보호 메카니즘은 아동의 학습, 정서, 행동 및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2. 청소년기 두뇌 발달

・사회복지실천의 본질

・사회복지 실천의 시대적 특성

・사회복지 전문직 구성의 한 축, 바탕

・윤리경영 투명경영 등 사회적 요구 증대

・신체적 변화

・정서적 변화

・인지적 변화

・신체적 변화 이전에 이미 정서적, 인지적 변화가 시작됨

・인지의 변화는 20대까지 지속

1) 청소년기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 거센 들소의 파워를 가진 새로운 몸과

: 시속 0에서 60마일까지 단 몇초만에 변화 가능한 민감한 개스패달에 (emotional)

: 몇 년간 불완전 작동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보유한(thinking) 차

2) 청소년 인지 발달

・대부분의 청소년기 두뇌발달은 전전두엽

prefrontal lobe이며 이 부분의 주요 역할은:

・복잡한 결정
・예견 Thinking ahead
・계획
・위험부담과 보상의 비교
・두뇌의 사고 및 합리적 문제해결 기능의 중심부인 전두엽은 가장 늦게 발달되는 부위
・전전두엽prefrontal lobe은 청소년기와 성인초기인 2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지속 발달 및 성숙

-시사하는 바:
・청소년기의 많은 행동은 두뇌의 미성숙에서 비롯
・비록 청소년이 성인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 인지 능력은 많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신체적 발달 상태를 정서, 인지 발달과 혼돈하지 말아야.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사고 형태상의 차이점
・자기조절 능력 Self-control
・근시안적 사고 Short-sightedness
・또래의 압력에 대한 반응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단기성 사고 중심의 청소년기
・청소년의 초점
:장기적 손실 보다는 지금 당장 얻어지는 것에 초점
・청소년기의 두뇌는 시간을 두고 지속
:성장/성숙되어 점차 어른적 사고를 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두뇌발달에의 도움
・Brain Plasticity : 청소년의 두뇌는 그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발달한다.
・긍정적 경험이 중요한 시기
・부모는 청소년이 다음의 강점을 발달하도록 도와야
:감정조절, 자기조절
:공격성 보다는 단호한 주장
:문제해결 능력 problem-solving skills

3. Pyramid Model

・소아정신임상, 부모 교육 및 학교 개입 모델
・4가지 단계 중 윗 단계부터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단한 기반이 되어주는 하단부분의 성립 없이는 윗단계를 성취하기 어렵거나 비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그 변화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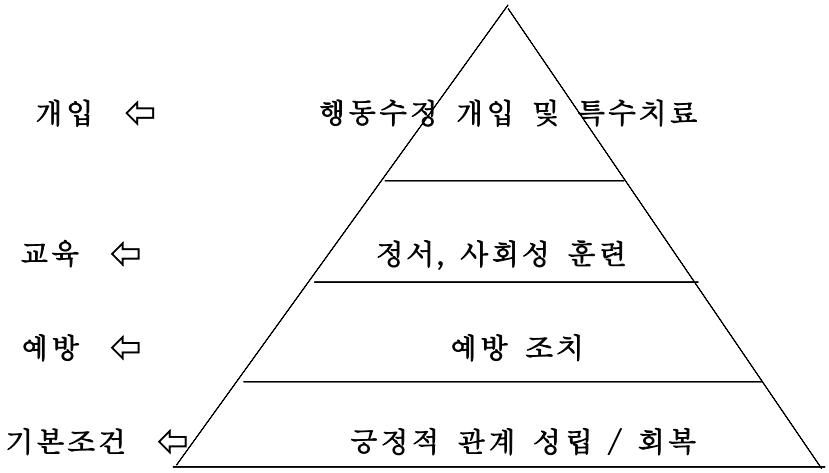

1) 긍정적인 관계 형성

- 피라밋의 기반
- 온정적 양육에 관한 부분
- 사회-정서적 자신감 형성에의 필수조건
- 관계를 통한 문제 행동의 변화
- 아동은 그들의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이에게 보답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 아동의 대부분 문제 행동은 이 단계에서 해결된다.
- 긍정적 관계 형성 및 회복을 위한 3가지 주요개념/접근소개

2) 부모-자녀 관계의 8영역

부모영역	자녀영역
정서적 접근성	감정조절능력
온화함	신뢰/안전감/존중감
스트레스에의 반응/위로	위안/위로의 추구
보호	경각심/자기보호/안전추구
놀이	놀이/상상력/관계형성
교육	학습/호기심/성취
훈육/한계설정	자기통제력/협조
생활규칙	자기조절 능력/예측성

① 정서적 접근성(Emotional Availability)

- 모든 범주의 정서적 교감 능력

· 부모 자신 및 아동의 정서 상태에 대한 언어적 표현

①-1 감정조절능력(Emotional Regulation)

· 일반적 감정 및 극도의 강한 감정상태의 조절 능력

· 건설적 감정표현 능력

② 온화, 공감적 양육(warmth/Empathy/Nurturance)

· 지지적, 격려를 통한 온정적 양육방식

· 공감적 반응, 아동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민감한 반응

②-1 안정감, 신뢰, 자기존중감(Security/Trust/Self-Esteem)

· 위험이나 불안, 위협감에서 벗어난 안전감

· 기대하는 행동 약식내에서 상대방이 반응할 것에 대한 안정된 신뢰감

· 자기 존중 및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느낌, 신뢰, 이미지

③ 위로(Comforting)

· 스트레스 상황이나 정서적 충격에 반응하여 위로

③-1 위안, 위로에의 추구

· 스트레스나 정서적 충격시 회복을 위한 정서적 자원 요청 능력과 적극적 정서 상황 회복 능력

④ 보호(Protection)

· 위험한 상황으로 부터의 경계 및 아동을 보호하는 능력

④-1 자기보호능력, 안전추구, 경각심(Self-Protection/Selt-Vigilance)

·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는 자기 보호능력

· 즉각적 위험에 안전하게 대처하는 능력

· 위협을 상기하는 환경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력과 적절한 경계심

⑤ 놀이(Play)

· 놀이를 통해 아동은 자기 자신과 세계경험, 문제해결과 다양한 사회적 역할 훈련

· 부모는 즐거운 기억을 통해 아동에게 부모, 가족간의 정서적 연합 기회 제공

⑤-1 놀이, 상상력 고조(Play/Imagination)

· 놀이는 아동에게 있어 최상의 환경탐구 및 학습의 기회

⑥ 교육(Teaching)

· 모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부모의 우선적 역할의 하나

⑥-1 학습, 호기심, 성취(Learning/Curiosity/Mastery)

· 지식, 지혜의 습득

· 환경에 대한 자연적 호기심 자극

· 성취욕구 증진

⑦ 훈육 및 한계 설정(Discipline/Limit/Setting)

· 자신과 타인간의 영역에 대한 존중의 개념 제공, 자신의 한계영역 수긍 및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 훈련, 옳고 그름에 대한 스텐다드 훈련 및 훈육에 따른 행동적 반응 훈련

⑦-1 자기통제력, 협조(Self-Control/ Cooperation)

· 아동의 내적 자기 조절능력 및 스스로에 대한 자발적 한계 설정 능력 확산

⑧ 일상적 양육행위, 가정의 구조 설정, 규칙적 일상 (Instrumental Care/Structure/Routines)

· 아동의 생존, 생활에의 필요 공급

· 일상생활을 위한 가족의 구조적 환경제공

·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예측 가능 생활 일정 제공

⑧-1 자기조절 능력, 예측성(Self-Regulation/Predictability)

·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가정의 일상은 아동의 독립적 자기조절 기능 및 능력감을 고취

· 자기조절능력감은 충동성 조절, 정서적 발란스 유지 및 자기스스로의 삶을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능력감의 초석

3) PRIDE Skills

5 Do	3 Don't
칭찬 Praise	명령 Command
반영 Reflect	질문 Question
모방 Imitate	비판 Criticize
묘사 Describe	
열정 Enthusiastic	

· 구체적인 칭찬 :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칭찬

· 반영 : 아동의 바람직한 말에 대한 반영적인 응대

· 모방 : 아동의 적절한 놀이를 모방

· 묘사 : 언어표현의 모델이 되어 줌

· 열정적 자세유지: 부모가 아동과 보내는 시간을 즐기고 있음을 아동이 알게 해줌

Ⅲ. 제언

피라밋 모델은 긍정적인 관계성립 및 회복을 기반으로 하여 사례에 따라 교육 및 개입이론들을 정하고 적용하여 단계별로 치료를 돕는 모델로서, 피라밋모델이 소아정신보건에 적용되었던 모델이긴 하나 시설이용회원들 중 지지체계가 약하거나 피해적인 사고로 인해 라포형성이 어려워 치료에 대한 개입이 어려웠던 회원을 대상으로 적용해 보아도 긍정적인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짐.

교육.연수보고서 15-29

정신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과제와 대안 토론회

주 최		인천 · 부천지회
기 간		2015년 10월 23일 (금)
장 소		이룸센터 이룸홀
참석자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명 단	정진옥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3시간

2015년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과제와 대안 토론회

Ⅰ. 일정표

일 자	시 간	내 용
10월 23일 (금)	13:30-14:00	접수
	14:00-14:05	인사말 문용훈(태화샘솟는집 관장)
	14:05~15:05	강의 주거복지와 지역사회통합 / 남기철(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5:05-15:20	휴식시간
	15:20-15:50	발표 정신장애인 체험홈 '둥지주택' 효과성 연구 / 박희정(태화샘솟는집 주거지원부 팀장)
	15:50-17:00	토론 좌장: 이선혜(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서규동(동양대 사회복지학고 교수) 김종선(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사무총장) 김민정(정신장애인 당사자)

Ⅱ. 내용

1.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둥지모델' 개발

1) 사업의 실시배경 및 목적

정신장애인의 연령대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40~50대의 정신장애인이 가장 높은 비율로, 전체 정신장애인의 64.9%를 차지한다(서울시정신보건센터,2011). 이러한 사실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주보호자인 부모가 고령이거나 부재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주보호자의 사후에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정신장애인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장기간 보호와 높은 부양부담으로 자신의 사후에 자녀가 어떻게 자립생활을 할 것인지에 e한 계획을 미처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이 연로하거나 사망하여, 또는 오랜 입소 및 입원생활로 인해 가족과 단절된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생활해야 하는 현실적인 욕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정신장애인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한 욕구에 더하여,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사회변화가 있다. 바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적 측면이 중요시되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그 동안 주로 치료과정과 관련된 자유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강조됨에 따라 점점 사회권이 중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종래에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주거권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 화와 더불어 정부는 정신장애인이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를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 활할 수 있도록 정신병원 병상 수 증가를 억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동일한 정책 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인 주거제공시설 역시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가능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다.

2) 반복되는 입원과 입소, 그리고 비주택으로 내몰리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정신장애인 개인의 욕구가 있고 정책적으로 자립생활을 지향하고 있을지라도 아직 현실적으로는 자립생활을 지원할만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정신장애인 주거제공시설이 양적으로는 증가한 상황이라도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을 지원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대부분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7-10명가 량이(1실 3-4인 사용)함께 단체 생활을 하고 있어, 실제적이고 개별적인 자립생활 훈련이 어려우며 전문가의 개입이 높기 때문이다. 거주기간에 있어서도 2014년 이전에는 타 주거 제공시설로의 이동이 가능하여 주거제공시설을 전전하는 회전문 현상이 있었으나, 2014년 이후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주거지를 확보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박경수 외, 2011) 장애인들이 평균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 하는데 5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처럼 주거제공시설 이용기간과 자립 생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의 차이는 정신장애인들이 자립생활 준비를 미처 다 마치 지 못한 상황에서 주거제공시설에서 퇴소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립생활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거제공시설에서 퇴소한 경우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병원으로 다시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병원 퇴원 후에도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퇴원 후 지역사회에 마땅한 거처가 없어 퇴우너한 바로 다음날 재입원하는 경우가 2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서 울시정신보건센터, 2007). 설사 병원에는 다시 입원하지 ㅇ낳더라도 부유한 갖고의 지원 이 없는 한,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고시원이나 쪽방

등의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 하게 된다.

3)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장애인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장애인전화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을 훈련하고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신장애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국에 다수의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 나 정신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자 하여도 마땅히 도움받을 만한 곳이 없는 실정이다.

정신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귀시설은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해 아 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신보건시설은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 하며 자립생활 훈련에 있어서도 경험이 많지 않아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주 거복지과련 기관은 정신장애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꺼리며, 주거취약계 층을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이렇듯 주거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신장애인은, 주거제공시설의 획일적인 서비스와 거주기간 제한 그리고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병원 입원이나 요양원 입소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장기 시설화는 '정상화'의 이념에 역행하는 실천으로, 결국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4) 자립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시기는 자립생활로 전환한 후 1개월 이 내인데, 이사 직후 낯선 주거 공간과 환경에 대한 적응은 향후 자립생활 유지 여부를 결 정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자칫 정신질환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사 직후 초기지 원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초기적응기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 면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기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처럼 자립생활지원 서비스가 준비, 전환, 유지 단계의 과정에서 체계 적으로 제공되어야 정신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것 중 하나는 지역사회 내에서 의 관계망이다. 자립생활을 하는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각종 공식·비공식적 자원 연계를 통해 관계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 혼자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이 잘 파악되지 않고 연계가 되어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여

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요구된다.

지역사회 자원연계에 있어 정신장애인들의 자조모임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자조 모임을 통해 서로 도우면서 각자의 역량이 강화되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힘을 갖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자조적인 활동은 이미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을 활용 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미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정신자앵인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한다면 자립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여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둥지주택' 사업 개요

1) 목적

본 사업은 상기한 문제와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정상화'와 '주거 권확대'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정신보건 영역에 새로운 형태의 '둥지주택'을 신설하여 이 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주거선택권을 확장시키고, '동료 자립지원가' 활용과 '지지주 거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여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는 자립생 활 모델을 개발의 기반을 조성한다.

2) 목표

위의 목적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네 가지의 하위목표가 구성된다.

① 자립생활 체험홈과 유사한 '둥지주택'을 통해 자립생활 준비를 지원하고

② 자립생활 단계별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③ 자립생활의 전(全)단계에서 동료자립지원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활용한다.

④ 또한, 이 모든 과정을 매뉴얼화하여 교육과 컨설팅, 설명회를 통해 전파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둥지주택의 활용, 자립생활 단계별 지원, 동료지원가의 활용 등을 포함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현재 자립생활을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정신장애인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Ⅲ. 제언

본 시설에서도 40-50대의 자립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회원들이 여러분 계셔 차년도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둥지주택' 사업은 풀옵션의 주거를 자립을 준비하는 회원에게 정해진 기간(최대 6개월)동안 대여하며 사례관리 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었다. 자립을 준비하면서 당사자가 가장 좋았던 점은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며 실제적으로 자립을 하기 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차년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우리 시설에서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실제적으로 자립에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메뉴얼화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육·연수보고서 15-30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인천지회 보수교육
'클라이언트 회복을 위해 넘어서야 할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세'

주 최		인천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기 간		2015년 11월 16일(월) 13:00~18:20
장 소		복사골 문화센터
참석자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명 단	김진애, 장성진
	인 원	총 2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10시간

1. 인간의 다양성과 인권: 사회적 특권과 억압

1)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기

①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

: '외국인 노동자'라는 단어를 두고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유색인종, 3D 업계 종사자'가 대부분이나 '백인, 영어강사'의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에 포함될 수 있음.

② '윈스턴씨와 알라오'의 이야기를 통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의식 갖기

: '윈스턴씨와 알라오' 처음 글을 보면 윈스턴 중심으로 글이 서술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게다가 알라오에게 불평등한, 차별적일 수 있는 글도 일부 관찰됨. 첫 번째로 둘은 친구인데 윈스턴에게만 '씨'라는 호칭을 붙인 것, 두 번째는 윈스턴은 '영국'이라는 국적으로 소개했는데, 알라오는 '국적'이 아닌 '대륙'으로 표현한 것, 세 번째는 윈스턴이 알라오게만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평등하지 못한 입장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 등임. 이를 다시 수정해보면 아래 내용처럼 볼 수 있으며 이는 '언어표현과 사용의 민감성'을 더욱 느낄 수 있는 부분임.

전	후
윈스턴씨는 영국사람 그에게는 알라오라는 흑인친구가 있어 알라오는 아프리카 사람 윈스턴씨는 의사이고 그의 친구 알라오는 농부라네 윈스턴씨는 알라오가 아플 때마다 항상 치료해주지	윈스턴과 알라오는 친구라네. 윈스턴은 영국사람이고, 알라오는 나이지리아사람이지. 알라오는 농부이고, 윈스턴은 의사이지. 윈스턴은 알라오가 아플 때마다 항상 치료해주고, 알라오는 윈스턴에게 수확된 농장물을 매번 공급해주지

③ 다문화 사회의 다양성

: 우리 모두 다른 환경과 다른 구조 속에 살아왔기에 우리 모두 다문화라고 볼 수 있음. 우리 모두 서로 다 다르지만 다름은 틀림이 아니고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함.

: 일부에 대한 혐오는 무관심과 무지에서 출발하며 사회적 공포감을 통해 혐오로 표현될 수 있음.

(ex: 외국인혐오증, 동성애혐오증,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혐오 등)

2) 다문화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 「나, 나, 그리고 우리」

① '나'

: 내가 바라보는 나 자신의 모습

→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정체성 찾기

→ 정답사회에서 주입하는 정답이 아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나는 누구인가' 세상이 규정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한 나의 정체성이 있어야 함.

→ 나의 '정체성'이 있을 때: 내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폭력적인 언행과 사회구조적인 차별과 억압을 구분할 수 있음.

→ 나의 '정체성'이 없을 때: 자기혐오 – 자존감 하락 – 다 내 잘못으로 귀결됨.

② '너'

: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 관점의 전환

→ 사회적 특권과 억압의 관계에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

사회정체성	특권그룹	경계그룹	업악그룹	차별의 이름
장애	(일시적) 비장애인	일시적인/ 숨길 수 있는 장애인	장애인 (신체, 정신, 자폐성, 지적)	장애차별, 비장애주의
성별	남성	간성	여성	성차별,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제
소득 (경제력)	부자, 재벌, 상위계층	중산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난한 사람	자본주의, 사회계층주의, 물질만능주의
인종	백인	백인 혼혈인	유색인종	인종차별, 백인우월주의
외모	잘생긴, 예쁜, 날씬한, 몸짱의	보통 얼굴/몸매, 평범한	못생긴, 뚱뚱한, 깡마른	외모차별, 외모지상주의
성지향	이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범성애자	동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이성애주의, 동성애혐오, 호모포비아

③ '우리'

: 구조적 억압 철폐 – 평등한 사회 만들기

→ 누구나 평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

(ex: 남녀의 임금격차, 남녀 성평등, 빈부격차, 장애에 대한 배려 등)

2. 지역사회통합을 지원하는 Recovery based practice

1) Recovery의 의미

① 임상적 회복(Clinical recovery)

: 정신의학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정의된 개념으로 증상의 제거, 사회적 기능의 복원 및 그 외 모든 부분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

② 전인적 회복(Personal recovery)

: 정신질환을 직접 경험했던 당사자들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임상적 의미에서의 회복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전인적 회복의 정의는 Anthony(1993)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지극히 개인적이고 고유한 방식으로 삶의 태도, 가치, 감정, 목표, 기술 또는 역할을 변화시켜가는 과정. 그리하여 질환으로 인해 한계 내에서도 만족스럽고 희망적이며 기여하는 형태로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 이는 정신질환이 미치는 극도의 부정적 영향을 뛰어넘어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음.

2) 회복패러다임의 실천적 접근

① 당사자

: 정신질환에 대한 측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변화해야 함.

② 전문가

: 정신질환과 치료에 대한 측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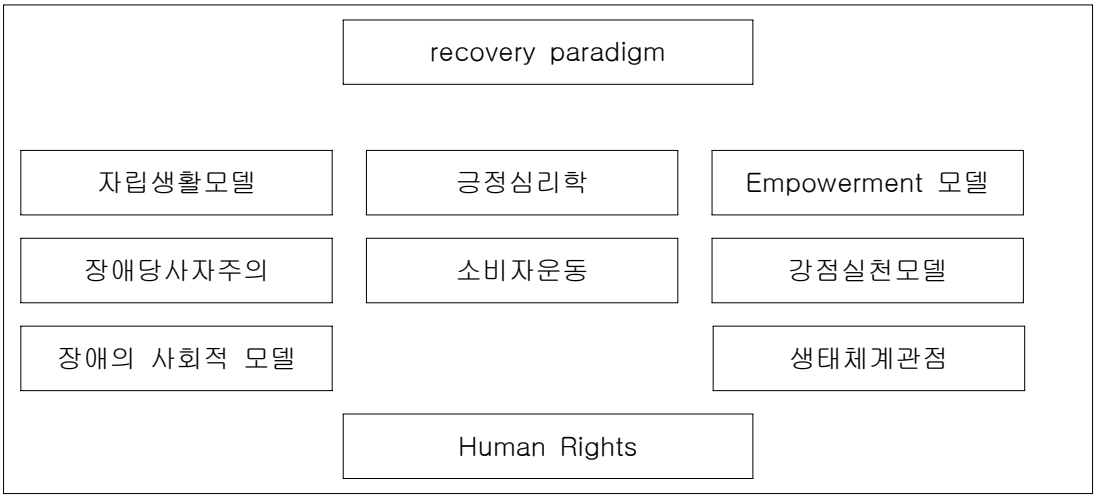

3) 당사자가 경험하는 정신질환에서 회복의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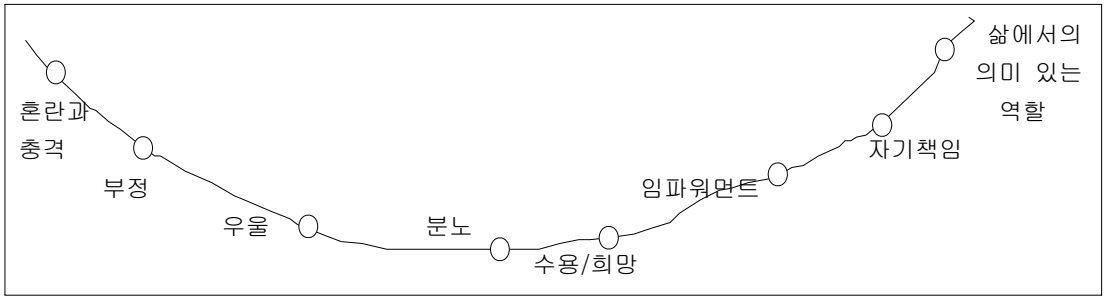

4) Recovery Task

① 긍정적인 정체성(자아상) 형성

: 스스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정체성(자아상)을 만들어나가는 것. 여기서 정체성의 개념은 지극히 개인적인데 한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구성요소가 다른 이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 무엇이 그의 자아를 구성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직 그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함.

② 정신질환을 삶의 일부로 국한시키는 방식의 프레이밍

: 전문가들로부터 정신질환으로 평가되었던 개인적 경험에 대해 스스로 적합한 의미를 부여하는 일. 즉, 인생전체를 정신질환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국한시키는 방식으로서의 프레이밍이 필요함.

③ 자기관리 능력의 발달

: 이는 의료적인 관리대상에 머물러 있던 상태에서 질환을 스스로 관리하며 자기책임을 인식하는 상태로의 변화임. 모든 것을 다 혼자 해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찾는 것 까지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신에게 적합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함.

④ 사회적 역할을 갖는 것

: 발병 이전과 완전히 같거나, 조금 달라졌거나 혹은 아주 새로운 어떤 사회적 역할을 갖는 것이 회복의 궁극적인 과제임. 어떤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회복된 사람으로서의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초석이 되어 줄 것임. 더욱이 친구나 가족 혹은 동료로부터 늘 받아오던 도움이 더 이상 어려워지는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는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해 질 것임.

5) 전문가의 의사소통 방식: 코칭기술의 활용

상 담	코 칭
부정(이상) 심리학	긍정심리학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갈등, 불안감, 영적싸움, 우울증, 불안, 분노와 같은 감정의 문제를 다룸	성취, 성과향상, 비전설정, 직업적 성장, 목표와 꿈에 도달하는데 초점을 맞춤
잘못된 것을 고침	목표에 도달하도록 지원
과거에 일어난 문제의 원인과 치유와 안정을 주는데 초점을 맞춤	현재와 미래, 가능성, 목표에 도달하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 꿈을 현실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춤
상담가는 환자를 다루고 치유과 처방을 제공하는 전문가	코치와 고객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함께 작업하며 서로 평등함
심리학, 정신병리학, 치료요법 등 전문지식 필요	최고의 코칭은 경청, 질문하기, 격려와 같은 코칭 기술을 훈련받는 것으로 가능

6) Recovery 기반 실천을 위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것들

- 회복(personal Recovery)의 의미와 정의, 회복단계
- 회복 실천 전략
- 회복 실천 효과성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
- 회복지원에 있어 전문가의 역할
- 회복을 촉진하는 실천관계
- 회복 관점 사정과 당사자의 강점에 기반한 접근
- 전문가의 자기이해 - 개인/전문가로서의 가치, 신념, 실천관계, 경계
- 회복 실천 기관의 가치와 태도, 실천관계, 의뢰와 사정과정, 지원계획 수립
- 회복을 촉진하는 언어 활용
- 회복을 촉진하는 지식과 기술, 동기부여
- 전문가와 당사자의 파트너쉽 형성

3. 실무자 의견 및 사업적용방안

첫 번째 '인간의 다양성과 인권' 강의를 통해서는 일상생활과 근무 중에 많은 사람들과 동료, 관계자들, 회원들을 만남에 있어 언어사용과 표현에 있어 민감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음. 또한 제한된 정보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일부 정보만으로 회원의 생각이나 행동의 목적과 이유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수집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평등의 가치를 갖고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음. 더불어 우리가 만나는 회원들의 평등과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행동과 가치의 변화, 노력이 필요함을 생각하게 되었음.

두 번째 '지역사회통합을 지원하는 Recovery based practice' 강의를 통해서는 Recovery 실천의 기본 개념과 가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됨. 매번 강점관점으로 당사자를 바라보고 사례관리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지만 '회복'이라는 가치와 의미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고 실제 사례관리에 있어 당사자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 안에서 새로운(혹은 발병 전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존감 향상과 자신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사례관리를 함에 있어 이러한 'Recovery'의 관점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담이 아닌 코칭의 방법을 활용하여 당사자를 응원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교육.연수보고서 15-3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환경과 향후과제

주 최		사단법인 공감과 소통
기 간		2015년 11월 21일 (토)
장 소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교육실 I
참석자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명 단	장성진, 정진옥
	인 원	총 2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5 시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향후 과제”

Ⅰ. 일정표

일자	시간	과목명
11월 21일 (토)	13:00~13:20	접수
	13:20~14:20	주간재활시설에서의 직업재활 / 서초열린세상 문경진 팀장
	14:20~14:30	break time
	14:30~15:30	회복모델기반 직업재활 적용실제 / 국립서울병원주무관 이근희박사
		의료적 관점의 직업재활 / 성모마음정신과의원 이정국 원장
	15:30~16:30	의료적 관점의 직업재활 / 공감플러스 직업재활시설 이은선 시설장
	17:40~18:00	질의응답

Ⅱ. 교육 내용

1. 주간재활시설의 직업재활 환경과 향후과제

- 서초열린세상 / 문경진 팀장

1) 법에서의 고찰

· 정신보건법
· 정신건강사업안내
· 서울시 정신건강사업안내
· 사회복귀시설 인증지표와 서울사회복귀시설 인증지표

2) 주간재활시설의 직업재활 환경

· **취업전 훈련**

- 기초 직업소양 교육, 직종별 직무기술 훈련

· **취업알선 및 취업 지도활동**

- 취업장 개발 및 취업정보 제공, 구직 및 면접 지원 현장 직무지도

· **취업유지 관리**

- 취업회원 사례관리, 취업장 방문 및 고용주 상담, 취업회원 자조모임

주간재활시설의 직업재활은 **외부취업**을 지향		
직업재활시설과의 서비스중첩 (보호작업형의 직업재활 시설)	내부직업훈련 회원의 취업동기를 **고취**시키는 동시에 시설에 대한 **고착화**의 문제 발생	**외부취업의 효과성** 증상완화, 개인의 변화

＊ **취업준비**

① 취업준비 프로그램

- 자기이해
- 구직기술훈련
- 취업유지기술
- 취업 전 직업훈련

＊ **취업지원**

① 취업상담

- 개별직업재활계획

② 취업장 개발

- 담당자 개발
-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③ 취업알선

- 외부취업 (지지취업, 지원고용 활동, 독립취업, 기타)

＊ **취업유지**

① 취업유지지원

- 취업장방문
- 고용주 관리

② 취업회원 여가지원

- 취업회원자조모임

- 캠프

3) 취업준비 프로그램의 전략

- 특성화 프로그램을 찾아서 활용한다.
- 장애인고용공단 활용하기

-워크넷 활용하기

4) 취업지원의 전략

- 목적이 동일한 기관과의 조직화하여 연대 하여야 한다.

5) 주간재활시설 취업지원분과 활동

- 취업장 공유를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 확보
- 정신장애인 취업장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
- 고용주 연합 간담회
- 직업재활 실무자 역량 강화
- 직업재활 관련 KNOW-HOW 공유
- 공동 취업장 개발

6) 취업유지의 전략

- 고용주를 내 편으로 만들기
- 직장내 스트레스 관리하기

2. 주간재활시설의 직업재활 향후과제

· 보호작업에 대해 생각해 보기

→ UNCRPD 권고사항

· 회복 지향적 취업지원 방향 설정

→ 세계적 흐름(WHO 정신건강 액션플랜 2013-2020)

· 회복 지향적 취업지원의 형태

- 증상과 직업평가에 따른 취업이 아닌 개인의 욕구 기반을 한 취업지원 방향

→ SAMHSA의 S·E

→ IIPS —Model 적용 취업지원 방향에 대한 고민

·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권역별(동서남북) 취업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 정신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3. 결론

· 정책면

: 보건영역에서 벗어난 복지적 측면으로의 접근이 필요함.

· 운영면

: 사회복귀시설 종류와 사업을 규정만 하지 말고, 종류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사업면

: 실무자들이 의도적으로 조직화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장 필요.

Ⅲ. 제언

차년도 직업재활을 내부훈련-보호작업을을 없애고 시설 회원 특성에 맞춰(기초생활수급권자, 장년층) 계획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얻고자 참여했다. 이에 대한 답은 아니었지만, 시설 내에서의 내부훈련 또한 특성화하는 것의 필요성이 있어 차년도 이에 대한 실천을 통해 체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개기가 되었다. 서울에는 인천과 비교했을 때 사회복귀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업장 공유 및 고용주 연합간담회, 정신장애인 취업장 확보를 위해 고용공단에 공동 대응하여 정신장애인만을 위한 4시간 일자리 마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인천지역에서 부천지역과 함께 직업재활네트워크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점차적으로 함께 연대하고 네트워크 체계화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15 전문자료집 － 교육·연수보고서

남동발간 2015-12호

■**발행일** : 2015년 12월

■**발행인** : 서 현 정

■**편집인** : 이 현 정

■**주　소**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번길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홈페이지** : www.ndjb.or.kr